

# 양화진의

# 진실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관한  
예장통합과 <한국의 독립>의 주장과 진실

---

# 차례

---

『양화진의 진실Ⅲ』을 내며 .....	06
<b>1부 2009년 9월 이후 제기된 예정통합의 왜곡된 주장과 진실 .....</b>	<b>12</b>
1. 이재철 목사에 대한 서울서노회의 재판과 예정통합의 목회 방해 행위에 대하여 ...	13
1) 서울서노회의 이재철 목사 재판 과정과 절차적 문제들 .....	14
① 서울서노회의 이재철 목사 재판 과정 .....	14
② 예정통합 서울서노회 재판의 절차적 문제들 .....	15
고발 기간과 시기의 불법성 문제	
기소 시기와 기소장 부분 송달 여부 문제	
기소 이전에 탈퇴한 향존 직원에 대한 재판권 문제	
③ 이재철 목사에 대한 이른바 ‘이단시비’의 부당성 .....	19
2) 예정통합의 이재철 목사 목회에 대한 방해 .....	19

2. 2009년 이후 예장통합의 주장과 진실 .....	22
1) 예장통합 총회의 '양화진 외국인묘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 요청 (2009.12.30)'에 대하여	22
① '공동 유산' '공동 관리' 주장의 허구성에 대하여 .....	22
② 100주년기념교회의 이전과 명칭 변경 요구에 대하여 .....	24
③ 소위 '7인조정위원회 합의사항'의 허위에 대하여 .....	26
2) 예장통합 총회 정치부의 '100주년협의회 통합교단 소속 이사에 대한 서면질의(2010.2.10)'에 대하여	28
3) 예장통합 '양화진 문제 보고회'(2010.7.22)에서 발표한 '양화진의 역사적 의미(임회국)'에 대하여	32
4) 예장통합 '양화진 문제 보고회'(2010.7.22)에서 발표한 '소위 "호칭 장로, 호칭 권사" 제도 및 "죽은 자를 위한 기도"론에 대하여(현요한)'에 대하여 현요한 교수님께 드리는 편지 .....	34
5) 예장통합 총회의 '양화진 외국인묘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성명)서 참여 요청(2011.7.21)'에 대하여	47
예장통합 총회장 김정서 목사님께 .....	48

<b>2부 예정통합이 발행한 &lt;양화진 100주년기념교회 사태에 관한 보고서(2010.9)&gt;의 왜곡과 진실</b>	<b>54</b>
1. 유니온교회가 쫓겨났다는 주장에 대하여	55
1) ‘유니온교회가 쫓겨났다’는 예정통합의 주장	55
2) ‘유니온교회가 쫓겨났다’는 주장의 진실	56
① 100주년기념교회의 설립 배경	56
② 유니온교회와의 갈등 발생 이유	57
③ 100주년기념교회 예배당 건축 무산 논란의 진상	59
④ 선교기념관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과정	61
2. 선교기념관의 건립 목적에 대하여	63
1) 선교기념관 건립 목적에 대한 예정통합의 주장	63
2) 선교기념관 건립의 목적과 과정의 진실	64
① 선교기념관 건립 과정	64
② 유니온교회의 선교기념관 ‘영구적’ 사용권 주장의 허구성	65
③ 선교기념관 건립의 ‘참 목적’	67
3. 양화진선교사묘원에서 벌어진 불법매장과 묘지예매 행위에 대하여	69
1) 양화진선교사묘원에서의 매장에 대한 예정통합의 주장	69
2) 양화진선교사묘원 불법매장의 진실	69
① 양화진선교사묘원의 법적 지위와 매장 및 묘지 관리에 대한 법 규정	69
② 불법매장 및 묘지 판매 실태	70
③ 100주년기념교회의 묘원 관리	72
4. 이른바 ‘이재철 목사 100만원 벌금형’ 주장에 대하여	73
1) ‘벌금형’에 대한 예정통합의 주장	73
2) 명예훼손 소송의 경과와 ‘벌금형’ 주장의 진실	74
① 명예훼손 소송의 경과	74
② 과연 ‘100만원 벌금형’은 있었나?	75

---

### 3부 <한국기독교공보>의 '양화진' 관련 보도의 왜곡과 진실 ..... 78

1. <한국기독교공보> 보도기사의 변화 과정 ..... 79	79
1) 1998~2005 : 양화진외국인묘지의 관리 실태를 고발한 기사가 대부분 ..... 79	79
2) 2005~2008 : 균형적 보도에서 왜곡과 갈등 확대로 ..... 82	82
3) 2009년 이후 : 예정통합의 본격적 개입과 왜곡보도의 심화 ..... 84	84
2. 2009년 이후 <한국기독교공보>의 왜곡과 진실 ..... 86	86
1) <한국기독교공보>의 보도기사를 통한 사실 왜곡 ..... 86	86
① “경건한 마음으로 주차에 임해주세요?”(2009.2.24. 기사) ..... 86	86
② “양화진 목회자들 뿔났다”(2009.4.7. 기사) ..... 89	89
③ “양화진 문제 왜곡 말라”(2009.4.23. 사설) ..... 92	92
④ “양화진 문제, ‘묘역 사용권’ 요구에서 시작(?)”(2009.4.24. 기사) ..... 94	94
⑤ “정관 개정과 상관없이 조사할 것”(2009.6.17. 기사) ..... 96	96
이재철목사, 노회 탈퇴서 제출(2009.6.30. 기사)	
“너그럽게”, 그러나 “원칙대로”(2009.10.13. 기사)	
⑥ “기독교 유적지 법적으로 보호하자”(2010.2.18. 기사) ..... 99	99
⑦ “본질은 뒤로, 100주년교회 둘러싼 논쟁으로 소모전”(2010.8.18. 기사) ..... 102	102
⑧ “양화진 선교기념관, 목적 논란 ‘종지부’”(2010.8.16. 기사) ..... 104	104
“양화진 선교기념관, 유니온교회 위해 세워졌다”(2010.8.31. 기사)	
2) <한국기독교공보>의 기고문을 이용한 왜곡 확대 ..... 108	108
① 우영수 목사, ‘백주년사업위, 백주년의 뒷에서 벗어나라’(2009.4.8) ..... 108	108
② 이만규 목사, ‘양화진은 한국교회의 신앙적 유산, 성지’(2009.5.5) ..... 108	108
③ 임희국 교수, ‘기독교 유적지 법적 보호해야 할 때(2010.2.27)’ ..... 108	108
<부록>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진실을 보여주는 자료들 ..... 114	114

---

## 『양화진의 진실Ⅲ』을 내며

---

지난 6월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경성구미인묘지회가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사건번호 2010가합4325) 1심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가 부적법하다 판단하여 각하했거나 이유가 없어 기각한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주장(청구취지)과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양화진이 명의신탁되었다는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경성구미인묘지회가 명의신탁의 증거로 제출한 증거 및 증인의 증언을 “신뜻 믿기 어렵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증여를 원인으로 한 1985년 5월 8일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에 의해 획득한 100주년협회의 양화진 소유권 역시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기 때문에 명의신탁되었다는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성구미인묘지회 임시위원회가 양화진의 증여 계약 조건을 1985년 결의를 통해, 양화진을 외국인 묘지로 영구히 관리·보존하고, 선교기념관을 건립하여 이 묘역에 잠든 이들의 공적을 기리며, 묘역의 장래 사업계획에 대해 협의한다고 못박았고, 100주년협회는 기업들로부터 비용을 후원받아 선교기념관을 건축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계속 소유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양화진의 명의신탁 주장은 기각당한 것입니다. 선교기념관 신축 이후부터 2005년까지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선교기념관 사용에 따른 유지비용을 부담했고, 2005년 4월에 100주년협회가 100주년기념교회의 임시예배장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 서면을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명의신탁된 것이라 인정하

---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양화진은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자유롭게 이용·관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가 아니므로 이 또한 기각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양화진의 증여가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양화진을 자유롭게 이용·관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라는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주장도 기각하였습니다. 1985년 당시 작성된 증여계약서에는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자유롭게 이용·관리하는 것이 증여의 조건이라”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내부적 결의에 불과한 1985년 임시위원회의 결의 내용조차도 양화진을 묘지로 영구관리·보존하고, 선교기념관을 건립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라는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주장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양화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나 인도를 구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양화진을 대한민국에 인도하라는 경성구미인묘지회 주장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는 것입니다.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양화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허가를 구하였을 때 당시의 내무부 장관이 이를 거절하면서 ‘단지 양화진의 관리권을 경성구미인묘지회 및 묘지연고자들에게 인정할 방침임을 고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경성구미인묘지회와 대한민국 사이에 대부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경성구미인묘지회가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100주년협의회에 양화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나 양화진의 인도를 구할 자격이 없으므로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양화진이 대한민국의 소유라는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주장은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

---

이로써 2008년 12월 민사소송에 의한 조정이 시작된 이후 2년 6개월 만에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소유권 및 관리권, 선교기념관 사용권’ 등에 대한 법원이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 마감기일 직전인 6월 29일,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한국기독교공보>가 2011년 8월 13일자 ‘본질은 유니온교회의 회복’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성구미인묘지회에서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지만 승소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도할 정도로 스스로 무리한 소송인 줄 알면서도 분쟁 상태를 유지하려는 저들의 의도는 결코 순수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둘러싼 갈등의 당사자는 100주년협의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입니다. 그런데 예정통합이 이 갈등에 깊숙이 개입하여 갈등의 양상을 복잡하고 더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말로는 한국 개신교 성지의 보존과 성지화, 그리고 선교사들의 아름다운 믿음과 헌신을 기리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정통합의 실제행동은 그와 너무도 달랐습니다. 오히려 한국 개신교 최대 교단이라는 힘을 이용하여 100여년 만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양화진선교사묘원을 다시금 혼돈과 무질서의 늪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소유권 및 관리권, 사용권 등에 대해 행정적, 법적 판단이 있었지만 예정통합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적 행위를 일삼는 단체를 비호하며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비난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정통합



---

에 속하지 않은 100주년기념교회에게 소명지를 떠나라거나 이름을 바꾸라는 등의 무례한 요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주년협의회 이사진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니다. 예장통합은 이미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에 의해 양화진의 성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장 명의의 성명서와 <한국기독교공보>의 기사 등을 통해 '양화진을 한국 개신교 성지로 가꾸어 한국교회 성도들의 역사와 믿음의 교육 현장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외국인묘지로 전락시켰던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선교사들과의 역사적 연속성을 잃어버린 유니온교회에게 이곳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예장통합의 주장은,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언더우드 4세 피터 언더우드(원한석)가 인터뷰와 재판에서 계속해서 주장해 온 2005년 이전의 무질서했던 과거체제로 되돌려 놓으라는 일방적 주장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일 뿐입니다.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용인 한국순교자기념관을 한국 개신교 최고의 성지로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줌으로써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 선교사들과 순교자들의 헌신을 기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으로 알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지난 수년 동안 양화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슬픈 현실조차 하나님께서 양화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

세우시기 위해 허락하신 일이라 믿으며 ‘양화진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0년 8월, 『양화진의 진실 I -예장통합 서울강북지역 노회협의회의 <양화진 100주년기념교회 사태에 대한 보고서> 진상규명』과, 2011년 4월, 『양화진의 진실 II -양화진외국인선교사모원에 관한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주장과 진실』을 펴낸데 이어 이번에 『양화진의 진실 III -양화진외국인선교사모원에 관한 예장통합과 <한국기독교공보>의 주장과 진실』을 펴냅니다.

『양화진의 진실 III』은 1) 2009년 9월 이후 제기된 예장통합의 왜곡된 주장과 진실, 2) 2010년 9월 예장통합이 발행한 <양화진 100주년기념교회 사태에 관한 보고서>의 왜곡과 진실이라는 항목으로 예장통합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한편 진실을 밝혔으며, 3) <한국기독교공보>의 ‘양화진’ 관련 보도의 왜곡과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예장통합의 기관지로서 양화진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확산 전파하는데 활용된 <한국기독교공보>가 왜곡 보도한 사례를 밝히고 기사에서 감춘 진실을 밝혔습니다. 특히 2009년 4월부터 10월 사이에 벌어진 예장통합 서울서노회의 이재철 목사에 대한 고발과 재판 과정과 그 과정에 저질러진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밝혔습니다. 책의 후반부에는 앞서 발행한 두 권과 마찬가지로 양화진의 진실을 밝혀줄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양화진의 진실』은 양화진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이를 확산시키고 있는 기관들의 주장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저들의 주장을 소재별로 살피고 주장의 그릇됨을 확인시켜 줄 증거를 제시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동안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예장통합, 서울

---

서노회 등은 각 기관의 입장과 시기에 따라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는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따라서 각 권별로 첨부된 자료와 내용은 불가피하게 중복되는 것이 발생합니다. 이는 양화진의 진실을 보다 확실하게 밝히기 위한 것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양화진을 둘러싼 갈등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법정에서의 다툼 역시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의 유불리와 유무익을 벗어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만들기 위해 더욱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역사적 진실을 기록으로 남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1. 9.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

# 1 2009년 9월 이후 제기된 예장통합의 왜곡된 주장과 진실



2009년 9월 열린 제94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하 예장통합) 총회는 역사위원회 산하에 구성되었던 양화진문제대책분과를 총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확대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서울강북지역노회협의회가 발행한 <양화진 100주년기념교회 사태에 관한 보고서>를 모든 총대들에게 배포했다. 이후 예장통합 서울서노회는 이재철 목사 면직재판을 강행하였고, 예장통합 총회는 관련 교회나 기관에서의 이재철 목사의 설교 및 방송 출연 등을 저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뿐만 아니라 100주년기념교회에서 사역하는 예장통합 소속 부교역자들에게도 유무형의 압력을 가했다. 특히 서울서노회는 이재철 목사에 대한 면직을 강행하였고, 예장통합 총회는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교계에 퍼뜨려 양화진 갈등의 본질을 왜곡함으로써 교계로부터 고립시키는 일에 기관지인 <한국기독교공보>를 적극 활용했다. 『양화진의 진실 III』의 첫 과제는 예장통합이 2009년 9월 94차 총회 이후 발표한 각종 성명과 문건을 통해 심화시킨 왜곡과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이다.

## 1. 이재철 목사에 대한 서울서노회의 재판과 예장통합의 목회 방해 행위에 대하여

예장통합 서울서노회는 2009년 10월 10일 노회 재판을 통하여 이재철 목사를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를 이유로 ‘면직책별’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이하 100주년기념교회)는 보도자료<sup>1)</sup>를 통해 ‘서노회 재판국의 면직책별은 100주년기념교회와는 무관한 결정’이며,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이하 100주년협의회)가 설립하여 독자적인 정관으로 운영되는 100주년기념교회는 예장통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밝혔다.

서울서노회는 이재철 목사를 양화진에서 축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했다. 서울서노회는 이재철 목사를 통합 헌법 위반 뿐만 아니라 이단협의를 덧씌워 서울서노회 재판국에 고발했다. 결과적으로 이단시비는 교계는 물론 사회적인 반발에 부딪쳐 서울서노회 스스로 취소하였으나 장로 호칭제를 빌미로 한 헌법 위반 건은 부당한 재판을 통해 면직책별을 강행했다.

사실 서울서노회가 이재철 목사를 면직책별한 이유로 제기한 ‘장로 권사 호칭제’는 제정 이후 한국교회의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으로 주목을 받은 개혁적 제도였다. 2006년 봄 100주년협의회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이 정관은, 당시 이사회 회의 자료에 주요 내용을 인쇄하여 이사들에게 배포했으며, 이재철 목사가 100주년기념교회를 대표하여 정관의 내용과 제정 취지 등을 설명했다.<sup>2)</sup> 이날 회의에는 4명의 예장통합 소속 이사가 참석했으나 이 제도가 소속 교단 헌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한 이사는 없었으며, 오히려 이사회에 참석한 예장통합 소속의 한 이사는 ‘장로 호칭제’에 대해 ‘매우 좋은 방안이니 잘 운영해 보라’는 격려까지 했다.<sup>3)</sup> 이후에도 3년여 동안 ‘장로 호칭제’는 예장통합은 물론 어느 교단

1) 100주년기념교회, ‘예장통합 서울서노회의 이재철 담임목사 면직판결에 대한 입장표명’ 보도자료 (2009.10.15)

2) 100주년협의회 2006년도 제22회 정기이사회 회의자료 13쪽(2006.4.4). 이날 회의에는 15명의 이사 중 강원룡(기장), 정진경(성결교), 강병훈(감리교), 한명국(침례교), 최창근(통합), 김해철(루터교), 이종운(통합), 정이숙(통합), 김고광(감리교) 이사가 직접 출석하였고, 김삼환(통합) 이사를 대리하여 김상학 목사가 참석했다. 이철신(통합), 이성희(통합), 정현구(고신), 하용조(통합) 이사는 위임하였으며, 길자연(합동) 이사는 결석했다. 즉, 예장통합교단 소속 7명의 이사 중에는 4명이 출석(1명 대리출석)했고 3명이 위임했다.

3) 이재철 목사 증언에 의함.

으로부터도 문제제기를 받은 바 없었다. 그만큼 예장통합, 서울서노회 측의 장로 호칭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뜬금 없는 일이었으며 기회주의적인 행위였다.

## 1) 서울서노회의 이재철 목사 재판 과정과 절차적 문제들

### ① 서울서노회의 이재철 목사 재판 과정

- ① 2009년 4월 29일 서노회, 이재철 목사 기소 의결. 기소위원회 구성.
- ② 2009년 6월 16일 서울서노회 임원회, 이재철 목사 고발장 작성  
(죄과명: 총회헌법 2편 6장 41조 '장로의 선택', 8장 54조 '집사, 권사의 선택' 위반)
- ③ 2009년 6월 17일 서울서노회 기소위원회, 서울서노회 임원회 고발장 접수(한국기독교공보 기사)
- ④ 2009년 6월 24일 기소위원회, 고발장 접수 확인(고발장에 기소위원장 수기 기록)
- ⑤ 2009년 6월 26일 이재철 목사, 예장통합교단 탈퇴서 발송(6월29일 접수)
- ⑥ 2009년 6월 30일 현재 서울서노회 차광호 노회장, 이재철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아직 보내지 않은 상태임을 언급(한국기독교공보 기사)
- ⑦ 2009년 7월 3일 서울서노회 기소위원회, 이재철 목사에게 총회헌법 위반 등에 대한 고발장 사본 및 소환장 발송(7월4일 접수)
- ⑧ 2009년 7월 16일 이재철 목사, 서울서노회 기소위원회 출석, 탈퇴 이유 등 설명
- ⑨ 2009년 8월 7일 서울서노회 기소위원회, 이재철 목사를 재판국에 기소
- ⑩ 2009년 8월 11일 서울서노회 임원회, 이재철 목사 2차 고발장 작성  
(죄과명: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 ⑪ 2009년 8월 17일 서울서노회 기소위원회, 이재철 목사에게 이단행위에 대한 고발장 사본 및 소환장(출석요구서) 발송
- ⑫ 2009년 8월 28일 기소위원회, 이단행위에 대한 피고인 조사(이재철 목사 불출석)
- ⑬ 2009년 9월 1일 기소위원회, 이재철 목사에게 이단행위 조사를 위한 2차 출석요구서 발송
- ⑭ 2009년 9월 1일 서울서노회 재판국, 총회헌법 등 위반에 대한 재판 소환장 발부
- ⑮ 2009년 9월 10일 기소위원회, 이단행위에 대한 피고인 조사(이재철 목사 불출석)
- ⑯ 2009년 9월 16일 서울서노회 재판국, 총회헌법 등 위반에 대한 재판(이재철 목사 불출석)

- ⑰ 2009년 9월 28일 서울서노회 재판국, 총회헌법 등 위반에 대한 재판 2차 소환장 발부
- ⑱ 2009년 10월 8일 서울서노회 재판국, 총회헌법 등 위반에 대한 재판(이재철 목사 불출석), 변론 종결
- ⑳ 2009년 10월 10일 서울서노회 재판국, 총회헌법 등 위반에 대한 판결 선고(면직 책별)

이상의 과정에서 서울서노회는 총회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징규정 중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을 위반했다. 고발 기간 및 시기의 문제, 기소시기와 기소장 부분 송달 문제, 그리고 탈퇴한 항존직원의 처리 문제가 그것이다. 교단의 헌법을 존중하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이 헌법 규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기소하고 재판한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만일 이러한 행위가 헌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면 기소위원회나 재판관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헌법 규정을 알면서도 이를 강행한 것이라면 중대한 헌법 위반의 고의범으로 오히려 그들이 기소되어야 할 것이다.

## ② 예정통합 서울서노회 재판의 절차적 문제들

### 고발 기간과 시기의 불법성

예정통합 헌법 제4장 제49조는 ‘고소 기간’에 대하여, ‘고소는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2조는 ‘고발 기간’에 대해 ‘제49조 고소기간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서울서노회는 이재철 목사에게 대하여 두 차례 고발을 하였다. 처음에는 100주년기념교회 정관이 정한 ‘호칭 장로 및 권사제’를 ‘중대한 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이재철 목사의 저서 『성숙자반』의 한 구절을 문제 삼아 고발했다. 그런데 100주년기념교회가 정관을 제정한 시기는 2005년 12월로서 서울서노회가 고발했다고 주장하는 2009년 6월 16일보다 무려 3년 6개월 전의 일이므로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성숙자반』 초판을 출간한 것도 2007년 6월 27일로서 서울서노회가 고발한 2009년 8월 11일보다 2년 2개월 전의 일이므로 역시 고발 대상이 될 수 없다. 만일 서울서노회 측이 이러한 정관 내용이나 책자의 내용을 고발 당시에는 알았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는 100주년기념교회가 정관을 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성숙자반』은 이미 출간 전부터 공개적으로 설교되었을 뿐 아니라 수만 권이 팔린 베스

트셀러였다는 사실, 그리고 이 책이 예장통합을 비롯한 많은 교회에서 교인들의 신앙교육을 위한 교재로 채택되어 왔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이재철 목사를 실제로 고발한 시점(고발장을 기소위원회에 접수한 시점)도 이후 전개과정의 적법성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예장통합 헌법 제3편(권징) 54조는 ‘차기 회장(노회장)이 고소(고발)장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위원회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서노회가 행한 두 차례의 고발 중 ‘총회헌법 등 위반’의 경우, 언제 이첩이 이루어졌는지가 애매하다. 서울서노회 기소위원회는 이재철 목사에게 2009년 7월 3일자로 고발장 사본(서노 제80-41호)과 출석 요구서를 보내 이재철 목사가 노회장 차광호 목사 등 9명으로부터 고발당했음을 알리고 7월 16일 오전 11시에 기소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사건번호 기소-2009-01). 이날 첨부되어 온 고발장은 6월 16일 작성된 것으로 ‘상기 고발장을 확인 접수함. 2009. 6.24 기소위원장 장찬호’라는 문구가 수기(手記)되어 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문점이 있다. 그것은, 6월 16일 작성된 고발장이 언제 정식으로 기소위원회에 접수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당시 이재철 목사는, 초교파교회인 100주년기념교회를 목회하는 자신에 대한 예장통합 서울서노회의 부당한 처사가 예장통합에 소속된 목사라는 이유에서 비롯되었기에, 스스로 예장통합을 떠나는 것이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지키고 자신이 오랫동안 몸담아 온 예장통합을 위하는 길이라 판단하고, 6월 26일 서울서노회에 내용증명으로 교단탈퇴서를 보냈으며, 서울서노회는 이 탈퇴서를 6월 29일 접수했다. 이때까지 서울서노회는 고발 사실을 피고발자인 이재철 목사에게 통지하지 않은 상태였다.(고발통지문은 탈퇴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 후인 7월 3일에야 발송되었다.) 사퇴서를 접수한 서울서노회는 ‘재판에 계류 중이지 않은 노회 항존 직원의 탈퇴의 경우 권고사직된 것으로 본다’는 헌법시행규정 제3장 권징 제88조 ‘재판계류와 교단탈퇴’ 조항과 헌법 3장 54조의 ‘고소 및 고발과 조치 조항’을 의식해 고발장을 6월 16일자로 소급 작성하고 6월 24일자로 기소위원회에 접수시킨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이 추정하는 이유는 <한국기독교공보> 인터넷판에 2009년 6월 17일에 올라간 기사와 30일자 기사 내용, 그리고 고발장에 수기로 쓰여 있는 내용 사이의 괴리 때문이다. 고발장에는 기소위원장인 장찬호 목사 명의로 ‘6월 24일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내용이 수기되어 있으나, 2009년 6월 30일자로 작성된 ‘이재철 목사, 노회 탈퇴서 제출’이라는 <한국기독교공보> 기사에 의하면, 차광호 목사는 “아직 고발장만 보내지 않았을 뿐 이미 노회에서 기소를 결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에 6월 17일 오후 4시 10분에 올려진 <한국기독교공보>



인터넷판 기사에는 ‘서울서노회 기소위원회는 지난 17일 모임을 갖고 임원회에서 ‘이첩’된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하는 한편...’이라고 쓰여 있다. 즉, 6월 17일 오후 4시 이전에 이미 고발장이 기소위원회로 이첩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6월 17일 이첩’(6월 17일자 기사)과 ‘6월 24일 접수’(고발장), ‘6월 30일 현재 고발장 미발송(6월 30일자 기사)’ 중 어느 것이 진실인가.<sup>4)</sup> 이외에도 6월 17일자 <한국기독교공보> 기사는 ‘오는 24일 피고발인인 이재철 목사에게 고발장과 함께 출석 요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으나, 실제 고발장이 발송된 날은 이재철 목사의 사퇴서를 접수한 이후인 7월 3일이었다.

이러한 의문을 종합해보면, 서울서노회는 이재철 목사의 탈퇴서를 접수한 후 예상하지 못한 상황전개에 당황한 나머지 규정에 맞게 처리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고발장과 <한국기독교공보> 6월 17일자 기사를 소급해 작성한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문’에 이르게 된다. 서울서노회는 이러한 의문에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 기소시기와 기소장 부분 송달 여부 문제

예장 총회 헌법은, 3편 권징 제4장 제1심 소송절차 제3절 재판 제67조 ‘기소장 부분의 송달’ 규정에서 ‘재판국은 기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기소장의 부분을 제1회 재판기일 전 10일까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철 목사는 서울서노회 재판국으로부터 ‘기소장 부분’을 송달 받지 못했다. 단지 2009년 9월 1일 발송한 ‘서울서노회 재판국-2009-01’ 재판에 대한 소환장을 받았을 뿐이다. 이전에도 고발장과 소환장, 출석요구서 등은 받은 바 있지만 ‘기소장’은 받지 못했다. 때문에 이후 진행된 재판절차는 모두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또 서울서노회가 발송한 문서와 <한국기독교공보> 기사를 살펴보아도 서울서노회 기소위원회가 이재철 목사를 언제 기소하였는지 알 수 없다. 단지, 서울서노회 등 강북지역노회협의회가 발행한 <양화진 100주기념교회

---

4) <한국기독교공보> 6월 17일자 기사는 2010년 9월 24일 현재 기독교공보 홈페이지 상에서 검색되지 않고 있으며, 2009년 6월20일자 PDF판에도 이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황은 이 기사가 이재철 목사가 탈퇴서를 제출한 이후에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또 이 기사는 2009년 6월 17일 16시 10분에 인터넷판에 올라왔는데, 기사와 사진 설명에서는 ‘지난 17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점 역시 기사가 쓰인 시점이 6월 17일 이후일 것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또 6월 30일자 기사에는 ‘고발장을 이첩’했다는 문장과 ‘아직 발송하지 않았다’는 문장이 동시에 쓰여 있어 무엇이 사실인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사태에 관한 보고서(2009.9)의 개요 설명에 ‘2009년 8월7일 기소했다’는 기록이 있을 뿐 판결문에도 언제 기소하였는지는 누락되어 있다.

### 기소 이전에 탈퇴한 항존직원에 대한 재판권 문제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3장 권징 제88조 ‘재판계류와 교단탈퇴’ 조항에는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의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교회, 단체 포함)가 총회나 노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항존직원은 헌법 권징 제5조 제1항 제7호 면직책별로 판결하며, 재판에 계류중이 아닌 항존직원은 권고 사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또 총회헌법 제3장 제27조 3항은 ‘권징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은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를 당하여 죄과를 범한 혐의로 기소위원회에 의하여 재판국에 기소된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재판에 계류중인 자’는 ‘기소된 자’를 말하는 것이다. 서울서노회는 이재철 목사를 2009년 8월 7일 기소했다고 밝혔고<sup>5)</sup>, 판결문에서도 ‘피고인은 고발과 기소 과정에서 서울서노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였다.’고 되어 있다. 고발과 기소 시점에 관한 서울서노회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이재철 목사는 6월 24일 고발되었고 조사를 위한 1차 소환통지도 되기 전인 6월 26일 탈퇴서를 보냈으므로(6월 29일 접수) ‘재판에 계류는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은 시점’에 탈퇴하였다. 때문에 헌법시행규정에 따라 ‘권고사직된 것’으로 보아야 옳다. 따라서 서울서노회 재판국의 재판은 이미 탈퇴한 자를 재판한 것으로 재판관할권이 없는 재판인 동시에 자신들의 규정조차 위반한 원인무효의 재판이다.

특히 서울서노회 기소위원장인 장찬호 목사는 8월 28일 열린 이단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한 기소위원회 모임에서 기자들에게 “기소 중에 탈퇴하면 면직(권고사직)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100주년기념교회가 양화진에서 손을 뗄 때까지 (이재철 목사를) 면직할 수 없다.”<sup>6)</sup>고 말하는 등 서울서노회가 이재철 목사를 고발한 속내를 드러낸 바 있다. 이처럼 서울서노회는 조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절차를 통해 실제적 진실을 가린다는 재판의 목적에 합당한 절차를 거치기는커녕 애초 정해놓은 목적 달성을 향해 불법을 서슴지 않았다.

5) 예장통합 서울강북지역노회협의회, <양화진100주년기념교회 사태에 관한 보고서>, 2009, p.3.

6) 뉴스엔조이, “이재철 목사를 ‘이단’으로 다루기에는 ‘준비 미흡’”(2009.8.29) 기사.

### ③ 이재철 목사에 대한 이른바 ‘이단시비’의 부당성

서울서노회는 2009년 8월 11일, ‘헌법위반 행위’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재철 목사를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 동조하고,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또 다시 고발했다. 이 고발은 이재철 목사가 2007년 6월 출간한 저서 『성숙자반』 ‘사도신경’ 항목의 한 대목을 문제 삼은 것이다. 서울서노회 기소위원회는 8월 17일, 고발장 접수와 8월 28일 소환한다는 사실을 통지했으나 이재철 목사는 8월 28일의 소환에 불응했다. 9월 1일 2차 소환장(소환일 9월 10일)을 보냈으나, 이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후 이재철 목사의 이단행위 등에 대한 고발 건은 유야무야되었다. 이렇게 된 데는 책의 내용이 이단으로 재판하기에는 무리한 것이었음은 물론 절차상 불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건 역시 헌법이 정한 고발 기간 2년을 넘겨서 고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이단으로 기소하려면 5인 이상의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교수에게 의견서를 보내고 이중 과반 이상으로부터 ‘이단 인정 의견서’를 받아야 하는데<sup>7)</sup> 그렇게 못했다. 그래서 서울서노회는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와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를 물으려했던 8월 28일 기소위원회에서 이단행위를 삭제하고 ‘타인을 범죄케 한 행위’만 조사하는 것으로 변경<sup>8)</sup>해야 했다. 서울서노회는 목회자에게는 죽음보다 더 가혹한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철저한 내용 검증과 준비 없이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고발을 남발했다가 교계로부터의 비난이 일자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었던 것이다.(이단 시비의 신학적 문제와 부당성에 대해서는 34~47쪽, ‘4) 소위 “호칭 장로, 호칭 권사” 제도 및 “죽은 자를 위한 기도”론에 대하여(2010. 7)에 대하여’ 참조)

## 2) 예장통합의 이재철 목사 목회에 대한 방해

예장통합 서울서노회는 이재철 목사 면직판결 직후 <한국기독교공보>를 비롯한 4개 교계

---

7) 예장통합 헌법시행규칙 63조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63조 [이단적 행위와 적극적 동조행위의 기소 제한] 헌법 권징 제59조에 의하여 기소위원회가 헌법 권징 제3조 제4항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로 기소제기를 할 때에는 기소위원회가 총회 직영신학대학교 해당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서 중 과반수의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 동조행위에 대한 인정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기소위원회가 기소할 수 있고 그 외의 기소수행 및 재판절차는 헌법과 이 규정에 따른다.”

8) 뉴스앤조이, “이재철 목사를 ‘이단’으로 다루기에는 ‘준비 미흡’”(2009. 8. 29) 기사.

신문에 면직공고를 냈으며, 예정통합 총회는 총회장 명의로 각 교단 총회장에게 공문<sup>9)</sup>을 보내 ‘이재철 씨 면직을 통보’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이나 파렴치범죄가 아닌 헌법조항 위반을 이유로 목사를 면직책벌한 사례<sup>10)</sup>는 찾아보기도 어렵거니와, 소속 목회자 한 명의 면직 사실을 총회장 명의로 공문으로 국내 주요 교단에 통보한 사례는 매우 드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예정통합 총회는 면직 판결 이후 이재철 목사의 설교, 강연, 방송 등 목회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예정합동 사랑의교회는 1982년부터 매년 ‘대각성전도집회-새생명축제’를 열고 있다. 2009년에도 이 행사는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다. 당시 사랑의교회는 행사 개최 수개월 전에 이 행사의 주 강사 중 한 사람으로 이재철 목사를 초청했으며,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 주보와 영상뉴스로 집회를 홍보했다. 그런데 갑자기 주 강사를 교체하였다. 예정통합 총회의 방해에 의한 것이리라는 교계 안팎의 추측은 틀리지 않았다. 예정통합 총회 스스로 공문을 통해 “사랑의교회 대각성 집회의 경우도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던 이재철 씨의 집회였지만 저희 총회 이후 교단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취소”<sup>11)</sup>했다고 공개하였기 때문이다.

예정통합 총회는 2009년 11월 9일, 두바이한인교회에도 공문(예정총 94-152호)을 보냈다. ‘이재철 씨(목사)는 면직되어 본 교단 소속이 아니므로 통합교단 소속 교회의 예배 및 예식에 설교나 강사로 순서를 담당하는 것은 교단의 질서를 혼란케 하는 것이므로 두바이한인교회 30주년 특별예배에 이재철 목사를 순서 담당자(강사)로 초청하는 것을 재고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두바이한인교회는 당 교회가 초교파교회이며 오래전부터 준비한 행사임을 설명하며 예정통합 총회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자 예정통합은 세계선교부장 명의로 공문(예정총 94-27호)을 다시 보내 사랑의교회에서 이재철 목사 초청을 취소한 사례를 예

아이굿뉴스, “이재철 목사 이단적 행위 ‘조건 미비’로 삭제”(2009.9.1) 기사

9) 예정통합 총회, 이재철 씨 면직 통보(예정총 제94-293:2010.1.8)

10) 2000년 이후 예정통합에서 목회자를 면직한 사례를 교단기관지인 <한국기독교공보> 기사를 통해 검색해 본 결과 3건이 검색되었다. 2003. 4. 1. 예정 통합 평양노회 문00목사, 2004. 10. 7. 예정 서울강동노회 최00, 최00, 나00, 박00, 윤00 목사, 2005. 4.28. 예정 서울동남노회 이00 목사와 부목사 8명을 면직한 것이 그 예이다. 이중 문00 목사는 성도와의 성추문 등 부도덕한 행위로, 이00 목사 등은 당회 회집기피 등 14개 항목의 위반으로 면직되었고, 최00 목사 등은 다락방선교회 이단 혐의로 면직되었다.

11) 예정통합 총회, 두바이한인교회 30주년 예배 시 강사에 관한 건(2009.11.19/예정총 94-27호)

로 들면서 ‘집회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총회의 원칙과 요청을 반영하지 않은 담임교역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통지했다. 이는 두바이한인교회의 담임목사가 예장통합 소속임을 이유로 특정 교회의 선교활동을 방해하는 협박과 다름 아니다. 그러나 두바이한인교회는 이재철 목사 초청 특별예배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외에도 예장통합 측은 어머니기도회 모임에서 2010년 3월 1일, 3.1절 구국기도회를 양화진선교기념관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이재철 목사를 강사로 초빙했으나 주최 측에 압력을 가해 이를 강제로 취소시켰으며, 같은 해 4월에는 이재철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양화진선교사모원에서 개최하려던 세계스포츠선교회의 컨퍼런스에 대해서도 장소와 강사를 변경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또 2010년 6월에는 통합 소속 온누리교회가 운영하는 방송인 CGN-TV 이사장에게 총회장 명의의 공문(예장총 94-667)을 보내 ‘이재철 씨는 본 교단 목사직에서 면직되었으므로 본 교단 소속인 귀 교회가 운영하는 방송에 적절치 않다’며 이재철 목사의 말씀강해 방송의 중지를 요청했으나 무산되었고, 7월 22일로 예정되었던 미래목회포럼 강연 요청 역시 취소토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재철 목사의 정상적인 목회 및 선교활동을 방해했다.<sup>12)</sup> 이러한 목회 방해 행위를 자행한 예장통합의 근거는 ‘이재철 목사는 통합교단 소속 목사가 아니라는 점’ 뿐이었다.

이 같은 목회 활동 방해 행위는 이재철 목사에게만 자행된 것이 아니다. 예장통합 총회는 100주년기념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예장통합 소속 목사와 전도사들에게 ‘면직된 이재철 씨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 사역함이 적절치 않음으로 주의할 것’을 촉구하기로 결의하고 공문(예장총 제 94-666호)을 서울서노회에 보냈으며, 서울서노회 역시 공문으로 교역자 개인에게 주의 공문(서-82-56)을 발송했다. 이러한 행위는 100주년기념교회에서 한국교회의 일치를 위해 다양한 교단 출신 교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젊은 통합 소속 목회자들을 이재철 목사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치졸함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

12) 크리스천투데이, “이재철 목사 초빙하지 말라” 공문 파문(2010.7.15) 기사

## 2. 2009년 이후 예장통합의 주장과 진실

### 1) 예장통합 총회의 '양화진 외국인묘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 요청(2009.12.30)'에 대하여

예장통합 총회는 2009년 12월 30일자로 총회장 및 양화진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장 명의의 공문(양화진 외국인묘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 요청)을 100주년협의회 이사장 앞으로 보냈다. 이 공문은 그해 9월 열린 예장통합 94차 총회에서 양화진문제대책위원회를 총회 산하 특위로 확대 구성하기로 결의한 이후 처음 공개적으로 예장통합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 ① '공동 유산' '공동 관리' 주장의 허구성에 대하여

...협의회가 한국교회 선교역사의 공동유산이자 공동의 책임인 양화진외국인묘지의 관리를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라는 어느 한 특정교회에 '전권위임'한 것은 협의회 결성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고, 귀 협의회가 이를 시정하여 한국교회가 공동으로 양화진외국인묘지를 관리토록 권한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양화진외국인묘지의 관리는 한국교회 전체가 연합하여 공동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우선 본 교단이 행정적, 재정적 기초를 마련하여 책임 있게 관리를 준비할 것...

100주년협의회가 양화진선교사묘원의 관리를 100주년기념교회라는 '특정교회'에 '전권 위임'했다는 주장은 2009년 5월 9일 총회장 명의의 '작금의 유니온교회와 양화진외국인묘지 문제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이미 주장한 내용이다. 이 왜곡된 주장의 진실에 대해서는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함께 발행한 『양화진의 진실 I』 31쪽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그러나 예장통합교단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 다시 설명한다.

양화진선교사묘원이 한국교회 공동의 유산이기에 아름답게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교회로부터 외면당해 왔다. 1986년 이후 양화진선교사묘원을 관리해오던 유니온교회는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능력과 도덕성을 상실했었고, 당시의 양화진선교사묘원은 외국인공동묘지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100주년협의회는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용인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의 관리 협조를 한국교회에 호소하였다. 그러나 양화진선교

사모원은 한국기독교 전체가 책임져야 할 연합사업이기 때문에 특정교단에 속한 교회가 맡을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제안은 거절당했다.<sup>13)</sup> 100주년협의회가 양화진선교사모원 등의 관리협조를 요청했던 4개 교회 중 3개 교회는 예장통합 소속 교회였다. 이런 과정의 결과로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선교사모원과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의 관리와 보존’이라는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지닌 초교파적 독립교회로 창립되었다. 따라서 ‘양화진의 관리책임을 ‘어느 한 특정 교회에 전권위임’했다는 주장은 이러한 100주년기념교회의 창립배경을 염두에 두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예장통합이 여러 차례 문서를 통해 주장한 양화진선교사모원의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하는 공동관리’ 역시 부당하고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20개 교단과 26개 기독교인이 연합하여 창립한 초교파 기구인 100주년협의회는 증여받은 양화진선교사모원과 용인의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 등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참여 교단의 합의를 거쳐 재단법인으로 재발족하였다. 따라서 100주년협의회가 소유한 유산은 바로 한국교회 공동의 유산이며, 이 100주년협의회가 관리하는 것은 바로 한국교회 전체가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100주년협의회는 100주년기념교회와 협약서<sup>14)</sup>를 체결하고 100주년협의회가 양화진선교사모원과 용인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을 직접 관리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100주년협의회는 ‘어느 한 특정교회’에 양화진선교사모원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공동체가 되어 직접 관리하는 것이다. 법체계상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인체 형식을 빌었으므로 형식적 위임이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특정 교단’인 예장통합만이 유독 양화진선교사모원을 공동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교회의 공동관리를 위해 예장통합교단이 우선 행정적, 재정적 기초를 마련’ 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양화진은 ‘공동유산’이므로 한국교회가 ‘공동관리’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뒤엎는 주장이다. 황폐했던 양화진선교사모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기독교인은 물론 일반인들이 애용하는 명소가 되자 공동유산과 공동관리를 주장하며 공동관리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기초를 마련하겠다는 예장통합의 주장은 한마디로 터무니없다.

---

13) 100주년협의회, 양화진 문제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2009.4.23)

14)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 및 순교자기념관 운영관리 협약서(2006.10.14)

## ② 100주년기념교회의 이전과 명칭 변경 요구에 대하여

...(예장통합은) 이재철 씨와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는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결성의 기본정신을 존중하여 양화진 외국인묘지 관리권한을 한국교회에 조속히 반환하고, 교회 장소를 묘원을 떠나 이전할 것과 교회명칭 변경을 요청...

100주년협의회의 기본정신은 1987년 출간한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총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창립 취지는 ‘지난 100년 동안 이루어 놓은 믿음의 유산들을 정리하고 더욱 바르게 전승시키기 위해 모든 개신교 교단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기념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함’<sup>15)</sup>이었다. 사업의 방향과 목표는 ‘신앙 선배들의 업적을 기리고’, ‘교회분열의 역사를 참회하고 하나의 교회를 지향하며’, ‘선교 2세기를 향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세계선교에 이바지하며’,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sup>16)</sup>이었다. 또 선교기념관의 건립 취지와 정신은 선교사들의 “과거 업적과 공로를 기념하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선교의 전선을 보다 더 넓혀나가기 위”하여 이 건물을 건축했다고 한 강원룡 목사의 선교기념관 헌당 예배 설교에 잘 나타나 있다.<sup>17)</sup>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선교기념관은 단순히 선교사를 추모하는 죽은 묘지가 아니다. 선교 200년을 내다보고 한국 기독교의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제시하는 곳이다. 이제 양화진선교사묘원은 한 해에 7만 명이 넘는 순례자들이 찾는 우리나라 최대의 개신교 성지<sup>18)</sup>가 되었고, 세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는 선교사들이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 찾는 세계선교의 출발지가 되었다. 이 같은 모습이 바로 100주년협의회 설립과 양화진의 성역화, 선교기

15) 100주년협의회 간, <기념사업총람>, p.37, ‘사업의 취지’

16) 100주년협의회 간, <기념사업총람>, p.37, ‘사업의 방향과 목표’

17) 100주년협의회 간, <기념사업총람>, p.421, ‘말씀-산 돌로 지은 집’(강원용)

18) 100주년기념교회가 무료안대를 시작하여 순례자 집계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2006년 9월부터 2011년 6월 말까지 4년 동안 양화진을 찾은 순례자는 25만8,712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7년 24,078명, 2008년 54,194명, 2009년 68,014명, 2010년 71,016명이었으며, 2011년에는 6월까지 39,494명이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찾아 100주년기념교회 교인들의 무료안대를 받았다.



념관 설립의 기본정신을 충실히 구현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용인 순교자기념관의 관리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는데, 협약서 문안에는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협의회와 교회는 한국기독교100주년 사업의 후속관리 임무를 함께 수행하기 위한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협의회와 교회는 묘원과 순교자기념관의 운영, 관리권 행사를 변경하거나 거부 또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sup>19)</sup>

100주년기념교회는 100주년협의회와의 지체로서 법체계상 다른 법인체(몸)의 형태를 빌렸을 뿐 한 몸인 것이다. 따라서 100주년교회가 행사하고 있는 관리권은 바로 100주년협의회가 행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반환하거나 회수할 수 없다.

이재철 목사는 주님의교회 사역과 제네바한인교회 사역을 마치고 다시는 일반 목회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바 있으나 100주년협의회가 100주년기념교회 담임목사직의 수락을 강력하게 요청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깨닫고 순종하였다.<sup>20)</sup> 정형화된 목회를 떠나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이들이 안식하고 있는 양화진 성지의 묘지기’로 살기로 작정하고 100주년기념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수락했던 것이다. 이처럼 교회의 창립 정신과 목적에 따라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성지로 가꾸어 보존하고 있는 100주년기념교회와 이재철 목사에게 입장이 다르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주신 소명지(召命地)를 떠나 옮기라는 요구는 오만의 극치다. 더구나 100주년기념교회는 초교파 연합교회이며, 이재철 목사는 이미 예정통합을 탈퇴하였고 그들조차 면직 판결로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교회에 대해 교회 이름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 역시 무례의 극치라 할 것이다.

---

19)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 협약서(2006.10.14)

20) 이재철 목사, 100주년기념교회 창립예배 인사말(2005.7.10)

### ③ 소위 '7인조정위원회 합의사항'의 허위에 대하여

…본 교단은…귀 협의회 산하 7인조정위원회가 마련한 5개의 합의사항(-묘원관리는 협의회가 할 것, -100주년기념교회는 독립교회가 아닌 연합교회, -유니온교회 예배 처소 마련, -매장이 금지된 묘원의 보상 및 선교사 가족들의 묘지 마련, -이재철 목사는 통합교단에 사과하고 탈퇴의사 철회할 것 등)이 귀 협의회 이사회에서 조속히 수용,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

예장통합과 서노회가 주장하는 '100주년협의회 산하 7인조정위원회가 마련한 5개의 합의사항'이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과정은 아래와 같다. 100주년협의회는 2009년 7월 3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삼환 목사를 대신하여 참석한 예장통합 사무총장 조성기 목사의 제안으로 소위 양화진 문제 해결을 위한 '양화진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으로 강병훈(감리교), 길자연(합동), 김고광(감리교), 김해철(루터교), 이종윤(통합), 이철신(통합), 한명국(침례교) 이사 등 7인을 선임했다.<sup>21)</sup> 예장통합이 주장하는 이른바 '합의사항'은 일부 예장통합교단 소속 이사를 중심으로 제안된 의견일 뿐이다. 양화진 문제 조정을 위한 회의에서 이를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위원들의 의견 차이로 합의를 보지 못했으며, 정식으로 100주년협의회 이사회에 보고되지 못했다. 이후 양화진조정위원회는 추가 회의를 열지 않았고 2010년 4월 열린 정기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식 해체되었다.<sup>22)</sup> 사실이 이러함에도 예장통합은 7인조정위원회 5개 합의사항이 정식 합의된 것처럼 억지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소위 7인조정위원회가 마련한 5개 합의사항 중 '100주년기념교회는 독립교회 아닌 연합교회'라는 주장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100주년협의회는 1983년 당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정통 개신교단 전체라 할 수 있는 20개 교단과 26개 기독교관이 연합하여 한국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이러한 100주년협의회가 특수목적을 갖고 창립한 100주년기념교회는 성격상 한국교회의 일치를 지향하는 '연합교회'임이 분명하다. 아울러 각기 다른 헌법과 교리를 지닌 각 교단의 연합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한 특정 교단의 헌법

21) 100주년협의회, 2009년 임시이사회 회의록(2009.7.)

22) 100주년협의회, 2010년 제 26회 정기이사회 회의록(2010.4.)

이나 예전을 따를 수 없음도 분명하다. 때문에 100주년기념교회는 ‘독립교회’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100주년기념교회는 성격상으로는 ‘연합교회’이지만, 제도와 운영상에 있어서는 모든 교단으로부터 독립된 ‘독립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일 담임목회자가 속한 교단의 정관과 정치, 제도, 예전만을 따라야 한다면 이후 담임목사가 바뀔 때마다 모든 제도와 예전, 정관을 바꾸어야 하며, 부교역자 역시 같은 교단 목회자로만 구성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100주년기념교회의 성격이 ‘연합교회’나 ‘독립교회’니 하는 논쟁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유니온교회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직후, 선교사들이 드린 예배를 모태로 출범한 교회로서 한국교회 역사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작지 않다. 또한 1986년 양화진선교사모원에 선교기념관을 건립하면서 이곳을 유니온교회의 예배처소로 사용하도록 배려한 환경적 목사를 비롯한 신앙선배들의 아름다운 뜻 또한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경성구미인묘지회가 2008년 12월 양화진 토지소유권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약 2년 동안 수차례 조정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2010년 12월 열린 조정 모임에서 경성구미인묘지회 측에 다음과 같은 3개 항의 최종 조정안을 제시했다.

첫째,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유니온교회가 한국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양화진외국인선교사모원의 소유권과 선교기념관의 사용권에 대해 증여 당시 상황을 오해하여 생긴 일이므로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다. 100주년협의회 역시 소유자로서 관리자인 유니온교회 측이 상황을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둘째, 유니온교회의 예배 처소 문제는 연세대학교 측이 대학부지 내에 적당한 지면(약 100평)을 제공하면,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연건평 150평 규모의 예배당을 무상으로 건립, 기증한다. 셋째, 유니온교회가 그동안 예약 판매한 묘지대금 원금은 100주년협의회가 대신 변제하며,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는 묘지 예매자들과의 계약 관계를 책임지고 정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니온교회는 새 예배당이 아니라 반드시 양화진선교사모원 안에 있는 선교기념관을 유니온교회의 독점적 예배당으로 영구 사용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연세대학교 측이 유니온교회 예배당 건축부지로 신촌 캠퍼스 대신 제안한 일산 소재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사마저 거부함으로써 이 최종 제안은 결렬되었다. 이후 재개된 재판에서 서울민사법원은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주장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했다. 그러나 경성구미인묘지회는 2011년 6월 29일 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2) '100주년협의회 통합교단 소속 이사에 대한 예장통합 총회 정치부 서면질의(2010.2.10)'  
에 대하여

예장통합 총회 정치부(부장 정재훈 목사)는 2010년 2월, 100주년협의회 이사 중 예장통합 소속 이사들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이 서면질의는 2009년 9월 열린 예장통합 제94회 총회에서 서울 강북지역 6개 노회가 제출한 '이재철 목사의 불법과 교회질서 문란행위를 조사, 치리해 달라'는 헌의에 따라 정치부 산하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사들에게 보낸 것이다. 이 서면질의에 대해 대부분의 이사들은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sup>23)</sup>되었으나, 질의 내용 속에 예장통합이 갖고 있는 100주년협의회에 대한 인식과 소위 '양화진 문제'에 대한 시각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진실을 밝힌다.

질의 1) 귀하는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이사로서 100주년기념교회 담임 목사인 이재철 씨가 2006년 4월 이사회에 제출한 교회정관(운영규정)을 이사회가 결의하여 승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질의 2) 당시 이사회가 승인한 100주년기념교회 정관에 소위 '장로 권사 호칭제' 내용이 들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질의 3) 100주년기념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소위 '장로 권사 호칭제'가 우리 교단 헌법에 위배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100주년기념교회의 정관을 승인한 이사회는 2006년 4월 4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합정동 359번지 서일빌딩 401호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15명의 이사 중 강원룡(기장), 정진경(성결교), 강병훈(감리교), 한명국(침례교), 최창근(통합), 김해철(루터교), 이종윤(통합), 정이숙(통합), 김고광(감리교) 이사가 직접 참석하였고, 김삼환(통합) 이사를 대리하여 김상학 목사가 참석했다. 이철신(통합), 이성희(통합), 정현구(고신), 하용조(통합) 이사는 위임하였으며, 길자연(합동) 이사는 결석했다. 예장통합교단 소속 7명의 이사 중에는 4명

23) 2010년 3월 5일, 100주년협의회에서 이 질의에 대해 접수 및 응답여부를 파악한 결과, 김삼환 목사(당시 총회장)와 이종윤 목사는 질의서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4명의 이사는 질의서는 접수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2월 말에 이사회서신을 제출한 이성희 목사에게는 확인하지 않았다.

이 출석(대리출석 1명 포함)한 것이다.

이날의 이사회에서는 어떤 이사도 이 제도가 교회법을 어기거나 교회 질서를 문란케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후 100주년기념교회 정관의 '장로 권사 호칭제'는 교회 직분제도의 한계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인정받았다. 100주년기념교회는 100주년사업회의 승인을 받은 정관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이제 와서 예장통합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진의가 의심스럽다.

질의 5) 100주년기념교회는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설립한 교회로 어느 교단에도 (속하지 않고) 그 운영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100주년기념교회의 이재철 씨가 '한국독립교회협의회'에 가입함으로써 사실상 특정 교단에 가입한 상황이 되고 말았으며, 이재철 씨는 통합측 소속 목사인 동시에 독립교회협의회 소속 목사로 이중멤버십을 가진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를 허락한 이사회는 사실상 100주년기념교회 설립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이재철 씨를 이중교적을 갖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이 같은 조치가 이사로서 정당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설립한 100주년기념교회가 '그 운영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처럼 100주년기념교회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예장통합이 어쩌서 지금까지 100주년기념교회는 '독립교회'가 아니라고 강변해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100주년기념교회가 가입한 한국독립교회 및 선교단체연합회(한독선연)가 '특정 교단'인가 하는 문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한독선연'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자신들은 결코 기존 교단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sup>24)</sup> 100주년기념교회는 창립 직후 기존 어느 교단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창립방침과 정관에 따라 '한독선연'에 가입했다.<sup>25)</sup> 이는 100주년기념교회가 교회로서 기능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고 물품 구매 및 연말정산 등 행정을 위해 종교법인 산하 교회로 등록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24) 한국독립교회 및 선교단체연합회 홈페이지(<http://kaicam.org>)의 '연합회 소개'연합회 특성' 참조.

25) 100주년기념교회는 창립 당시부터 어느 교단에도 가입하지 않는 '독립교회'를 지향했으며, 이를 교회 정관에 명시했다. 교회 정관 제4조(소속) : 우리 교회는 한국개신교 20개 교단과 26개 기관단체가 연합하여 결성한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초교파적 특성을 지키기 위해 특정 교파에 소속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 편의를 위해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 및 선교단체 연합회(약칭 독립교회)의 회원이 된다.

100주년기념교회가 ‘한독선언’에 가입한 것은 2005년 11월 28일이다. 이재철 목사는 교회를 대표하는 담임목사로서 자동적으로 그 이름이 회원으로 등재되었다. 이후 단 한 번도 예장통합으로부터 2중 멤버십에 대한 지적이나 주의환기나 경고가 없었으며, 심지어 두 건의 고발과정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0년 초 갑자기 예장통합에서 이를 문제 삼는 것이다.

질의 6) 비록 개인자격으로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이사로 참여하셨지만 동 협의회가 한국기독교연합기관임을 감안할 때, 우리 통합교단에서 면직된 사람이 아직 100주년기념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는 사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8) 귀하는 비록 ... 이재철 씨의 위법(정관 승인 요청)에 대하여 그것이 위임의 형태든 아니면 직접 참여의 형태든 동조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법적 책임도 함께 져야 할 것입니다.

100주년협의회에는 모두 15명의 이사가 있으며, 100주년기념교회 정관 승인 당시 이사진은 예장통합, 예장합동, 예장고신, 감리교, 기장, 성결교, 루터교, 침례교 등 여러 교단 소속 교역자 및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100주년협의회 이사회에서의 모든 결정은 특정 교단의 이익과 관점을 초월하여 교회연합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예장통합 총회 정치부는 이 서면질의에서 교단 소속 이사들에게 지금까지 100주년협의회가 적법절차에 의해 결의한 사안들에 대해 정당했다고 생각하는지,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 등을 거론하며 마치 위법혐의자를 취조하듯 묻고 있다. 특히 8번 질의는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법적 책임도 함께 져야 할 것”이라며 겁박하고 있다. 이사회가 정관을 승인한 지 3년이나 지난 시점에 위법 운운하며 당시 참여했던 자기 교단 소속 이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치졸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제 해결을 위해, 가. 우리 교단에서 면직출교 처분을 받은 이재철 씨는 100주년기념교회에서 사임시키든지 아니면 제 문제를 해결하여 복직하게 하든지 해야 할 것이며, 나. 소위 장로 권사 호칭제 정관을 수정하고(이재철 씨는 2009년 6월 10일 정관 개정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습니다.), 다. 100주년기념교회가 예배처를 마련하여 양화진에서 철수하며, 라. 양화진 구역관리는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이사회가 관리주

체를 결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요구하고 해결책을 도모할 의사가 있습니까?

예장통합이 말하는 양화진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이재철 목사의 축출, 장로 권사 호칭제 폐지, 100주년기념교회의 양화진에서 철수, 양화진선교사모원의 협의회 직접 관리 등으로 여러 문서에서 비슷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22쪽 1. 예장통합총회의 ‘양화진 외국인묘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 요청(2009.12.30)’에 대하여 참조)

100주년기념교회는 정관 제정 당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 우려에 대한 교계 및 성도들의 지적<sup>26)</sup>을 수용하여 2009년 6월 정관을 개정하여 ‘장로 권사 호칭제’의 호칭 자격을 대폭 강화했다. 이처럼 100주년기념교회가 정관을 개정하여 예장통합 서울서노회가 억지주장한 부작용 즉, 장로나 권사가 되기 위해 100주년기념교회로 성도들이 옮긴다는 수평이동의 우려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서노회는 이전 정관을 증거물로 첨부하여 이재철 목사를 고발(2009.6.24) 및 기소(2009.8.7)했으며, 이를 근거로 면직책벌(2009.10.10)하였다. 2010년 2월에 발송된 이 질의서 역시 100주년기념교회 정관에 대해 ‘2009년 6월 정관개정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병기하여 마치 질의서를 보내는 시점까지 정관이 바뀌지 않은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100주년협의회가 양화진선교사모원 관리를 전담할 기관(교회)으로 100주년기념교회를 설립하기로 결의한 것은 2003년 9월 30일 열린 2003년 1차 임시이사회이며, 이후 교회 설립 추진 5인위원회 구성(2005.4.18)과 100주년기념교회 정관 승인(2006.4.4) 역시 100주년협의회 정기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이루어졌다. 100주년협의회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결정한 관리주체는 부인하면서, 100주년협의회 이사회에 관리주체를 다시 결정할 것을

26) 이재철 목사는 100주년기념교회 2007년 7월 12일 주일예배 설교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났다고 모두 장로와 권사로 호칭하면 장로와 권사를 계급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자격 요건이 너무 없으면 장로 권사의 호칭을 받기 위해 교회를 옮길 수 있으며, 일괄적으로 장로와 권사로 호칭하다보면 신실치 못한 신자로 인해 한국교회에 누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을 견뎌하게 수용하여 2009년 6월의 정관개정을 통해 장로 권사 호칭자의 자격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요구하라는 예장통합 총회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 3) 예장통합 ‘양화진 문제 보고회’(2010.7.22)에서 발표한 ‘양화진의 역사적 의미(임희국)’에 대하여

장로회신학대학 임희국 교수는 2010년 7월 22일, 예장통합총회 ‘양화진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서)’가 주최한 보고회에서 대책위원회 전문위원 자격으로 ‘양화진의 역사적 의미’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또한 2010년 9월 양곡교회에서 열린 95차 예장통합총회 총대들에게 배포한 보고서에도 수록되었다. 이 논문은 현재의 양화진선교사묘원을 둘러싼 갈등보다는 양화진묘지의 조성 역사와 의미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 중에 역사적 사실 및 실체적 진실에 부합되지 않은 내용이 있으므로 바로잡는다.

지금까지 양화진에 묻힌 외국인은 선교사 이외에...등 다양하다. 신호철의 조사에 따르면, 2005년 현재 555기의 외국인 묘가 있으며, ...이 가운데서 선교사와 그 가족의 묘는 167기이다.(주 21:신호철 편저, <양화진외국인묘지, 토지소유권의 역사적 진실> (양화진선교회, 2008), 5쪽)

임희국 교수는 2005년 현재 양화진에 조성되어 있는 분묘 수를 555기, 그 중에 선교사 관련 묘는 167기라고 신호철의 책을 인용하여 밝히고 있다. 신호철의 책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까닭에 아무 의심 없이 자료를 인용하고 있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신호철이 쓴 다른 책 『이 땅에 떨어진 밀알들, 양화진 선교사』(양화진선교회, 2004) 28쪽~29쪽에 보면, 양화진 묘지의 국적별 현황이 나온다. 신호철은 이 책에서 2004년 8월 현재 총 묘지 수를 555기, 이 중 선교사 관련 묘지 167기, 기타 직업인이 237기, 매장자를 알 수 없는 묘(미상)를 141기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29쪽 <표1-2> 밑에 ‘미상 141기는 예약지와 빈자리를 포함한 것’이라는 주를 달아 놓았다. 결국 이 책에서 말하는 총 묘지 수 555기에는 아직 매장되지 않은 예약묘지(40기)와 비어 있는 자리, 심지어 이곳에 안장되지 않고 기념비만 있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된 숫자이다.(신호철은 합장된 경우도 모두 별도로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숫자들은 무덤의 수가 아니라 안장된 사람의 수를 의미한다.)

100주년기념교회가 양화진선교사묘원을 관리하기 시작한 2005년 7월 이후에 양화진에



는 단 한 기의 무덤도 새로 조성되지 않았다. 2007년과 2010년 100주년기념교회가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양화진에는 모두 417명이 안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조사는 현재 남아 있는 비석 등 석물을 근거로 파악한 것이다. 따라서 비석 등이 없어진 경우가 있다면 실제 안장자 수는 늘어날 수 있지만 이는 거의 확인이 어렵다. 단, 성공회 묘역의 경우, 적지 않은 수(약 60~70명)의 고아들을 이곳에 묻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실제 수를 확인할 수 없어 제외했다.(이에 대해 현재 성공회 내부에서도 정확한 안장 내역 파악을 위해 노력 중이다.)

총 417명의 안장자 중 선교사는 90명, 선교사 가족은 55명으로 선교사 관련 안장자는 모두 145명(무덤 수는 123기)이며, 기타 직업인 242명, 신원을 알 수 없는 무덤은 30기다. 선교사 관련 안장자를 교단별로 보면 장로교 54명, 감리교 49명, 구세군 15명, 성공회 8명, 기타교단 및 미확인 19명이다.

이제, 양화진외국인묘지에 잠들어 있는 선교사들을 회고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 관하여 지난날 세브란스병원 의료선교사였던 에비슨이 이들을 기념하는 추모사("Memorial day Address", 1929년 6월)를 발표하였기에 이것을 살펴보는 것으로 회고에 대신하고자 한다.(주 22 : 이 추모사를 신호철이 펴낸 위의 책 217~219쪽에서 가져왔다. 그런데 추모사의 날짜를 다른 역사자료를 통해 확인하고자 했으나 밝혀내지 못했다. 미처 밝히지 못한 점은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임희국 교수는 양화진에 안장된 선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에비슨 선교사가 쓴 추모사를 인용하면서 이 추모사를 신호철의 책에서 인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추모사를 한 날짜를 찾으려고 했으나 찾지 못했으므로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신호철의 책 217쪽에 보면, 위에 인용한 원문이 복사되어 수록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Seoul, Korea, June 1, 1929'라고 추모사를 한 날자가 쓰여 있고, 그 하단에는 '자료 ; The Korea Mission Field, 1929. 8'이라고 출처가 명기되어 있다.

〈The Korea Mission Field〉는 선교사들이 발행한 선교월간지로서 1905년 창간되어 1941년 11월 폐간되었다. 이 잡지는 한국교회사 연구에 가장 중요한 사료 중 하나로서 1986년 한국기독교사연구회에 의해 영인본으로도 발간되었다. 임희국 교수가 인용한 에비슨의 추모사는 〈The Korea Mission Field〉 1929년 8월호 174~176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에비슨 선교사보다 앞서 1924년 6월호에는 5월 30일에 한 빌링스(B. W. Billings) 선

교사의 추모사<sup>27)</sup>가 실려 있고, 벙커(D. A. Bunker) 선교사와 홉스(Thomas Hobbs) 선교사가 경성외국인묘지에 관해 기고한 글도 실려 있다.<sup>28)</sup>

#### 4) 예장통합 '양화진 문제 보고회'(2010.7.22)에서 발표한 '소위 "호칭 장로, 호칭 권사" 제도 및 "죽은 자를 위한 기도"론에 대하여(현요한)'에 대하여

장로회신학대학 현요한 교수는 2010년 7월 22일, 예장통합총회 '양화진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서)'가 주최한 보고회에서 대책위원회 전문위원 자격으로 '소위 "호칭 장로, 호칭 권사" 제도 및 "죽은 자를 위한 기도"론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 역시 2010년 9월 양곡교회에서 열린 95차 예장통합총회 때 총대들에게 배포한 보고서에 수록되었다. 예장통합 서울서노회는 양화진선교사모원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던 2009년 봄, 100주년기념교회의 정관 내용을 문제 삼아 이재철 목사를 노회 재판국에 고발하였고, 8월에는 이재철 목사의 『성숙자반』의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아 이단 시비를 제기하며 재차 고발했다. 그러나 이단 시비에 따른 고발 건은 고발을 위한 요건인 교단 신학대학 교수 5인 이상의 의견서를 갖추지 못해 유야무야되었다. 이 논문은 고발 취하 이후에 교단 주최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논문이라는 점에서 예장통합은 아직 이단 시비를 거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현요한 교수의 논문에 대한 진실 규명은, 작년 현 교수의 논문 발표 직후 양화진문화원 지강유철 선임연구원이 준비해 두었던 미발표 공개질의서로 대신한다.

#### 현요한 교수님께 드리는 편지

##### 양화진에 신학적 문제는 없습니다

양화진문화원에서 한국교회를 공부하고 있는 지강유철입니다. 현요한 교수님이 발제를

---

27) B. W. Billings, 'A Memorial Day Address, May 30, 1924', <The Korea Mission Field>, PP. 153-154.

28) D. A. Bunker, 'The Seoul Foreign Cemetery', <The Korea Mission Field>, 1929, Oct. p. 214.  
T. Hobbs, 'The Seoul Foreign Cemetery', <The Korea Mission Field>, 1931, Nov. p. 237.

맡으셨던 7월 22일의 예장통합 주최 ‘양화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보고회’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이재철 목사로 말미암아 비롯된 일련의 신학적 혼란을 정리”하고 싶다는 취지의 발제 논문도 읽었습니다. 이번 논문이 예장통합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논란은 오히려 증폭될 것 같습니다. 현 교수님은 논문을 시작하며 “이 글에서는 양화진 묘지에 관한 정치적 쟁점들을 배제하고, 신학적인 문제점들만을 다루려”한다고 하셨습니다. 전국 교회를 상대로 여는 ‘양화진 문제 해결을 위한 보고회’에서 정치적 쟁점들을 배제하시겠다는 현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좀 어리둥절합니다. 양화진 사태의 핵심은 정치적인 문제이지 신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양화진에 신학적 문제란 없습니다. 외국인선교사모원에 무슨 신학적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예장통합은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나 100주년기념교회엔 입장을 밝힐 기회조차 주지 않고 ‘양화진 문제 해결을 위한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2009년 통합 총회 때 총대들에게 보고한 것과 똑 같은 내용으로 말입니다. 예장통합이 제기한 ‘100주년기념교회의 신학적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양화진의 신학적인 문제’란 없습니다. 현 교수님께서 이재철 목사님의 신학적 문제를 양화진의 신학적 문제로 환원시킨 것이라면 그 자체가 이미 정치적입니다. 적확해야 할 논문에서, 더군다나 현직 담임목사에게 신학적인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이재철 목사와 100주년기념교회의 신학적 문제’를 어떻게 ‘양화진의 신학적 문제’라고 표현하십니까. 이재철 목사님과 100주년기념교회의 신학적 혼란이 정리되면 양화진 문제가 진정 해결될 것이라 믿는 것입니까.

#### 현행 사회법으로 좌절되니 신학적 뗏을 놓습니까

양화진선교사모원의 법적 소유권이나 관리권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문제는 100주년기념교회가 창립된 2005년 8월 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장통합이 이재철 목사의 신학적 문제를 공식적으로 들고 나온 것은 그로부터 4년 뒤였습니다. 서울서노회가 이재철 목사님을 ‘의무위반 및 불법 등을 이유로 고소를 결의한 것은 2009년 4월 27일이었습니다. 유니온교회가 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4건의 민형사상의 소송 중 마지막 건이 2009년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예장통합에서 ‘이재철 목사의 신학적 문제’를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유니온교회나 일부 선교사 유족들은 지난 4년 누구도 ‘양화진의 신학적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느닷없이 ‘양화진의 신학적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예장통합입니다. 법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자 ‘이재철 목사와 100주년기념교회의 신학적 문제’를 들고 나왔던 것 아닙니까. 때문에 저는 예장통합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놓은 덫이 소위 ‘양화진의 신학적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양화진의 신학적 문제’에 집중한 현 교수님의 논문은 의도와 상관없이 양화진 문제를 호도하거나 왜곡할 개연성이 높은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 교수님이 이번에 제기한 신학적 문제만이 아니라 슬쩍 비껴간 신학적 문제들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현 교수님께서 제기하신 ‘이재철 목사와 100주년기념교회의 신학적 문제’에 대해 100주년기념교회 교우는 물론 양화진에 관심을 갖는 한국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의견은 자유나 사실(Fact)은 신성”합니다

현 교수님의 이번 논문을 읽으며 머리에 떠올랐던 것은 <맨체스터 가디언>지 C. 스코트 주필의 “의견은 자유이지만 사실은 신성”(Comment is free, but facts are sacred)하다는 경구였습니다. 스코트의 언론 철학이자 <맨체스터 가디언>의 사시(社是)는, 뉴스를 수집하되 뉴스에 때를 묻히지 않고 순결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에 충성하기 위하여 사실과 의견을 치열하게 구분하려는 태도가 어찌 언론기자에게만 요청되었습니까. 학자나 판·검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 교수님의 논문은 곳곳에서 ‘사실’과 ‘의견’이 뒤엉키더군요.

첫째, 현 교수님은 협성신학대학교의 안석모 교수님의 발언을 이재철 목사님의 발언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양화진 문제 해결을 위한 보고회’ 자료집 38쪽에서 인용한 “하나님, 저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뜻이 있으시면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까지는 이재철 목사님의 문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시 인용한, “목회양호(牧會養護)의 문제로서 죽은 이를 위한 기도를 권장하고 싶습니다.”라는 부분은 안석모 교수님의 문장입니다.

둘째, 현 교수님은 이재철 목사님이 베드로전서 3장 19-20절을 해석하며 “죽은 불신자의 구원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낸 바 되셨으나 그분의 영은 살아 계셨고(18), 노아 때 말썽을 외면하다가 죽은 영들이 갇혀 있는 옥으로 내려가 복음을 전파하셨으며(19-20), 이 말썽을 근거로 750년에 사도신경 공인 원문이 확정되자 그때부터 세계교회는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고 고백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오해가 생길까봐 이재철 목사님은 “이것을 근거로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간 사람들도 전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불리 속단하거나 확대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사항이지 우리가 결정

할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단단히 뜻을 막아두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논지는 불신자도 천국에 갈 수 있으니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분은 죽은 남자/여자가 아니라 슬픔에 잠긴 예수 믿는 그의 유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부모가, 자식이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면,” 또는 가족들이 비통해 하고 있다면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 따뜻하게 기도해 주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신”(『성숙자반』, p. 293-294)이 아니겠느냐고 했던 것입니다. 현 교수님은 이재철 목사님의 『성숙자반』의 사도신경 강해 중 어떤 구절이 불신으로 죽은 자의 구원 가능성을 암시했다고 본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재판권한이 없는 데 면직 책벌이 웬 말입니까

셋째, 현 교수님께서서는 이재철 목사님에 대한 면직 책벌이 합법적인 것처럼 주장하셨습니다. 본문과 각주를 통해 서울서노회 판결의 합법성을 길게 인용하셨습니다만,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100주년기념교회는 2009년 10월 15일자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철 목사님의 면직 판결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원인무효임을 밝혔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서울서노회가 기소위원회에 기소하기 이전에 이미 탈퇴했기 때문에 재판권한이 없고, 헌법시행규칙을 잘못 적용하여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원인무효라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노회 탈퇴서를 제출한 것은 6월 26일이었습니다. 서울서노회가 이재철 목사님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것은 7월 3일이며, 정작 기소한 날은 8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철 목사님께서 노회를 탈퇴하셨던 6월 26일은 재판에 계류는커녕 기소조차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서울서노회가 통합 헌법시행규칙 제88조를 정확히 적용했다면 즉시 권고사직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시행규칙 제88조가 “재판에 계류 중이 아닌 항존직원은 권고 사직된 것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현 교수님은 ‘양화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이시기 때문에 의지만 있었다면 이런 정도는 당장 사실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현 교수님은, “이재철의 면직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그가 기소 중에 소환에 응하여 자신과 관련된 사실들을 면밀하게 밝힐 기회를 거듭 거절하고, 교단을 탈퇴한 데 기인”했다고 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서선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말입니다.

### 서리집사, 권사, 강도사도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100주년기념교회의 신학적인 문제라고 지적한 호칭 장로, 호칭 권사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00주년기념교회가 왜 호칭 장로·권사제를 시행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한국교회 일각에서 왜 그토록 정관 제정을 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장로, 권사를 비롯한 직분제도와, 그 토대가 되는 헌법 운영 실태에서 출발하지 않는 한 직분 제도 논의는 결코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기 때문입니다.

현 교수님은 “100주년기념교회와 이재철이 교계에 문제를 일으킨” 일이 “그 교회의 장로 및 권사 선출에 관한 것”이라면서 이는 “교회법의 문제이면서 또한 신학적인 문제, 즉 교회론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일반 교회들은 총회의 헌법에 따라 직분자를 선출하지만 100주년기념교회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성경과 헌법에 명시된 집사, 권사, 장로의 직무를 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격 요건 또한 허술하기 때문에 성경의 교훈과 맞지 않다고도 하셨습니다만 이 말씀엔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 100주년기념교회의 호칭 집사·권사·장로는 정관 제5조 ‘교인의 자격과 호칭’에 근거합니다. 만약 100주년기념교회가 타 교단의 헌법이 정하는 집사·권사·장로의 역할을 맡기면서 호칭 집사·권사·장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올바른 처사가 아니겠지요. 하지만 100주년기념교회는 정관상은 물론 실제 봉사나 교회 운영에 있어서, 타 교단 교회들처럼 집사·권사·장로의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례로 100주년기념교회는 당회가 없습니다. 현 교수님은 100주년기념교회의 “장로와 권사”를 세우는 방법이 문제라고 하지만 100주년기념교회는 통합 헌법이 요구하는 집사든 권사든 장로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둘째, 현 교수님께서 100주년기념교회가 집사·권사·장로를 선출하지도 임직하지도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예장통합 헌법 정치편 제8장 제50조와 51조가 집사의 직무와 자격을, 제52조와 제53조가 권사의 직무와 자격을, 제53조와 제54조가 집사 및 권사의 선택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00주년기념교회의 정관 제4조는, “우리 교회는……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초교파적 특징을 지키기 위해 특정교파에 소속하지 않지”만 “행정적 편의를 위해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 및 선교단체 연합회(약칭 한독선연)의 회원”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초교파로 창립된 100주년기념교회가 예장통합 헌법만을 따를 수 없겠지요. 초법적으로 이재철 목사님을 면직해놓고도 아직 예장통합 소속의 목사라 착각하시는 것은 아닐 테지요?

### 장로, 권사 선출이 '교회의 표지(標識)'라도 됩니까

장로교 계통의 신학대학생이라면 신약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직분이 집사와 장로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가톨릭과 18세기에 시작된 감리교회가 감독, 장로, 집사라는 '3직분'을 주장하면서부터 "교회 구조가 계급구조로 변질되었다"는 사실 또한 상식에 속한다 하겠습니까. 장로와 안수집사가 하나님께 신적 기원을 둔 직분이란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성화된 상식'(sanctified common sense)이라 말한 아디아포라, 즉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지 않아서 임의로 할 수 있도록 남겨진 영역의 문제와, 존 머레이가 '규정적 원리'(Regulative principle)라고 부른 디아포라의 문제, 즉 성경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규정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군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영역이 무엇이나를 분별하는 일은 루터와 칼뱅도 사안에 따라 입장이 같렸지요. 루터가, 성경이 명백하게 금하지 않은 이상 로마교회의 전통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자 칼뱅은 성경이 명(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로마교회의 모든 전통이나 관습을 거부했습니다. 칼뱅은 본질적인 교리에 해당하는 디아포라의 영역이라도 모두 똑같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의 원칙으로 알아야 할 것으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다" 정도로 제한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제외한 대다수의 문제들은 비본질적인 영역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교회가 집사와 권사와 장로를 선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본질적인 영역인가요, 아니면 비본질적 영역인가요. 칼뱅조차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 안수집사, 권사, 장로를 선출하지 않은 것이 신학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장로교 계통의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추종하는 칼뱅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두 가지 표지(標識)로 말씀과 성례전을 꼽았습니다. 안수집사, 권사, 장로를 세우는 문제는 교회의 표지가 아니라는 뜻이 되겠지요. 때문에 100주년기념교회가 '장로 권사 호칭제'로 한국교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며 목사직 면직 책벌이라는 무리수까지 둔 예장통합의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이상한 제도"를 만든 건 예장통합 헌법 아닙니까

현 교수님께서 100주년기념교회가 호칭 집사, 호칭 권사, 호칭 장로라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요. 100주년기념교회가 몇 개월 동안의 진지한 토론 끝에 제정하였고, 협의회로부터 인준을 받은 정관을 "이상한 제도"라는 한 마디로 폄하하신 것이 놀랍

습니다. 헌법으로 이상한 장로 선출 제도를 확정·시행하는 곳은 예장통합(을 위시한 대다수 한국교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예장통합이 최소한의 법률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헌법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입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와 공의정치실천연대 중앙위원장을 맡고 있고, 진주 주님의교회 집사인 백종국 경상대 교수님이 얼마 전에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개정판을 냈습니다. 총회의 헌법들과 개교회 정관을 깊이 연구한 백 교수는 이 책에서 한국교회 헌법에 대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의 기준으로 볼 때 세속의 질서보다 더 낙후된 질서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교회와 사회에 강요하는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기에 이르렀다. 교단의 헌법들은 이러한 모습의 예 중 하나다.”(p. 117)라고 했더군요. 한국교회의 헌법이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한국교회 헌법이 얼마나 법률적으로 모순투성이며 현행법과 충돌하는지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 예장통합 헌법엔 왜 의사정족수가 없습니까

첫째, 예장통합 총회 헌법을 비롯한 한국 장로교단들의 헌법은 공동의회 규정이 보여주듯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가 빠져있습니다. 헌법 제90조 제4항은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의사정족수란 합의체의 성격과 의사진행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요. 우리 국회는 통상 재적의원의 1/5 이상 참석하면 개회가 됩니다. 하지만 안수집사나 권사나 장로를 선출하는 공동의회처럼 어떤 사안을 의결할 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장통합 헌법에는 의사정족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4가지 조건 중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당회 결의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외하면 공동의회 개최 권한을 ‘공동의회 의 의장인 당회장’에게만 준다는 것입니다(제90조 제7항). 즉 “당회와 제직회와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제90조 3항)이 있더라도 말이지요. 당회원이나 제직회, 또는 세례교인 1/3이 헌법 제90조 3항의 의거하여 공동의회 소집을 요청하더라도 당회장이 NO!하면 공동의회는 소집조차 할 수 없더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헌법 규정에 당회원이나 제직회원, 세례교인 1/3이 공동의회 소집 요청을 하더라도 담임목사 맘대로 묵살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개신교 헌법의 정말 큰 문제는 대한민국 현행법과 충돌하는 조항이 한 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교회 재산의 소유권 문제입니다. 한국교회는 2006년 4월 20일자 대법원 사건번호 ‘2004다37775번 소유권말소등기’ 판결을 주목해야 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社團)의 재산은 민법 제275 제1항에 의거 그 구성원의 총유(總有)이며, 사단의 내부 구성원은 사단 내부의 규약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갖습니다.(민법 제276조 제2항). 때문에 사단인 교회 재산 처분은 정관변경에 준하는 총 구성원 2/3 이상의 동의로만 가능합니다. 반면에 개신교 총회 헌법들은 “교회의 재산(건물과 토지, 혹은 기본 재산) 관리를 당회의 소관 사항이라고 못박고” 있지요. 위에 거론한 대법원 판결로 더 분명해졌지만 총회 헌법과 개교회 정관이 충돌할 때 법원은 개교회 정관에 손을 들어줍니다. 앞으로 개교회 재산을 처분하려면 공동의회 재적 2/3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여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 예정통합 헌법엔 왜 '제척 사유'가 없습니까

셋째, 총회 헌법의 또 하나의 문제는 제척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척이란 법관이나 사무관 등이 특정사건의 피해자이거나 또는 피해가족과 친척관계일 때,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그 사건의 집행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민사는 물론 형사 소송에도 해당됩니다(민법 제88조·제89조, 민사소송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17조). 법관만 제척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음악이나 미술, 체육 등의 입시나 각종 콩쿠르에서도 심사위원의 제자나 직접적 관련자일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우리사회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 제척이지요. 그런데 교회법에는 제척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회장과 공동의회 의장과 제직회장직을 모두 틀어쥔 담임목사가,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쥔 담임목사가 자기 관련 사건에서 버젓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총회 헌법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 갈등의 해결이 '하늘의 별따기'인 것입니다. 교인 절대 다수가 담임목사의 사임을 원하더라도, 그리고 헌법에 공동의회 소집의 자격 요건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헌법이 공동의회 소집의 전권을 담임목사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교인들만으로는 합법적인 공동의회가 불가능합니다. 한국교회성장연구소의 2003년 조사 결과를 보니 교회를 옮기는 가장 큰 이유가 담임목회자 문제더군요(33.7%). 총회 헌법이 제척 사유만 제대로 법조문에 담았어도 한국교회 수평이동을 최대 1/3정도는 줄일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교회의 주권은 교인들에게 있다는 것이 성경과 개혁교회의 전통적 가르침이지만 한국교회의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인 것 같아 씁쓸합니다.

### 목사·장로의 정년 보장, 왜 우리나라에만 있습니까

한국 장로교회들은 성경과 함께 종교개혁에 뿌리를 둔 개혁주의 전통을 매우 중시합니다. 그러나 칼뱅을 추종하는 세계의 장로교회들 가운데 장로와 목사직을 70세까지 보장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핵심적인 두 가지 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교회의 헌법과 교회정치에서 성경과 칼뱅을 비롯한 개혁주의 전통으로부터 가장 멀어진 부분은 ‘교회의 주권’ 문제입니다. 예장통합 총회장을 역임하셨던 임택진 목사님은 1994년에 쓰신 『장로회 정치해설』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장로교회의 정치는 주권이 교황이나 감독에게 있지 않고 교인에게 있는 민주정치이다.”(p.29) 대표적 성경신학자인 박윤선 박사도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주석-정치·예배 모범』에서, “장로회 정치의 정신은 한마디로 교회의 주권은 교인에게 있다는 교리이다. 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교회 헌법 주석가들이 지적하는 바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강조하는 것은 한국교회 대다수 총회와 개교회에서 교회의 주권이 철저하게 부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일차적 이유는 위임목사의 권한이 과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헌법들은 당회장인 위임목사에게 전권을 부여합니다. 제직회, 당회, 공동의회 의장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이를 백종국 교수님은 당회장의 독재권이라 표현했습니다. 독재권이란 당회장의 “의사와 다른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권한”을 의미합니다. 통합총회 헌법이 부여한 당회장의 권한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각종 회의에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안건에 가부를 묻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준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총회 헌법들은 당회의 의결 절차와 의결정족수가 없습니다. 의안의 가결여부가 절대적으로 당회장에게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회헌법학자 박병진 목사님(예장합동보수 냉천동측 총회신학연구원 학장)님의 발언은 충격입니다.

이와 같은(목사가 판단하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제안들의) 동의와 재청은 묵살해야 하고, 묵살할 권리가 당회장에게 있다.……다시금 말하거니와, 목사들은 그 의안이 가부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신념이 있을 경우에만 가부를 물어야 한다. 약한 장로들의 협박 공갈에 굴하지 아니해야 한다. (『교회정치통람(전정판)』, p.81)

교인의 주권이 이처럼 강하게 부정당하는 것은 총회 헌법이 당회장의 파송과 권고 사면권을 노회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의할 때 담임목사의 신임이나 해임의 경우 공동의회 과반수 혹은 2/3의 의결로 통과됩니다. 그러나 공동회의 결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노회가 거부하면 공동의회 결의는 원인무효가 됩니다. 이처럼 총회 헌법들은 담임목사에 반대하는 성도들의 의견을 노회에 전달할 정상적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 모든 직분은 평등하지 않습니까

둘째, 한국교회의 헌법과 정치구조에서 또 하나의 핵심과제는 직분이 철저히 계급화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목사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거나 '성직자'라고 부르는 것에 별 거부감이 없지만 칼뱅은 "이 명칭을 자기들의 것이라고 하는 이들은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며 노발대발했습니다. 대한민국 교인들에게 너무도 익숙한, 목사와 교인을 목자와 양에 비유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것으로 자신에게 복종케 하기 위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다른 양과 마찬가지로 양 떼 중 한 마리입니다." 칼뱅의 말입니다.

통합헌법은 목사직을 위임목사, 원로목사, 은퇴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무임목사, 전도목사, 교단 기관목사, 종군목사, 교육목사, 선교사 등으로 나눠놓았습니다. 백종국 교수님의 주장이 옳다면 헌법이 이토록 많은 목사로 구분하는 것은 "위임목사로부터 여타 목사를 분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사가 기능상 역할만 다르다면 이렇게 많은 목사 호칭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서리집사는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역할을 맡아도 호칭은 하나입니다. 전도사나 강도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위임목사인 당회장은 공동의회에서 2/3의 찬성으로 결정되어 70세까지 임기를 보장받는데 부목사는 당회 의결로 결정되고 임기도 1년입니다. 만약 한국교회의 헌법이 개혁교회의 정신에 충실했다면 모든 목사는 당연히 공동의회에서 초빙이 결정되어야 논리적 일관성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개혁교회들이 신봉하는 웨스트민스터 정치 조례는 '공동목사(co-Pastor)'를 두어 당회장을 돌아가며 맡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을 보면 목사와 장로의 서열화도 분명합니다. 성경과 장로교 전통에서 목사와 장로는 본래 같은 말입니다. 다만 목사의 역할은 가르침이고, 장로의 역할은 치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장로교 헌법들은 치리권을 목사가 독점하는 대신 장로에게는 '기본교권'을 부여합니다. 이처럼 목사와 목사 사이, 목사와 장로 사이에 서열이 생겼기 때문에 집사나 권사나 교사 직분이 목사와 장로의 하위 구조에 재편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권사나 서리집사는 서열화된 한국교회 상징입니다. 권사는 과거에 여성을 장로로 세울 수 없었던 교리와 한국의 유교적 전통이 결합되어 생겨난 직분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서열화 내지 계급화는 성경과 개혁교회 전통에 대한 배신입니다. 성경과 개혁교회 전통은 한 목소리로 직분의 평등성을 말합니다. 만인제사장설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제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두 신령한 직분이 동등하며, 상급 또한 같다는 것 아닙니까. 장로교 정치의 3대 원리 중 하나가 직분의 평등이라는 사실은 개혁교회 신학의 ABC입니다. 실례로 웨스트민스터 정치 조례는 직분에 대

해, “이는 계급을 가리킴이 아니요, 다만 각양 책임을 가르쳐 칭하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예장통합 헌법은 이러한 조항을 삭제해버렸습니다. (백종국,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 p. 65)

#### 모든 교회, 노회, 총회도 평등하지 않습니까

“총회는 교단이 매년 한 번 사용하는 회의제도(會議制度)에 불과”할 뿐 상비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총회를 교단과 동일시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것은 박윤선 박사였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1년에 한 번 모이고 흩어지는 형태로 총회가 출발한 것은 개교회를 구속하고 통제하는 교단(敎團)으로 군림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총회나 노회는 상회가 아니라 교회간의 협의를 위한 광대회의(assembly)였고, 총회 헌법은 상위법이 아니라 협약(協約, convention)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교회는 총회가 헌법상의 ‘최고치리회’로 등극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교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專權)을 거머쥔 총회 말입니다. 1980년대 초반까지, 웨스트민스터 헌법이나 미국북장로교회 헌법에는 ‘전권’이란 용어자체가 없었습니다. 예장통합 총회는 100주년기념교회의 정관을 폄하하거나 이단시 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눈물과 기도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총회헌법의 핵심 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한국교회 내에서 거의 불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그 통로가 막혔다면 총회가 나서서 정관 갖기를 독려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장통합 헌법 제63조가 비록 “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라는 단서 조항을 달긴 했지만 자체 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장로 권사 호칭제에 대해 몇 가지 묻습니다. 지난해(2009년) 침례교 총회에서 호칭 장로제가 통과되었습니다. 갈보리교회나 새길교회 등 아예 장로를 세우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침례교가 호칭 장로제를 채택한 것에 대한 현 교수님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 교수님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법적으로는 아니라 하여도 직분을 하나의 명예처럼 취급하는 관행”이 100주년기념교회 내에서도 확대 재생산될 것이라 보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부탁드립니다.

#### 불신자 장례식에선 기도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사도신경은 2세기에 로마교회의 세례 예식이라는 구체적 필요에 의해 생겨났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성숙자반』은 2006년 3월 7일부터 5월 19일까지 총10회에 걸쳐 열렸던 ‘성숙자반 특강’의 결과물입니다. 현 교수님께서 이재철 목사님의 신학적 문제로 지적한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역시 예수 믿지 못하고 죽은 이를 둔 성도의 슬픔에 맞닿아 있는 목회양호

적 문제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사도신경 해설은 긴 분량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도신경 형성 과정의 설명은 자세하면서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형성과정에 이어 신조 각 부분을 설명한 뒤 실천적인 결론으로 끝맺는 것이 이재철 목사님의 사도신경 해설입니다. 다른 해설과 차별화되었던 점은 1908년에 누가, 어떤 이유에서 한국어 사도신경의 “지옥에 내려가시고”란 구절을 삭제했느냐는 부분입니다. 750년에 공인 이후, 세계 교회는 오늘까지 “지옥에 내려가시고”를 고백하고 있는데 한국교회 대다수 성도들은 그 구절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었지요.

이재철 목사님의 강조점은 “지옥에 내려가시고”란 구절이 왜 중요한지에 집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내려가시고”의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슬픔에 잠긴 성도의 위로를 이야기하는 이재철 목사님을 향해 현 교수님께서서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 이야기만 하시더군요. 이재철 목사님은 죽은 자의 구원이라는 교리적 문제가 아니라 목회 양호의 측면에서 이 구절에 접근하고 계신데 현 교수님께서서는 불신자의 사후 구원 가능성이나 죽은 자를 위한 기도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이 구절을 해설하는 게 아니냐는 식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21절과 4장 6절, 빌립보 2장 5-11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등을 근거로 지옥에서의 예수님의 복음전파를 이야기하시니, 엉뚱하게도 가톨릭의 림보나 연옥 등을 인정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편지를 시작하며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현 교수님은 이재철 목사님을 향해 신학적 문제를 제기하시기 위해서 사실 왜곡까지 하셨습니다. 때문에 저는 추정과 추론에 입각하여 전개하신 교리나 성경해석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현 교수님은 이재철 목사님이 “지옥에 내려가시고”란 구절의 해설을 위해 인용한 성경 구절들이 난해하기로 유명하다며 수많은 신학자들의 학설 소개에 바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빌립보서, 고린도전서는 수신자가 분명한 편지입니다. 상징과 비유로 가득한 예언서나 묵시문학이 아니라는 거죠. 문화적으로 너무 변해서 오늘의 상황에 새롭게 적용하거나 해석해야 하는 본문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신학자들은 그토록 분명한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 텍스트에 반하거나 텍스트와 다른 해석을 서슴없이 하더군요. 그게 칼뱅이든 장신대 교수님들이든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왜 이렇게 명백한 본문을 놓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지옥/음부에 내려가신 게 아니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공개편지를 끝내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교수님께서는 <새찬송가>에 수록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의 예정통합 전문번역위원 9명 중 한 분이셨습니다. 750년에 공인된 사도신경(Forma Recepta)을 번역하면서 “지옥에 내려가시고”를 복원하지 않은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현재 세계 교회가 다 이 구절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찬송가>는 사도신경의 난외주에서 “지옥에 내려가시고”를 삭제한 근거로 ‘공인된 원문(Forma Recepta)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고 내세우셨더군요.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는 것은 AD 200년의 이레니우스 본문으로부터 공인된 원문 사이에 있었던 12개의 본문 중 9개에는 빠져 있다는 뜻일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사도신경의 최종 텍스트인 ‘공인된 원문’에 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공인된 원문’엔 없으나 12개의 본문 중 한 두 개에만 그 조항이 들어 있다면 현 교수님의 말씀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된 원문(Forma Recepta)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는 현 교수님의 말씀은 공인된 원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예정통합 홈 페이지 ‘목회자료’에 올라 있고, 92회 총회 때 총회장이 공표한 사도신경 재번역의 해설입니다.<sup>29)</sup>

“...이 같은 첨가와는 달리 ‘지옥으로 내려 가셨다가’라는 말은 오히려 생략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교단간의 신학적 해석이 다르고 논쟁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단락은 교회연합을 위하여 새 번역에서는 현행대로 생략키로 하되 난하주로 설명을 하기로 한다.”

이 표현은 750년 이전,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생략되기도 했던 “지옥에 내려가시고”란 문구를 한국교회가 뺀 것이 마치 공인된 원문 이후 논쟁과 오해가 생겼기 때문인 것처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한 세계교회사에서 “지옥에 내려가시고”란 문구 때문에 전쟁을 했거나 교단이 쪼개졌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 상식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범죄의 가능성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법이 있다면 악법이겠지요. 마찬가지로 “교단간의 신학적 해석이 다르고 논쟁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사

29)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홈페이지(<http://pck.or.kr>)의 ‘목회자료’ 항목 12번에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재번역’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해설서가 2007년 9월 18일자로 올려져 있다.

도신경의 한 구절을 임의로 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장 통합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세계 교회 중 단 몇 개라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도신경의 “지옥에 내려가시고”를 삭제했어야 합니다. 물론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 정도 이유로 역사적이고, 공인된 사도신경을 훼손해서도 안 되겠지만 말입니다. 때문에 예장통합에서 “지옥에 내려가시고”란 문구를 뺀 이유로 교회연합을 든 것은 매우 옹색한 변명이라 하겠습니다. 평소엔 그렇게 법조문과 신학적 해석의 자구 하나에 집착하는 신학자들과 교단이 논쟁과 오해의 소지만으로 역사적인 사도신경에 칼질을 하다니요! 온전한 사도신경을 가르쳐야 할 의무를 지닌 한국 신학자들의 직무유기가 이 대목보다 더 크기도 어려울 듯 싶습니다.

저도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버전을 확정하기까지 교단 사이에 진통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복원에 반대한 측과 찬성한 측의 입장이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저는 한국교회에서 100년이 넘도록 이 부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왜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우리말 사도신경에서 삭제되었는지에 대한 역사를 소상하게 남기지도, 발굴하지도 못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장통합에서 이재철 목사님의 『성숙자반』에서 문제를 삼은 부분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나마도 절반은 이재철 목사님의 주장이 아니라 다른 신학대학 교수님의 주장에 동의한 부분을 문제 삼았지요. 그런데 예장통합은 전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불신자로 죽은 육영수 여사, 박정희와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을 위해 한국교회 대표로 기도하거나 조가를 부른 한경직 목사님, 강신명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과 교회의 찬양대, 권오성 목사님 등의 행동에 대해서는 왜 아직까지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분들의 기도 행위도 이단에 해당하는지, 100주년기념교회는 작년 10월에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질의를 드렸습니다. 가부간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시오. 그래야 예장통합이나 현 교수님의 의도가 순수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겠습니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 교수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2010.8.)

##### 5) 예장통합 ‘양화진외국인모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성명)서 참여 요청’(2011.7)에 대하여

예장통합 총회는 2011년 7월 21일, 94차 총회에서 양화진 대책위원회에 부여한 과제인 양화진 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양화진 외국인모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성명)서 참여 요청’이라는 공문을 만들어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회의 일부 이사들에게 보냈다. 이 공문은 김정서 총회장과 박위근 양화진문제대책위원장 명의로 발송되

었는데, 목적은 양화진 문제 해결 방안을 성명서로 작성하여 100주년협의회 이사 명의로 발표하자는 것이었으며, 성명서 초안을 첨부했다.

성명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100주년협의회가 양화진선교사묘원의 관리를 100주년기념교회라는 특정 교회에 전권 위임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리권을 회수하라, 둘째, 100주년기념교회는 외국인선교사묘원의 관리권을 한국교회에 반환하라, 셋째, 유니온교회의 예배처소를 선교기념관 안에 마련하라, 넷째,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묘원을 떠나고 명칭을 변경하라, 다섯째, 예장통합은 양화진 관리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기초를 마련하는 일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등이다. 이는 그동안 예장통합이 여러 차례 주장한 것으로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 역시 수차례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해 왔다.

이 성명서 초안의 더 중요한 문제는 절차 및 형식에 있다. 즉, 예장통합은 성명서(초안)를 자신들이 임의로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00주년협의회 이사들이 작성한 것처럼 명의를 도용했으며, 이마저 일부 이사들과 임기만료로 이미 퇴임한 이사에게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100주년협의회 이사진의 내분을 유도하고 있다. 이 같은 행태는 한국교회의 장자교단을 자처하는 예장통합의 위상과 권위에 전혀 맞지 않는 부끄러운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예장통합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100주년협의회 정광택 이사가 공문 발송의 부당함에 항의하고 성명서 초안 내용의 진실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이 공문을 발송한 김정서 총회장과 박위근 양화진문제대책위원장에게 공개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 중 김정서 총회장에게 보낸 편지로 진실 규명을 대신한다.

#### 예장통합 총회장 김정서 목사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예장통합 소속 온누리교회 장로이며 재단법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이사 정광택 장로입니다. 양화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위원장으로 계시던 작년 7월 초에 양화진 문제로 공개서한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지난 7월 21일,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일부 이사들에게 보내신 “양화진 외국인묘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성명)서 참여 요청”이란 공문 때문입니다.

이 공문을 보면서 정녕 이것이 8000여 교회와 290여 만 명의 교세를 자랑하는 예장통합 총회가 작성한 것인가 싶습니다. 신앙은커녕 상식적이지도 못한 내용의 공문을 일개 교



회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임을 자랑하는 교단에서 작성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람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안서에서 서명을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미 본 협의회가 발행한 『양화진의 진실』 I, II에서 그 허구성을 상세하게 밝혔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첫째, 예장통합 총회는 공문에 첨부한 제안서가 마치 협의회가 작성한 것처럼 협의회의를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협의회가 작성한 것처럼 했으면서도 협의회 이사진을 양분하여 이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진 시정잡배나 하는 짓거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제안을 한다면 왜 모든 이사들에게 서명하라고 보내지 못합니까?

둘째, 이 괴문서(제안서)엔 협의회 임기 만료된 김삼환 목사님과 길자연 목사님의 이름이 버젓이 이사로 올라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등기부에 협의회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의 이름을 누락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예장통합 총회가 이 제안서로 협의회를 반목하여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협의회는 이제까지 한 번의 예외 없이 100주년기념교회와 양화진 문제에 대해 재단법인 법과 정관에 따라 합법적인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 참석해서 그 결정을 내린 이사들에게 “그게 아니었다”는 내용을 써서 보내며 여기에 서명을 하라니요? 더군다나 출석교인 5000명이 넘는 100주년기념교회를 향하여 예배당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니요? 교회 이름을 바꾸라는 내용에 서명을 하라니요?

예장통합 총회가 소속된 교회에게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 명칭을 변경하고 그 소명지를 떠나라는 권고를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예장통합 소속이 아닌 교회를 향해 교회 이름을 바꾸고, 교회를 아예 옮기라는 요구를 버젓이 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이 좋으면 혼자 하실 일이지 어떻게 협의회 일부 이사들에게까지 그런 내용을 공문에 첨부하여 보내 서명을 하라고 하십니까?

예장통합 총회는 100주년기념교회를 향해 교회를 옮기라 말라 할 아무런 자격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100주년기념교회가 예배처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마포구가 소유하고 있는 합정동 142번지에 위치합니다. 양화진외국인선교사모원 경계밖에 있습니다. 100주년기념교회는 이 건물(양화진홍보관)을 신축하여 마포구청에 기부채납했습니다. 때문에 100주년기념교회가 양화진홍보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문제는 전적으로 교인들과 마포구청의

소관이지 증빨나게 예장통합이 나설 사안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사실은 수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협의회가 발간한 『양화진의 진실 I』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선교기념관을 유니온교회의 예배처소로 마련하라는 주장도 어불성설입니다. 선교기념관을 종교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마포구청은 물론 국무총리실 감사에서 이미 불가하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양화진 문제에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다 아실 수 있는 이야기를 예장통합 총회나 양화진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가 모를 수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기념관에 유니온교회 예배처소를 마련하라고 우기는 것은 예장통합 총회가 대한민국의 현행법을 무시하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장통합 교단은 국회의원처럼 면책특권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예장통합 교단본부는 주한미대사관이 나 외국 대사관들처럼 치외법권 지대에 존재하십니까?

저는 김정서 총회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언더우드의 후손이라고는 하나 자신의 비즈니스를 위해 한국에 와 있는 피터 언더우드(언더우드 4세) 씨가 한국교회의 원로인 고 정진경 목사님과 김경래 장로님,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과 협의회 정용섭 사무총장님을 서울지검과 고등법원, 그리고 재정신청 등의 민형사상 고소를 통해 기어이 옥살이를 시키려는 행동을 저지를 때, 한국교회에서 단 한 분의 목회자라도 이런 부도덕하고 불신앙적 행위를 야단친적 있습니까?

양화진 문제에 그토록 관심이 많은 예장통합에서는 언더우드 4세와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악랄할 정도로 거둬거둬 검찰과 고등법원에 기소한 행동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선교사 후손이 한국교회의 원로들에게 수감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날 뿔 때는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던 예장통합이 유니온교회 문제에 대해서는 어찌 대한민국의 실정법까지 어겨가면서 선교기념관에 예배처소를 마련하라고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토록 오랜 세월동안 한국교회의 성지를 방치하였던 예장통합이 언제부터 100주년기념교회나 유니온교회 문제를 비롯한 양화진에 그토록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까? 관심은 고맙지만 왜 그 관심은 불의와 악행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유독 유니온교회 문제에 만 애정을 보이는 것입니까?

이번 괴문서에서도 예장통합은 이재철 목사를 ‘이재철씨’로 불렀더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작년에도 분명하게 그것의 부당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입만 열면 한국교회의 장자 교단 운운하는 예장통합은 어찌자고 이재철 목사를 굳이 이재철 씨라 부르는 것입니까? 껌죄를 그렇게라도 적용하시겠다는 것입니까?

100주년 기념교회를 창립한 것도, 양화진 관리를 맡긴 것도, 100주년 기념교회가 정관을 제정하여 보고했을 때 그것을 만장일치로 인준한 것도 협의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장통합은 어쩔 수 없이 담임목사를 수락하여 충성스럽게 일하고 계시는 이재철 목사님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은 행동을 계속하는 것입니까. 대체 이재철 목사님께서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습니까? 양화진 문제에 대해 꼭 해야 할 이야기와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협의회나 협의회 현 이사장인 강병훈 목사님께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장통합 총회는 이재철 목사님을 불법적으로 면직시키고, 이단혐의 씌우려다 실패하니 ‘이재철 씨’라고 부르며 그 분의 국내외적인 목회활동을 못하도록 해당 교회에 압력을 넣는 등의 활동을 집요하게 하는 것입니까?

예장통합 총회장님은 하나님께 목사로 부름 받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총회장으로 헌신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예장통합은 ‘이재철 씨’라고 부르며 왕따를 시켜버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집요하게 목회방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재철 목사님을 ‘이재철 씨’라고 부르며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못하는 분들이 과연 목회자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장통합이 분명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을 ‘이재철 씨’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예장통합의 대내외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되는지 정녕 모르십니까? 그것 때문에 교단에 소속된 교회의 교인들 중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장통합 기관지인 <한국기독교공보>는 7월 19일자 기사에서 협의회가 임기 만료된 길자연 목사님(합동)과 김삼환 목사님(통합)이 퇴임하였고, 그 자리를 대신해 오정현 목사님(합동)과 본인이 새 이사에 선임되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양화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7월 13일에 열렸던 회의에서 “임기가 만료된 7명의 이사 중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2인이 제외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모았지요.

여기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2인은 김삼환 목사님과 길자연 목사님을 자칭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삼환 목사님의 경우는 1988년 이사로 선임되고 난 뒤 30회가 넘는 정기 및 임시이사회에 한 번도 본인이 직접 참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장통합 총회장으로 계실 때는

협의회 이사의 신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협의회의 정체성과 그 동안의 협의회 이사회의 결정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성명서(2009년 5월 9일)를 발표하였습니다.

만약 예정통합 총회에서 2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이사회를 참석하지 않았고, 총회의 정신과 결정을 부정하는 성명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한 이사가 있다면 처리를 어떻게 하였을까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분이기에 때문에 이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음은 물론 협의회를 부정하는 데도 또 재신임했겠습니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분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협의회 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협의회는 김삼환 목사님의 책임을 묻지 않고 인내하면서 임기만료를 조용히 기다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길자연 목사님 또한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양화진 문제가 정점으로 치달던 2009년에 한 두 차례밖에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기총 대표회장이 되기 위해 금권선거를 자행한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회는 임기만료 때까지 이 문제가 조용하게 처리되길 기다렸던 것입니다.

75살의 늙은 장로가 감히 김정서 총회장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 손자 손녀 또래의 교회 청년들이나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이 공문서를 예정통합 총회가 보냈다는 사실을 혹여라도 알게 될까 심히 걱정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예정통합이 협의회 이사회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 받을 일을 즉각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는 언론에 공개하려는 목적으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신으로 보내드립니다. 김정서 총회장님의 인격과 현명한 결정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기도해 주시고, 바쁘시더라도 저의 서신에 대해 어떤 모양으로든 해명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섬기시는 총회와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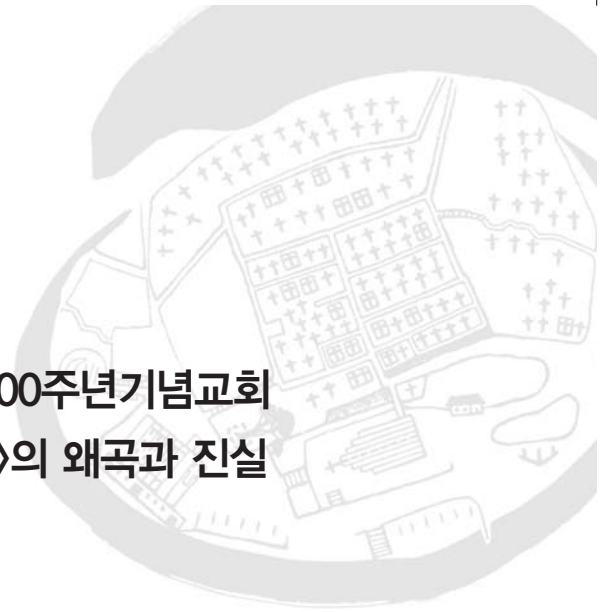
2011. 8. 16.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이사 정광택 장로 올림



---

## 2 예장통합이 발행한 <양화진 100주년기념교회 사태에 관한 보고서 (2010.9)>의 왜곡과 진실



---

2010년 9월에 열린 예장통합 95차 총회는 <양화진 100주년기념교회 사태에 관한 보고서>를 '양화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명의로 발간하여 총대들에게 배포했다.<sup>30)</sup> 총회에서는 차광호 목사가 대책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김정서 총회장이 총대들의 질의에 대해 응답하는 순서를 가졌다. 김정서 총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의 이사회 운영에 문제가 있으며, 100주년협의회가 막대한 돈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

---

30) 총회 이후에도 예장통합은 이 보고서를 교인들에게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화진 문제를 왜곡 선전했다. 예장통합 서울서노회는 2010년 11월 8일, 마포교회에서 서노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이슬람을 경계하라'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노회는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와 맞지 않는 <양화진 보고서>를 참석자 전원에게 배포했으며, '양화진 100주년기념교회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2부 행사를 열어 차광호 목사가 나와 보고서 내용을 설명했다.

다'고 말했다.

이날 배포된 보고서는 '이재철 씨와 그 주변 인사들의 그릇된 주장에 대하여'라는 항목 아래,

- '1. 이재철 씨에 대한 고발사건이 무혐의로 기각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2. 유니온교회를 일시적으로 맡긴 것이지 영구적으로 맡긴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 '3. 사유화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4. 유니온교회가 묘지를 매매했다고 주장하며 선교사 후손들을 모욕하는 행태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글에서 예장통합은 '이재철 목사가 벌금형을 받았고, 선교기념관의 건립 목적은 유니온교회의 영구적 예배처소이며, 100주년기념교회가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사유화하여 독점하고 있으며, 유니온교회가 양화진 묘지를 매매한 것은 관행으로 관리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지금까지의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서울강북지역노회협의회가 제작하여 2009년 총회에서 배포한 <양화진 100주년기념교회 사태에 관한 보고서>에 실렸던 글들과 2010년 7월 22일 열린 '예장통합 양화진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주최한 보고회'에서 발표된 장로회신학대학 임희국 교수('양화진의 역사적 의미')와 현요한 교수('소위 '호칭 장로, 호칭 권사' 제도 및 '죽은 자를 위한 기도'론에 대하여)의 논문도 함께 실렸다.

이러한 예장통합의 주장에 대한 진실을 살펴본다.

## 1. 유니온교회가 쫓겨났다는 주장에 대하여

### 1) '유니온교회가 쫓겨났다'는 예장통합의 주장

(녹취록/차광호 목사) 양화진 유니온교회의 문제의 발단은 유니온교회를 양화진묘역에서 쫓아낸 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100주년기념협의회나 기념교회 쪽에서는 유니온교회를 쫓아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예배시간을 변경했다고 얘기합니다. 쫓아낸 주체는 마포구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두 교회가 다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녹취록/차광호 목사) 100주년기념교회는 세워지면서 유니온교회의 장소를 빌려서 쓰기로 요청...김경래 장로는 '100주년교회는 주일예배 시간을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지 친교실에서, 서로 논의와 동의 없는 식사와 음료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들어간 것...이재철 목사는 '유니온교회에 오전 9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주일예배 시간과 화요일 및 목요일 성경공부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들어간 것...

(녹취록/차광호 목사) 그런데 1년 지나면서 100주년기념교회가 부흥하자 2007년 8월 5일자로 유니온교회는 오후 4시반에 예배드려라, 우리가 오전의 모든 예배시간을 다 사용하겠다고 말하면서 문제가 된 것...그래서 2007년 8월 5일 이후부터 유니온교회는 기념관에 들어가는 것을 100주년기념교회가 막아...결국 쫓겨난 결과가 된 것.

(보고서 9쪽) ...그 당시 양화진 선교기념관의 사용권과 관리권은 유니온교회가 다 가지고 있음이 분명 ...100주년기념교회의 사정으로 (교회 건축 예정이었는데 교회 건축을 하지 못함), 급기야는 유니온교회에 예배시간을 변경하라고 통고...서울 유니온교회는 1986년부터 2007년까지 22년 동안 양화진 선교기념관에서 오전 9시 30분~12시 30분까지 예배드려온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잠시 사용하겠다고 들어온 100주년기념교회가 법적 주인 행세를 하며 11시 예배를 드리고 유니온교회 측에는 예배시간을 오후 4시 30분으로 옮기라고 한 것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행위입니다.

## 2) '유니온교회가 쫓겨났다'는 주장의 진실

### ① 100주년기념교회의 설립 배경

양화진 문제의 발생 원인을 알려면 2005년을 전후한 시기, 즉 100주년기념교회가 창립된 시기로부터 약 3년 동안,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선교기념관을 두고 발생한 정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100주년협의회는 유니온교회에게 1986년 10월부터 선교기념관을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이와 함께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성지답게 관리해야할 책임도 부여했다.<sup>31)</sup> 그러나 이후 양화진선교사묘원은 절두산 천주교성지와는 전혀

---

31) 이에 대해 규정하고 양측이 서명한 문서는 없다. 그러나 1986년 6월부터 10월 사이에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즉 협약제안서 및 양화진관리규정(안)에 의하면, 유니온교회는 선교기념관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대신 묘원을 한국기독교의 성지답게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항목이 들어 있다. 이를테면 유니온교회에게는 양화진묘원을 제대로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었다.('Suggested Agreement' (1986.6.)/'Regulations for the Maintenance of the Korean Christian Centennial Memorial and Foreigners' Cemetery Park(draft)'(1986.7.23))



달리 외국인들의 공동묘지로 전락했다.<sup>32)</sup>

100주년협의회는 유니온교회가 묘원과 선교기념관의 사용과 관리 책임을 지고 있던 1986년 이후에 묘원의 소유주로서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성지답게 관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비와 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했으나,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교회 후원과 성도들의 헌금이 크게 줄었다.<sup>33)</sup> 따라서 100주년협의회는 수시로 성도들의 헌금과 독지가들의 기부, 국가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유니온교회는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일부 특정 선교사 묘지를 제외한 다른 선교사의 묘지를 방치하였고,<sup>34)</sup> 법에 의해 매장이 금지된 양화진에 예약까지 받는 등등의 불법을 자행했다.<sup>35)</sup> 이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100주년협의회는 2003년 9월 임시이사회를 열고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용인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을 전담 관리할 기관으로 “100주년기념교회”를 창립’하기로 의결하였던 것이다.

## ② 유니온교회와의 갈등 발생 이유

100주년협의회는 유니온교회의 선교기념관 사용을 오랫동안 인정하였다.<sup>36)</sup> 2005년 4월 당시 100주년협의회가 유니온교회에 선교기념관 사용 ‘허락’을 구한 것은 유니온교회가 선교기념관의 ‘주인’이거나 ‘영구적’인 권리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선교기념관을

---

32) 2000년대 초반 언론에는 양화진이 버려져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기사가 많이 보도되었다. (‘선교기념관, 외국인묘지 황폐화’, 신문기사(1994.7.8)/김성순, <한국기독교공보> ‘독자투고-절두산 성지를 둘러보고’, 2001.1.6)/김인수, 추석과 양화진, <한국기독교공보> 주간논단(2001.10.20)/김보현, <한국기독교공보> ‘양화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2003.8.16)

33) 한국기독교계의 양화진을 위한 헌금과 성금은 2000년대 들어 급감했다.

34) 신호철은 양화진묘지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땅에 복음 전파 뿐 아니라 개화를 위해 초석을 놓았던 그들의 묘소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분들을 제외하면 주인 없는 무덤이 그런 것이려니 싶게 황폐한 무덤이었다.’(신호철, <이 땅에 떨어진 밀알들-양화진 선교사>, 2004, p.332)

35) 100주년기념교회가 현장조사를 통해 작성한 목적부에 의하면,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묻힌 417명 중 1986년부터 2005년 7월까지 42기의 묘지가 새로 만들어졌다. 이 묘지들은 기본적으로 불법묘지이다. 또 유니온교회는 이외에도 약 40기의 묘지를 예약하고 그 대금을 미리 받았다.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 안장자 현황(2010.7.1)/양화진묘지 사전 매매 리스트 및 영수증(2005.12)

36) 유니온교회가 100주년협의회에 보낸 서신(2005.4.26), 100주년협의회가 유니온교회에 보낸 서신(2005.4.29)

사용하게 된 정황<sup>37)</sup>이 어떠한지 선교기념관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당시의 현실적 상황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100주년협의회와 유니온교회의 갈등은 100주년기념교회 창립 2년 후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창립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전적으로 유니온교회가 100주년협의회 소유자로서의 권리와 100주년기념교회의 관리권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창립 초부터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주인과 관리자로서 불법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노력했다. 이를 위해 100주년협의회는 유니온교회에게 100주년협의회의 주인 됨을 인정할 것과 지금까지 저지른 불법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유니온교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묘지를 파헤치려 한다는 헛소문을 퍼트리고,<sup>38)</sup> 100주년기념교회의 예배시간을 침범하고<sup>39)</sup> 관공서가 발행한 공과금 통지서를 가로채는 등의 행위<sup>40)</sup>를 저질렀다. 특히 유니온교회는 100주년협의회가 100주년교회에 양화진선교사묘원의 관리를 위임<sup>41)</sup>한

- 37) 건립 당시 선교기념관의 용도는 ‘양화진의국인묘지의 관리건물’로서 소유주인 100주년협의회가 입주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2층 강당 겸 예배당은 각종 묘지행사 및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고정된 예배처소와 사무실이 없어 옮겨다니던 유니온교회(언더우드)의 부탁을 받은 한경직 이사장이 강원룡 목사 등 이사들의 만류를 무릅쓰고 선교기념관에서 주일예배를 드리도록 배려했다.(정진경, 강병훈, 최창근, 김경래, 사실확인서(2008.10.10))
- 38) 유니온교회는 2005년 말부터 국내외 언론과 재미 한국선교사협회 및 유족들에게 100주년협의회가 선교사 묘를 이장하라고 할 것이며 일방적으로 선교사들의 매장을 불허한다는 등의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음해하는 각종 유언비어를 퍼트렸다.(유니온교회와 100주년기념교회 사이에 오간 메일(2007.3)/지강유철, ‘유니온교회 문제, 그게 이렇습니다’, <버들꽃나무사람들>2009.8)
- 39) 2005년 9월 11일 주일에 유니온교회는 100주년기념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복음송 가수가 리드하는 단체에 선교기념관 공연을 허락해주고 이 사실을 주일 전날에야 알려주어 100주년교회가 예배를 예정보다 30분 정도 일찍 끝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 40) 이재철 목사가 유니온교회에 발송한 서신(2005.11.15) 5항에는 ‘지난 10월 7일 보아틴 목사님은 선교기념관에 부과되는 전기요금 등의 고지서를 100주년기념교회에 인계하였습니다. 그러나 11월에 접어들어 유니온교회는 대한민국 관공서가 100주년협의회 앞으로 발부한 공적고지서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잘못을 범했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 41) 100주년협의회는 유니온교회에게 100주년교회에게 양화진의 관리를 위임했음을 통보하는 내용의 공문을 수차례 보냈다.(협의회, 양화진선교사공원묘지 운영관리의 건(기백 05-017/2005.10.12)/협의회, 유니온교회에 보내는 결의사항(기백05-018/2005.11.9)/협의회, 임시이사회 회의록-결의사항의 재확인(05.11.30)/협의회, 결의사항 통보(기백 05-020/2005.12.6)

것이 소유자로서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sup>42)</sup> 100주년기념교회와 100주년협의회를 음해하는 내용의 서신을 국내외 기독교계 인사들과 언론사에 배포하여 갈등을 증폭시켰다.



100주년기념교회가 양화진선교사묘원 벽에 부착한 안내 간판. 이를 보더라도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유니온교회와 함께 양화진에서 공존하며 양화진 성지화를 추진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일관되게 유니온교회의 선교기념관에서의 예배를 보장<sup>43)</sup>했으며, 주변의 안내간판을 만들 때에도 두 교회를 병기함은 물론 두 교회가 양화진에서 협력하면서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성지로 가꾸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 ③ 100주년기념교회 예배당 건축 무산 논란의 진상

유니온교회는 100주년기념교회가 처음에는 양화진선교사묘원 부근에 교회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기념관을 ‘임시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계획이 무산

42) 유니온교회는 100주년협의회에 소유권을 부정하고 음해하는 내용의 공문을 여러 기관과 개인에게 발송했다.(유니온교회(Richard Briggs), 100주년협의회에 보낸 서신(2005.9.20)/유니온교회(Richard Briggs), 협의회 이사들에게 보낸 서신(2005.10.21)/유니온교회(Richard Briggs), ‘협의회 강원용 이사장에게 보낸 편지’(2005.11.15))

43) 이재철 목사는 2005년 11월 보낸 편지에서 유니온교회의 예배시간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철 목사는 이 서신에서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선교기념관은 명백하게 100주년협의회에 소유로 주인과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임을 명확히 말하고 있다. 그러나 유니온교회는 답신에서 100주년기념교회를 관리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재철 목사, 유니온교회에 발송한 서신(2005.11.15)/유니온교회, 이재철 목사에게 보낸 답신(2005.11.15))

되자 태도를 바꿔 선교기념관에서 ‘영구적으로’ 예배드리겠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때는 100주년기념교회가 창립되기 전이었으므로 100주년기념교회가 예배당 건립을 추진했다는 주장은 성립조차 되지 않는 주장이다. 다만 100주년협의회에서는 양화진선교사묘원에 인접한 낙후된 건물들이 양화진선교사묘원과 마포구청이 조성한 양화진공원의 경관과 안전을 해치므로 이곳을 마포구에서 공원용지로 매입하면 100주년협의회가 ‘기독교 선교문화센터’ ‘기독교선교박물관’ 등을 건립하려는 계획을 갖고 정부에 청원한 적이 있었다.<sup>44)</sup>

100주년협의회는 100주년기념교회 창립 준비가 본격화된 2005년 4월 당시에도 양화진공원 확장지역에 기독교선교박물관 등을 지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100주년기념교회가 창립되고 선교박물관이 지어지면 이곳을 예배당으로 사용할 계획도 갖고 있었다. 때마침 마포구청에서도 2005년 1월, 양화진성지화팀을 구성하고 양화진선교사묘원 일대를 전 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으로 만드는 일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양화진선교사묘원 부근 낙후지를 매입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sup>45)</sup>

100주년협의회와 마포구청 양화진성지화팀은 이 낙후지에 ‘다목적 집회관 및 홍보관’을 짓는데 합의하고 이를 추진했다. 그러나 공원용지로 매입한 땅에 다시 건물을 짓는 것은 공원법과 녹지법상 불가하다는 공원녹지과의 유권해석 때문에 그해 8월 19일 마포구청은 건물신축 불가 결정<sup>46)</sup>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다목적 홍보관’을 건립하려는 100주년협의회와 마포구청 양화진성지화팀의 구상은 차질을 빚게 되었던 것이다.

그 이후 마포구청은 2005년 11월 25일, 양화진공원 확장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폐지) 결정’ 입안을 하고, 확장용지의 절반은 공원용지로, 절반은 양화진홍보관 건립용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양화진홍보관은, 2005년 7월 10일 설립된 100주년기념교회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여 짓고 마포구에 기부 채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건립이 본격화되었다. 2006년 3월에 마포구청과 100주년기념교회 사이에 이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그해 9월 착공하여 2008년 3월 26일 준공하였다.

---

44) 100주년협의회, 1999년~2003년 정기이사회 회의록

45) 이준범, 〈행정예이전시로 마음을 드래그하라〉, 2009, 이매진(희망제작소), pp.103-121

46) 마포구청 공문(공원녹지과-5769/2005.8.19)

#### ④ 선교기념관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과정

200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100주년협의회·100주년기념교회와 유니온교회 사이의 갈등 상황은 2007년까지 계속되었다.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인내를 갖고 유니온교회의 협조를 기다렸으나 끝내 무산되었다. 오히려 묘원의 불법적 관리 실태를 시정하고 성지답게 가꾸려는 100주년기념교회의 노력을 유니온교회는 방해했다. 이에 100주년협의회는 ‘양화진의 주인’으로서 보다 체계적으로 묘원 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2007년 4월, 유니온교회에 공문을 보내 ‘8월 5일부터 유니온교회의 주일예배를 오후 4시 30분으로 옮겨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니온교회는 성도들에게 8월 5일 새벽부터 나와 강대상을 점령할 것을 광고<sup>47)</sup>하는 한편 국내외 언론사에도 취재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마포경찰서에서는 양화진선교사묘원에 경찰을 보내 8월 5일에 질서를 유지해 달라는 유니온교회 측의 요청<sup>48)</sup>이 있었음을 알리며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 했다.

8월 5일을 기해 유니온교회가 일을 꾸미고 있음을 알게 된 100주년기념교회는 어떠한 경우라도 예배당에서 몸싸움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선교기념관의 잠금장치를 교체했다. 사전에 유니온교회 측에 잠금장치 교체 계획을 알렸음은 물론이다. 당일 양화진 선교기념관에는 유니온교회 교인들이 새벽부터 나왔으나 선교기념관에는 진입할 수 없었다. 100주년기념교회 성도들이 밤을 새워 선교기념관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날 유니온교회는 밖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 사건은 당일 KBS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다. KBS는 “역사의 땅 ‘양화진 외인묘지’ 법적 다툼”이라는 리포트에서 피터 언더우드(언더우드 4세)의 “유족들은 이후에도 이 땅에, 이 묘에 묻어야 되는 입장인데 이걸 막아버렸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인터뷰를 내보냈다. 유니온교회의 담임목사 보아텡은, “우리들은 소유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장소를 사용할 권리입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이 우리에게 주었고, 또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100주년기념교회와 유니온교회 모두 선교기념관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직접적 이유는 다른 곳에서 발생했다. 당일 사건을 취재하러 온 한 외신기자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

47) 이러한 사실은 유니온교회에 출석하는 한국인 성도가 100주년기념교회에 사전에 전화로 알려준 것이다.

48) 2010년 12월 열린 양화진 소유권 문제 조정을 위한 회의(재판장 참석)에서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인요한(존 린튼)은 당시 마포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음을 직접 시인했다.

유니온교회 관계자로부터 '선교기념관의 원래 용도는 예배당이 아니라 묘지관리소'라는 말을 듣고<sup>49)</sup> 이에 대해 관할 관청인 마포구청에 문의했다. 이에 마포구청은 선교기념관에서 예배로 인해 민원과 말썽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여 그때까지 관행으로 묵인하던 선교기념관에서의 예배행위를 금지하기로 정하고 2007년 8월 16일자 공문을 통해 선교기념관에서의 예배행위 금지를 통보<sup>50)</sup>했다. 이에 따라 2007년 8월 20일 이후에는 100주년기념교회나 유니온교회 모두 선교기념관에서 주일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은, 당시 마포구청의 이 조치에 대해 100주년기념교회는 물론, 유니온교회도 자발적으로 승복하고 예배처소를 옮겼다는 점이다.<sup>51)</sup> 따라서 '쫓겨난 것'이라는 유니온교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결코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의도한 바도 아니었다.

현재 양화진 선교기념관은 설립 당시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다. 선교기념관 1층은 100주년협의회 등의 사무실로, 2층 예배실은 모원 유가족 관련 행사와 추모예배, 양화진목요강좌 등 공익 목적의 행사 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주 중에는 모원을 찾은 참배객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2층 예배실을 한국 교회를 위해 완전 개방하고 있다. 주일에는 미래에 양화진선교사모원을 책임질 100주년기념교회 청소년들의 교육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100주년기념교회의 주일예배 처소는 양화진선교사모원 밖(합정동 142-1)에 있는 양화진홍보관이다.

49) 이에 대해 당시 유니온교회 묘지관리책임자였던 이강필은 2010년 9월 1일 열린 '양화진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 증인신문에서 변호인의 "당일 외신기자에게 이 선교기념관은 묘지관리소이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종교시설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원래 건축허가서에 관리소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지방법원, 2010가합4325 소유권말소등기 증인신문조서)

50) 마포구청은 '외국인묘지공원 관리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녹지환경과-13564)을 통해 "건축물은 공원관리사무실 용도로 건축 허가되었으나 교회 및 예배 용도로 사용 중에 있어 지역주민 및 각종 언론 등으로부터 문제화 되고 있기에 통보하오니 2007.8.20일한 당초 허가된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기 바란다"고 통지했다. (마포구 공문/녹지환경과-13564/2007.8.7)

51) <한국기독교공보> 2007년 8월 21일자 기사('마포구청, 양화진 두 교회, 선교지에서 퇴거하라')는, '이러한 마포구청의 퇴거 권고에 대해 양측 교회는 모두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라고 보도했다.

## 2. 선교기념관의 건립 목적에 대하여

### 1) 선교기념관 건립 목적에 대한 예장통합의 주장

(보고서 32쪽) 한경직 목사님은 1983년 11월 13일 주일 낮 예배 설교에서 ‘은혜와 보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는 서울에 외국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있으나 예배당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서 이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당을 하나 지으려고 힘쓰는 중입니다. ...” 이렇게 설교하신 분이 일시적으로 허용하신 것입니까?

(보고서 33쪽) 마포삼열 선교사님의 셋째 아들이신 마삼락 박사님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100주년기념교회의 목사에게 조용히 호소하려는 것입니다. 법적 권리라는 명목 하에서가 아니라 원래의 100주년위원회가 의도했던 정신에 따라서, 원래 서울유니온교회의 회중을 위해 의도되었던 대로 건축된 그 건물을 떠나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모지에서 떨어진 다른 장소에 그들 자신의 교회를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100주년위원회의 의도는 결코 서울유니온교회가 선물로 받은 그들의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어떤 교회를 설립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녹취록/차광호 목사) 이 설교 이후에 한경직 목사께서 1984년 4월 27일 내무부 장관 및 건설부 장관에게 보내는 서신...거기에서 나온 답신...“외국인 이름으로는 건설할 수 없고, 국내 이름으로는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유일한 박사님과 한경직 목사님께서 100주년협의회를 만드시면서 모든 것을 기증도 하고 그래서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녹취록/차광호 목사) 당시 한경직 목사님을 가장 가까이 계신, 협력하면서 도와셨던 립인식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우리가 100주년 맞았으니 과거 선교사들과 지금 선교사들 와있는데 돕자. 우리끼리만의 잔치는 하지 말고 이 잔치 속에 선교사들에 대한 보답을 하려면 양화진에 그 예배실 하나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시작됐고...목사님이 누누이 말씀하는 것을 내가 직접 들었고, 그 어른의 생각도 알고 있으니...”

(녹취록/차광호 목사) 피터 언더우드는 이렇게 간청합니다. “...희망사항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화진모지관리는 원래대로 1985년에 이루어졌던 정신 그 마음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둘째는 외국인유니온교회는 계속 영구적으로 기념관에서 예배 볼 수 있게 됐으면...”

## 2) 선교기념관 건립의 목적과 과정의 진실

### ① 선교기념관 건립 과정

선교기념관은 1985년 6월 착공하여 1986년 10월 10일 헌당식을 가졌다. 건립이 처음 논의된 것은 100주년협의회가 발족(1981.1.27)되고 한경직 목사를 총재로 선임(1982.1.26)하는 등 조직을 정비한 직후였다. 당시 한경직 목사는 김경래 장로를 사무국장으로 위촉하고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입안토록 했다. 김경래 장로를 중심으로 한 사무국에서는 1982년 중반에 1984년 선교대회 개최, 인천 선교기념탑 건립, 실로암 안과병원 설립, 용인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 건립 등과 함께 양화진선교사묘원에 선교기념관을 짓는다는 사업계획 초안을 세웠다. 당시 100주년협의회는 사무실이 없어 한 독지가의 도움으로 임시 사무실을 얻어 사용하는 실정이었으므로 선교기념관에 사무공간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100주년협의회는 1982년 10월 경, 초안을 토대로 양화진선교사묘원에 100주년선교기념관 및 교회 건립 구상을 수립했다.<sup>52)</sup> 100주년협의회는 1983년 9월 6일과 7일에 100주년 기념사업을 확정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어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들의 공로를 기념하기 위한 선교기념관을 세워 주한 외국인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다.’<sup>53)</sup>는 결론을 내렸고 이후 100주년협의회 제4차 총회(1984.1.27)에서 확정되었다. 한편, 한경직 목사는 한미수교 100주년기념식 행사장에서 원일한 박사로부터 유니온교회가 양화진선교사묘원에 예배당을 짓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sup>54)</sup>

선교기념관 건립 계획이 확정된 후 100주년협의회는 내무부장관과 건설부장관,<sup>55)</sup> 국회 조찬기도회장에게 공문<sup>56)</sup>을 보내 양화진 묘원 내에 건축허가 및 소유권 취득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청원했다. 이에 대해 국회전문위원실에서는 ‘공원묘지 내에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은 정부의 외국인 국내 토지 소유규제 방침에 따라 어려운 실정이므로, 내국인 명의로 토지소유권을 확보, 등기한 후 기념관 허가를 신청하면, …교회 전용 건물 아닌 사무실, 휴

52) 100주년협의회, 리플렛 참조.(1982년 10월 10일 발행한 리플렛의 사업소개 표 속에 수록됨.)

53) 100주년협의회, 소식지 <100주년> 6호(1983.9.26. 발행), pp.6-7

54) 원일한, 선교기념관 준공 헌당식 감사의 말씀(1986.10.10), <한국기독교100주년사업총람>, p.423

55) 100주년협의회,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 협조 사항(청원서:1984.4.27)

56) 100주년협의회, 건축허가 및 소유권 취득에 관한 협조(기백 제84-92호:1984.4.30)



계실, 전시실, 집회실 겸용 공원시설의 설립이 가능'하다는 답신<sup>57)</sup>을 보냈다.

경성구민인모지회는 1985년 2월 22일, 양화진선교사묘원을 100주년협의회에 기증하기로 결의하였고,<sup>58)</sup> 3월 4일에는 토지증여증서<sup>59)</sup>를 작성해 전달했다. 이후 100주년협의회는 토지증여행위를 보다 확실하게 매듭짓기 위해 경성구미인모지회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을 제기(1985.4)하여 그해 5월 8일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1985년 6월 선교기념관을 착공하고 16개월만인 1986년 10월 10일 헌당식을 갖고 준공했다.

## ② 유니온교회의 선교기념관 '영구적' 사용권 주장의 허구성

선교기념관 건립 목적 중 하나가 이곳을 유니온교회의 예배처소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음은 맞다. 이는 100주년협의회가 당시 발행한 여러 문건에서 확인된다. 한경직 목사도 영락교회에서 '외국인 선교사들의 공로에 보답하기 위해 유니온교회의 예배처소를 짓자'는 설교를 했다. 그러나 이는 선교기념관 건립 목적 중 하나로서 창립 이후 100년 동안 고정된 예배처소 없이 떠돌아다니던 유니온교회의 요청에 따라 보은 차원의 배려를 한 것이지 유니온교회에 '독점적, 영구적' 예배처소로 제공한 것은 아니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그 어떤 증거도 없다.

반면, 100주년협의회가 유니온교회에게 선교기념관을 '제한적,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했음을 보여주는 문서는 여럿 있다. 그 중 하나가 1986년 6월, 유니온교회가 100주년협의회에 제안한 '협약 제안서(Suggested Agreement)'이다. 모두 6조로 되어 있는 이 제안서는, 100주년협의회는 선교기념관과 외국인묘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유니온교회에 부여하며(1조), 유니온교회가 선교기념관과 묘지의 유지관리를 책임지며(2조),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60일 전 변경요구가 없으면 1년씩 연장되며(5조), 1년 전 일방의 요구로 해지할 수 있다(6조)고 되어 있다. 이 문서만 보더라도 선교기념관 건립 당시부터 유니온교회의 예배당으로 영구히 사용하기로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상임이사 김경래 장로는 이 문서에 대해 "100주년협의회가 당시 이 문서의 독점 사용

57) 국회 내무위원회, 외국인묘지 내 기념관 건립 지원에 대한 진정 처리 결과(1984.5.25)

58) 경성구미인모지회, 회의록(1985.2.22)

59) 경성구미인모지회, 토지증여증서(1985.3.4)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되었다”고 말했다.

1986년 7월, 유니온교회는 ‘Regulations for the Maintenance of the Korean Christian Centennial Memorial and Foreigners’ Cemetery Park(draft)(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현재의 선교기념관을 의미함) 및 외국인 공원묘지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초안))을 새로 제안했다. 이 규정은 모두 1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더우드, 게디스, 사우어 등 유니온교회 대표의 서명이 들어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선교기념관과 묘지의 관리는 100주년협의회가 담당하고(2조), 100주년협의회가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니온교회가 사용하며(4-1조), 유니온교회는 선교기념관을 예배, 선교, 교육의 용도로 사용하되(4-2조), 100주년협의회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6조), 유니온교회는 장소 사용권을 타자에게 재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7조), 건물의 마스터 키는 100주년협의회가 관리하며(9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양측이 협의한 후에 100주년협의회가 결정, 시행한다(15조),라고 되어 있다.

이 규정 초안은 6월에 유니온교회가 제안한 협약안(유니온교회의 독점적 사용안)이 거부되자 100주년협의회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전적으로 인정한 상태에서의 공동사용을 제안했음을 보여준다. 또 100주년협의회가 선교기념관에 입주할 계획이 있었음도 확실하다. 이 문서에는 선교기념관을 유니온교회의 예배처소로 사용한다는 조항은 있으나 이를 영구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은 없다. 그런데 1986년 8월 23일 열린 100주년협의회 1986년 실행이사회 회의록에는 ‘결의사항-4. 선교기념관 관리규정을 승인’했다고 되어 있다. 결국, 이 규정 초안이 100주년협의회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며, 이 문서에 담긴 내용이 선교기념관 건립 당시 양측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1986년 10월 16일자로 작성된 또 하나의 묘원관리규정이 있다. ‘Regulations for the Maintenance of the Korean Christian Centennial Memorial and Foreigners’ Cemetery Park(경성구미인묘지회,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선교기념관) 및 외국인 공원묘지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초안))이 그것이다. 이 규정은 모두 17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7월에 제안되어 8월 승인된 규정 초안과는 그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즉, 100주년협의회는 선교기념관과 외국인묘지의 관리와 운영을 유니온교회에 일임하고(2조), 유니온교회가 선교기념관과 묘지 모두를 사용하며, 100주년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유니온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4조), 유니온교회가 선교기념관의 마스터키를 관리하며(8조), 재산관리를 위한 비용은 유니온교회가 부담(11조)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규정(안) 말미에는 유니온교회 대표 3인의 이름과 서명은 있으나 100주년협의회 측 인사의

서명은 없다. 즉, 이 규정(안) 역시 유니온교회 측이 작성한 것으로 그들의 일방적 주장과 요구를 담은 것이다.

2~3개월 사이의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당시 한경직 목사와 함께 100주년협의회 실무를 담당했던 이들의 증언<sup>60)</su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선교기념관을 100주년협의회 사무실과 유니온교회의 주일예배처소로 공동 사용하기로 한 이후 유니온교회는 한경직 목사에게 교회 사무실과 교인 자녀들의 교육공간이 필요함을 들어 선교기념관 전체를 유니온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선교사들의 헌신에 빛진 마음을 갖고 있던 한경직 목사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강원룡 목사 등 100주년협의회 이사들은 “선교기념관을 원래의 건립 목적대로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며, 유니온교회가 단독으로 사용하면 훗날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반대했으나 한경직 목사의 설득으로 이를 묵인하게 되었다. 그 대신 100주년협의회는 선교기념관을 영구적인 유니온교회의 예배당으로 사용하게 허락한다는 계약문서를 작성하자는 유니온교회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sup>61)</sup>

### ③ 선교기념관 건립의 ‘참 목적’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교기념관은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미래를 향한 응비의 상징으로 건립되었고, 법적인 용도는 양화진의 법적 소유자인 100주년협의회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양화진선교사묘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었으며, 이와 병행하여 한국에서 선교사로 헌신한 이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유니온교회의 주일예배처소로 사용되도록 허락된 것이다. 때문에 선교기념관이 ‘영구적이고 독점적’으로 유니온교회의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예장통합은 증경총회장 림인식 목사의 증언을 빌려 선교기념관이 유니온교회 예배당으로 지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림인식 목사가 한경직 목사를 가장 가까이서 보필했던 분’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이는 매우 피상적이며 일방적인 주장이다. 림인식 목사는 예

---

60) 정진경, 강병훈, 최창근, 김경래, ‘사실확인서(2008.10.10)

61) 현행법상 영구사용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는 사용료의 대가가 없는 사용대차의 법리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민법 613조 제2항은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사용대차의 경우,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사용대차는 종료하고 차주는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반환시기를 약정하지 않고 사용대차를 한 경우에,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13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장통합의 총대로 참석했을 뿐 100주년협의회에서 이사와 같은 중요 직책을 맡은 적이 없다. 100주년협의회의 구체적 협의와 의결은 모두 이사회를 통해 추진되었기 때문에 립인식 목사는 진행 과정의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현재 100주년협의회에는 한경직 목사와 함께 이사로서 협의하고 결정한 분들이 여러 분 살아계신다. 그 분들은 선교기념관이 '100주년협의회의 사무실과 100주년사업을 위해 건립되었고, 유니온교회에 계는 보은의 의미로 예배당으로 사용하도록 사랑을 베풀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1년 6월 10일,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제기한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의 소유권 이전등기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라는 주장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기각'했으며, 증여 당시 선교기념관을 지어서 유니온교회가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이 있는 '부담부 증여'라는 주장 역시 증거부족으로 기각했다. 또 선교기념관을 지난 20여 년 동안 예배실로 사용한 것을 근거로 유니온교회의 영구적이며 독점적 사용수익권이 있다는 주장 역시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다. 아울러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이 국가 소유라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며 '각하'했다. 결국,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 나아가 예장통합의 주장은 모두 법적으로 부인되었다.

### 3. 양화진선교사묘원에서 벌어진 불법매장과 묘지예매 행위에 대하여

#### 1) 양화진선교사묘원에서의 매장에 대한 예장통합의 주장

(보고서 43쪽) ‘100주년기념협의회 해명서와 공개질의서’를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선교사들의 후손이, 37명의 내외국인에게 금품을 받고 묘지를 매매했다고 주장하며 선교사 후손들을 비난하고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경성구미인묘지회는 묘지의 효율적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가족별로 묘지를 예약 받았을 뿐이지 금품을 받고 매매한 것이 아닙니다. 초기부터 양화진외국인묘지 관리 주체였던 경성구미인묘지회는 묘지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묘지의 관리비를 징수한 것입니다.

(녹취록/차광호 목사) 60년대에 들어와서는 30만원, 70년대에 들어와서는 50만원, 100만원, 이래서 최근에는 150만원 이렇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은 시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걸로 돼 있는데 2003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유니온교회는 처음부터 저렇게 운영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

#### 2) 양화진선교사묘원 불법매장의 진실

##### ① 양화진선교사묘원의 법적 지위와 매장 및 묘지 관리에 대한 법 규정

양화진선교사묘원은 1965년 3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공원용지로 지정되었고, 1978년 3월에는 서울시장으로부터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1986년 정비가 완료되었다. 법적으로는 재단법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가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이다. 따라서 현재 양화진선교사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안에 위치한 도시공원이며,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역사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5조)인 동시에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안에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묘지공원’이다.

우리나라는 묘지 및 분묘설치 허가 등에 관해 여러 가지 규정을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사설묘지는 1961년 제정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1969년 시행), 1977년 개정된 시행령에 의해 주거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었으며, 주거지역이 아니더라도

주택인접지역, 철도 및 도로, 하천 인접지역도 설치 금지<sup>62)</sup>되어 있다. 매장된 분묘의 존치기간은 15년이며, 이후 3차에 한해 15년씩 안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sup>63)</sup> 분묘용 토지를 사전에 매매할 경우에도 만 70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예외적으로 예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sup>64)</sup> 이러한 법규에 의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양화진외국인묘지에는 새로운 묘지 조성(매장)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특히, 주거지역인 양화진(합정동) 일대는 1961년 제정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과 2001년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sup>65)</sup>에 의해 시신매장을 할 수 없는 곳이다.<sup>66)</sup>

## ② 불법매장 및 묘지 판매 실태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는 2004년까지 양화진선교사묘원에서의 매장을 용인

- 62) 1977년 9월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1)제9조 (묘지등의 설치금지 지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당을 설치하거나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안의 풍치지구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보호구역. 2)제3조 (사설묘지등의 설치기준등) 6.묘지는 지방의 간선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3) 장사등에관한법률 19조(분묘의 설치기간) 1항과 2항에 근거.
- 64) 시행령 제25조 (묘지의 사전 매매 등) 법 제2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65) 양화진외국인묘지를 포함한 합정동 일대는 1961년 제정, 시행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거지역’으로서 묘지 설치가 불가한 지역이었을 뿐 아니라, 1977년 개정된 시행령의 ‘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 인가 밀집지역으로부터는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동법 시행령1-6항)에 저촉되어 매장할 수 없는 곳이다. 또 2001년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이 규정은 더욱 강화되었다.(국무총리실, 양화진 외국인묘지 관련 검토(2007.9))
- 66) 1961년 제정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의 부칙에는 ‘제3조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 전에 설치된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은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단 그 설치자 또는 관리인은 본법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소재지번호 위치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를 근거로 양화진외국인묘지는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양화진외국인묘지를 서울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공식적으로 인가된 묘지는 없으며, 분묘 역시 신고된 것은 한 기도 없으며, 앞으로도 매장은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관할관청인 마포구청의 견해이다.(이는 2010년 12월, 마포구청 사회복지과로부터 직접 확인한 것이다.)

했다. 현재 양화진선교사묘원에 조성되어 있는 417기의 묘지<sup>67)</sup> 중 묘비 등을 통해 사망연도를 알 수 있는 묘지는 336기인데, 이중 1890년부터 해방되기 전에 조성된 묘지가 139기이며, 해방 이후부터 1965년까지, 즉 양화진선교사묘원이 공원용지로 지정되기 이전까지 조성된 묘지는 89기, 공원용지로 지정된 이후부터 공원 조성이 완료된 1986년까지 조성된 묘지는 66기, 도시공원으로 조성 완료된 이후에 조성된 묘지가 42기이다. 따라서 최소 42기에서 최대 108기는 우리나라의 장사 관련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 유니온교회는 소속 교인은 물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묘지를 예매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40기이다.<sup>68)</sup> 이처럼 유니온교회가 관리하던 시기에 양화진선교사묘원에서는 공공연하게 불법 매장 및 묘지 예약판매 등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과연 그들이 묘지 관리자로서, 매장을 원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법규를 제대로 이해시키고 묘지이용을 허락했는지, 또는 이러한 법에 대한 검토 등의 준법의지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유니온교회는 구한말 이래 관행이었고, 묘지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묘지관리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화진선교사묘원은 1883년 체결된 조영수호통상조약에 규정된 내용, 즉 조선은 외국인을 위한 묘지를 무료로 제공한다든 불평등한 조항에 근거하여 제공된 아픈 역사가 서린 곳인데, 광복된 지 6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러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

67) 2007년 및 2011년 100주년기념교회가 묘비 등을 조사한 결과 확인된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묘지 수는 모두 417기이다. 이중 81기는 묘지 조성 연도를 알 수 없으나 묘비 마모 상태 등으로 미루어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며, 성공회 묘역에는 성공회에서 관리하던 교아원에서 숨진 아이들이 다수 묻혔다는 기록은 있으나 자세한 숫자와 인적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68) 유니온교회 측은 예약 묘지가 37기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37기 이외에 아직 확인되지 않은 예약매장지가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 11월 초, 100주년협의회는 호수에 사는 현지인이 사망하여 양화진에 묻히기 원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1980년대에 UN 직원으로 유니온교회에 출석하던 존 게디스였는데, 그의 유족은 교회 출석 시 교인 대표 등으로 활동하며 교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당시 금액으로 100달러에 양화진 묘지를 예약했다며 매장을 주장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100만원에서 150만원(1000달러~1500달러)인 예약금의 1/10 정도만 내고 묘지를 예약한 것이다. 이로 미루어 유니온교회는 교인 중 공로자에게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예약을 받았고, 유니온교회 교인이 아닌 경우에는 더 많은 예약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공로가 있는 교인으로 인정되어 양화진을 묘지로 예약한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 ③ 100주년기념교회의 묘원 관리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선교사묘원에 안장된 분묘의 현황을 조사하여 현행법 위반을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졌던 상황을 파악했고, 그 때부터 현행법이 규정한 대로 매장 문제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몇 건의 갈등이 발생했다. 하나는, 묘지 예약을 근거로 미국에서 사망하여 양화진에 안장되기를 희망한 전직 선교사가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법 규정에 의해 바람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였다. 당시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유족으로부터 매장 요청을 받고 양화진선교사묘원에 신규 매장이 가능한지에 대해 관할 행정청인 마포구청에 문의하여 신규매장은 법에 의해 불가능하다는 답변<sup>69)</sup>을 듣고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또 한 번은 국내 굴지 모 사학 설립에 기여한 선교사의 후손이 양화진선교사묘원에 안장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법에 의해 거절되었다. 유가족은 이에 불복하고 해당 사학 고위층을 앞세워 정부 기관 등에 압력을 넣는 등 양화진선교사묘원 안장을 강요했으나 결국 뜻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이다.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는 현재까지도 양화진선교사묘원에 외국인들을 매장하기를 원하고 있으며,<sup>70)</sup>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설사 한국의 법에 의해 양화진에서의 매장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양화진에서는 예외적으로 매장이 허용되었고, 100주년기념교회의 적극적인 반대가 없었다면 관행대로 계속 양화진에서 예외가 인정되었을 것’<sup>71)</sup>이라면서 양화진선교사묘원이 오래전부터 묘지였다는 관점에서 매장을 주장하고 있다.

---

69) 마포구청은 공문을 통해 ‘도시공원인 양화진외국인묘지공원 내의 신규매장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의 ‘묘지설치 제한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도시공원))’ 으로서 신규매장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마포구청 사회복지과-25019/2007.12.6)

70) 2007년 8월 5일, 선교기념관 밖에서 예배한 후 KBS와의 인터뷰에서 피터 언더우드(언더우드 4세)는 ‘유족들은 이후에도 이 땅에, 이 묘에 묻어야하는 입장인데 이걸 막아버렸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71) 경성구미인묘지회, 12개국 대사에게 보낸 양화진묘지의 현황(2010.10) : Although there are ordinances against burials whihin the city, exceptions have been routinely granted to the foreigners' cemetery. there is every reason to believe that exceptions would continue to be granted except for the active objection of the HAC.



#### 4. 이른바 ‘이재철 목사 100만원 벌금형’ 주장에 대하여

##### 1) ‘벌금형’에 대한 예장통합의 주장

(보고서 24쪽) 2007년 7월 8일 이재철 씨는 설교 중에 “1945년 해방 이후에 언더우드 2세가 경성구미인묘지회 대표 자격으로 이 땅을 개인 명의로登記했고, 그의 사후에는 이 양화진이 그의 아들 언더우드 3세의 이름으로登記되었다.”고 설교했습니다. 이 설교로 인해 피터 언더우드에 의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되었고, 그 결과 서울서부지청 박 모 검사에 의해 약식명령 100만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서에 보면 이재철의 죄명은 ‘사자명예훼손’이고 범죄 사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총회장이셨던 김영태 목사님이 경성구미인묘지회 앞으로 보낸 서신에서 모든 고발고소 사건을 취하해 주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예장통합측이 양화진 사태에 적극 개입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성구미인묘지회에서는 총회장의 서신을 받아들여 예장통합 측에서 양화진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100주년 기념교회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취하하였습니다.

...이재철 씨가 무혐의라 기각된 것이 아니고 ...고소인 원한석(피터 언더우드)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보고서 28쪽) 이 문제는 고 한경직 목사와 고 원일한 장로의 우정과 신뢰에서 출발했던 처음정신에서 빛나가 배경을 자세히 모르고 혹은 잊어버리고 현실적 이해관계에 매여 분쟁으로 치닫게 되고, 나아가 사회법정의 고발 등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바...경성구미인묘지회와 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가 서로 대화와 화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회법정의 고소고발은 취하하기를 바라며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상대방에서도 가져야 할 것 ... (예장통합 공문(예장총 제92-230호) 유니온교회와 양화진 외국인묘지 문제와 관련한 본교단 회의 결과 통보의 건(2007.11.29) 중)

(보고서 29쪽) 경성구미인묘지회는 귀 교단의 권고를 받아들여 언더우드 가족이 100주년교회 이재철 목사님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을 포함하여 100주년협의회에 대한 몇가지 고소고발 소송을 모두 취하하도록 12월 3일 공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성구미인묘지회 제 09-01호 공문(2007.12.4) 중)

## 2) 명예훼손 소송의 경과와 ‘벌금형’ 주장의 진실

### ① 명예훼손 소송의 경과

2007년 7월 8일 이재철 목사는 100주년기념교회 창립 2주년 기념주일 예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재철 목사는 설교를 통해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1945년 해방 이후에 언더우드 2세가 경성구미인모지회 대표 자격으로 이 땅을 개인 명의로登記했고, 그의 사후에는 이 양화진이 그의 아들 언더우드 3세의 이름으로登記되었습니다. 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한 외국인 자연인이 어떻게 이 땅을 자신의 이름으로登記하고, 아들에게 승계해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설교 내용에 대해 언더우드 4세인 피터 언더우드는 자신의 조부이며 부친인 언더우드 2세와 3세가 양화진 토지를 개인 명의로登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재철 목사가登記했다고 하는 것은 허위의 사실을 말함으로써 돌아가신 조부와 부친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이유로 ‘사자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이재철 목사는 2007년 10월 11일, 피고소인 자격으로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경찰관은 ‘언더우드 2, 3세는 해방 이후 경성구미인모지회 대표로 활동하며 위 묘지(양화진)를 경성구미인모지회 명의로 토지대장에 등재한 일이 있고, 그 후 위 묘역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활동한 점’, ‘이재철 목사는 설교에서 언더우드 2세 등이 경성구미인모지회의 대표 자격으로 개인 명의로登記를 하였다고 하였을 뿐, 그들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고 한 사실이 없는 점’, ‘당시 이재철 목사가 한 설교내용은 허위사실이라 할 수 없어 피의사실을 인정키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 없음 불기소’로 조사결과<sup>72)</sup>를 검찰에 보고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벌금 100만원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명령<sup>73)</sup>을 청구<sup>74)</sup>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은 약식절차로 하

72) 서울마포경찰서, 수사결과 보고(2007.10.11)

73) 약식절차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몰수의 형을 과하는 재판절차이다.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서류 및 증거물에 대한 서면심사를 한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더라도

는 것보다는 통상적인 재판 절차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하고 이를 위해 검찰에 공소를 요청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그 사이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사건 자체가 기각된 사건이다.

## ② 과연 '100만원 벌금형'이 있었나?

피터 언더우드(언더우드 4세)와 예장통합은 이 사건이 검사에 의해 유죄로 판단되었으나 고소인이 자진하여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기각되었으므로 '죄는 인정되었는데 단지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유무죄의 판단은 전적으로 재판에서 판사의 판결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재철 목사에 대한 100만원 벌금형은 판결된 적이 없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는 두 번의 반전이 있었다. 하나는 경찰 조사 결과는 '협이 없음 불기소'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약식명령으로 100만원 벌금형에 처할 것을 재판부에 청구한 것이며, 또 하나는 검사의 약식명령으로 판결하기보다 정식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다뤄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담당 판사의 판단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점이다. 이후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그 사이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판사에 의한 유무죄 판단 및 선고 없이 기각된 것이다.

그런데 예장통합은 고소인이 왜 갑자기 고소를 취하했는지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만 두고 이재철 목사가 1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한 피터 언더우드(언더우드 4세)는 왜 갑자기 소송을 취하하였을까? 예장통합과 피터 언더우드(언더우드 4세)는 김영태 예장통합 총회장의 권유에 따라 '12월 3일, 당시 진행되던 몇 가지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했다'고 말한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경성구미인모지회와 유니온교회 등은 스스로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고 말한 2007년 12월에 두 건의 형사소송을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상대로 새롭게 제기했다. 그것은 경성구미인모지회가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소송, 그리고 서울유니온교회가 정진경(100주년협의

---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 법원은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50조).

74)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2007 형제 35978호 공소장

회 이사장), 김경래(상임이사), 이재철(이사), 정용섭(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형사소송 등이다. 경성구미인모지회와 유니온교회는 사자명예훼손 소송을 취하하면서 새롭게 두 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모두 취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특히 사자명예훼손 소송 취하 이유가 화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식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지 알 수 없다. 소 취하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당시 피터 언더우드는 이재철 목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영락교회의 담임목사 등 국내 개신교계 지도자들을 찾아 소송 이유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얻으려고 했으나 ‘목사를 고소한 사람과는 협조할 수 없다’는 등의 말을 듣는 등 소송의 정당성에 대해 한국 개신교 지도자들의 이해를 얻지 못했다.<sup>75)</sup>

또 예정통합은 총회장 명의의 공문에서 ‘...경성구미인모지회와 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가 서로 대화와 화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먼저 사회법정의 고소고발은 취하하기를 바란다.’고 말함으로써 마치 양측이 모두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여러 차례 소송과 음해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단 한 차례도 이 문제를 사회법정으로 가져가지 않았다.

---

75) 이재철 목사는 2010년 12월 13일 판사가 참석한 조정장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제기했으나 이에 대해 피터 언더우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

### 3 <한국기독교공보>의 ‘양화진’ 관련 보도의 왜곡과 진실



---

양화진 일대는 천주교의 절두산 성지와 개신교의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이 마주 보고 있는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인 성지이자 역사의 현장이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주간 신문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한국기독교공보>는 예장통합에서 발행하는 교단 기관지로 1946년 1월 창간되었다. <한국기독교공보>는 한국교회의 일치와 화해를 위해 앞장서는 기독교언론을 자임하고 있다.<sup>76)</sup> 그러나 특정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지<sup>77)</sup>로서의 입장 때문에 불편부당해야 하는 언론으로서의 사명에

---

76) 한국기독교공보 홈페이지(www.pckworld.com), 회사소개.

77) 한국기독교공보는 2010년 10월 28일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중재6부 심리로 서울중재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중재 심리’(2010서울조정1416.1417)에서 “저희 신문은 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운영하는 기관지 성격입니다. 당연히 장로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공정한 언론이기보다는 특정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지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는 충실하지 못했다.

특히 '양화진 문제'에 관한 한 <한국기독교공보>의 대부분의 기사들은 사실에 충실한 보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예장통합의 입장과 진실 추구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이 충돌할 때마다 <한국기독교공보>는 교단의 입장을 선택했다.

## 1. <한국기독교공보> 보도기사의 변화 과정

<한국기독교공보>는 양화진 관련 기사를 가장 많이 보도한 기독교언론이다. 홈페이지에서 기사 검색이 되는 1998년 이후 <한국기독교공보>에 실린 양화진 관련 기사는 시기에 따라 기사 내용에 큰 차이가 발견되며,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양화진선교사모원을 유니온교회가 관리하던 2005년 상반기 이전까지 <한국기독교공보>의 논조는 양화진외국인묘지가 황폐화되어 있으므로 모든 교회의 관심과 지원,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기사가 주를 이룬다. 100주년기념교회 및 100주년협의회와 유니온교회 사이의 갈등이 시작된 2005년 말부터 2007년 말 사이에는 양측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양측을 향해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기사를 주로 내보냈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일방적으로 유니온교회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100주년기념교회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일관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공정한 보도기사의 전제라 할 수 있는 사실 확인이 미흡한 기사가 많았을 뿐 아니라 기사의 공정성을 촉구하면서 반론권을 요구하는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 1) 1998~2005 : 양화진외국인묘지의 관리 실태를 고발한 기사가 대부분

<한국기독교공보>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1998년~2005년 상반기 사이에 보도한 양화진 외국인묘지 관련 기사는 약 30건이다. 그 중 양화진외국인묘지에 안장된 선교사나 인물을 소개하는 내용이 19건이고, 양화진외국인묘지를 비롯한 한국 기독교 문화유산의 관리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이 9건이다. 이 중 대표적인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그 곳은 잊혀진 땅이다. 누구 하나 돌보는 사람 없이 흩어지고, 잡초가 엉키고, 길바닥이 파이고, 비석들이 기운, 그런 잊혀진 곳이 되고 만 것이다.<sup>78)</sup>

-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자리 잡은 흔하지 않은 기독교 성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람의 돌봄 없이 버려져 있다는 느낌 ...잔디는 자라지 않아 잡풀이 무성하고 묘비도 도무지 돌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무질서가 ...총체적 관리체계가 부실한 우리 기독교단들의 현주소를 보는 듯...<sup>79)</sup>

- ...추석이 되어도 찾아주는 이 없고 돌보는 이 없는 외로운 묘지, 양화진에 대한 생각...아펜젤러를 위시하여 많은 선교사들, 그들의 아내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묻혀 있는 양화진에 찾는 이도, 성묘하는 이도 없다는 사실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돌보는 이 없이 버려진 양화진, 그것은 한국교회의 수치이다.<sup>80)</sup>

- (서교동교회 신호철 장로는) 2009년 9월, 도널드 N. 클라크의 저서에 그의 묘지가 양화진에 위치한 기록을 읽고 현장을 추적한 결과, 겨우 흔적만 남아 있고 관리되지 않은 초라한 묘지를 찾아내기에 이르렀다.<sup>81)</sup>

- 이렇듯 뛰어난 역사적 의미와 소중한 신앙적 자산들을 간직한 양화진, 하지만 현실은 마치 묻혀진 역사와 같이 '방치'라는 말로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외국인묘지공원은 행정당국은 물론이고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역시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회백주년기념사업협의회(이사장: 강원룡, 사무총장: 김경래)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묘지공원 내에 세워진 유니온교회가 한 사람뿐인 관리인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sup>82)</sup>

- (국회조찬기도회 박명환 회장은) "생명을 바쳐 이 땅을 사랑했던 이들의 희생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한국교회는 물론이요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매우 부끄러운 일" ...양화진의

---

78) 한국기독교공보 2000.4.1. 민경배 '이야기 선교사-양화진 외인묘지'

79) 한국기독교공보, 2001. 1. 6. 김성순 '독자투고-절두산 순교성지를 둘러보고'

80) 한국기독교공보, 2001. 10. 20. 김인수 '주간논단-추석과 양화진'

81) 한국기독교공보, 2002. 4. 20. 아름다운 세상-메리 헤이든 기포드 선교사

82) 한국기독교공보, 2003. 8. 16. 특별기획-양화진 서울외국인묘지공원(김보현)

83) 한국기독교공보, 2003. 8. 16. '양화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방치 현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sup>83)</sup>

- 양화진외국인묘지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 유적 중 제대로 보수됐거나 활용되고 있는 곳을 찾기란 쉽지 않다.<sup>84)</sup>

- 오랜 기간 한국교회의 무관심 속에 놓여 있던 선교사묘역은 양화대교가 건설되면서 훼손될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이때 전택부 장로가 본보에 '외인열전'을 연재하며, 한국교회에 그 중요성을 홍보하고 여론을 확산시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한국교회가 1백주년을 맞이하면서 대대적인 조성사업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이렇다 할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안타깝게도 이후 20년 동안 꾸준히 방문객들이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한국교회 전체의 관심에서는 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이집사의 지적. ...방문객들을 맞이할 마땅한 시설도 없고, 몇 개의 입간판 안내문과 묘역 그 자체 외에는 역사적 의미와 관련 자료들을 만나보기도 여의치 않다. ...이곳 양화진이 아직도 책임 있게 단장하고 운영할만한 주관자가 없이 지내왔다는 것이 한없이 부끄러워 ... 선교사들을 기억하며 (관심을) 이곳으로 돌릴 수 있다면, 양화진은 더 이상 쓰다버린 보도블록으로 축대와 배수로를 보수하고, 얻어 심은 꽃들로 장식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sup>85)</sup>

- 함정동에 위치한 양화진은 초행길에는 쉽게 찾기가 힘든 곳이다. 들어가는 골목도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sup>86)</sup>

위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 2005년 이전의 <한국기독교공보>는 한국 기독교계의 기독교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부족을 고발하면서 이 문화유산들을 제대로 가꿔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주어 선교와 교육의 장소로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당시 양화진외국인묘지의 관리 주체가 유니온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나 기고 모두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기독교공보>에 기고한 김인수·민경배 교수 등은 한국교회사에 정통한 분들인데 이들이 양화진의 관리부실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매우

---

84) 한국기독교공보, 2003. 10. 11. '기자수첩-왕시루봉 피난처'

85) 한국기독교공보, 2004. 4. 10. '아름다운 세상-양화진선교사묘지공원 관리해온 이강필 집사'

86) 한국기독교공보, 2005. 1. 1. '믿음으로 떠나는 여행-양화진(박귀용)'

강했음을 볼 때 당시 양화진외국인묘지의 관리 상태가 획기적인 개혁이 시급히 필요할 정도로 황폐한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기독교공보〉는 1979년 양화진외국인묘지가 양화대교 확장과 지하철 2호선 건설 등으로 훼손 및 이전의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독교언론 중 처음으로 ‘초기 선교사 묘, 이장해야 하나-총회서 시와 문공부에 보낸 진정’ 기사를 보도하고,<sup>87)</sup> 곧이어 전택부 선생의 ‘양화진의 인연전’을 연재<sup>88)</sup>하여 한국 기독교계로 하여금 양화진외국인묘지의 중요성과 역사성을 인식시켰으며, 결과적으로 〈한국기독교공보〉는 양화진외국인묘지 보존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2000년대 초까지 〈한국기독교공보〉의 이러한 논조는 유지되었다.

## 2) 2005~2007 : 균형적 보도에서 왜곡과 갈등 확대로

100주년기념교회가 창립된 2005년 7월 10일을 얼마 지나지 않아 유니온교회와의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한국기독교공보〉가 ‘양화진 관리권 불협화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것은 2005년 12월 13일이었다. 이어 12월 22일에 ‘배은인가, 식연인가’라는 제목으로, 12월 29일에 ‘감정자극이 문제 키웠다’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다. 2005년에 보도한 3건의 기사에서 〈한국기독교공보〉는 당사자 사이의 균형적 입장에서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어느 일방의 입장을 두둔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양측의 주장을 골고루 보도하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문했던 것이다.

2006년에는 양화진 문제에 대한 보도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태도는 2007년 7월 이후 급변했다. 2007년 7월부터 〈한국기독교공보〉는,

‘양화진선교기념관 두고 양 교회 갈등’(7월11일),

‘100주년협의회, “2005년 약정? 기억이 잘 ...”’(8월8일),

‘양화진사태, 총회가 나서라’(8월9일),

“양화진 질서 세우려는 의지 못 꺾는다”(8월17일),

---

87) 한국기독교공보, 1979. 7. ‘초기 선교사 묘, 이장해야 하나’

88) 한국기독교공보, 1979. 9. 29. 전택부, ‘양화진외인연전’ 연재를 시작했다.

‘마포구청, “양화진 두 교회 선교지서 퇴거하라”’(8월21일)

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다.

2007년 7월 11일 보도한 ‘양화진선교기념관 두고 양 교회 갈등’ 기사는 두 교회 사이의 예배시간 조정 문제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으나, 8월8일에는 100주년기념교회 측의 약속 불이행으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편향된 기사(“100주년협의회, “2005년 약정? 기억이 잘 ...”)를 내보냈다. 이어 8월 9일에는 예장통합교단 증경총회장들의 간담회 내용을 ‘양화진사태, 총회가 나서라’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통합교단이 적극 개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부터 신문의 논조는 완전히 일방적으로 유니온교회의 주장을 인용할 뿐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의 견해는 배척하는 태도로 돌변한다.

이처럼 2007년 7월을 분수령으로 <한국기독교공보>의 논조가 바뀐 것은 미국 장로교단의 커크패트릭 목사가 통합 총회에 보낸 서신<sup>89)</sup>의 영향으로 보인다. 커크패트릭 목사는 서신에서 “최근의 양화진 사태에 대해 우려하며, 교단 차원에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커크패트릭 목사의 서신은 경성구미인모지회가 100주년기념교회가 창립된 직후부터 ‘양화진의 선교사 무덤을 파헤치려 한다’, ‘유니온교회를 내쫓으려 한다’는 등의 왜곡된 내용으로 미국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의 가족과 미국 교회를 현혹한 결과다. 이에 대해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미국 장로교단과 재미한국선교사협회에 양화진선교사묘원을 둘러싼 사태의 전말과 양화진선교사묘원의 달라진 관리상황을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기록된 서신을 보냈다.

그러나 예장통합은 2007년 7월말 이후에도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의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성지화를 위한 주장과 의지에 대해서는 알아보거나 들으려 하지 않은 채 유니온교회 측의 일방적 주장에 경도된 입장을 견지하였다. 통합의 기관지인 <한국기독교공보> 역시 지난날 ‘양화진묘지가 성지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했던 그때까지의 논조와 입장을 버리고 예장통합의 입장만을 반영한 보도를 하였다.

이 시기 중 2007년 8월 21일의, ‘마포구청, 양화진 두 교회 선교지서 퇴거하라’라는 기

---

89) 이 편지는 당시 예장통합 총회 이광선 총회장 앞으로 2007년 7월 20일 발송되었다.

사는 특기할 만하다. 예배 시간을 둘러싼 선교기념관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자 마포구청이 100주년협의회와 유니온교회에 공문을 보내 선교기념관에서 종교 활동을 금지한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 이 기사는 ‘마포구청의 퇴거 권고에 대해 양측 모두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라고 보도했다. 선교기념관에서 유니온교회와 100주년기념교회 모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은 마포구청의 퇴거요청에 대해 양측이 모두 ‘자의적으로 수용’한 결과라는 점을 <한국기독교공보>가 인지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한국기독교공보>는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모지회, 그리고 예장통합이 줄기차게 주장한, 100주년기념교회와 100주년협의회에 의해 ‘유니온교회가 선교기념관에서 강제로 쫓겨났다’는 주장만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 3) 2009년 이후 : 예장통합의 본격적 개입과 왜곡보도의 심화

2008년에 유니온교회와 100주년기념교회 사이의 갈등에 대해 <한국기독교공보>는 거의 보도하지 않아 갈등이 해소된 듯 보인다. 그러나 이 시기에 양자 사이의 갈등은 해소되기는커녕 법적 분쟁을 거치며 오히려 심화되었다. 피터 언더우드(언더우드 4세)는 2007년 7월 이재철 목사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그해 말에는 경성구미인모지회와 유니온교회는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 인사들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예배 및 묘지관리 업무방해’ 혐의로 다시 형사고소를 하였다. 하지만 이 세 건의 고소는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되었다. 특히 업무방해 소송은 유니온교회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했으나 각하되었다. 이처럼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까지, 100주년기념교회는 경성구미인모지회와 유니온교회가 제기한 줄기찬 소송에 시달려야 했다. 유니온교회의 ‘선교기념관에 대한 영구적 사용권’과 ‘양화진묘원에 대한 초법적 매장권리’ 주장과 ‘양화진을 성지로 가꾸기 위해 소유권과 관리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100주년협의회 및 100주년기념교회의 입장은 쉽게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이처럼 2008년 한 해 동안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모지회가 주장한 내용들이 모두 사법부로부터 배척되었음에도 <한국기독교공보>는 이 내용을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8년 12월 2일자 기사를 통해 ‘통합총회 역사위원회가 양화진 문제 해결을 위해 양화진외국인묘지대책분과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2009년 1월 13일자 기사는 경성구미인모지회의 임원인 존 린튼(인요한)이 ‘양화진문제대책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보도함으로써 양화진 대책위원회가 편파적이라는 사실을 드러냈다.<sup>90)</sup> 양화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문제점은 <한국기독교공보> 김모 기자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한 사실<sup>91)</sup>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당사자 사이에서 크게 엇갈리는 주장의 해결을 위해 설치한 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예정통합 총회가 기독교 언론사 증견간부를 위촉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한국기독교공보>가 자사의 증견간부를 양화진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이 되는 것을 승인했다는 사실은 더 충격적이다. <한국기독교공보>에게 양화진문제를 공정하게 다루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했을까?

<한국기독교공보>는 2009년 2월 24일자 ‘경건한 마음으로 주차에 임해주세요?’라는 선정적인 제목의 기사를 필두로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노골적으로 음해, 왜곡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특히, 예정통합의 각 지역별 노회가 열리는 4월 한 달과 총회가 열리는 9월을 전후한 시기에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음해하는 기사를 집중적으로 내보냈다. 2009년 2월부터 2010년 말까지 <한국기독교공보>는 보도, 사설, 독자기고 등의 형태로 약 40건의 양화진 관련 기사를 내보냈는데, 대부분 유니온교회 측의 일방적 주장을 담았을 뿐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의 의견이나 반론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 심지어 <한국기독교공보>는 기사로 양화진문제를 보도한 후에는 교단 소속 목회자나 신학대학 교수의 기고문을 실어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였다. 그러나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유니온교회와 통합교단 측의 사실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한 기자회견이나 보도 자료는 외면하였다.

반면에 예정합동의 기관지인 <기독교신문>은 같은 기간 동안 양화진 관련 기사에서 양측의 의견과 주장을 충실히 소개했으며, 100주년협의회 강병훈 이사장과의 인터뷰 기사<sup>92)</sup>를 실는 등 <한국기독교공보>와는 대조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을 취했다.

90) <한국기독교공보> 2009년 1월 13일자 기사 ‘양화진 문제 해결 위한 연석회의 열린다’라는 기사에는 ‘전문위원인 인요한(존 린튼) 박사(연세대)는 이날 경과보고를 통해 경성구미인모지회의 중재요청을 100주년기념교회에서 거절할 경우, “법정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에 있다”면서도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 신앙 안에서 해결하기 원한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있다. 갈등의 당사자가 대책위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중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91) 예정총회 양화진대책위원회, ‘2010년 양화진 100주년기념교회 사태에 관한 보고서’(2010.9), 3쪽에는 위원회 전문위원 명단에 ‘이수영, 우영수, 이용삼, 임희국, 현요한, 김보현, 이만규’ 등이 기록되어 있다.

92) <기독교신문>은 2009년 3월 30일자에서 ‘양화진 선교사묘원 또다시 긴장’ 기사를 비롯 약 10건의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이중 2009년 4월 28일에는 100주년협의회와의 기자회견을 보도하면서 100주년기념교회의 양화진 성지화 성과를 소개했고, 2009년 11월 24일에는 강병훈 이사장을 인터뷰한 ‘양화진묘지 관리

## 2. 2009년 이후 <한국기독교공보>의 왜곡과 진실

보통 언론 매체에서 어느 특정 사안에 대해 의제설정의 기능을 수행할 때 보도기사(사설 및 해설 포함)를 통해 사실을 전달할 뿐 아니라 전문가 등 여론 선도층 등 외부 인사의 기고문 등도 활용한다. 이 경우 대부분의 매체는 그 매체에서 보도하는 사안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공정하게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한국기독교공보>는 특정 교단의 기관지라는 입장 때문인지 이러한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 즉, 예상통합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보도기사의 선택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사실만’을 전달하여 여론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기고문을 게재함으로써 마치 대중의 지지를 얻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다.

2009년 이후 <한국기독교공보>의 양화진 관련 기사와 기고문 중 사실을 왜곡한 대표적인 사례를 검토하고 그 기사가 감춘 진실을 밝힌다.

### 1) <한국기독교공보>의 보도기사를 통한 사실 왜곡

#### ① “경건한 마음으로 주차에 임해주세요?”(2009.2.24)

이 기사는 예상통합 총회가 양화진 갈등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양화진대책위를 신설한 이후 처음 게재된 것이다. 이 기사의 제목은 참배객들의 정숙을 유도하기 위해 묘원 안 입간판에 쓰인 ‘경건한 마음으로 임해주세요’라는 문구에 ‘주차에’라는 단어를 삽입함으로써 100주년기념교회 성도들의 예배행위와 묘원의 상황을 희화화(戲畵化)하였다. 이러한 ‘조롱조’의 제목 달기는 신문의 편집과 표현기법상 허용될 수 있는 과장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며,<sup>93)</sup> 기사의 진실성에까지 영향을 미침으로써 묘원을 관리하는 교회와 예배드리기 위해 참석한 성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 의도적으로 왜곡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둘러싼 무익한 소모전 그만뒀다’ 기사를 내보내는 등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했다.

93) 대법원 97다10215판결(1999.1.26. 선고)은, ‘신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보도를 할 경우, 그 보도 내용이 진실인가의 여부는 기사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제목과 본문의 크기 및 배치, 본문의 길이 등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일반 독자들이 보통의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통상의 기사를 읽는 방법에 의하여 기사로부터 받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제목의 크기나 표현된 문구에 비추어

안식을 취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양화진의 일요일 참배객 제한을 통보했던 기념교회가 도리어 교인들의 차량으로 양화진을 마치 주차장과 흡사하게 만들어 버린 상황...

주일(일요일)에 묘원 참배를 제한한다는 주장은 체계적인 관리와 묘원의 보존을 위해 제정된 묘원관리규정의 내용을 교묘히 왜곡한 것이다. 100주년기념교회는 평일 양화진선교사묘원 개방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고, 주일에는 개방하지 않으며, 단체 참배는 안내자 당 20명으로 제한한다는 참배안내 수칙을 갖고 있으나 양화진선교사묘원은 설과 추석 연휴, 성탄절 등을 제외하고 연중무휴 개방하고 있다. 주일에도 단체 참배든 개인 참배든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단지 주일에는 100주년기념교회 교인들에 의한 무료안내를 받을 수 없고, 참배가 100주년기념교회 예배시간과 겹칠 경우 많은 신자들로 인하여 불편함을 겪을 수 있을 뿐이다. 때문에 <한국기독교공보>의 '일요일 참배객 제한' 이라는 주장은 사실보도를 생명으로 해야 할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보도이다.

양화진선교사묘원이 100주년기념교회 성도들의 차량으로 인해 주차장으로 변했다는 주장 역시 지나친 과장이다. 100주년기념교회는 창립 후 짧은 기간에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묘원 차도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 이를 과거 5~60명의 교인이 있었던 유니온교회가 관리하던 시기에 견주어 비난하는 것 역시 공정한 보도와는 거리가 멀다. 더욱이 묘원 차도에 주차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 묘원에서도 용인되는 일이다. 그나마 현재는 주일에 양화진선교사묘원 차도에는 주차하지 않고 있다.

역사가 4년이 채 안 된 기념교회의 2009년 2월 1일 출석인원은 총 3천6백48명이었고 ... 말 그대로 급성장을 했다. 수평이동으로 인해 지역 내 교회들이 경계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납득가는 대목이다.

대부분의 일반 독자들로부터는 먼저 기사 제목에 의하여 강한 인상을 받은 다음 본문은 대충 넘어가기 쉽다.'고 말하고 있다.

이 기사가 나올 당시인 2009년 2월 22일 100주년기념교회의 주일예배에는 3,730명이 참석했다. 이중에는 물론 타 교회에 출석했던 교인들도 있었을 것이다. 100주년기념교회 성도들의 증가 상황을 보면 창립 이후 매년 700여 명 정도 증가했는데, 유니온교회와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2007년에는 1000여 명이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부 교회와 교단에서는 ‘수평이동’을 조장한 결과라고 주장했고, 〈한국기독교공보〉 역시 이런 주장을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100주년기념교회가 교인의 수평이동을 조장한다는 오해를 받을 당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4월까지 마포구에 소속된 교회를 떠나 100주년기념교회로 옮긴 교인은 모두 118명으로 전체 등록교인 5039명의 2.3%에 불과했다.<sup>94)</sup> 이는 100주년기념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인근 지역 교회에서 수평이동 했을 것이라는 주장과는 상치되는 통계다. 많은 교인들이 장로와 권사 호칭을 받기 위해 이동했을 것이라는 주장 역시 100주년기념교회 출석교인의 50%가 2~30대이고 80%가 40대 이하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교회 현실에서 교인의 수평이동 문제는 극복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교인들이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무엇인지<sup>95)</sup>에 대한 성찰 없이 교인 증가를 무조건 ‘권사나 장로가 되기 위해 수평 이동한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진실에 부합하지도 않으며, 한국교회의 일치와 성장을 위해 일한다는 기독교언론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기념교회는 등록된 지 2년이 된 자에 한해 남자는 60세, 여자는 50세 이상인 자들을 장로 권사로 임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가 본 교단 소속이 아니라 해도 담임교역자가 서울서노회 소속으로 장로교가 본래 헌법에 항존직을 투표로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94) 지강유철, 100주년교회가 교인의 수평이동을 조장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2009.7.22)

95) 2009년 1월 교회성장연구소가 창립 11주년 연례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교인들이 교회를 옮기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직장과 이사 문제로서 49.8%였고, 다음으로 ‘목회자 문제’가 22.8%였으며, 그 밖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었으나 별로 비중이 높지는 않았다. 아울러 새로운 교회를 선택하게 된 요인 역시 ‘목회자 설교’, ‘목회자 인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독교공보〉의 이 기사는 ‘전문(傳聞) 형식’을 취한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100주년 기념교회의 당시 정관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의 남자로서 집사에 임명된 지 5년 이상, 우리 교회에 등록된 지 2년을 초과한 자 가운데 성실하게 주일예배에 참여하는 자 가운데 만 60세 이상 남자는 장로, 만 50세 이상 여자는 권사로 호칭’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집사에 임명된 지 5년 이상’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생략함으로써 장로와 권사 호칭을 받는 요건을 쉽게 하여 100주년기념교회가 장로 및 권사의 직위를 남발하는 것처럼 호도하였다. 보다 중대한 왜곡은 이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100주년기념교회가 장로 또는 권사로 ‘호칭’하겠다는 것이지 ‘임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명’한다고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기사가 자격미달인 것은 취재를 통해 작성된 기사가 아니라 남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기사 작성 방법은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이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회피하고자 할 경우 사용된다. 100주년기념교회의 정관은 교회 홈페이지에 항상 게재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었다면 언제든지 사실 확인이 가능했다. 그럼에도 이 기사의 담당 기자는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 보도도 기사의 내용 전체로 보아 보도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이상 기사가 직접 확인하여 보도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이는 기자 자신이 공표하는 형식이든, 남에게 들은 것을 전하는 형식이든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의 적시가 있었던 점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sup>96)</sup> 따라서 이 기사는 100주년기념교회의 제도에 대해 명백히 잘못된 내용을 적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100주년기념교회는 교인들의 수평이동을 조장할 목적으로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까지 ‘장로와 권사’의 직위를 주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교회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경우다.

## ② “양화진 목회자들 뽑았다”(2009.4.7)

이 기사는 2009년 4월 4일에 발표된 마포교구협의회가 발표한 ‘양화진외국인묘원은 한국교회의 공동유산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보도한 것이다. 성명서를 발표한 사건을 보

96) 대법원 선고 85도431판결(1985.4.23)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는 사실적시자가 스스로 경험한 것으로 적시하든,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것으로 적시하든 불문한다.

도했다는 ‘사실(fact)’은 인정되지만 성명서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진위 확인이 없었다는 점은 유감이다. 더구나 ‘양화진 지역 목회자 뿔났다’는 선정적인 제목은 이 기사를 보도하는 <한국기독교공보>의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마포구교회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의 전체적인 오류와 사실 왜곡에 대해서는 『양화진의 진실 I - 예정통합 서울강북지역노회협의회 ‘양화진100주년기념교회 사태에 대한 보고서’ 진상규명』 34쪽 이하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여기서는 기사에서 직접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

이들(마포교구협의회)은 2005년 100주년기념교회가 양화진에 들어오면서 ‘한국교회는 마포구민과 세계교회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게 되었다’며 양화진 묘원은 한국교회 전체의 신앙과 역사 교육 현장임은 물론 마포구의 역사적 유적지이자 구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어느 한 교회가 독차지할 수 없는 한국교회의 공동유산’이라고 선언했다.

1890년 처음 헤론 선교사가 문힘으로 외국인묘지로 조성된 이후, 양화진은 질곡의 역사를 거치며 힘들게 살아남았다. 그동안 줄곧 양화진외국인묘지는 부실한 관리로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렸으며, 한국 개신교의 수치라는 비난까지 들어야 했다.<sup>97)</sup>

그러나 2005년,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성지화와 유지 관리를 전담할 교회로 100주년협의회에 의해 100주년기념교회가 창립되고,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양화진선교사묘원은 비로소 개신교의 성지로 자리매김했으며,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sup>98)</sup> 양화진외국인묘지가 쓰레기장과 공동묘지 같은 혐오시설로 지탄 받는 것

97) 전택부 선생은 1979년 여름, 양화진을 찾은 후 신문기고를 통해 ‘우리 민족을 위해 목숨을 던진 수많은 외국인 묘지들이 문힘이 문힘이 마구 짓밟히고 버려지고 ... 인근 파출소의 순경도 모르고 있었다’고 탄식했다.(전택부, ‘양화진외인열전(1)’, <한국기독교공보>, 4면(1979.9.29)/전택부, <양화진 선교사 열전>, p.10(1986.8)/전택부, <양화진 선교사 열전>, p.5, (2005.9)). 또 2000년대 초에는 각종 언론에 양화진선교사묘원의 관리 실태에 대해 우려하는 기사가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장신대 김인수 교수는 “돌보는 이 없이 버려진 묘지 양화진, 그것은 한국교회의 수치”라고 탄식하며,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다 목숨을 버린 이들에 대한 한국교회의 무관심과 망치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인수, ‘추석과 양화진’, <한국기독교공보>, 2001.10.20)

98) 지난날 ‘한국기독교의 수치’라는 오명을 들어야 했던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은 100주년기념교회가 묘원을 정비하고 무료 안내를 시작한 2006년 9월 이후부터 2011년 6월말 까지 25만여 명의 참배객이 다

을 개선하기 위해 100주년협의회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연합사업이므로 개교회로서는 도움을 줄 수 없다던 교회’가 다수 속한 예장통합이 이제 와서 양화진을 ‘한국교회의 공동유산’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성명에는 100주년기념교회 정관 제5조 …(장로 권사 호칭제)와 관련, 이를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00주년기념교회가 채택한 ‘장로, 권사 호칭제’는 모든 교단을 아우를 수 있는 연합교회를 지향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장로 권사제도의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의미다. 이 제도는 교권화되고 특권화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기존 장로 선출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100주년기념교회의 급속한 성장에 놀란 몇몇 교회는 100주년기념교회가 ‘장로 권사 호칭제로 교인들의 수평 이동을 조장’한 결과로 급속성장을 이루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sup>99)</sup> 〈한국기독교공보〉는 일부 교회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함으로써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하였다.

이후 100주년기념교회는 ‘장로 권사 호칭제’의 시행 과정에서 제정 당시 생각지 못했던 비판에 직면하여 관련 정관 내용을 개정했다. 즉, 일정한 기간이 지났다고 모두 장로와 권사로 호칭하면 장로와 권사를 계급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장로 권사로 호칭받기 위해 교회를 옮길 수 있으며, 일괄적으로 장로와 권사로 호칭하다보면 신실치 못한 신자로 인해 한국교회에 누가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한 것이다.<sup>100)</sup>

녀갔다. 명실상부한 한국 개신교 최고의 성지로 거듭났으며 마포구민은 물론 서울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99) 지강유철, 100주년교회가 교인의 수평이동을 조장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2009.7.22)

100) 강화된 호칭 장로 권사의 자격을 규정하는 100주년기념교회 정관 제5조(교인자격 및 호칭)의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남자는 장로, 여자는 권사로 호칭한다. ① 만 60세 이상 된 자 ② 우리교회에서 집사로 임명된 지 7년 이상 된 자 ③ 디도서 2장 2절-3절에 합당한 자 ④ 〈새신자반〉 10주, 〈성숙자반〉 10주, 〈사명자반〉 10주, 총 30주간의 훈련을 거친 자 ⑤ 우리교회에서 3년 이상의 봉사경력을 지닌 자 ⑥ 해당 구역장과 교구 교역자가 추천하는 자 4. 타 교회에서 장로, 권

…선교기념관 건립 시 세워졌던 봉헌판(헌판)을 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선교기념관을 서울외국인교회가 영구히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봉헌판은 기념교회에 의해 무단 철거된 바 있다.

이 부분 역시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기사화 한 경우다. 양화진선교사모원 안에 선교기념관을 준공할 당시 건립한 유일한 봉헌판은 정연희 씨의 봉헌시를 음각해 세운 것인데 이는 보도 당시는 물론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다. 이 기사에서 언급한 봉헌판은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을 기록한 판으로 이는 묘원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건립, 철거, 보완할 수 있는 성질의 안내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안내판을 소유자인 100주년 협의회와 관리자인 100주년기념교회가 협의를 통해 철거한 것은 기사에서 말하듯 ‘무단철거’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행사다. 그러나 <한국기독교공보>는 ‘무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100주년기념교회가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였다. 100주년기념교회가 이 안내판을 철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안내판에 기록된 내용 중 역사적 사실 및 현재적 실체와 다른 부분이 여러 군데 발견되었기 때문이다.<sup>101)</sup>

### ③ “양화진 문제 왜곡 말라”(2009.4.23)

2009년 4월에 들어서서 <한국기독교공보>는 그 동안 뉴스기사나 기고문을 통해 양화진 문제를 보도하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실’을 통해 양화진 문제를 거론했다. 문제는 양화진 관련 사실을 통해 예정통합의 일방적 주장을 검증이나 여과 없이 드러냈다는 점이다. ‘양화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이나 확인 없이 한쪽 당사자를 상대로 ‘왜곡 말라’고 다그치는 것은 올바른 언론의 모습이 아니다. 이 사실은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기독교공보>가 양화진 문제를 해결에 기여하고 양화진선교사모원을 명실상부한 ‘한국교회 공동유산’으로 가꿔나가기 위해서는 양화진선교사모원이 지닌 역사의 아픔과 복잡한 현실을 보다 객관적 시각으로 파악하려는

사로 임직 받은 자는 ④항의 과정을 거쳐 그 호칭대로 호칭한다.”

101) 안내판의 오류에 대해서는 <양화진의 진실 1 - 예정통합 서울강북지역노회협의회 <양화진 100주년 기념교회 사태에 대한 보고서> 진상 규명(2010), 47쪽 이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노력이 절실하다.

증경총회장들 가운데 다수가 양화진이 조성될 당시 협의회 총재로서 한국교회 100주년사업을 주관했던 한경직 목사와 함께 활동했던 교계 중진이요, 교단의 대표자들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오늘날 100주년기념교회가 문제 지적을 폄하하고 자신들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는 행위는 말 그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사설은 2009년 4월 15일, 통합 교단 증경총회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들이 ‘양화진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양화진을 원상복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취급하여 작성되었다. 이 사설 작성의 근거는 ‘증경총회장들 가운데 다수가 양화진이 조성될 당시 한경직 목사와 함께 활동했던 교계 중진이요 교단의 대표자들<sup>102)</sup>’이었으므로 이들의 증언은 믿을만한 것이지만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의 주장은 그렇지 않다는 인식을 전제한다. 그러나 ‘한경직 목사’와 함께 일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의 말은 신뢰할 수 있고, 누구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한국기독교공보>의 기준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경직 목사와 함께 일한 사람’은 예장통합교단 뿐만 아니라 100주년협의회에도 여러 명이 생존해 있다. 100주년협의회 관련 활동에 관한 한 ‘한경직 목사와 가까이서 일한 분’은 강병훈 이사장, 김경래 상임이사, 최창근 이사, 정이숙 이사 등 예장통합보다 100주년협의회에 더 많이 생존해 있으며, 이들은 양화진선교사모원의 기증 과정과 선교기념관 건립 과정에 대해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

본 교단 서울강북지역노회협의회에서도 차기 총회에 ‘백주년기념교회 담임 목회자의 불법과 문란행위를 조사하고 치리해 줄 것’과 ‘한국백주년기념사업협의회가 백주년기

102) 100주년협의회가 조직되고 선교기념관을 건립할 당시(1981~1986년) 예장통합의 총대로 활동한 인사는 ‘박치순, 이의호, 김윤식, 림인식, 이창로, 임옥, 한기원, 백의석, 박병원, 서석호, 공덕귀, 전재성, 최창근’ 등이며, 이들 중 일부가 협의회의 임원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실제적 업무의 추진은 총재단과 사무국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100주년협의회 주요 임원으로 강원룡, 정진경(이상 작고), 최창근, 김경래 등이 있었으며, 이들은 지금도 100주년협의회 임원으로 봉직하고 있다.

념교회에 부여한 전권을 회수해 줄 것' 등을 현의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백주년기념교회와 관계자들은 지금도 불법적 장로 호칭 사용 등의 문제와 양화진 내 현판 제거, 관리방법의 일방적 변경 등 문제 지적에 대해 ...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소중한 역사를 간직한 현장이 근본조차 모호한 점유자들에 의해 왜곡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양화진 관련 보도에서 <한국기독교공보>의 문제점은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 측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을 남발한다는 점과, 전문(傳聞) 보도의 형식을 띠고 있으면서도 기자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보도하는 것처럼 기사가 작성된다는 점이다.

전문 형식을 사용하고 있는 이 사설은 '담임목회자의 불법과 교회 질서 문란 행위를 조사하고 치리해 줄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마치 100주년기념교회 담임 목회자의 불법 행위와 교회 질서 문란 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전제한다. 이는 이재철 목사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불법적 장로 호칭 사용 등의 문제와 양화진 내 현판 제거나 관리방법의 일방적 변경 등 문제 지적'의 표현도 마찬가지다. <한국기독교공보>는 장로 호칭 사용이 어째서 불법적이며 교회 질서 문란 행위인지, 양화진 내 현판 제거나 관리방법 변경이 왜 불법이며 교회 질서 문란 행위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불법' '문란' 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 '근본조차 모호한 점유자들'이라는 표현은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저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물론 이 사설에서 '근본조차 모호한 점유자들'이란 바로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의미한다. 그러나 100주년협의회는 한국 기독교 100주년을 맞아 모든 교단과 기관들이 협력하여 설립한 초교파 연합기관이었고, 100주년기념교회 역시 100주년협의회가 양화진선교사묘원 등 한국 개신교의 성지를 보다 잘 관리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창립한 교회이다. 이렇게 적법하게 위임을 받아 행사하는 100주년기념교회 관리권의 정당성을 외면한 채 '근본조차 모호'하다는 표현을 <한국기독교공보>가 사용했다는 점은 스스로 기독교언론이란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 ④ “양화진 문제, ‘묘역 사용권’ 요구에서 시작(?)”(2009.4.24)

양화진선교사묘원의 관리와 선교기념관 사용을 둘러싸고, 유니온교회 등이 제기한 업무 방해 사건의 재정신청에 대해 고등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100주년협의회와 100

주년기념교회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공보>는 ‘양화진 문제, 묘역 사용권 요구에서 시작(?)’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이 기사는 문제의 실상을 설명하는 주최자의 입장에 대한 충실한 소개보다 특정한 입장에 기반한 선입견을 드러낸다. 용어 선택만 보더라도 편향성이 뚜렷한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이 기자회견에 대해 예장합동의 <기독교신문>이 ‘양화진 묘역 불법 논란은 잘못’이라는 제목으로 100주년협의회 주장 충실히 보도하였고,<sup>103)</sup> <크리스천투데이> 역시 ‘양화진 갈등, 한국교회가 선교사 후손 쫓아냈다-기념사업회 억울함 호소, 유니온교회 고소는 최근 기각’이라는 제목<sup>104)</sup>으로 양측 갈등의 원인과 진행 상황을 균형 있게 보도한 것과는 대조된다.

<한국기독교공보>의 이 기사는 사실 관계 보도에서도 많은 오류를 저질렀다. 유니온교회와 100주년협의회 사이의 업무방해 사건 진행과정과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이르는 상황을 자세하게 보도한 다른 기독교언론과는 달리 <한국기독교공보>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두 기관이 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는지조차 헛갈릴 정도다.

협의회 기자회견에서는 재정신청에 대한 판결 내용 등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피소 내용과 상관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회피했는데 확인 결과 ‘신청 내용은 유니온교회 담임 찰스 오텡보아텡 목사의 사무실 사용 요청을 골자로 하는 업무방해와 관련한 고소’였던 것으로 확인돼 기자회견의 주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를 작성한 기사는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를 취재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을 만하다. 이 기사의 허위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00주년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재정신청 판결에 대한 결정문 전문을 공개하였고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는 100주년기념교회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게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의 기사는 100주년협의회가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했다.

둘째, 일반적으로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소인에게 고소장을 열람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103) 기독교신문, ‘양화진 묘역 불법 논란은 잘못’(2009.4.28)

104) 크리스천투데이, ‘양화진 갈등, 한국교회가 선교사 후손 쫓아냈다’(2009.4.30)

때문에 피고소인인 100주년협의회 인사들은 고소장을 직접 읽어볼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의 고소내용과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기자회견 후에 자세히 알려 주겠다고 했는데, 기자는 마치 피고소인들이 기자의 질문에 즉답하기 곤란하여 회피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했다.

셋째, 이 기사는 고소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두둔함으로써 객관적 보도라는 언론 윤리를 망각했다. 즉, 고소내용의 핵심은 ‘묘지관리업무와 예배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지 유니온교회 오텅 보아텅 목사의 사무실 사용 업무와 관련된 것이 주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기사는 재정신청 청구의 주된 내용이 유니온교회 담임목사의 사무실 사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방해와 관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힌 뒤, 기자회견 내용과 재정신청 내용이 서로 연관성이 적은 것 같다는 자의적 판단까지 내리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 기자회견을 한 측이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고소인인 유니온교회 측의 입장을 두둔한 것이다.

“예민한 반응” “항변” “해괴한 논리” “서슴없이” “본질을 호도하는 듯한 발언” “양화진 문제의 최초의 원인제공자 중 한 사람” “기자회견을 이끌었던 100주년교회 관계자”

이 기사의 또 다른 문제는 보도기사가 지녀야 할 공정성을 완전히 저버렸다는 점이다. 기사 중에 기자의 주관적 가치판단을 드러내는 용어를 사용한 부분이 한 두 곳이 아니다. 즉, ‘예민한 반응’, ‘해괴한 논리’, ‘서슴없이’, ‘본질을 호도하는 듯한 발언’ 등은 모두 기자가 아니라 한 쪽 당사자의 말을 듣는 듯하다. 나아가 ‘양화진 문제의 최초 원인제공자 중 한 사람’이나, ‘기자회견을 이끌었던 100주년 관계자’ 등의 표현은, 실명은 거론하지 않음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혐의는 벗어나되 기사를 읽는 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인물을 상징하여 그에 대한 나쁜 선입견을 갖게 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기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⑤ “정관 개정과 상관없이 조사할 것”(2009.6.17)

이재철목사, 노회 탈퇴서 제출(2009.6.30)

“너그럽게”, 그러나 “원칙대로”(2009.10.13)

2009년 4월부터 그해 10월까지 <한국기독교공보>는 예장통합 서울서노회가 이재철 목사를 헌법 위반과 이단 행위를 이유로 재판한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했다. 마치 중계하듯 서울서노회가 이재철 목사 기소를 결의한 기사(서울서노회 ‘양화진 현의안’ 채택-2009.4.30)를 시작으로 면직책별한 기사(“너그럽게”, 그러나 “원칙대로”-2009.10.13)에 이르기까지 일



거수일투족을 세세하게 보도했다. 그러나 이 기사를 읽다보면 기사와 기사 사이의 내용상 괴리는 물론 한 기사 안에서조차 서로 다른 내용을 적고 있어 사실을 혼동하게 한다. 심지어 기사 중에는 현재 <한국기독교공보> 홈페이지에서 검색되지 않는 기사마저 있다.

서울서노회 기소위원회(위원장:장찬호)는 지난 17일 모임을 갖고 임원회에서 이첩된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하는 한편 구체적인 조사과정을 논의했다. 오는 24일 피고발인 이재철 목사에게 고발장과 함께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정관 개정과 상관없이 조사할 것'-2009.6.17)

...이재철 목사가 돌연 교단 탈퇴의사를 표명했다. ... 지난 4월 열린 정기노회에서 기소를 결의한 뒤 노회 기소위원회(위원장:장찬호)가 임원회에서 이첩된 고발장을 접수한 직후였다. ... 노회장 차광호 목사는 '아직 고발장만 보내지 않았을 뿐 이미 노회에서 결의한 상태기 때문에 합법적 절차를 따라 그대로 수순을 밟겠다'고 밝혔다.(이재철 목사, 노회 탈퇴서 제출(2009.6.30))

예장통합 서울서노회는 2009년 4월 28일 열린 노회에서 이재철 목사를 기소하기로 결의했다. 이어 5월 14일자 기사에서는 서울서노회의 100주년기념교회대책위원회(위원장:우영수)가 모임을 갖고 교단법에 기초해 철저히 조사할 것임을 재확인했으며 노회에서 조직된 기소위원회(위원장:장찬호)에 기소과정을 위임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한동안 이에 대한 보도가 없었다가 6월 17일과 30일자 기사가 보도되었다. 6월 30일자 기사는 이재철 목사가 고심 끝에 예장통합을 탈퇴하기로 작정하고 보낸 탈퇴서를 접수한 직후 나온 기사인데 한 기사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즉, 기사 앞머리에서는 이재철 목사가 보낸 탈퇴서를 접수(6월 29일)한 시점이 '기소위원회가 임원회에서 이첩된 고발장을 접수(6월 24일)한 직후'라고 밝히고 있으나, 기사 후반부에서는 고발장 이첩의 당사자인 차광호 목사(노회장)의 말을 인용하여 '아직 고발장을 보내지 않았을 뿐'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즉, 기사 보도 시점(인터뷰 시점)인 6월 30일 현재 고발장을 기소위원회에 보내야 할 노회장은 '미발송'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데, 기소위원회는 이미 며칠 전(고발장에 수기한 접수일은 6월 24일)에 접수했다고 한 기사에서 상반되게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사보다 앞서 작성된 한 기사("정관 개정과 상관없이 조사할 것"-2009.6.17)에서는 '지난 17일 모임을 갖고 임원회에서 이첩된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하는 한편 구체적인 조사과정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6월 17일 이전에 이미 임원회로부터 고발장이 기소위원회로 접수되었다는 것으로, 고발장에 수기되어 있는 내용(상기 고발장을 확인 접수함. 2009. 6.24. 기소위원

장 장찬호)<sup>105)</sup>은 물론 6월 30일자 기사의 서로 다른 두 가지 주장과도 상치된다.

이처럼 같은 기자가 작성한 기사와 기사 사이의 괴리, 한 기사 내에서의 어긋난 주장, 고발장에 쓰인 내용과의 상치 등은 도저히 같은 내용을 취재, 보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6월 17일자 기사는 현재 <한국기독교공보> 홈페이지에서 검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사 작성 시점 및 내용상 의혹을 갖게 한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은 '서울서노회가 이재철 목사의 교단 탈퇴를 예상하지 못하여 고발 처리 등을 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퇴서를 접수'하게 되었고, 이후 서울서노회는 예장통합 헌법이 규정한 절차를 지킨 것처럼 상황을 꾸며왔으며, <한국기독교공보>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부 기사를 소급 작성한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문을 갖게 만든다.<sup>106)</sup>

이처럼 이재철 목사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시시콜콜 보도하던 <한국기독교공보>는 서울서노회가 이재철 목사가 지은 <성숙자반> 내용을 이유로 '이단'으로 고발한 후 교계의 반발을 사 이를 취소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아이굿뉴스> <크리스천투데이> <뉴스앤조이> 등 여타 기독교언론들이 서울서노회의 이단 시비 철회에 대해 비중 있게 다뤘지만<sup>107)</sup> <한국기독교공보>는 이를 전혀 다루지 않았다. 예장통합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기관지다운' 보도행태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헌법시행규정 제3장 권징 제88조에 의거, 피고 이재철목사를 면직 책벌한다”고 밝혔다. 제88조에는 본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의 재판에 계류중에 있는 자가 총회나 노회를 탈퇴한 경우 항존직원은 헌법 권징 제5조 제1항 제7호 면직책벌로 판결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노회에서는 “피고인이 이미 고발과 기소 과정이 진행중인 가운데 일방적으로 탈퇴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동안 탈퇴서의 행정적인 처리를 보류해왔다. (“너그럽게”, 그러나 “원칙대로”-2009.10.13)

105) 고발장에 기소위원장이 접수를 확인한다는 수기 내용에 합법적 효능이 있는가 하는 것은 보다 명확히 규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즉, 예장통합이나 서울서노회에서 고발장을 접수할 경우 별도의 접수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고발장에 수기로 적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것이 규명되어야 한다. 고발장에 손으로 쓴 내용은 언제든지 기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6) 예장통합 헌법 제3편 권징 제4장 1심 소송절차 제54조는 '[고소 및 고발과 조치] 처리회장이 고소(고발)장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고발장 접수 시점은 조사, 기소 및 재판 절차의 시작점이며, 이후 전개되는 모든 행위의 기산일이라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장통합 서울서노회가 이재철 목사에게 대해 ‘면직책별’ 판결한 이후 <한국기독교공보>는 “너그럽게”, 그러나 “원칙대로”라는 제목의 기사로 재판 결과를 보도했다. 기사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절치상 문제를 의식한 듯 예장통합 헌법시행규칙의 한 조항을 거론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명백하게 잘못된 규정을 거론한 것이다. 기사에서 거론한 헌법시행규칙 제88조의 전체 문안은 다음과 같다.

“[재판계류와 교단탈퇴]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의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교회, 단체 포함)가 총회나 노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항존직원은 헌법 권징 제5조 제1항 제7호 면직책별로 판결하며, 재판에 계류중이 아닌 항존직원은 권고 사직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한국기독교공보>는 이 조항 중 일부인 ‘재판에 계류중에 있는 자가 총회나 노회를 탈퇴한 경우 항존직원은 헌법 권징 제5조 제1항 제7호 면직책별로 판결’한다는 내용만 거론하고, 실제 이재철 목사 재판에 적용해야 할 내용, 즉 ‘재판에 계류중이 아닌 항존직원은 권고 사직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은 빼버렸다. 대신 ‘피고인이 이미 고발과 기소 과정이 진행중인 가운데 일방적으로 탈퇴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간주해 재판을 강행했다는 서울서노회 측의 주장을 보냈을 뿐이다. 이는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기소 이전에 탈퇴한 항존직(목사, 장로)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기독교공보>는 서울서노회의 일방적 주장을 보도함으로써 ‘기관지다운’ 행태를 답습했다.

#### ⑥ “기독교 유적지 법적으로 보호하자”(2010. 2. 18)

예장통합 서울강북지역노회협의회와 마포구교회협의회 임원들은 2010년 2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독교 유적지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입법청원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간담회는 원희룡 의원 초청 형식으로 열려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지리산 선교유적지 등 기독교 유적지의 보존을 위한 입법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예장통합 인사들은 양화진선교사묘원의 현황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펼쳤는데, <한국기독교공보>는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다. 게다가 <한국기독교공보>는 1주일 뒤인 2월 22일자 신문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임희국 교수(장신대)의 기고 형태로 ‘기독교 유적지 법적으로 보호할 때’

---

107) <뉴스앤조이>는 ‘이재철 목사를 ‘이단’으로 다루기에는 ‘준비 미흡’(2009년 8월 29일)이라는 제목으로, <아이굿 뉴스>는 ‘이재철 목사 이단적 행위 ‘조건 미비’로 삭제’(2009년 9월 1일)라는 제목으로 서울서노회가 이재철 목사에게 대한 이단 혐의를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실어 왜곡된 주장을 되풀이했다.(임희국 교수의 기고문에 대한 진실 규명은 106쪽 참조)

선교사 후손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인요한(존 린튼) 박사(세브란스병원, 유진벨 선교사 증손)와 원한석(피터 언더우드) 박사(연세대학교, 언더우드 선교사 증손)는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 양화진 묘지를 3년째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고 고발한 후 '한국교회를 위해 일하신 선교사들의 후손들이 묘지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피터 언더우드(언더우드 4세)와 인요한(존 린튼) 씨는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임원으로 100주년협의회를 상대로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선교기념관의 소유권 및 관리권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다. 따라서 그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양화진선교사묘원에 방문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묘원을 자주 방문하지 못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부담때문이지 100주년협의회나 100주년기념교회 측이 방문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이 아니다. 여러 선교사 후손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양화진선교사묘원을 방문하여 선조들을 기리고 있다.

그들이 방문하지 못했다는 2009년 한 해 동안 양화진선교사묘원에서는 △혈버트박사 기념사업회의 초청으로 손자 내외를 비롯한 3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혈버트 서거 60주기 추모식(2009년 8월 5일), △이화여대와 상동·아현·동대문 교회의 초청으로 스크랜튼 대부인의 고손자를 비롯한 후손들이 참석한 스크랜튼 100주기 추모식(2009년 10월 8일) 등이 거행되었다. 이 발언을 한 인요한(존 린튼) 씨도 2010년 3월에 유진벨 선교사의 훈장 수훈을 기념하여 한 방송국이 제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 유진벨 선교사의 후손들과 함께 양화진선교사묘원을 방문하여 촬영한 바 있다.

〈한국기독교공보〉는 이 같이 과장되고 왜곡된 발언에 대해 어떠한 확인도 없이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실상을 왜곡했다.

본교단의 역사위원회 위원장 이만규 목사(신양교회)와 임희국 교수(장신대)가 나서서 '기독교 유적지가 합법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사유화되거나 훼손돼 무너지고 있다'면서 '외국인들에게 한국교회의 유적지로 보여줄 문화재가 없음'을 지적했다.

한국 개신교는 천주교나 불교 등 다른 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10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어 유적지가 적다. 그러나 한국 개신교 각 교단이 좀 더 일찍 유적지 보존과 계승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현재보다는 많은 유적지를 보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예장통합이 뒤늦게나마 기독교 유적지 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한국 개신교의 장자교단이라고 자부하는 예장통합은 지난날의 무관심과 방치, 그리고 훼손에 앞장선 과거부터 반성해야 옳다. 특히 한국 개신교의 발상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서울 종로5가 일대의 선교유적지가 사라진 것에 대해, 그리고 최후로 남아 있는 유적마저 개발의 유혹 때문에 원형보존을 주저한다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 진정성 있는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sup>108)</sup>

양화진선교사모원은 오랜 세월 한국 개신교계의 무관심으로 외국인 공동묘지로 전락해 있었다. 1985년 100주년협의회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이어 선교기념관이 지어진 후에도 이곳은 여전히 한국 개신교로부터 버림받은 곳이었다. 모원의 황폐화를 보다 못한 100주년협의회가 국내 주요 교회들에게 지원을 요청하였을 때에 그들은 ‘연합사업으로 해야 할 일이지 특정 교단 산하 개교회로서 지원은 어렵다’는 말로 거절한 바 있다. 결국 100주년협의회는 양화진선교사모원을 전담할 교회로 100주년기념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곳은 한국 개신교 최고의 성지로 변모했다. 이제 양화진선교사모원은 한 해에 7만 명 이상의 참배객이 찾는 곳이 되었으며, 세계2위의 선교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해외 선교사들이 조국을 떠날 때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기 위해 찾는 곳이 되었다.

양화진선교사모원의 현재 위상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예장통합 관계자들은 ‘모든 기독교 유적지가 훼손되었고 ‘보여줄 곳이 없다.’는 말만 하고 있고, <한국기독교공보>는 검증 없이 그들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

108) 현재 종로구 연지동 일대는 한국 장로교의 요람이었다. 이 일대는 연동교회, 경신학교, 정신여학교가 시작되었고 선교사 사택과 선교부 건물이 들어서 있던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연합회관 같은 대형 빌딩을 지으면서 모두 헐어버려 옛 모습은 찾을 길 없는 특징 없는 콘크리트 도시로 변하고 말았다. 한국 장로교의 태실이었던 곳에 지금은 연동교회(이마저도 본래의 모습은 찾을 길 없다), 정신여고 본관(세브란스관), 장로교출판사 건물(선교사 숙소) 외에는 남아 있는 것이 없다. 심지어 유일하게 남은 초기 장로교 사적인 선교사 숙소(장로교출판사 본사)를 문화재(사적)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에 대해 예장통합에서는 재산권 활용 및 행사에 불편할 것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이라는 비판(이덕주 교수, <종로 선교 이야기>, p. 224)에는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⑦ “본질은 뒤로, 100주년교회 둘러싼 논쟁으로 소모전”(2010.8.18)

2010년 9월 열린 통합교단 95차 총회를 앞두고 <한국기독교공보>는 양화진 관련 뉴스를 여러 건 보도했다. 노회가 열리는 매년 4월과 총회가 열리는 9월을 앞두고 양화진 관련 보도를 집중하는 2009년 이후의 패턴을 재연한 것이다. 특히 이 시기의 기사 중 8월 18일자 ‘본질은 뒤로, 100주년교회 둘러싼 논쟁으로 소모전’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예장통합의 적반하장 식 기사의 대표라 할 만 하다. 즉, 2007년 이후 3년 여 동안 진행된 갈등에 갑자기 끼어들어 문제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들을 제기하며 소모전의 양상으로 이끈 장본인인 예장통합이 ‘본질을 잃어버린 채 소모전으로 변질’됐다고 질타하고 있는 것이다.

양화진 문제의 핵심은 기사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듯 양화진선교사모원의 소유권과 관리권이며, 이는 과연 이곳을 한국 개신교 최고의 성지로 가꾸고 보존해 나갈 책임자는 누구인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를 두고 3년여 동안 유니온교회와 100주년기념교회, 그리고 경성구미인모지회와 100주년협의회 사이에 논쟁과 갈등이 이어진 것이다. 그런데, 예장통합 서울서노회와 마포구교회협의회가 이 논쟁에 끼어들면서 교인의 수평이동 문제, 장로권사 호칭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이재철 목사의 신학에 대한 이단 시비를 거쳐 이재철 목사에 대한 예장통합 서울서노회의 불법적인 면직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처럼 예장통합이 논쟁에 개입<sup>109)</sup>함으로써 양화진선교사모원을 누가, 어떻게 하면 성지로 잘 가꿀 것인가 라는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100주년기념교회가 독립교회인가 연합교회인가, 장로권사 호칭제가 불법인가 아닌가, 100주년기념교회가 장로권사 호칭제를 통해 교인들의 수평이동을 조장했는가 아닌가, 이재철 목사의 신학이 이단인가 아닌가와 같은 교

---

109) 예장통합 총회가 양진 논쟁에 개입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매우 안타까운 한국교단의 현실을 보게 된다. 100주년기념교회가 창립되고 본격적으로 성지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자 2000년대 초부터 양화진 선교사모원을 무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던 인사들은 이에 크게 반발했다. 그들은 소송을 통해 100주년기념교회의 성지화 노력을 방해했다. 또 이들이 출석하던 서교동교회는 100주년기념교회가 마포구 관내 교회 교인들의 수평이동을 조장하고 양화진선교사모원을 사유화한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음해하기 시작했다. 서울서노회와 예장통합 총회는 이들과 경성구미인모지회의 잘못된 주장에 현혹되어 개입하게 된 것이다. 특히 예장통합은 2006년 정진경 목사가 100주년협의회 3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본격적으로 100주년협의회에 활동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즉, 기장 교단의 강원룡 목사가 이사장으로 재임 시에 이미 유니온교회가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포함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당시에는 100주년협의회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강원룡 목사가 소천하고 성결교단의 정진경 목사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도에 지나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리적 문제로 비화되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이다. 더구나 <한국기독교공보>는 7월 27일자 ‘양화진 문제의 본질은…’이란 기사에서 ‘선교기념관 문제’와 ‘이재철 목사의 신학적 문제’가 양화진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한 지 3주 만에 ‘이재철 목사의 신학 문제는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1980년대 고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한 당시 지도자들이 유니온교회를 위해 양화진 묘역 내 선교기념관을 영구히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한 뒤 … ‘기존 주인’과 ‘새로운 주인’ 사이에서 예배장소와 시간을 두고 야기된 갈등이 양화진 문제의 실질적 단초라고 볼 수 있다. … 그동안의 공방 속에서 ‘권사 장로 호칭제’ ‘이재철 목사 면직’ ‘죽은자를 위한 기도를 둘러싼 신학적 논쟁’ 등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본질과 대체되어 버리고 말았다.

‘1980년대 고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이 유니온교회를 위해 양화진선교사묘원 내 선교기념관을 영구히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한 뒤’라는 내용 중 ‘영구히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유니온교회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기독교공보>조차도 다른 기사에서는 확인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sup>110)</sup>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지방법원은 2011년 6월, ‘선교기념관 사용권이 유니온교회에게 영구적, 독점적으로 제공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양화진 문제가 발생한 근원적 이유에 대해서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함께 발간한 <양화진의 진실 Ⅱ>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sup>111)</sup>

첫째, ‘양화진 문제’의 근본 원인은 두 당사자의 시각차에 있다. 100주년협의회는 양화

110) 기독교공보는 2010년 8월 31일자 기사 ‘양화진 선교기념관, 유니온교회 위해 세워졌다’에서 “당시(1986년 현당 즈음) 삼각(三角:100주년협의회, 유니온교회,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지칭)의 명확한 관계성을 증명해줄 문건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과 증언할 수 있는 원로 중 대부분이 세상을 떠나버렸다는 점이 사실관계를 따지기에는 근본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1년 현재 100주년협의회에는 강병훈 이사장, 최창근, 정이숙, 김경래 이사 등 1980년대에 한경직 목사와 함께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의논하고 실무를 담당했던 분들이 여러 분 생존한다. 양화진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2007년에는 정진경 3대 이사장도 살아계셨으며, 별세 직전인 2009년 8월에는 예정통합의 주장이 거짓임을 문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111) 100주년협의회,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의 진실 Ⅱ -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관한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유니온교회의 주장과 진실>, pp. 64~68.

진선교사묘원을 한국 기독교 성지로 보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유니온교회는 선조와 자신들이 문힐 모지라는 입장이다. 둘째, 유니온교회는 한국 교회의 배려로 선교기념관을 20여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해온 고마움을 망각하고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뒤바꿨다. 셋째, 유니온교회는 양화진선교사묘원에서 벌어진 불법적 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왜곡선전으로 갈등을 증폭시켰다. 일방의 의견을 맹종하며 사태의 원인을 단정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문제와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과 다름없음을 <한국기독교공보>는 외면했다.

현재 유니온교회와 100주년기념교회 사이에서는 연세대가 중재에 나서고 있으며...

이 기사는 ‘연세대’를 유니온교회와 100주년기념교회 사이의 ‘중재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연세대는 양화진 문제의 한 당사자인 경성구미인모지회의 대리인이다. 나아가 연세대 설립자 중 한 사람의 자손이 경성구미인모지회 대표이고, 경성구미인모지회 핵심 관계자가 연세대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 문제에 각종 압력을 행사한 당사자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했다.

이처럼 <한국기독교공보>는 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오로지 교단의 의중에 따라 편파적 관점에서 양화진 관련 기사를 보도하였다.

⑧ “양화진 선교기념관, 목적 논란 ‘종지부’”(2010.8.16)

“양화진 선교기념관, 유니온교회 위해 세워졌다”(2010.8.31)

2010년 7월 22일, 예장통합의 양화진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전국의 총대들과 교인들을 상대로 양화진 문제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2010년 9월 총회에서 있었던 양화진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양화진 문제의 현황을 전국 교회에 상세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양화진문제대책위는 그동안의 활동경과 보고와 함께, 임희국 교수가 ‘양화진의 역사적 의미에 대하여’, 그리고 현요한 교수가 ‘소위 “호칭 장로, 호칭 권사” 제도 및 “죽은 자를 위한 기도”론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어 질의응답과 피터 언더우드(언더우드 4세)의 입장 표명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두 논문에 대한 분석 및 비판은 32~47쪽 참조)

이날 경과보고에서 대책위 전문위원 차광호 목사는 양화진 문제의 본질은 ‘선교기념관



의 설립 목적 논란'과 '100주년기념교회의 정관과 이재철 목사의 신학적 문제'라고 보고하면서, 선교기념관은 애초부터 '영구적으로 유니온교회 예배처소로 지어졌다'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이후 <한국기독교공보>는 9월 총회를 앞두고 '후손들에게 예배 장소 돌려줘야...' (7월27일), '양화진 선교기념관, 목적 논란 '종지부'(8월16일), '한 목사님이 살아 계셨더라면...' (8월16일), '양화진 선교기념관, 유니온교회 위해 세워졌다' (8월31일) 등의 기사를 통해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이날 대책위가 공개한 한경직 목사의 설교문과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조직 당시 정황에 대한 립(인식) 목사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양화진 내 선교기념관이 서울유니온교회의 영구적인 예배장소로 지어진 것으로 재확인됐다.”(양화진 선교기념관, 목적 논란 '종지부'(2010.8.16)

선교기념관이 영구적인 유니온교회의 예배처소라고 주장하는 예장통합의 핵심적인 근거는 립인식 목사의 증언이다. <한국기독교공보>는 100주년협의회에는 1986년 당시 한경직 목사와 100주년 기념사업을 함께 추진했던 분들이 생존하고 있으며, 당시 정황을 정리한 회의록과 생존 인물들의 증언<sup>112)</sup>은 도외시하고 오로지 예장통합 전 총회장 립인식 목사만이 한경직 목사의 참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양화진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공개한 한경직 목사의 설교문 어디에도 선교기념관을 유니온교회의 '영구적'인 예배장소로 제공한다는 내용은 없다. 단지 선교사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을 뿐이다. 방증자료로 언급한 염보현 당시 서울시장의 축사는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국외자의 의례적인 헌사로서 증거 능력이 없고, 그의 축사 내용도 헌당의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도 선교기념관의 건립 목적 중 하나는 '유니온교회에 예배처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sup>113)</sup> 그러나 '영구적'이라는 조건

112) 100주년협의회 초창기부터 이사 및 사무총장 등으로 한경직 목사와 함께 기념사업을 주관했던 정진경, 강병훈 목사, 김경래, 최창근 장로 등은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실확인서'(2008.10.10)를 통해 '선교기념관을 유니온교회의 영구적인 예배처소로 제공한 일이 없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

113)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의 선교기념관의 건립 목적에 대해서는 <양화진의 진실 Ⅱ> 47~51 쪽 참조.

은 없었으며, 100주년협의회 사무실과 한국기독교 100주년 선교기념관으로서의 역할은 건립 당시의 목적 중 하나였다.

경성구미인모지회와 유니온교회는 물론 통합교단과 〈한국기독교공보〉도 인정하듯 선교기념관이 유니온교회에게 영구적인 예배처소로 제공되었다는 명시적 자료가 없는 상태<sup>114)</sup>라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보다 분석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한 후 보도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기독교공보〉는 이를 제쳐놓고 한 당사자의 견해만을 진실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가 반박한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마치 유니온교회가 선교기념관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선교기념관을 유니온교회가 소유하려고 한다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것이다. (양화진 선교기념관, 유니온교회 위해 세워졌다(2010.8.31))

경성구미인모지회는 2008년 12월 23일, ‘양화진외국인모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100주년협의회를 상대로 양화진모지의 1/2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2009년 1월에는 소송 대상물에 선교기념관의 소유권 1/2을 추가했고, 2010년 4월에는 양화진모지와 선교기념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 이처럼 경성구미인모지회는 지속적으로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선교기념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기독교공보〉는 경성구미인모지회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처럼 표현하고 100주년기념교회가 억지 주장을 한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사실관계에 대해 알 수 없어서가 아니다. 그러나 이런 눈속임은 오래가지 못했다. 경성구미인모지회에서 2010년 5월에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양화진선교사묘원은 국가소유라 주장함으로 이제까지의 ‘소유권 주장’이 허구였음을 스스로 입증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성구미인모지회는 소송과정에서는 물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은

114) 〈한국기독교공보〉는 ‘양화진 선교기념관, 유니온교회 위해 세워졌다’(2010.8.31)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선교기념관의 현당식이 열린던 1986년 즈음의 분위기. 바로 100주년협의회와 유니온교회,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관계가 어떠한지의 부분이다. 그렇지만 당시 삼각의 명확한 관계성을 증명해줄 문건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과 증언할 수 있는 원로 중 대부분이 세상을 떠나버렸다는 점이 사실관계를 따지기에는 근본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다.”

양화진선교사묘지의 소유권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묘지 관리권과 선교기념관 사용권만 영구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

양화진선교사묘원은 한국 개신교 성지로 영원히 보존돼야 할 곳이다. 따라서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선교기념관은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든지 재산권으로서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소유권의 핵심은 묘원을 성지로 가꿀 수 있는 관리권에 있다. '소유권에 관심이 없다'는 경성구미인묘지회 측의 주장은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차지하려는 욕심을 교묘히 포장한 것일 뿐이다.

100주년기념교회는 2년 동안 유니온교회와 불편한 동거관계를 유지하다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무시한다' '주차장 사용 등으로 외국인들이 잦은 시비를 한다' 등의 사소한 문제 제기 끝에 유니온교회에게 '예배시간 조정 명령'을 한다. 당시 100주년기념교회는 1986년부터 선교기념관에서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예배를 드려오던 유니온교회에게 '2007년 8월 5일부터 오후 4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했다.(양화진 선교기념관, 유니온교회 위해 세워졌다(2010.8.31))

〈한국기독교공보〉 기사의 이 부분은 양화진 문제가 심화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마치 사소한 문제로 100주년기념교회 측이 트집을 잡아 일방적으로 유니온교회를 내몰았다는 인상을 질게 풍긴다. 예배시간 조정 문제는 100주년협의회에 대한 유니온교회의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유니온교회가 양화진선교사묘원을 관리하던 1986년 이후 20여 년 동안 양화진선교사묘원 관리상태가 계속 악화됨에 따라 100주년협의회는 100주년기념교회를 창립하여 관리권을 위임했다. 유니온교회는 이 조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모함하고 음해했다. 2년여 동안 수차례의 대화가 있었으나 결국 결렬되었고 2007년 봄에는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해 5월 14일, 100주년협의회는 유니온교회에 공문을 보내 묘원에서의 불법행위 해결, 모함행위 중지, 묘역관리에 대한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 방침 준수 등을 요구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유니온교회의 예배시간 보장을 재고할 수 있음을 통보했다. 이처럼 예배시간 조정은 기사에서 언급하듯 '한국인 무시'나 '주차 불편' 등의 사소한 문제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며,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둘러싼 본질적 문제에서 기인된 것이다. 예배시간의 조정과정 또한 일방적 '통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대화가 결렬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러나 〈한국기독교공보〉는 이 같은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물론 체하고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유니온교회의 입장에 서서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할 뿐이다.

## 2) <한국기독교공보>의 기고문을 이용한 왜곡 확대

### ① 우영수 목사, '백주년사업위, 백주년의 빛에서 벗어나라'(2009.4.8)

이른바 양화진 문제에 예정통합이 개입하게 되는 과정과 관련이 깊은 우영수 목사(서교동교회 담임목사)는 2009년 4월 8일자 <한국기독교공보>의 특집기사 '한국기독교 1백주년 이후 25년을 조명한다'에 '백주년사업위, 백주년의 빛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기고했다. 우영수 목사는 이와 내용이 같은 글을 같은 교단 신문인 <평신도 신문> 2009년 5월 20일자에 '서울외국인모지 사건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중복 게재하여 양화진 문제를 확대 왜곡했다. 이 글은 다시 예정통합 강북지역 노회협의회가 발행한 <양화진 100주년기념교회 사태에 대한 보고서>에 '서울외국인모지 사건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실렸다. 이 글은 이후 양화진을 보는 예정통합의 시각의 준거가 된 글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왜곡과 오류로 점철되어 있다. 이 글의 왜곡과 오류에 대해서는 <양화진의 진실 I>(49쪽~54쪽)에서 규명하고 있다.

### ② 이만규 목사, '양화진은 한국교회의 신앙적 유산, 성지'(2009.5.5)

2009년 봄에 이른바 양화진 문제는 100주년협의회, 100주년기념교회와 유니온교회 사이의 예배처소 갈등으로 시작되어 예정통합 총회와 100주년기념교회 사이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즉, 신학과 예정통합 헌법 위반 문제로 확대되었고,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였던 이재철 목사는 한낱 양화진선교사모원과 선교기념관을 사유화하려는 인물로 폄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주장의 물꼬를 튼 글이 바로 이만규 목사의 이 글이다. 예정통합 총회 역사위원회 양화진문제대책분과장의 자격으로 기고한 이 글은 내용 중에 명의신탁, 주일참배 금지 및 인원 제한 등 사실을 왜곡함은 물론 100주년기념교회가 장로호칭제를 무기로 교인들의 수평이동을 조장한다고 주장하여 한국교인들을 장로가 되기 위해 교회를 옮기는 무리로 폄하하고 있다. 이 글의 왜곡과 오류에 대해서는 <양화진의 진실 I>(55쪽~63쪽)에서 규명하고 있다.

### ③ 임희국 교수, '기독교 유적지 법적 보호해야 할 때(2010.2.27)'

2010년 2월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희룡 의원 초청 기독교 유적지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입법청원 간담회'가 열렸다. 예정통합 서울서노회의 청원에 의해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의원, 황우여 의원, 이경재 의원, 김기현 의원과 예정통합 서울강북지역노회협

의회, 마포구교회협의회 임원과 피터 언더우드, 존 린튼 등 경성구미인묘지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간담회 관련 기사는 2010년 2월 16일자 ‘기독교 유적지 법적으로 보호하자’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고, 이어 2월 27일자 <한국기독교공보>에는 그날 간담회에 참석한 임희국 교수(장로회신학대학)의 기고 형태로 ‘기독교 유적지 법적 보호해야 할 때’라는 글이 실렸다. 보도기사로 여론의 관심을 모으고 연이어 관계자(전문가) 이름의 기고문 형식으로 이를 다시 거론함으로써 마치 대중의 지지를 얻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예상통합 기관지인 <한국기독교공보>의 상투적 수법이다. 임희국 교수(장신대)가 <한국기독교공보>에 기고한 글의 오류를 밝힌다.

반드시 기억하고 길이 기념해야 할 기독교 사적지를 교단의 총회가 ‘사적지’로 지정해 왔다. ...역사의 기억과 기념은 보존을 통해서 계승되는 것이므로, 사적지의 지정은 보존사업의 시작이다. ...문제는 교회들의 무관심이라고 본다. 길이 보존되어야 할 수많은 기독교 유적지가 세월 속에서 무너져 내려앉았고 또 전쟁통에 폐허가 되었는데, 이제는 무관심 속에서 그 흔적마저 사라지게 될 운명에 놓여 있다. 역사문화유산이 사라지게 될 처지다.

‘교회의 무관심 속에 무너져 내리고 전쟁 통에 폐허가 되고 흔적마저 사라질 운명’에 처했던 기독교 사적지가 바로 ‘양화진선교사묘원’이었다. 폐허가 되고 쓰레기장 같았던 양화진<sup>115)</sup>을 한국기독교의 성지로 재인식한 분은 바로 오리 전택부 선생이었고, 이후 양화진은 100주년협의회의 주도 아래 선교기념관을 건립하는 등 새로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양화진은 유니온교회가 관리하던 시기에 또다시 ‘기독교의 성지’가 아닌 ‘외국인공동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sup>116)</sup> ‘한국 기독교의 공동유산이요 성지’인 양화진이 폐허가 되고 공동묘지로

115) 전택부 선생은 양화진을 찾은 후 신문기고를 통해 ‘우리 민족을 위해 목숨을 던진 수많은 외국인이 묻혀 있는 이곳이 마구 짓밟히고 버려지고 ... 인근 파출소의 순경도 모르고 있었다’고 탄식했다.(자료 : 전택부, ‘양화진외인열전(1)’, <한국기독교공보>, 4면(1979.9.29.)/전택부, ‘머리글’, <양화진 선교사 열전>, p.10(1986.8)/전택부, ‘개정판을 내며’, <양화진 선교사 열전>, p.5, (2005.9)

116) 2000년대 초반 언론에는 양화진이 버려져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기사가 많이 보도되었다.(자료 : ‘선교기념관, 외국인묘지 황폐화’, 신문기사(1994.7.8)/김성순, <한국기독교공보> ‘독자투고-절두산 성지를 둘러보고’, 2001.1.6)/김인수, 추석과 양화진, <한국기독교공보> 주간논단(2001.10.20)/김보현, <한국기독교공보> ‘양화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2003.8.16)

전략하고 있을 때, 100주년협의회는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용인 순교자기념관의 관리 협조를 한국교회에 호소했으나 그때마다 양화진선교사묘원을 특정교단에 속한 개교회가 맡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거절했다.<sup>117)</sup>

100주년기념교회가 관리를 시작한 2005년 이후 양화진선교사묘원은 명실상부한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 성지로 거듭났다.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용인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을 관리하게 된 100주년기념교회는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약 85억 원을 투입하여 양화진홍보관을 짓고, 묘역을 정비하고, 무료 안내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참배객 집계가 시작된 2006년 9월 이후 2011년 6월 말 까지 25만8,712명이 다녀갔다. 100주년기념교회 성도들이 헌금과 몸을 통한 봉사로 폐허 같았던 곳을 아름다운 성지로 탈바꿈시킨 곳이 양화진선교사묘원인 것이다.

예장통합이 진정으로 한국 기독교 사적지 보존의 의지를 갖고 있다면,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 하나를 사적지로 지정하기 전에 한국 장로교 태동지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서울 종로구 연지동 일대는 한국 장로교의 요람이었다. 이 일대는 연동교회, 경신학교, 정신여학교가 시작된 곳이며, 선교사 사택과 선교부 건물이 들어서 있던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연합회관 같은 대형 빌딩을 지으면서 모두 헐어버려 옛 모습은 찾을 길 없는 특징 없는 콘크리트 도시로 변하고 말았다. 한국 장로교의 태실이었던 곳에 지금은 연동교회(이마저도 본래의 모습은 찾을 길 없다), 정신여고 본관(세브란스관), 장로교출판사 건물(선교사 숙소) 외에는 남아 있는 것이 없다. 심지어 유일하게 남은 초기 장로교 사적인 선교사 숙소(장로교출판사 본사)를 문화재(사적)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에 대해 예장통합에서는 재산권 활용 및 행사에 불편할 것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이라는 비판<sup>118)</sup>에는 안타까울 따름이다.

---

117) 100주년협의회, 양화진 문제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2009.4.23)

118) 이덕주 교수는 <종로선교 이야기>(도서출판 진흥, 2005), 224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연지동에 남아 있는 선교사 양관, 지금 장로교출판사가 사용하고 있는 2층 벽돌 양관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영구 보존할 필요가 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렇게 되면 재산권 행사나 활용에 불편할 것이란 이유로 문화재 지정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고 한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이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될 뿐 아니라 예장통합총회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하고 있는 장로교 역사박물관, 혹은 역사자료관으로 활용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교회들이 기독교 사적지에 대해 무관심에서 벗어나려면, 그 무엇보다도 소위 '양화진 사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난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 양화진묘지는 한국교회의 공동유산이자 역사교육의 현장이다. 그러나 현재 특정 교회가 이 묘원을 독점하여서 이곳을 찾는 순례객들을 통제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 묘원을 '사유화'하려 든다는데, 이것은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는 일이다. ... 그동안 한국교회가 묘원관리에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점을 자성하는 것이다.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한 역사의 현장인 양화진묘원이기에 모든 교회가 양화진사태를 주시해야 할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은 2005년 이후 개신교 최고의 성지로 거듭나 매년 7만 명이 넘는 참배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임희국 교수는 양화진선교사묘원의 현실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현재 특정교회가 이 묘원을 독점하여서 이곳을 찾는 순례객들을 통제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 묘원을 ‘사유화’하려 든다는데...”라고 말하고 있다. 임희국 교수는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의 글을 자신의 주장이 아닌 것처럼, 남의 말을 인용하는 형태로 쓰고 있다. 임희국 교수는 비판하는 글을 쓰면서 최소한의 현황과악도 하지 않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비판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위해 전문(傳聞)의 형식을 취하면서 말이다. 임희국 교수는 이 부분에서 최소한 세 가지 오류를 범했다.

첫 번째는 ‘묘원을 독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양화진선교사묘원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100주년협의회 소유임은 명확히 확정되었고,<sup>119)</sup> 100주년협의회 소유권은 이후 법제처, 국무총리실, 마포구청 등 국가기관에 의해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sup>120)</sup> 2011년 6월에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해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주장은 또다시 모두 부인되었다.<sup>121)</sup> 이처럼

119) 양화진선교사묘원은 1985년 5월 8일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해 100주년협의회 소유권이 인정되었고, 그해 6월17일 소유권등기를 마침으로서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서울지법, 양화진 토지소유권에 대한 판결문)

120) 법제처는 서울시에 보낸 공문에서 100주년협의회가 양화진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확인해 주었다.(법제처, 양화진묘지 소유권에 대한 답변서) 또 국무총리실과 마포구청도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양화진 문제’의 해결진정에 대해 ‘양화진묘원은 법원 판결에 의해 확인된 합법적인 100주년협의회 소유로서 국유지로 볼 수 없다’고 통지했다.(국무총리실, 양화진외국인묘지 관련 검토(2007.9))

법에 의해 확정된 소유권을 바탕으로 묘원의 존재가치와 목적에 맞게 관리하는 행위를 임 교수는 ‘독점’ 운운 한 것이다.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선교사묘원의 분명한 소유권자 및 관리자로서, 이곳을 한국개신교의 성지답게 관리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과 성도들이 제한 없이 찾아 참배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두 번째 특정 교회가 ‘순례객을 통제’한다는 주장이다.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선교사묘원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1년 중 주일, 새해 첫날, 설 연휴, 추석 연휴, 성탄절을 제외한 모든 날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묘원을 개방하고 있으며, 거룩한 곳에 합당한 참배질서를 위해 원하는 모든 방문자들에게 사전 설명 및 현장 안내를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 많은 방문자들의 원활한 참배를 위한 사람의 안내자 당 20명을 기준으로 묘원 안내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묘원을 찾는 이들은 공휴일이나 주일 등 요일과 시간에 관계없이 참배할 수 있다.

세 번째, 100주년기념교회가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사유화’하려고 주장했다. ‘사유화’란 용어는 ‘불법적이거나 기타 옳지 못한 방법으로 남의 것이나 공공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가로채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선교사묘원을 관리 운영하면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성도들의 헌금 중 50퍼센트를 교회 밖을 위해 사용하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으며, 양화진선교사묘원에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는 양화진선교사묘원을 한국교회 공동의 신앙유산답게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에게는 경건의 공간으로, 시민들에게는 사색과 휴식의 공간으로 가꾸기 위한 것이다.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사유화하려는 이들은 100주년기념교회가 아니라 사설단체의 이름으로 양화진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들이다. 1913년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경성구미인묘지회는 1985년 이후 20여 년 동안 아무런 활동이 없었다(사실상 해체되었다<sup>122</sup>). 양화진선교사묘원 소유권 소송을 제기한 ‘경

---

121) 서울지방법원은 2011년 6월 10일 진행된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2010가합4325) 선고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경성구미인묘지회의 패소를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보면,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선교기념관이 증여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또는 부담부 증여라는 주장과 선교기념관이 유니온교회의 독점적이고 영구적인 예배처소로 제공되었다는 주장은 증거부족으로 ‘기각’되었고, 양화진이 국유지라는 주장은 증거 없음으로 ‘각하’되었다. 그러나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2011년 6월 29일 항소했다.

122) 경성구미인묘지회가 1985년 해체되었다는 주장은 유니온교회가 작성한 2007년 6월3일자 유니온교



성구미인묘지회'는 소송을 위해 급조된 조직으로서, 이전 경성구미인묘지회를 승계했다거나,<sup>123)</sup> 법인은커녕 공신력 있는 단체(비법인사단)로 인정할만한 실체가 없는 '실재하지 않는 조직'인 것이다.

---

회 총회(Seoul Union Church General Meeting)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다.(유니온교회, 교인 총회 회의록(2007.6.3)/경성구미인묘지회, 총회 회의록(2007.6.3))

123) 신호철은 그의 책 『양화진외국인묘지, 토지소유권의 역사적 진실』에서 “1913년 토지대장에 등록된 ‘경성구미인묘지회(京城歐米人墓地會)’와 현재의 ‘경성구미인묘지회(京城歐美人墓地會)’는 승계가 아닌 차명의 형태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해 편법적으로 조직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p.143)

---

## 부록 :

###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진실을 보여주는 자료들

---

#### 1. 2009년 9월 이후 제기한 예장통합의 왜곡 주장 관련 자료 ..... 116

- 서울서노회, 이재철 목사를 헌법위반 혐의로 제기한 고발장
- 서울서노회, 이재철 목사를 이단 혐의로 제기한 고발장
- <한국기독교보> 2009년 6월 17일자 기사
- 서울서노회, 이재철 목사 판결문
- <뉴스앤조이> 2009년 8월 29일자 기사
- <아이굿뉴스> 2009년 9월 1일자 기사
- 정진경 이사장, 100주년기념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 100주년기념교회 교인들의 호소문
- 100주년기념교회, 서울서노회 이재철 목사 면직에 대한 입장
- 예장통합, 두바이한인교회에 보낸 이재철 목사 초청 금지 요청 공문
- 예장통합 세계선교부, 두바이한인교회에 보낸 이재철 목사 초청 철회 요청 공문
- 예장통합, 이재철 목사 면직 통보 공문
- 세계스포츠선교회의 이재철 목사 강연요청서
- 미래목회포럼의 이재철 목사 강연요청서
- 예장통합, 이재철 목사의 설교방송 중지 요청 공문
- 예장통합, 100주년기념교회에서의 사역 주의 요청 공문
- 서울서노회, 100주년기념교회에서의 사역 주의 공문
- <크리스천투데이> 2009년 7월 15일자 기사
- 예장통합, 양화진외국인묘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2009.12.30)
- 예장통합 정치부, 100주년협의회와의 일부 이사에게 보낸 서면질의서(2010.2.10)
- 예장통합, 양화진외국인묘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성명)서 참여 요청 공문(2011.7.21)

#### 2. 예장통합이 발행한 <양화진 사태 보고서>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 .....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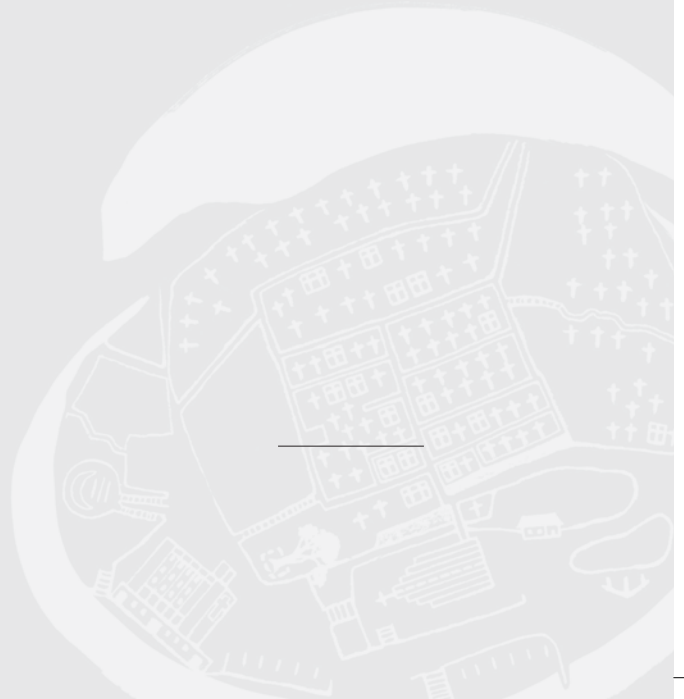
- 서울고등법원, 업무방해 관련 재정신청 판결문
  - <한국기독교보> 2007년 8월 21일자 기사
  - 국무총리실, 양화진외국인묘지 관련 검토
  - Suggested Agreement
  - Regulations for the Maintenance of the Korean Christian Centennial Memorial and Foreigners' Cemetery Park(draft)
-

- 100주년협의회, '양화진문제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
-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 소유권 관련 보도자료
- 서울지방법원, 양화진 소유권 소송 1심 판결문

### 3. 〈한국기독교공보〉의 양화진 보도 관련 자료

178

- 〈한국기독교공보〉 주간논단 기사 (2001. 10. 20)
- 〈한국기독교공보〉 특별기획 기사 (2003. 8. 16)
- 〈한국기독교공보〉 특별기획 기사 (2003. 8. 16)
- 〈한국기독교공보〉 2005년 12월 13일자 기사
- 〈한국기독교공보〉 2005년 12월 22일자 기자수첩
- 〈한국기독교공보〉 2005년 12월 29일자 기사
- 〈한국기독교공보〉 2007년 7월 11일자 기사
- 〈한국기독교공보〉 2007년 8월 8일자 기사
- 〈한국기독교공보〉 2009년 2월 24일자 기사
- 〈한국기독교공보〉 2009년 4월 7일자 기사
- 〈한국기독교공보〉 2009년 4월 23일자 사설
- 〈한국기독교공보〉 2009년 4월 24일자 기사
- 〈아이굿뉴스〉 2009년 4월 28일자 기사
- 〈크리스천투데이〉 2009년 4월 30일자 기사
- 〈기독교신문〉 2009년 8월 9일자 기사
- 〈한국기독교공보〉 2010년 2월 16일자 기사
- 〈한국기독교공보〉 2009년 8월 18일자 기사
- 〈한국기독교공보〉 2010년 8월 18일자 기사
- 〈한국기독교공보〉 2009년 8월 31일자 기사
- 우영수 목사 기고문(〈한국기독교공보〉 2009년 4월 8일)
- 이만규 목사 기고문(〈한국기독교공보〉 2009년 5월 5일)
- 임희국 교수 기고문(〈한국기독교공보〉 2010년 2월 15일)



## 1. 2009년 9월 이후 제기한 예장통합의 왜곡 주장 관련 자료

### 고 발 장

고 발 인 : (이 름) 서울서노회 노회장 차광호 외 8명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7호  
 피고발인 : (이 름) 이재철 나이 [REDACTED] 성별 남 직분 목사  
 (주 소)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REDACTED]

죄과명 : 헌법 제3편 권징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 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제2항 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피고발인 죄과사실 :

1. 피고발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서노회 전도목사로서 본 교단에 헌법과 제 규정을 준수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헌법 제2편 정치, 제6장 장로

제41조 장로의 선택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로의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회에서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할 수 있다.
3.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및 제2편 정치, 제8장 집사 및 권사

제54조 집사, 권사의 선택

집사,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를 위반하고, 장로 및 권사를 직분으로 보지 않고 호칭제로 변경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하였습 니다.

2. 헌법 제2편 정치, 제6장 장로

제41조 장로의 선택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로의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회에서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할 수 있다.
3.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2008년 초경에 100주년기념교회 정관을 제정하여

동 정관(구) 제5조 교인자격 및 호칭 4) 만 60세 이상의 남자로서 집사에 임명된 지 5년 이상,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2년을 초과한 자 가운데 성실하게 주일에 예배에 참여하는 자를 장로라고 호칭한다.

러는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헌법에 의한 장로의 선택 및 임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로를 호칭하는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감 서증 제1호)

서울서노회, 이재철 목사를 헌법위반 혐의로 제기한 고발장(2009.6.16)

고발장에는 기소위원회가 접수했음을 확인하는 문구가 수기(手記)되어 있다. 접수대장이 아닌 고발장에 기소위원장이 자필 로 접수확인 내용을 기록하는 일은 매우 드문 경우이다.

3.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8장 집사 및 권사

제54조 집사, 권사의 선출

집사, 권사의 선출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2008년 초경에 100주년기념교회 정관을 제정하여

등 정관(구) 제5조 교인자격 및 호칭 3) 만 50세 이상의 여자로서 집사에 임명된 지 5년 이상,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2년을 초과한 자 가운데 성실하게 주일예배에 참여하는 자를 권사라고 호칭한다.

라는 헌법에 위반하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헌법에 의한 권사의 선출 및 임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사를 호칭하는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갑 서증 제1호)

4. 피고발인은 2009년 4월 24일(금), 서울 양화진선교사묘원 내 선교기념관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간담회 내용 중

“우리교회는 어느 한 교단에 소속된 교회와 아니라 독립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많이 오는데, 호칭이 문제였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됐다.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를 직함으로 보지 않고 호칭으로 본다. 일정 나이가 되고, 교회 출석 년수가 채워지는 자격이 갖춰지면 사회적 지위와 빈부에 상관없이 장로, 권사로 호칭하기로 하고 지난해부터 호칭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교회 정관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라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갑 서증 제2호)

이러한 피고발인의 발언은 성경과 교단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장로의 직분제를 전적으로 부인하며,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훼손시키는 죄과 행위라고 봅니다.

증거 : 서 증- 제1호 100주년기념교회 규정관(신정관) 각 1통  
제2호 인터넷신문 뉴스미션 2009년 4월 24일(금) 기자회견 내용글 1통

위와 같이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16일

상계 리빙광은 학교 리빙광은 2009. 6. 24 기노위서장 강찬호	고소(고발)인 : 노 회장	차 광 호	
		부노회장	이 건 호
		부노회장	이 재 원
		서 기	김 용 민
		부 서 기	이 용 화
		회록서기	송 영 태
		부회록서기	김 성 철
	회 계	계 준 건	
	부 회 계	김 광 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서노회 노회장 귀하

## 고 발 장

고 발 인 : (이 름) 서울서노회 노회장 차광호 외 8명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  
피고발인 : (이 름) 이재철 나이 [redacted] 성별 남 직분 100주년기념교회 담임목사  
(주 소)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redacted]

죄과명 : 헌법 제3권 관장  
제3조 [관장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  
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4.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등조한 행위  
9.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피고발인 죄과사실 :  
1. 피고발인은 100주년기념교회 담임목사로서 자신의 책 "성숙자반" 에서 예수 믿지 않고 죽  
은 자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성숙자반(page293, 하단)  
"저는 안 교수님의 의견에 백 퍼센트 동의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데, 형제가, 부모가, 자식이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면 그 자체  
로도 비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은 그들  
을 위해 기도조차 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복음이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살  
아 있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 따뜻하게 기도해 주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  
인의 정신일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의 핵심인 사도신경이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  
다' 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글과 같이 목회자로서 바른 목회와 신학과 신앙으로 성도들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을  
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위배하고 있습  
니다.

이것은 본 교단의 헌법 중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편 교리 제4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장 6조와 제10장 4조에 의거 교리를 크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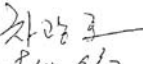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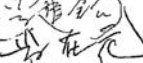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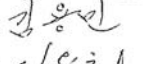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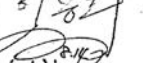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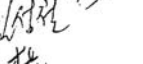




이러한 피고발인의 발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 말씀과 신조에 나와있는 내용을 전  
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며,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훼손시키는 죄과 행위라고 봅니다.

● 서울서노회, 이재철 목사를 이단 혐의로 제기한 고발장(2009.8.11)  
서울서노회는 이재철 목사를 '이단'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취소했다.

증거 : 서 증- 성속자반 제 7장 사도신경 page 293-299 1통

위와 같이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11일

고발인 : 노 회장	차광호	
부노회장	이건호	
부노회장	이재원	
서 기	김용민	
부 서 기	이용희	
회록서기	송영태	
부회록서기	김성환	
회 계	계준건	
부 회 계	김광녕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서노회 노회장 귀하

## "정관개정과 상관없이 조사할 것"

100주년기념교회, 논란이 된 장로 권사 호칭제 등 일부 정관개정

[2711호] 2009년 06월 17일 (수) 16:10:18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서울서노회(노회장:차광호)가 소속 전도목사인 이재철목사(100주년기념교회)의 기소를 결의한 가운데 100주년기념교회가 장로 권사 호칭제 등 논란이 된 정관을 개정하고 나서 논쟁을 끈다.



▲ 지난 17일 서울서노회 기소위원회는 모임을 갖고 임원회에서 이첩된 고발장을 접수하는 한편 앞으로의 조사과정을 논의했다. 100주년기념교회의 정관개정과 상관없이 이미 시행된 내용에 대해 조사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00주년기념교회는 지난 10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장로 권사 호칭제에 대한 정관을 개정했다. 직분제가 아닌 호칭제를 고수하면서도 해당자의 조건을 보다 강화한 개정안은 1백62명의 운영위원 중 1백46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백44명의 찬성, 2명의 반대로 통과됐다. 남녀를 불문하고 △만 60세 이상 된 자 △100주년기념교회에서 집사 임명된 지 7년 이상 된 자 △디도서 2장 2~3절에 합당한 자 △새신자반 성숙자반 사명자반 등 총 30주간의 훈련을 거친 자 △100주년기념교회에서 3년 이상의 봉사경력 가진 자 △해당 구역장과 교구 교역자가 추천하는 자 등 6개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자에 한해 장로 권사로 호칭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목사로서 우리 교회의 등록교인이 된 자는 남자는 장로, 여자는 권사로 호칭한다'는 조항은 폐기했다.

현재 이재철목사는 지난 2005년 100주년기념교회 설립 당시 제정된 정관에 따라 최근까지 장로 권사 호칭제를 실시함으로써 본교단 헌법 제2편 제6장 제41조, 제8장 54조를 위반한 혐의로 해당노회에서 고발당한 상태다. 서울서노회 기소위원회(위원장:김찬호)는 지난 17일 모임을 갖고 임원회에서 이첩된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하는 한편 구체적인 조사과정을 논의했다. 오는 24일 피고발인 이재철목사에게 고발장과 함께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기소위원회는 정관개정과 상관없이 이미 시행된 내용을 기준으로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한국기독교공보> 2009년 6월 17일자 기사.

이 기사에서 <한국기독교공보>는 '6월 17일 고발장이 노회로부터 기소위원회로 이첩되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6월 30일자 기사에는 '탈퇴서 접수 직전 고발장 접수'라는 내용과 '(보도 당시) 아직 고발장을 발송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수신: 차광호 노회장님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서울서노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 907호

### 탈 퇴 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소속된 목사로서,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가 초교파적 독립교회로 설립한 100주년기념교회를 목회함으로 인해, 제 본의와는 달리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되었음을 심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오랜 숙고 끝에 저는 2009년 6월 26일부로 대한예수교장로회를 탈퇴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45년간이나 몸담았던 대한예수교장로를 떠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무척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것이 제가 사랑하고 또 저를 키워주신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족한 저를 믿고 100주년기념교회를 맡겨주신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그리고 제가 목회하고 있는 100주년기념교회를 위해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믿는 제 충정을 부디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몸은 제 신앙의 모태였던 대한예수교장로회를 떠나지만, 광나루 선지동산에서 배운 목회자의 정신은 앞으로도 고이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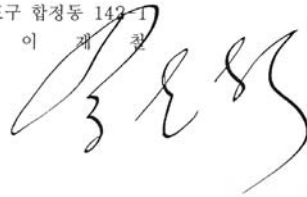
그동안 배풀어주신 사랑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2009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142-1

이 재 철

이 우편물은 2009-06-26  
제 3105605001406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서교총무처국감



● 이재철 목사, 예장통합 서울서노회 탈퇴서(2009.6.26)

이재철 목사는 서울서노회 기소위원회가 노회 재판국에 기소하기 이전인 2009년 6월 26일, 내용증명으로 탈퇴서를 발송했으며, 6월 29일 접수했다.

## 판 결 문

( 권징 책벌용 )



사건번호 : 서울서노회 재판국-2009-01

사 건 명 :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 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피 고 인 : (이름) 이재철/ 나이 [redacted] 성별:남/ 직분: 서울서노회 소속 전도목사  
(주소) 서울시 마포구 [redacted] 전화번호: [redacted]

기소위원회 : 서울서노회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장찬호 직분 목사  
주소 서울시 용산구 [redacted] 전화번호 [redacted]

변론종결일 : 2009년 10월 8일

판결선고일 : 2009년 10월 10일

### 주 문

1. 피고인 이재철 목사를 연직 책벌한다.
2. 재판비용은 노회로 귀속한다.

### 판결이유

#### 1. 죄과될 사실

- 1) 피고인 이재철 목사는 본 노회 소속 차광호 목사 외 8인에 의하여, 본 교단 목사로서 헌법 제2편 정치, 제 6장 제41조 장로의 선택, 제8장 제54조 권사의 선택에 관한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 2) 기소위원회는 고발에 의하여 피고인의 죄과를 조사하였고, 피고인은 2009년 7월 16일 기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범법 사실을 시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을 노회 재판국에 기소하였다.
- 3) 피고인은 고발과 기소 과정에서 2009년 6월 29일 노회(서울서노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였다.
- 4) 재판국은 헌법 제3편 권징 제4장 제1심 소송절차 제3절 재판 제67조, 제68조에 의거, 2009년 9월 16일 제1회 재판에 피고인을 소환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4장 제1심 소송절차 제3절 재판 제75조, 제76조, 제77조에 의거, 피고인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으나, 불출석 사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
- 5) 재판국은 헌법 제3편 권징 제4장 제1심 소송절차 제3절 재판 제67조, 제68조에 의거, 2009년 10월 8일 제2회 재판에 피고인을 소환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4장 제1심 소송절차 제3절 재판 제75조, 제76조, 제77조에 의거, 피고인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으나, 불출석 사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
- 6) 재판국은 2009년 10월 10일에 제3회 재판에서 헌법시행규정 제3장 권징 제88조에 의거하여 피고 이재철 목사를 연직 책벌한다.

●  
서울서노회, 이재철 목사 판결문(2009.10.10)

2. 증거의 요지

- 1. 고발장
- 2. 피고발자 조사서
- 3. 100주년기념교회 구 정관
- 4. 100주년기념교회 2009년 신년 0시 예배 순서지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 1) 헌법 제2편 정치, 제6장 제41조 장로의 선택, 제8장 제54조 권사의 선택
- 2) 헌법 제3편 권징 제4장 제1심 소송절차 제3절 재판 제67조, 제68조
- 3) 헌법 제3편 권징 제4장 제1심 소송절차 제3절 재판 제75조, 제76조, 제77조
- 4) 헌법시행규정 제3장 권징 제88조

위와 같이 판결한다.

2009년 10월 1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서노회 재판국



- 재판국장 오형우
- 재판국 서기 곽재욱
- 재판국원 박위근 (재판국 회계서 제출)
- 재판국원 노봉거
- 재판국원 송홍성
- 재판국원 박동섭
- 재판국원 배명준
- 재판국원 이만성
- 재판국원 우영수 (재판국 회계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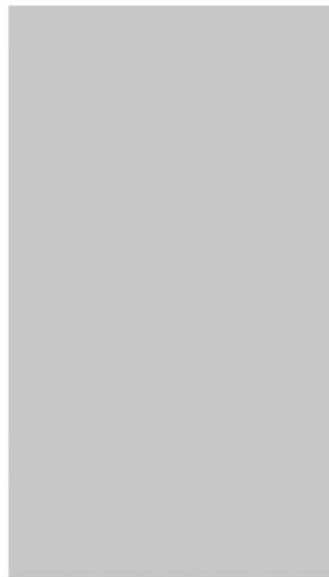
☞ > 뉴스 > 교계

## 이재철 목사를 '이단'으로 다루기에는 '준비 미흡'

서울서노회 기소위원회... '이단' 죄목 빼고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만 유지

2009년 08월 29일 (토) 12:00:59

김세진



예장통합 서울서노회 노회장 차광호 목사 등 9명이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를 근거로 이재철 목사를 고발했으나, 8월 28일 1차로 열린 기소위원회에서는 '이단' 항목을 뺐다.

이들이 '이단' 항목을 뺐 이유는, 이단으로 기소하려면 직영신학대학교 5인 이상 교수의 의견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소위원장 장찬호 목사는 "(헌법에 명시한 기준을 따르기에는) 준비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재철 목사의 이단성을 입증할 교수를 추천해달라고 하자 "모른다.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했다.

기소위원회는 이재철 목사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 9월 10일에 열리는 2차 기소위원회에 참석하라고 했다. 죄과는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다. 범죄는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한 것과 복음을 곡해하게 한 것이다.

장찬호 목사는 "목회자로서 이해가 간다.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서 유족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풀면 안 된다. 신학이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게 풀면 안 된다. 신학이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기소위원회 회의 막바지에 고발인인 차광호 목사(서울서노회 노회장)가 들어왔다. 차 목사에게 장례식에 가서 죽은 자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나 물었다. 차 목사는 "죽은 자를 공출히 여겨 달라고 기도한다"고 했다. 이재철 목사가 쓴 말과 다른 말이 아닌 것 같다고 하자, "일시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은 다르다"고 했다. 이재철 목사가 <성숙자반>에서 기록으로 남긴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장찬호 목사 역시 "책을 써서 기록한 것이 문제다. 교인뿐 아니라 목회자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 <뉴스앤조이> 2009년 8월 29일자 기사  
<뉴스앤조이>는 서울서노회가 이재철 목사에 대해 이단으로 고발했으나 취소한 경위에 대해 보도했다.

장찬호 목사는 "기소 중에 탈퇴하면 면직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100주년기념교회가 양화진에서 손을 떼 때까지 면직할 수 없다"고 했다. 장 목사는 "모든 문제가 양화진에서 시작했다. 이 목사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다. 양화진에서 떠날 것을 용단해야 한다"고 했다. 차 목사는 "이 목사가 양화진에 대해 공공이가 있다"고 했다.

장로·권사 호칭제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차 목사는 이재철 목사가 장로·권사 호칭제로 장로와 권사를 '쓰레기 모으듯 긁어 모은다'고 했다. 100주년기념교회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뒤늦게 깨닫고 열심히 해본들 일반 교회에서는 장로·권사 되기 어려운데 거기는 되니까 모이는 것"이라고 했다.

9월에 열리는 총회에서 '장로·권사 호칭제'를 안건으로 다룰 가능성이 있다. 장찬호 목사는 "강북 6개 노회장 협의회가 '장로·권사 호칭제' 문제를 총회에 상정했다. 이재철 목사에 대한 자료집을 만들어서 이번 총회에서 나눠줄 예정이다"고 했다.



- <아이굿뉴스> 2009년 9월 1일자 기사  
<아이굿뉴스>는 서울서노회가 이재철 목사를 이단으로 고발했으나 '조건 미비'로 삭제했음을 보도했다.

## 100주년기념교회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기묘하신 섭리와 은혜를 감사하오며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본 협의회에 의해 2005년 7월에 창립된 100주년기념교회는 지난 4년동안 아름답게 성장하여 교회다움을 갈망하는 국내의 기독교계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주의 영을 힘입은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낳은 고귀한 열매임을 믿고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창립과 더불어 귀 교회는 양화진의국인선교사묘원과 순교자기념관 운영관리 에 물심양면에서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였으며 이그려졌던 한국기독교 성지의 질서를 바로잡고 세우는 일에 묵묵히 봉사해 오셨습니다.

순수한 기독교인이라면 성도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냉수 한 그릇, 꽃 한 송이라도 들고 고마움을 표시함이 최소한의 보답임에도 불구하고 책임 없이 움해하며 왜곡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 몇 가지 문제는 유니온교회 측이 본 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그 다음의 항고, 또 그 다음의 재정신청에 이르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지난 4월 14일 국법에 의해 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유니온교회는 양화진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는 것과 “100주년기념교회가 유니온 교회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재철 담임목사에 대한 통합측 장로교단 서울서노회의 기소는 본 협의회 이사회가 2006년 4월 정기이사회에서 이미 승인한 장로, 권사 호칭제를 시비 삼는 것이고, 더욱이 최근에는 티무니 없는 이단시비까지 벌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거론하기조차 힘든 불순한 동기가 깔려있습니다.

● 정진경 이사장, 100주년기념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2009.9.3)

정진경 100주년협의회 이사장은 서거 전날 보낸 서한에서 서울서노회의 이재철 목사에 대한 이단 시비 이면에는 불순한 동기가 깔려 있다고 증언했다.

이모든 문제들로 인하여 100주년기념교회 성도 여러분이 큰 고통을 안고 있는데, 이는 많은 부분에서 본 협의회가 적절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인줄 알고 성도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100주년기념교회를 세우시고 자라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이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교회설립에 참여한 본 협의회는 “후견자의 입장에서 교회를 섬긴다”고 명시한 기본방침에 따라 앞으로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 교회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100주년기념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09년 9월 3일

계단  
법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이사장 정진경





## 호소의 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이하, '100주년기념교회')는 2005년 7월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이사장이셨던 故 한경직 목사님의 뒤를 이은, 故 강원용 목사님, 故 정진경 목사님 등 원로목사님을 비롯한 협의회 이사회의 권유와 뜻을 받아 창립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협의회가 부여한 양화진의국인선교사묘원과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의 관리와 그 숭고한 선교 정신 전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거칠고 황폐한 언덕이었던 양화진 동산을 거룩한 성지로 가꾸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에 대한 집요한 음해와 부당한 처사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애통해 하는 저희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를 바로 잡고자 다음과 같이 호소하는 바이니 해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저희는 '이단 추종자' 들이나 '쓰레기' 가 아닙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서울서노회가 자행한 이단행위사유의 고발(서노기2009-2)과 규정위반사유의 고발(서울서노회재판국2009-01) 및 하나님의 자녀들을 "쓰레기"라고 표현한 서울서노회 노회장님의 언론 발언(뉴스엔조이, 2009.8.29.)은 저희 교회 창립 이념과 저희 5천6백여명 교인들의 신앙과 인격을 모욕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이단 추종자들도 아니고 장로, 권사직을 탐하는 "쓰레기"도 아닙니다. 저희 교회의 장로·권사 호칭제는 이미 2006년 4월 협의회 정기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권사직에 대한 한국 교회의 전통을 고려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09년 6월 정관을 개정하여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참된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이는 담임목사님과 함께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하여 이 곳 양화진 동산에 묘지기로 동참하고자 스스로 모였을 뿐입니다.

●  
**100주년기념교회 교인들의 호소문(2009.9.9)**

100주년기념교회 교인들은 서울서노회의 이재철 목사에 대한 이단 시비 등 음해에 대한 한국 교회와 교인들의 올바른 이해를 호소했다.

**둘째, 양화진묘원을 성지로 가꾸고 지키고자 하는 저희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유니온교회가 제기한 업무방해죄 형사고소, 항고, 재정신청으로 인해 저희 교회는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았고 이를 감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9년 4월 13일 서울 고등법원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통하여, 100주년기념교회가 유니온교회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희 교회는 그 이전의 불법 묘지 매매나 매장, 선교활동을 빌미로 한 묘원 참배의 상업적 행위, 묘원 훼손 행위 등을 바로잡고 묘원을 성지로 가꾸고 지키고자 애써 왔습니다. 이러한 저희 교회의 헌신을 마치 양화진 성지를 독점적으로 사유화하는 것으로 오도하는 터무니 없는 비난들은 마땅히 중지되어야 합니다.

**셋째, 한국 교회의 올바른 연합정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과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은 특정인이나 특정교단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하게 책임있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20개 교단과 26개 기독교단체의 연합으로 출범한 협의회는 한국 교회 전체의 초교파적 연합정신을 구현하고자 독립교회의 형태를 띤 100주년기념교회를 창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를 오도하는 위 서울서노회의 고발, 이단시비, 비난 문서 작성 및 배포 행위는 연합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더 나아가 예정통합교단에도 돌이킬 수 없는 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더 이상 반복 진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올바른 믿음과 소명감을 견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저희들은 일부 목회자님들의 오해나 편견, 그릇된 언행에 대하여 깊은 연민과 함께 애통해 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지켜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 담임목사님과 더불어 참된 '교회다움'과 '그리스도인다움'을 지키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더욱 강건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국 교회 지도자님들과 성도님들께서 구별된 신앙과 삶의 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120여년 전 이 땅에 전파된 복음의 씨앗이 이제 한국 교회에 큰 사랑과 화평과 생명의 열매로 맺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9. 9. 9.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 교인 일동

상임위원회 위원장 윤좌원 장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한조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철길 집사

# 보도자료



주소 121-883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142-1  
전화 332-9177 팩스 332-9175 홈페이지 100church.org

수신	기독교 언론사 교계 담당 기자님
발신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
제목	예장통합 서울서노회의 이재철 담임목사 면직 판결에 대한 입장표명
날짜	2009.10.15.

1. 귀 언론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이하 100주년기념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서노회 재판국(노회장 차광호 목사, 재판국장 오창우 목사, 이하 서노회)이 2009년 10월 10일 권석재판을 통하여 이재철 담임목사를 “면직 철회”했다는 판결문을 10월 14일자로 접수했습니다. 이에 100주년기념교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합니다.
3. 10월 14일에 이재철 담임 목사가 서노회 재판국으로부터 받은 면직 철회 판결문은 지회 100주년 기념교회와 무관한 결정입니다. 100주년기념교회는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가 설립하여 독자적인 정관에 의해 운영되는 교회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4. 이재철 목사의 교단 탈퇴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헌법 21조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결사의 자유가 있음을 선언합니다. 결사의 자유는 개개인의 단체 결성은 물론 단체의 가입·잔류·탈퇴의 자유 등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이영, 『한국헌법론』, 540면) 국민이라면 누구든 단체 결성의 설립시점, 목적, 형태, 명칭, 정관, 소재지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결사의 자유’ 뿐 아니라 단체의 가입·잔류·탈퇴가 가능한 ‘소극적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헌법학계의 통설입니다. 이재철 목사가 지난 6월 26일 교단 탈퇴서를 서노회에 내용증명으로 보낸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소극적인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서노회 재판국이 교단 소속이 아닌 이재철 담임 목사에 대하여 재판을 한다는 것은 재판관할권이 없는 재판을 한 것이므로 그 재판은 무효입니다. 100주년기념교회는 이재철 목사의 면직 판결은 물론 서노회의 기소 및 재판의 전 과정이 원천무효임을 밝힙니다.
5. 따라서 100주년기념교회 이재철 담임목사의 면직 판결은 물론 서노회의 기소 및 재판의 전 과정이 원천무효임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예장통합 교단의 헌법시행규정 88조는,
 

“제88조 [재판계류와 교단탈퇴]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의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교회, 단체 포함)가 총회나 노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항존직원은 헌법 권징 제5조 제1항 제7호 면직철회로 판결하며 재판에 계류중이 아닌 항존직원은 권고 사직된 것으로 본다.”

- 1 -

● 100주년기념교회, 서울서노회 이재철 목사 면직에 대한 입장(2009.10.15)  
100주년기념교회는 서울서노회의 이재철 목사 면직 재판은 100주년기념교회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앞으로도 더욱 양화진선교사요원을 성지로 가꾸는 일에 매진할 것임을 밝혔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재철 목사의 경우처럼 재판에 계류 중이 아닌 항문 직원의 탈퇴이기 때문에 굳이 위 규정을 적용한다면 “권고 사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노회 기소위원회가 노회장 차광호 목사 외 8인으로부터 헌법 제2편 정치 제6장 제41조 장로의 선택, 제3장 54조 권사의 선택에 관한 조항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은 2009년 6월 24일이었고, 서노회 기소위원회가 이재철 목사를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보낸 출석요구서는 7월 3일에야 발송되었습니다. 6월 26일 당시 이재철 목사는 재판국의 재판에 계류는커녕 기소조차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철 목사가 서노회에 내용증명으로 보낸 교단 탈퇴서는 예정통합 교단 소속의 <기독교공보>를 포함한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보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서노회 재판국의 이재철 목사 결석재판은 교단 헌법시행규칙 88조를 명백하게 위반한 원인무효의 재판입니다.

6. 교단을 탈퇴한 이재철 목사를 재판할 권한이 서노회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석재판을 하여 통합헌법 시행규정에 반하는 판결을 언론에 공고하는 것은 이재철 담임목사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7. 서노회가 채택한 증거자료는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① 100주년기념교회는 일부 교우들과 기독교인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교회정관 중 장로 권사로 호칭될 수 있는 자격을 대폭 강화하여 지난 6월 10일 정관개정을 하였고, 이 사실 또한 <기독교공보>를 비롯한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상세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6월 24일에 접수된 차광호 목사 외 8인이 제출한 고발장은 물론 10월 10일 결석재판 판결문 중 ‘증거의 요지’는 100주년기념교회 구 정관을 채택하였습니다.

② 서노회 재판국은 이번 면직 책벌의 판결이유에서 이재철 목사가 “2009년 7월 16일 기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법적 사실을 시인”하였으므로 재판국에 기소하였다고 했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이미 탈퇴가 끝나 기소위원회에 출석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철 목사가 그 자리에 나갔던 이유는 첫째, 45년 동안 몸담았던 교단에 공식적으로 인사를 하고, 둘째 이 사안과 관련하여 예정통합 교단이 “세월이 흐른 뒤에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를 원치 않”는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날의 발언 내용은 서노회 기소위원회가 모두 녹음을 하였기에 기자님들이 요청하시면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100주년기념교회 홈페이지(<http://100church.org>)에 올라 있는 2009년 7월 19일자 이재철 목사의 설교문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8. 100주년기념교회는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에 충실할 것입니다.

서노회는 자신의 논리에 충실한 것처럼 100주년기념교회는 하나님께서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를 통해 맡겨 주신 합법적인 권리를 선하게 사용하고, 선교사들과 순교자들의 신앙을 계승·발전시켜야 하는 사명에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장 대행 윤과원 장로  
 운영위원장 대행 정한조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철길 집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행정지원본부

110-470 서울 종로구 면지동 135번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309호  
☎ (02) 741-4350 전승 (02) 766-2427 담당 : 고훈기 직원

문서번호 : 예장총 제 94 - 152 호

시행일자 : 2009. 11. 9.

수 신 : 두바이 한인교회 [redacted] 선교사

참 조 :

제 목 : 이재철 씨(목사)에 대한 예배예식, 행사순서 의뢰 금지 요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1. 서울서노회 소속이었던 이재철 씨(목사)는 본 교단 헌법 제 2편 정치, 제6장 제 41조(장로의 선택), 제 8장 제 54조(집사, 권사의 선택)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서울서노회 재판국에서 재판을 통해 지난 2009년 10월 10일 자로 면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재철 씨(목사)는 서울서노회 기소과정중에 2009년 6월 29일 자로 서울서노회를 탈퇴하였고, 서울서노회 재판국 판결에 대해 2009년 11월 9일 현재 상고하지 않아 목사 면직 판결이 확정되어 본 교단 소속이 아닌상태입니다.

2. 올해 봄 춘계노회시 서울강북지역 6개 노회 협의회가 이재철 씨(목사)의 불법과 교회질서 문란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해 달라는 건과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이사회는 한국선교100주년기념교회에게 부여한 양화진외국인묘지공원과 용인의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 관리의 전권을 회수해 달라는 건을 제 94 회 총회에 현의하였고 제 94 회 총회는 이 현의안을 각각 총회 정치부와 총회 양화진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심의토록 결의하여 현재 해당부서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3. 따라서 현재 본 교단 소속이 아닌 이재철 씨(목사)가 본 교단 소속 교회(국내·외)의 예배 및 예식, 행사에 인도, 설교, 강사로 순서를 담당하는 것은 교단의 질서를 혼란케 하는 것이므로 이를 금지하니 양해하시고 귀 교회 100주년 특별예배시 이재철 씨(목사)를 순서자로 초청하는 것을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총 회 장 지 용  
세 계 선교 부 장 이 상



●  
예장통합, 두바이한인교회에 보낸 이재철 목사 초청 금지 요청 공문(2009.11.9)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세계선교부

110-470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5번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317호

☎ (02) 763-9764, 전승 (02)763-7331 담당: 정용구 목사

문서번호 : 예장세 제 94- 27호

시행일자 : 2009. 11. 19.

수 신 : 두바이한인교회 [redacted] 선교사

참 조 : 두바이 한인교회 사역위원회

제 목 : 두바이 한인교회 30주년 예배시 강사에 관한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문안드립니다.

1. 두바이 한인교회 사역위원회에서 보내 주신 공문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사역 위원회에 심사숙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현안이 저희 총회와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에 미칠 여려가지 상황과 함께 매우 중대한 사항이므로 저희 총회에서는 다시 한 번 이번 집회에 대해서 두바이 한인교회가 이 문제를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 초교파교회의 특성이 간과될 수는 없지만, 신철범 목사님이 저희 총회 파송 선교사 이기에 해당 총회의 원칙과 규정이 간과될 수는 없습니다. 총회의 입장은 총회에 소속된 선교사로서 섬기는 교회에 분위기와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저희 총회 전체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진다면 두바이 한인교회 뿐만 아니라 지금 전세계에서 사역하는 저희 교단 한인교회 전체 사역자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희 교단의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입장이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집회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저희 총회로서는 총회의 원칙과 요청을 반영하지 않은 신철범 선교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사역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깊고 신중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사랑의 교회(함동측, 오정현 목사 시무) 대각성 집회의 경우도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던 이재철씨의 집회였지만 저희 총회 이후 교단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동안 준비하신 과정들이 있으시지만, 이 후에 되어질 일에 대한 지혜로운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두바이 한인교회의 귀한 사역이 신철범 목사님을 통해 더욱 부흥되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 귀하게 여기시는 선교사역자가 이번 일로 어려움에 처해지지 않도록 두바이 한인교회의 지혜로운 결정을 기대합니다. 끝

세 계 선 교 부 부 장 이 상 섭  
서 기 박 은 성



예장통합 세계선교부, 두바이한인교회에 보낸 공문(2009.11.19)

예장통합은 두바이한인교회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이재철 목사 강연 초청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행정지원본부**

110-470 서울 중로구 연지동 135번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309호  
☎ (02) 741-4350 전송 (02) 766-2427 담당 : 홍상범 차장

문서번호 : 예장총 제 94 - 293 호

시행일자 : 2010. 1. 8.

수 신 : 대한예수교 [redacted] 총회장

참 조 : 서기

제 목 :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 담임 이재철 씨 면직 통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합) 총회는 총회 산하 서울서노회소속 전도목사로서,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였던 이재철 씨의 심각한 문제관 소속 노회가 정당한 기소와 재판 절차를 통해 면직 판결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 씨 면직 경과>

1. 제기된 문제  
장로·권사 호칭제/ 기존 장로교단의 헌법을 초월, 피택 및 임직 과정없이 자체 교회의 결의에 따라 임명, 호칭하므로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 질서와 영적가치 체계를 두너뜨린다는 문제.
2. 처리결과  
가. 장로·권사 호칭제의 문제가 제기되어 서울서노회 제80회 정기노회(2009년 4월 27일)에서 이재철 씨의 기소금 결의하고 임원회가 고소하였음.  
나. 이에 전도목사인 이재철 씨가 2009년 6월 26일 교단탈퇴서를 제출하였음.  
다. 기소위원회에서 소환하니 2009년 7월 16일 1차 출석하여 고소내용을 시인하였으나, 그 이후 기소위원회와 재판국 참석 및 소환요구에는 불응하였음.  
라. 서울서노회는 재판 과정까지 약 80여일 동안 전향적인 변화할 기다렸으나 상용하는 결과가 없었음.  
다. 재판국에서 2009년 10월 10일부터 최종 「면직」 하여 교계 5개 신문에 광고하고 본인에게 통고하였음.
3. 이상 처리 결과를 알려드리며, 아울러 그 간에 제기된 제 문제를 정리하여 본 교단 제94회 총회(2009.9)에 보고된 "양화진100주년기념교회 사태에 관한 보고서"를 동봉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1. 전도목사 이재철 씨 면직 광고 1부(2009년 10월 17일<트>, 제2725호)

2. 양화진 100주년기념교회 사태에 관한 보고서 10권

참고 : [www.pck.or.kr](http://www.pck.or.kr) → 상단메뉴(커뮤니티) → 총회소식 → 159번 '양화진 100주년기념교회 사태에 관한 보고서입니다.'를 클릭하여 다운로드 후 열람하거나, 홈페이지 전면 슬라이드 광고에서 '보고서'를 클릭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총 회 장 지 응  
서 기 이 순



예장통합, 이재철 목사 면직 통보 공문(2010.1.8)

예장통합은 이재철 목사의 면직 사실을 타고단 총회장들에게 공문을 통해 통보했다.



**사단법인 세계스포츠선교회**  **World Sports Mission**

☎ 01373-181312  
 ☏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3동 281-15  
 ☎ 02) 469-4291 ~ 2, 469-4293(Fax)  
 🌐 www.wsmk.org

281-15, Sungsu 2Ga 3Dong, Sungdong Gu  
 Seoul Korea 133-832, ☎ 82-2) 469-4291  
 E-mail : sportsmission@hanmail.net

문서번호 : 세스선 10 -42호

시행일자 : 2010. 1. 22

발 신 : 세계스포츠선교회

수 신 : 백주년교회 이재철 목사님

참 조 : 비서실장(선교위원장)

제 목 : 아시아 스포츠지도자 선교 컨퍼런스 중역 의뢰


선	지
결	시
점	일
수	자
변	시
호	간
지	일
리	자
과	제
당	호
자	공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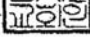
-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목사님과 섬기시는 교회위에 늘 증만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 스포츠인과 스포츠를 매개체로 온 누리에 복음전파와 진전한 기독교 문화를 보급하고 있는 본회에서 시대적인 변화와 요구에 부합하는 선진 스포츠선교 전략을 도입하여 한국교회 선교의 미래를 준비하고 국제스포츠선교지도자와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여 세계선교에 이바지 하고자 국내 최초로 「아시아 스포츠지도자 선교 컨퍼런스」를 별첨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이에 목사님과 섬기시는 교회에 다음과 같이 동역 및 협조(말씀, 자재 컨퍼런스 장소사용, 식사제공)를 부탁드립니다오니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 기간 : 2010. 4. 19(월)오후- 4. 23(금) 오전까지
- 장소 : 4월19-23일 할렐루야교회(4/19 개회예배, 4/23 폐회예배, 숙박 및 조식제공/ 확정)  
 4월20(화) 오전 영락교회(말씀: 이철선 목사님, 컨퍼런스, 중식제공/ 확정)  
 오후 지구촌교회(말씀: 이동원 목사님, 컨퍼런스, 석식제공/ 예정)  
 4월21(수) 오전 광명교회(말씀: 김선도 목사님, 컨퍼런스, 중식제공/ 확정)  
 오후 세에덴교회(말씀: 소강석 목사님, 컨퍼런스, 석식제공/ 확정)  
 4월22(목) 오전 백주년교회(말씀: 이재철 목사님, 컨퍼런스, 중식제공/ 예정)  
 오후 여의도순복음교회(말씀: 이영훈 목사님, 컨퍼런스, 석식제공/ 확정)
- 참가인원 : 250명(아시아 26개국에서 스포츠선교지도자)

첨부 : 아시아 스포츠지도자 선교 컨퍼런스 개요 1부. -관-

사단법인 세계스포츠선교회 대표회장 박종순 목사 

아시아 스포츠지도자 선교 컨퍼런스 준비대회장 김명혁 목사 

● 세계스포츠선교회의 이재철 목사 강연요청서(2010.1.22)  
 사단법인세계스포츠선교회의 강연 요청은 예정통합의 방해로 무산되었다.



수 신 : 이재철 목사님  
 참 조 : 백주년기념교회 목회비서실  
 제 목 : "미래목회와 네러티브설교" 강의 요청의 건

1.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본 기점은 2003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셨던 김자연 목사님의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특별기구로 출범하였으며, 12개 교단 목회자 200여명이 참여하여 활동하며 한국교회의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왔습니다.
2. 40~60대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한국교회의 허리역할을 감당하며, 리바이벌운동과 포럼을 통하여 이 땅에 확산되는 반기독교적 요소를 제거하고 기독교정신을 이 땅에 구현하여 왔습니다.
3. 미래목회포럼이 7주년을 맞으며 "미래목회와 네러티브설교"라는 주제로 귀한 세미나를 가지며 목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강의를 듣기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로서 미래목회에 대한 고견과 설교개발에 대한 실제적 강의를 듣기 원합니다.
4. 행사장소는 종로5가 연동교회 본당에서 가질 예정이며, 전국의 초교과 목회자 1,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5. 강의 일시는 2010년 7월 5일(월)이며, 강의시간은 80분입니다.  
 강의 시간은 1안) 오전 10시부터~오전 10시20분까지, 80분입니다.  
 2안) 오후 1시20분부터~2시40분까지, 80분입니다.  
 3안) 오후 3시부터~4시 20분까지, 80분입니다.
6. 위함에서 가능하신 안을 선택하시어, 5월 20일까지 강의 가능 여부와 강의시간, 그리고 강의 제목을 포럼 사무처로 연락을 주셨으면 합니다.
7. 강의안은 6월 15일까지 이메일로 통보해 주시면 책자를 제작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E-mail: saifree@naver.com)
8. 한국교회를 가슴에 품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와 목회자를 섬기는 미래목회포럼은 한국교회의 거룩한 부흥과 회복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장이 되어질 것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이 귀 교회에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2010. 5. 9.  
 미 래 목 회 포 럨



● 미래목회포럼의 이재철 목사 강연요청서(2010.5.9)  
 미래목회포럼의 강연 요청 역시 예장통합의 방해로 무산되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행정지원본부**

110-470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5번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309호  
☎ (02) 741-4350(9216) 전승 (02) 6008-2982 담당 : 고봉기 직원

문서번호 : 예장총 제 94 - 667 호  
시행일자 : 2010. 6. 8.  
수 신 : 은누리교회 당회장(CGN TV 이사장)  
참 조 :  
제 목 : 이재철 씨의 말씀강해 방송 중지 협조 요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리며 귀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CGN TV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본 교단 제94회 총회는 양화진문제해결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 하여 현재 한국교회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대한 권리회복, 유니온교회의 예배처소 마련,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의 교회장소 이전 및 교회명칭 변경 등을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에 요청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등 협의에 대한 대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 CGN TV 방송프로그램 중 “이재철 씨의 말씀강해”는 이재철 씨가 본 교단 목사직에서 면직되었으므로 본 교단 소속인 귀 교회가 운영하는 방송에 적절치 않은 프로그램이라고 사료되므로 이를 중지해 주실 것을 요청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총 회 장 지 응  
양화진문제해결을위한  
대책 위원회 김 정



●  
예장통합, 이재철 목사의 설교방송 중지 요청 공문(2010.6.8)  
예장통합은 CGN TV 이사장에게 이재철 목사의 설교방송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행정지원본부**

110-470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5번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309호  
☎ (02) 741-4350(9216) 전송 (02) 6008-2382 담당 : 고봉기 직원

문서번호 : 예장총 제 94 - 666 호  
시행일자 : 2010. 6. 8.  
수 신 : 서울서노회장  
참 조 : 서기  
제 목 : 소속 목회자 주의조치 요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1. 본 교단 제94회 총회는 양화진문제해결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여 현재 한국교회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대한 권리회복, 유니온교회의 예배처소 마련,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의 교회장소 이전 및 교회명칭 변경 등을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에 요청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등 협의에 대한 대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에서 전임 또는 교육파트로 있는 본 교단 소속 목사 및 전도사 명단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본 교단 목사직에서 면직된 이재철 씨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 사역함이 적절치 않음을 주의조치 해 주실 것을 요청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한국기독교선교 "100주년기념교회에서 사역 중인 본 교단 목사 및 전도사" 사본 1부. 끝.

총 회 장 지  
양화진문제해결을위한  
대책 위원회  
김  
관 사 서 기 노 회 장  
인 인 인

용  
정



● 예장통합, 100주년기념교회에서의 사역 주의 요청 공문(2010.6.8)

예장통합은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100주년기념교회에서 사역하지 못하도록 촉구할 것을 각 노회에 요청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서노회  
SEOUL WEST PRESBYTERY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110-7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7호  
Tel 708 - 4436, 4645 fax 708 - 4437 The Korean Ecumenical Building  
#907, 136-56 YeonJi-Dong ChongRo-Ku 110-740 SEOUL KOREA

서 노 : 서- [redacted] 2010. 7. 9  
수 신 : [redacted] 목사  
참 조 :  
제 목 : 본 교단 소속 목회자 주의(注意)조치 요청의 건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본 총회에서는 본 교단 소속 목사 및 전도사가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에서 사역함이 적절치 않음으로 주의조치 해 달라는 요청(예장총 제94-666호)을 해 왔습니다.

이에 첨부한 총회 공문을 숙지하여 본 교단 소속 목사로서 주의하며 합당한 처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안하소서.

끝.

- 별첨: 1. 총회공문(예장총 제94-666호) 1부  
2. 한국기독교선교 "100주년기념교회에서 사역 중인 본 교단 목사 및 전도사" 사본1부

노 회 장 이 건 호  
서 기 송 영 태



● 서울서노회, 100주년기념교회에서의 사역 주의 공문(2010.7.9)

예장통합 서울서노회는 총회의 요청에 따라 100주년기념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에게 사역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  
 <크리스천투데이> 2009년 7월 15일자 기사  
 예정통합이 이재철 목사의 목회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보도한 보도 기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행정지원본부

110-470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5번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309호  
 ☎ (02) 741-4350 전승 (02) 766-2427 담당 : 고봉기 직원

문서번호 : 예장총 제 94 - 275 호

시행일자 : 2009. 12. 30.

수 신 :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이사장

참 조 :

제 목 : 양화진 외국인묘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 요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1.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제 94회 총회에서 양화진 외국인묘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총회 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2. 그동안 본 교단은 양화진 외국인묘지의 관리 책임은 한국개신교 20개 교단 및 26개 기독교관의 공교회적 연합인 귀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와 한국교회에 있음을 천명해 왔습니다. 더불어 귀 협의회가 한국교회 선교 역사의 공동유산이자 공동의 책임인 양화진 외국인묘지의 관리를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라는 어느 한 특정교회에 "전권 위임"한 것은 협의회 결성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고, 귀 협의회가 이를 시정하여 한국교회가 공동으로 양화진 외국인묘지를 관리토록 권한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양화진 외국인묘지의 관리는 한국교회 전체가 연합하여 공동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우선 본 교단이 행정적, 재정적인 기초를 마련하여 책임 있게 관리를 준비할 것이며, 이제껏 써와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는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결성의 기본 정신을 존중하여 양화진 외국인묘지 관리 권한을 한국교회에 조속히 반환하고, 교회장소를 묘원을 떠나 이전할 것과 교회 명칭 변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본 교단은 위 제안에 대한 귀 협의회의 협조를 다시한번 재 촉구합니다. 또한 귀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이사회가 신속하게 소집되어 귀 협의회 산하 7인 조정위원회가 마련한 5개의 합의사항(○묘원관리는 협의회가 할 것 ○백주년기념교회는 독립교회가 아닌 연합교회 ○유니온교회의 예배처소 마련 ○매장이 금지된 묘원의 보상 및 선교사 가족들의 묘지 마련 ○이재철 목사는 통합교단에 사파하고 탈퇴의사 철회할 것 등)이 귀 협의회 이사회에서 조속히 수용,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끝.



총 회 장 지 응  
 양화진문제해결을  
 위한대책위원장 김 정



예장통합 행정지원본부, '양화진외국인묘지 문제해결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2009.12.3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행정지원본부**

110-470 서울 종로구 언지동 135번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309호  
☎ (02) 741-4350 전송 (02) 766-2427 담당 : 홍문배 간사

문서번호 : 예장총부 제 94 - 58 호

시행일자 : 2010. 2. 10.

수 신 : [REDACTED]

참 조 :

제 목 :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 협조 요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제94회 총회에서 결의한 "서울노회장 임수근 장로, 서울동노회장 송석산 목사, 서울북노회장 조기덕 목사, 서울강북노회장 황호준 목사, 서울서노회장 차광호 목사, 서울서북노회장 류영모 목사가 제출한 이재철 목사(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 담임)의 불법과 교회결서 분란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해 달라는 건은 정치부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기로 하는 건(제94회 총회 수입안건)과 관련하여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이사인 목사님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담을 요청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한 까닭에 침부와 같이 서면으로 질의하오니 2010년 2월 25일까지 답변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 부 : 권의서 1부      끝.

**정            치            부**  
위    헌    장    정    제    총  
서    기    이    평    황    황 (적인생략)

●  
예장통합 정치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협조 요청 공문(예장총부 제94-58:2010.2.10)과 첨부한 질의서



## 질 의 서

■■■■■■■■■■ 귀하

1. 귀하는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이사로서 100주년기념교회 담임목사인 이재철씨가 2006년 4월 이사회에 제출한 교회정관(운영규정)을 이사회가 결의하여 승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2. 당시 이사회가 승인한 100주년기념교회 정관에 '소위 장로, 권사 호칭제' 내용이 들어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3. 100주년기념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소위 장로, 권사 호칭제'가 우리 교단 헌법에 위배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4. 이재철씨가 '소위 장로, 권사 호칭제'로 인하여 서울서노회에서 기소되어 재판국으로부터 면허 출고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5. 100주년기념교회는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설립한 교회로 어느 교단에도 그 운영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100주년기념교회와 이재철씨가 '한국독립교회협의회'에 가입함으로써 사실상 특정 교단에 가입한 상황이 되고 말았으며 이재철씨는 통합측 소속 목사인 동시에 독립교회협의회 소속 목사로 이중 멤버십을 가진 결과되었습니다. 이를 허락한 이사회는 사실상 100주년기념교회 설립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이재철씨를 이중 교적을 갖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이 같은 조치가 이사로서 정당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6. 비록 개인자격으로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이사로 참여 하셨지만 동행의회가 한국기독교연합 기관인을 감안할 때 우리 통합교단에서 면직된 사람이 아직 100주년기념교회 담임목사로 서무하고 있는 사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임면권자인 이사로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8. 귀하는 비록 개인자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하였지만 우리 교단소속 목회자로서 이계철씨의 위법  
을 제지하고 바르게 지도함으로써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와 기념교회, 양화진 관리 등에 대하여  
화해와 협력을 이끈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계철씨의 위법(정관승인요청)에 대하여 그것이  
위임의 형태든 아니던 직접 참여의 형태든 동조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법적 책임도 함께 져야 할 것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가. 우리 교단에서 면직 출교처분을 받은 이계철씨는 100주년기념교회에서 사인시키든지 아니면  
해 문제를 해결하여 복직하게 하든지 해야 할 것이며

나. 소위 장로, 권사 호칭제 정관을 수정하고(이계철씨는 2009년 6월 10일 정관개정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습니다)

다. 100주년기념교회가 예배처를 마련하여 양화진에서 철수하며

라. 양화진 교역관리는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이사회가 관리주체를 결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요구하고 해결책을 도모할 의사가 있습니까?

위의 질문에 대하여 2010년 2월 26일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없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정치부장 정재훈 목사  
특별조사위원장 김창영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제 96회 총회 주제 : 다음 세대의 양육 "가는 교의 - 한국교회의 미래, 가나안의 신앙교육으로!" - (신6:4-9, 마26:18-20, 행2:17)

**행정지원본부**

110-470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5번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309호  
☎ (02) 741-4350(0215) 전송 (02) 6008-2982 담당 : 홍상범 차장

문서번호 : 예장총 제 95 - 857 호

시행일자 : 2011. 7. 21.

수 신 :

참 조 :

제 목 : 양화진 외국인요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성명)서 참여 요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1.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제94회 총회(2009. 9.)에서 "양화진 외국인요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급 총회 무변위원회로 구성하고 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연구 중에 있으며 본 교단이 양화진 외국인 요지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행정적, 재정적인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2. 이에 양화진 외국인 요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서(성명)서 첨부와 같이 동봉하여 드리는 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 부 : "제안서(성명)서" 1부 끝.

총 회 장 김 점  
양화진문제해결을위한  
대책위원회 박 위



●  
예장통합, 양화진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성명)서 참여 요청 공문(예장총 제95-857호:2011.7.21)과 성명 제안서

## 제안서

한국교회는 기독교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외국인 선교사들의 순교적 희생과 신앙 선진들의 숭고한 신앙을 계승할 목적으로 다양하게 기념사업과 행사단 준비, 거행하기 위해 1980년 초에 故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계 원로들이 중심이 되어 20개 교단과 26개 기독교 단체가 연합하여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결성한 바 있습니다.

'협의회'는 한국선교 100주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85년에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증여로 양화진 외국인묘지공원을 '협의회'가 소유권등기한 하였고, 묘지 이름은 '서울외국인묘지공원'으로 개명하여 서울특별시가 도시(묘지)공원으로 지정하여 보호토록 추진하였으며, 이어서 '협의회'가 현신적인 기독교인들간의 협찬을 얻어 1986년 10월에 선교기념관을 완공하여 '서울유니온교회'의 예배처로 사용하게 하고 묘지공원과 선교기념관의 관리권 서울유니온교회에 일임하는 귀한 결정을 함으로써 한국교회가 외국인 선교사들과 신앙선배들의 상호존중과 신뢰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협의회'는 2003년 9월에 양화진 외국인묘지공원과 선교기념관은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양화진 외국인묘지공원에 '한국인연합교회' 설립을 결의하였고 2005년 7월에 '한국선교100주년기념교회'를 창립하였습니다. 그후에 한국기독교 연합의 상징이고 한국교회와 외국인 선교사들 간의 굳건한 신뢰와 아담다운 협력의 풍요 역할을 담당해 왔던 양화진 외국인묘지공원과 선교기념관이 '한국선교100주년기념교회'와 '서울 유니온교회'의 4년간의 계속된 갈등으로 선교 100주년기념사업의 귀한 결실들이 진공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분쟁의 현장으로 변해버리는 사태가 접하면서 심한 충격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이사인 우리는 2007년 8월 이후 '서울 유니온교회'가 21년간 예배드렸던 양화진선교기념관의 예배처소권 상실케 되고 선교사 후손들과 시시비비단 가리는 분쟁이 한국교회의 명예권 실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한

국교회가 연합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인식하여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살피고, 문제해결을 원하는 한국교회와 선교사 후손단의 일치된 지적들을 숙고하여 책임 있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1. 우리는 양화진 외국인묘지의 관리 책임이 한국개신교 20개 교단 및 26개 기독교계의 공교회적 연합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와 한국교회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협의회'가 한국교회 선교 역사의 공동유산이자 공동의 책임인 양화진 외국인묘지의 관리단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라는 어느 한 특정교회에 "권위 위임"한 것은 '협의회' 결성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기에 '협의회'는 이 단 반드시 시정하여 양화진 외국인묘지 관리 권한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2. 우리는 양화진 외국인묘지의 관리는 한국교회 전체가 연합하여 공동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이제껏 씨와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는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결성의 기본 정신을 존중하여 양화진 외국인묘지 관리 권한을 한국교회에 조속히 반환할 것을 요청합니다.

3. 우리는 서울유니온교회가 21년간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처소란 상신케 한 사택은 어떤 이유로도 옮지 못한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는 '서울 유니온교회'의 예배처소란 양화진 선교기념관 안에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4. 우리는 '한국인연합교회'로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가 설립을 결의하여 2005년 7월에 설립된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는 독립교회가 아닌 연합교회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는 마땅히 교회 연합정신의 산실이 되어야 할 양화진 묘역 관리단 담당해야 할 교회가 독립교회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으로 당시의 교회선립 정신을 위배하고 있으며, 한국선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기념교회는 교회장소인 양화진묘원을 떠나 새로운 장소로 교회단 이전할 것과 교회 명칭 또한 변경할 것을 요청합니다.


5. 이와 더불어 우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양화진 외국인 묘지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행정적, 재정적인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준비하는 일에 적극 동의하며, 한국교회의 공동의 유산인 양화진 외국인 묘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1. 7.

###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이사 이종윤 목사	이사 김삼환 목사
이사 이철신 목사	이사 하용조 목사
이사 최창근 장로	이사 정이숙 권사
이사 길자연 목사	이사 한명국 목사
이사 김혜철 목사	이사 박종화 목사
이사 이정익 목사	

## 2. 예정통합이 발행한 <양화진 사태 보고서>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



www.sccourt.go.kr  
공공문서용 QR코드


**서울고등법원**

**제 10 형 사 부**

**결 정**


정본입니다.

2009. 4. 14.

법원사무관 양 운 

사 건	2009초재155 재정신청
신 청 인	서울유니온교회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산 28-12 서울의국인학교 대표자 프린스 찰스 오텡 보아텡(Prince Charles Oteng-Boateng) 신청대리인 변호사 민병일, 유동현, 오대환, 신동선, 이덕형, 성현상
피 의 자	1. 정진경 [REDACTED]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REDACTED] 2. 김경래 [REDACTED] 서울 마포구 합정동 [REDACTED] 3. 정용섭 [REDACTED] 서울 서초구 내곡동 [REDACTED] 4. 이재철 [REDACTED] 서울 마포구 합정동 [REDACTED]
불기소처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8. 11. 11.자 2008형제23471호 결정

**주 문**



2009-0009314600-D65LV 화신즈 발자취를 부끄러워 않습니다. 1 / 3

●●

서울고등법원, 업무방해 관련 재정신청 판결문(2009초재155/ 2009.4.13)

서울고등법원은 업무방해 사건 재정심판 결정문에서 “협의회 임원 및 기념교회 담임목사인 피의자들에게 고소 사실과 같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 제정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 1.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는 1984.경 경성구미인묘지회로부터 서울 마포구 합정동 140 외 9필지(이 사건 건물의 부지 및 외국인 공원묘지)를 외국인 공원묘지의 영구보전과 외국인 선교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 건립 등의 조건으로 증여받아 1986.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 신청인 교회는 증여 이후 2005. 4.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단독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2005. 7.부터 신청인 교회와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가 사용시간을 달리 하여 예배를 드리기로 합의한 사실, 그런데 위 협의회는 2005. 9. 14.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신청인 교회의 묘지관리 부실 및 불법매장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건물과 공원묘지의 관리 및 운영책임을 위 기념교회에 위임하고, 2005. 11. 9. 신청인 교회에 주일예배 및 성경공부를 위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을 허용한다고 통보한 사실, 한편 2007년도에 이르러 위 기념교회의 교인 숫자는 2,500여명에 이르는 반면 신청인 교회의 교인 숫자는 약 5-60명에 불과하여, 위 기념교회는 2007. 6. 1. 신청인 교회에 같은 해 8. 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시간을 변경하겠다고 통보한 사실, 이에 신청인 교회가 위 기념교회의 시간변경 요구에 불응하자, 2007. 8. 5. 새벽에 이 사건 건물에 진입하여 물리적 실력 행사를 하겠다는 첩보를 전해들은 위 기념교회는 2007. 8. 3.경 이 사건 건물의 잠금장치를 바꾼 사실, 마포구청은 2007. 8. 7.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묘지관리소가 아니라 종교시설로서의 예배처소로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신청인 교회는 2007. 8. 12.





과 8. 19. 새벽에 이 사건 건물 현관 앞에 모여 옥외예배를 드린 사실, 위 협의회는 2007. 9. 11.자로 신청인 교회에 동 교회가 사용 중인 사무공간을 2007. 10. 31.까지 이전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고, 신청인 교회 목사가 아직 짐을 다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 관리주체로서 보안 내지 방법을 위하여 출입하기 전에 사전에 통고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협의회가 부담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증여 계약이 해제되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및 외국인 공원묘지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지 않은 이상, 위 협의회 임원 내지 위 기념교회의 담임목사인 피의자들에게 고소사실과 같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13.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기사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알 디그    달리셔스    라이브  
 메일보내기    오류신고    프린트    추가    = >

## 마포구청, "양화진 두 교회 선교지서 퇴거하라"

"선교기념관 용도는 공원관리사무실" 양 교회에 퇴출 권고

[2623호] 2007년 08월 21일 (화) 00:00:00 [조회수 : 105]    후원모 기자    hmpyo@kidokongbo.com

한국교회의 성지인 양화진 외국인선교사요원 내 교회가 사라지게 됐다.



양화진 선교기념관의 사용 권한을 둘러싸고 서울유니온교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오랜 기간 다투어 온 갈등은 마포구청에서 "선교기념관의 용도는 관리사무실이기 때문에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오는 8월20일까지 선교기념관을 공원관리사무실로 용도 변경할 것을 명령해 양측 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엉뚱한 방향으로 결말을 맞게 됐다.

지난 7일 마포구청은 양측에 "양화진외국인선교사요원 내의 건축물은 공원관리사무실 용도로 건축되었으나 교회 및 예배 용도로 사용 중에 있어 2007년 8월20일 한으로 당초 건축 허가된 공원관리사무실 용도로 전환하지 않고 본래의 용도 외로 사용시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등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당당자인 녹지환경과 이종일 씨에 따르면 최근 마포구청에서 8월20일까지 선교기념관을 공원관리사무실로 용도 변경할 것을 명령해 서울유니온교회와 100주년기념교회 양측 다 "양화진외국인선교사요원은 1965년도 서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다.

●●  
 <한국기독교공보> 기사(2007년 8월 21일자 기사)  
 유니온교회가 마포구청의 '선교기념관에서의 본래 용도 외 사용금지' 지시에 응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 이 기사는 유니온교회가 '100주년기념교회에 의해 쫓겨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을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건축됐고 이를 위한 관리사무실의 용도로 선교기념관의 건축을 허락했던 것"이라며 "이 건축물이 행정기관의 목인 하에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고 해서 정당화 될 수는 없으며 언젠가는 바로 잡아야 했던 일을 지금에서야 바로 잡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마포구청의 퇴거 권고에 대해 양측 교회는 모두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지난 19일 주일예배에서 100주년기념교회는 이날 모인 교인들에게 임시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며 "이 문제는 오랫동안 선교기념관을 예배당으로 사용해온 서울유니온교회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불법이라고 언론기관에 스스로 선언하므로 언론기관이 마포구청에 문의하여 표면화됐다"며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는 힘이 들더라도 정도를 가기로 결정했고 우리 교회는 이 결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기로 8월 15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유니온교회의 프린스 찰스 오텐 보아텡 담임목사는 "서울유니온교회는 20년이 넘도록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2주의 여유도 없이 퇴거 권고를 한 것은 당장 예배 드릴 곳도 찾지 못한 우리에게 너무나 불공평한 처사"라며 "100주년교회는 양화진 외국인선교사요원 바로 옆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고 있어 우리와는 상황이 전혀 다른 상태"라고 말했다.

프린스 목사는 "서울유니온교회는 예배장소로 서울외국인학교나 연세대학교 등 몇몇 장소를 물색중이지만 예배장소가 결정 되기 전까지는 마포구청에 양해를 얻어 예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0주년기념교회는 현재 외국인선교사요원 바로 옆에 건축 중인 홍보관이 10월 중순 완공 예정이라 이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비상체재로 인근의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밝혔다.

## 양화진 외국인묘지 관련 검토

07.9월 기획관리조정관

### I. 인요한 위원 발언 요지

- 양화진 외국인묘지는 ①국유지이므로 ②유니온교회가 계속 **사용권**을 가지고 예배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③100주년 기념사업회는 개발계획을 중단하고 ④외국인이 계속 매장될 수 있도록 해야함

### II. 양화진 외국인묘지 연혁

- 1890.8 의아문(외교부)이 조영수호통상조약에 의거, 사유지였던 양화진 부지를 매입하여 외국인묘역으로 조성
- 1913.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이후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경성구미인묘지회 (Kyung Sung European American Cemetry)로 등기
- 해방-1961. 언더우드 2세와 3세가 '경성구미인묘지회' 대표로 등기
- 1961. '외국인토지법'으로 외국인은 토지소유를 못하게 됨
- 1978. 서울시 도시계획(전철2호선 공사 등) 추진상 보상문제로 확인결과 동 부지의 '외국인토지법' 위반이 밝혀짐  
※ 언더우드3세는 수년간 소유권 취득을 위해 노력했으나 내무부는 외국인토지 취득을 불인정
- 1985.6 '경성구미인묘지회'에서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사업회'에 증여를 하면서 법원판결로 소유권 이전
- 1986.10 100주년기념사업회는 선교기념관을 완공  
동 선교기념관에서 **유니온교회** 예배 시작  
\* 이전에는 특정한 교회 없이 여러 곳을 순회하며 예배
- 2005.7 100주년기념사업회는 '한국기독교 선교 100주년기념교회'를 설립,  
양화진묘역과 선교기념관 관리를 위임  
※ 이후 유니온교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선교기념관을 예배장소로 공동사용

- 1 -

●●

국무총리실, 양화진외국인묘지 관련 검토(2007.9)

국무총리실은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소유권자는 100주년협의회이며, 양화진에서의 매장과 선교기념관에서의 교회 용도 사용은 관련법에 의해 불가하다고 밝혔다.

**【양화진 외국인 묘지 현황】**

- 위 치 : 마포구 합정동(13,224㎡)
- 도시계획 : 외국인 묘지공원(지정일 : '65.5.6)
- 시 설 : 분묘 429기, 건축물(선교기념관) 1동(지하 1층, 지상 2층)

**III. 양화진 외국인묘지 관련 쟁점사항**

**① 소유권 문제 : 국유지로 볼 수 없음**

- **現 소유자(등기설정권자) : (재)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
  - ※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외국인토지법('61)상 토지소유가 불가능하게 되어 동 외국인묘지를 100주년기념사업회에 증여키로 결정('85.3)하고,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법원판결로 소유권 등기('85.6)
- **유니온 교회(외국인)측 주장**
  - 양화진 외국인 묘지는 실질적으로 국유지임
- **정부(마포구·서울시, 법제처) 입장**
  -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법적명의자였던 '경성구미인 묘지회'의 법률적으로 정당한 증여에 의해 법원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85.6)한 것이므로 국유지로 볼 수 없음

**② 선교기념관의 교회용도로 사용문제 : 관련법상 사용불가**

- 선교기념관을 교회로 사용하던 유니온교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예배시간을 놓고 충돌\*
  - \*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05.7 설립)가 유니온교회에 대해 '07.8.5일부터 예배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유니온교회가 반발
- 마포구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동 기념관을 당초 용도대로 관리사무실로 사용하도록 공문 조치('07.8.8)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상 '공원시설'은 관리사무소는 포함하고 있으나 교회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법상 선교기념관을 교회 용도로 변경하기는 어려움

- 공문조치 이전까지는 마포구청에서 양교회가 선교기념관을 관리사무소 이외에 예비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묵인

- 동조치에 따라 현재 100주년 기념교회는 묘지공원 바로 옆에 위치한 교육관을 교회로 사용하고 있으며, 유니온교회는 연희동 외국인 학교에서 예배를 보고 있음

### ③ 개발관련 문제 : 관련법상 개발 불가

- 동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지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공원시설에 한하여 시설설치가 가능하며, 현재 개발 추진사항도 없음

### ④ 외국인 등 추가 매장 가능 여부 : 관련법상 매장 불가

- 양화진 외국인묘지는 묘지가 아닌 공원이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묘지설치제한지역으로서 추가매장은 불가함

- 양화진 외국인 묘지공원은 동법 시행령 제14조상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묘지설치가 불가능함

- 또한 동 묘지공원은 한강변에 위치한 지역으로 지하철 2호선, 6호선이 지나고 양화대교 복단 및 강변북로와 접하고 있으며 인근이 주택 밀집 지역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11조 별표2 제4호 사목\*에도 저촉됨

\* 사.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추가매장 관련, 유니온교회가 37기의 묘지사용권을 유상으로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바 있고

- 금년 5월에는 동 묘지사용권을 가진 미국 국적 목사부인의 매장문제로 마포구청의 매장허가가 필요하다는 100주년기념교회측과 유족이 마찰을 빚음

SUGGESTED AGREEMENT

The 100th Anniversary Committee of the Korean Church represented by  
(hereafter called the 100th Committee) and Seoul Union  
Church represented by \_\_\_\_\_, hereby agree as follows.

1. The 100th Committee will allow Seoul Union Church the exclusive use of the Memorial Building and Foreign Cemetery.
2. The Seoul Union Church will be responsible for all normal maintenance and upkeep of the building and cemetery and will employ a caretaker for this purpose. The 100th Committee may assist in providing some support thereto with funds from an endowment fund established by the 100th Committee.
3. The 100th Committee shall be responsible for major repairs and other major expenses, and source of such funds will be from the endowment fund established by the 100th Committee to be called the 100th Anniversary Committee of the Korean Church Yangwhajin Memorial Building and Foreigner Cemetery Endowment Fund.
4. The fund will be administered by a committee comprising four members of the Korean Church and three members of the Seoul Union Church.
5. This agreement is for a period of one year from this date and is automatically extended on the same terms for further periods of one year, at a time, unless either party in writing, at least 60 days prior to end of each period, requests changes thereto.
6. This agreement may be terminated by either the 100th Committee or the Seoul Union Church by the terminating party advising the other party in writing with at least 12 months prior notice.
7. This document represents the entire agreement between both parties.

Signed at Seoul, Korea this \_\_\_\_\_ day of June 1986.

For SEUL UNION CHURCH \_\_\_\_\_

For 100TH COMMITTEE \_\_\_\_\_

Signed: \_\_\_\_\_

Signed: \_\_\_\_\_

Name : \_\_\_\_\_

Name : \_\_\_\_\_

Title : \_\_\_\_\_

Title : \_\_\_\_\_

Witnessed: \_\_\_\_\_

Name : \_\_\_\_\_

Title : \_\_\_\_\_

●●

'Suggested Agreement'(1986.6)

이 제안서 5조에는 '협약기간이 1년이며, 매년 연장할 수 있으며', 6조에는 '1년 전 서면으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Regulations For the Maintenance of the Korean Christian Centennial Memorial and Foreigners' Cemetery Park  
(Draft)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Objective) These regulations are the overall regulations needed for managing and supervising the use and maintenance of the basic and accessory facilities of the Mission Memorial built to commemorate the Korean Christian Centennial and its surrounding Foreigners' Cemetery Park.

Article 2. (Administration) The administration and operation of the above facilities shall be under the Business office of the Foundation of the Korea Christian Centennial Memorial Projects Committee.

Chapter 2. Maintenance and Administration

Article 3. (Inspection) To insure maintenance of the property the following items will be inspected periodically:

1. Cleanliness and healthfulness
2. Orderliness and beauty
3. Upkeep and repair
4. Preventative measures (fire and theft)
5. Effective use (lighting, ventilation, illumination, accoustics, deodorization, heating and air conditioning)

Chapter 3. Use of the Property

Article 4. (Use of the building)

1. With the exception of the space used by the Foundation Office, the Seoul Union Church will have use of all of the facilities: provided that, by prior agreement, the Foundation Office may use that portion supervised by the Church, but the Church must have approval for use of facilities provided by the Church.
2. The Seoul Union Church will use the above building for the purpose of worship, mission, education and fellowship.

Article 5. (Use of the Cemetery) Rules for the use of the Cemetery Park will be established separately.

Chapter 4. Maintenance of the Facilities

Article 6. (Joint use) The Seoul Union Church employees and users of the facilities will follow the directions of the Foundation Office on the use of joint facilities.

Article 7. (Prohibition of sub-lease and giving use-rights) The Seoul Union Church can not sublet or give use rights to others and will not give free use to others.

●●

'Regulations for the Maintenance of the Korean Christian Centennial Memorial and Foreigners' Cemetery Park(draft)(1986.7.23)

이 규정(안)을 보면, 묘지 관리는 100주년협의회가 담당하고(2조), 100주년협의회가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니온교회가 사용(4-1조)한다고 되어 있다.





Article 8. (Custodial responsibilities) The Seoul Union Church is responsible for custody of Church equipment and materials.

Article 9. (Supervision of keys) The Seoul Union Church and the Foundation Office will each maintain keys to their respective areas, with joint responsibility for joint use areas. However, the Foundation Office shall have a master key.

Article 10. (Changes in facilities) When new facilities or modification of facilities or new facilities are planned, the approval of the Foundation Office is required.

Article 11. (Compensation for damage) If facilities are damaged, the user shall restore to the original state or pay dam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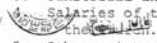
#### Chapter 5. Responsibility for Operating Expenses

Article 12. (Upkeep) Upkeep and repair costs for the property will be covered by the Foundation, and the Seoul Union Church will pay the upkeep and repair costs on facilities installed by the Church.

Article 13. (Taxes) The Foundation will pay taxes and insurance premiums on the property and the Seoul Union Church will pay taxes on property use.

Article 14. (Utilities) The Seoul Union Church will pay the following utilities but the Foundation Office will pay for the portion used by the Office:

1. Water and electricity charges.
2. Heating and cooling expenses.
3. Janitorial and cleaning expenses.
4. Salaries of technicians and janitors needed to maintain the Church.
5. Other maintenance expenses.



#### Chapter 6. Miscellaneous

Article 15. (Unclear matters) Matters not mentioned in this agreement or the attached operating rules will be decided and put into effect by the Foundation Office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eoul Union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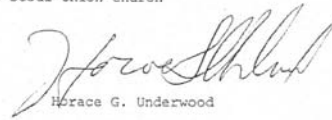
Article 16. (Modifications) Modifications to these regulations must be approved by the Foundation upon recommendation by agreement between the Foundation Office and the Seoul Union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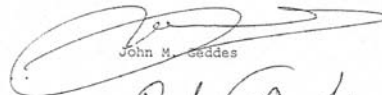


Article 17. (Implementation) These regulations become effective when approved by the Foundation after agreement between the Foundation Office and the Seoul Union Church.



For Seoul Union Church

  
Horace G. Underwood

  
John M. Seddes

  
Robert G. Sauer

July 23, 1986



## 양화진 문제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

최근 초대선교사 4대손 두 사람과 일부 인사들에 의해 야기된 양화진묘원과 100주년기념교회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본 협의회를 사랑하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본 협의회는 사실과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지리라 믿고 참고 기다려 왔으나, 국법에 의해 진위가 가려졌음에도 오해와 편견의 골이 남아있음으로, 2009. 4. 23. 제25차 정기이사회에서 협의한 후, 송구한 마음으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오니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1. 100주년기념교회는 교회연합기관인 재단법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선교 200년을 내다보고 창립한 연합교회 공동체이다. 특정교파, 교단에 예속되지 않고 독립교회 형태를 지닌다.
2. 협의회는 초대 이사장 고 한경직 목사, 2대 이사장 고 강원룡 목사의 신앙과 탁월한 리더십에 의해 뜻 깊은 연합사업들을 추진해 왔으며 정진경 목사가 3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도 아무런 분쟁이나 갈등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협의회는 2000년대에 이르자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와 기관들이 증가함에 따라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용인순교자기념관의 재산소유권은 보존하되 운영관리봉사를 수행할 유력한 교회 네 곳을 선정하여 교섭하였으나 모두 사양하였다.  
그 이유는 특정교파나 특정교단에 소속된 개교회가 맡아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2003년 임시이사회는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용인순교자기념관의 보존 및 관리를 전담할 100주년기념교회를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2년 간의 준비 끝에 2005년 7월 10일 교계 지도자들을 모시고 창립예배를 드렸으며 한국교회 최고·원로 방지일 목사가 축도했다.
4. 협의회는 담임목사 청빙을 비롯한 기념교회 설립준비위원으로 강원룡, 정진경, 강병훈 목사와 최장근, 김경래 장로를 선임하였다.  
5인 위원회는 양화진 울타리 결에서 20여 년 간을 살면서 양화진의 실상을 잘 아는 장로교 소속 이재철 목사를 적임자로 보고 방문 교섭하였으나 사양하였다. 재차 방문하여 협의회와 사정과 양화진의 실태를 설명하고 한국교회의 성지인 양화진의 묘원지기가 되어 줄 것을 간청했을 때 배석한 사모와 더불어 어쩔사리 수락했다.

1

### ●● 100주년협의회, '양화진문제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2009.4.23)

2009년 4월, 법원 판결로 유니온교회가 쫓겨났다는 등의 주장이 허위로 판명된 후 100주년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해명서. 이 해명서에서 100주년협의회는 2000년대 초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운영관리를 위해 대형교회 4곳에 협조를 부탁했으나 특정 교단에 속한 교회가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거절당했음을 밝혔다.

그날은 눈물의 기도로 헤어지고 5인 위원회는 즉시 창립준비에 나섰다.

5. 100주년기념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 출석 교인 수는 창립 3년 10개월 현재 교회학교 어린이 500여명을 포함하여 4,500여명에 이른다. 초신자와 20대 청년, 그리고 30~40대 젊은 층의 비율이 80%에 이르고 마포구 아닌 지역에서 출석하는 신도수가 90%이상이다. 이렇게 성장한 100주년기념교회의 헌신과 봉사로 양화진묘원은 아름다운 한국기독교 성지로 가꾸어지고 있으며 모든 불법과 훼손이 묘원에서 근절되었다. 그 동안 100주년기념교회가 양화진묘원 정비를 위해 소요한 경비는 홍보관 건립비를 제외하고도 14억여원에 이른다.  
100주년기념교회가 묘지를 훼손하고 주차장화한다는 비방은 기념교회 수 천명의 성도들을 무식하고 부도덕한 사람들로 매도하는 것이며 헌신적인 주차요원들과 수백 명의 봉사자들을 모독하는 언행이다.  
100주년기념교회 교인들은 주일에베시간에 묘역의 차도에 주차할 뿐이다. 우리나라 국립현충원을 비롯하여 전세계 어느 나라의 묘지든 묘역차도에 주차를 금하는 곳은 없다.  
100주년기념교회는 특정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교회로써 기독교회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독자적인 정관을 제정하고 그 정관에 따라 교회를 운영 하는 것을 협의회는 지지한다.
6. 100주년기념교회는 연합사업에 무관심하고 미온적인 한국교회를 빛도 없이 섬기는 청지기로 평가 받아 냉수 한 그릇, 꽃 한 송이라도 건네며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대상이다.  
양화진묘역과 순교자기념관을 위한 월정 협찬교회는 전국 수만 교회 중 불과 33개였고 최근에는 거의 절반으로 감소되었다.
7. 협의회는 한국교회의 공동유산인 양화진묘역과 순교자기념관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저해하고 비방하는 3대 세력을 주목하고 있다.
  - ▶ 첫째, 조상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사랑의 봉사를 망각하고 한국의 실정법을 거슬러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매장이 불가능한 묘원 입에도 38명의 내 외국인에게 적지 않은 금품을 받고 예매한 불법 행위를 감추고 있다.
  - ▶ 둘째, 한국교회의 성지를 사조직을 통해 관광 상품화하여 사익을 챙겨온 자들이다.  
100주년기념교회가 홍보관과 양화진홀을 개설하고 교육과 훈련 받은 안내원들을 배치하여 무료로 봉사하는 일을 백안시하는 무리들이다.
  - ▶ 셋째,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부흥발전 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지 않고 불신자나 이교도들도 행하지 않는 음해와 시비

를 일삼는 자들이다.

이 중에는 판공서를 상대로 양화진묘원이 혐오시설이라 부추기며 시외박이전을 집요하게 획책하는 개발이익 취득 전문업자도 있다.

8.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용인순교자기념관의 재산권은 (재)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회가 소유하고 있으며 100주년기념교회나 어떤 특정인이 사유화하지 않았다.

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상대로 수 차례 제기된 민형사상의 고소와 고발은 모두 무혐의와 증거 없음으로 기각되었고 제정신청까지 고등법원에서 기각 판결되었다. 서울유니언교회가 양화진 에서 쫓겨났다는 등의 주장들은 허위임이 국법에 의해 밝혀졌다.(첨부: 2009. 04. 13. 판결문 참조)

만약 앞으로도 불순한 동기와 의도로 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계속 거짓 포함하면서 한국교회를 농락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반드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9년 4월 23일

재단  
법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이 사 장 정 진 경

부이사장 강 병 훈

부이사장 최 창 근

상임이사 김 경 래

# 보도자료



한국기독교선교 100주년기념교회  
주소 121-883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142-1  
전화 332-9177 팩스 332-9175 홈페이지 100church.org

수신	기독교 언론사 교계 담당 기자님
발신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 [REDACTED]
제목	끝없이 반복되는 '양화진' 사유화 및 관리 의혹에 대한 반박
날짜	2010.3.7.

1. 귀 언론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근질하게 제기되는 사실과 다른 주장

2. 예장 통합의 서울 강북지역노회협의회(대표회장: 이진호)와 서울서노회(노회장: 이진호)와 마포교구협의회(회장: 김석순)는 지난 2월 16일 국회 귀빈회관에서 원회통 의원 초청 '기독교 유적지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입법 청원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이사장: 강병훈, 이하 협의회)와 양화진의국인선교사도원(이하 양화진)의 관리를 위임받은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담임목사: 이재철, 이하 100주년기념교회)는, △서울 강북지역노회협의회·서울서노회·마포교구협의회 등의 간담회를 보도한 <기독교공보> 2010년 2월 18일자 기사와 △통합 역사위원회 임회국 위원(장신대 교수·역사신학)의 2010년 2월 18일자 칼럼 '기독교 유적지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때'의 일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 잡고자 합니다.

### 누구에게나 1년 365일 열려 있는 양화진

4. 간담회에 참석한 인요한 박사(유진벨 선교사 후손)와 원한석 박사(언더우드 후손)가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 양화진 묘지를 3년째 방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묘지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양화진은 1년 36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에게나 묘역의 출입과 참배/순례가 열려 있습니다. 특히 선교사 후손 및 그 유가족들이 방문하는 경우는 새벽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0주년기념교회가 양화진을 관리하기 시작한 2005년 7월 이후부터 2010년 3월 5일 현재 16만 878명의 참배객이 다녀갔습니다. 지금까지 참배/순례객이 가장 많았던 날은 1629명(2009년 5월 23일)이었고, 2009년 양화진을 찾았던 순례/참배객은 6만8천14명, 매일 평균으로는 5천669명이었습니다. 이 숫자에는 100주년기념교회와 무관하게 일정 금액(약)을 예약금으로 받고 안내를 하고 있는 '양화진선교회' 및 다른 시설 단체들의 참배객 통계는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요한 박사와 원한석 씨는 양화진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다고 했습디만 △힐버트박사 기념사업회의 초청으로 손자 내외를 비롯한 300여 명의 관계자들이 2009년 8월 5일 힐버트 서거

1) 100주년기념교회와 무관한 시설 기관인 '양화진선교회'는 단체 참배객들을 안내해 주면서 인원에 상관없이 30,000원을 예약금으로 받고 있다.



###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 소유권 관련 보도자료(2010.3.7)

100주년기념교회는 2010년 2월 열린 국회 청원간담회에서 양화진선교사도원의 실태에 대한 예장통합 등이 왜곡한 내용에 대해 실상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냈다.

60주기 추모식(2009년 8월 5일)을 가졌고, △스크랜턴 100주기를 맞아 이화여대와 상동·아현·동대문 교회의 초청으로 스크랜턴의 고손자를 비롯한 유족들의 추모식을 2009년 10월 8일에 거행하였으며, △100여 기가 넘는 미군 및 관련 유가족 묘역을 미8군부사령관이 2009년 11월 6일에 참배하였고, △한미친선연합회가 2009년 9월 21-10월 1일까지 대대적으로 미군 묘역을 정비하였으며, △허용석 관세청장은 2009년 6월 1일 관세청의 초석을 놓은 헬리팩스 등의 설명관을 설치하고 묘역을 참배하였습니다.

#### 양화진의 합법적 소유권과 체계적 관리 실태

5.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양화진의 역사가 훼손될 뿐 아니라 사유화되고 있다고 주장한 예장 역사위원회 위원장 이만규 목사와 이번 간담회와 칼럼을 통하여 “특정 교회가 이 묘원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유적지가 합법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사유화되거나 훼손돼 무너지고 있다”는 임희국 위원의 주장도 사실과 매우 다릅니다.

첫째, 끈질기게 100주년기념교회가 양화진의 역사를 왜곡하고 묘원을 불법적으로 훼손했다며 대역섯 차례나 고소 및 고발을 감행했던 ‘양화진선교회’의 신호철·경성구미인묘지회·원한석(피터 언더우드)·서울 유니온교회 등의 시도는 모두 검찰과 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무근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불기소나 각하된 것입니다.

둘째, 양화진의 합법적 소유권이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에 있다는 사실은 인요한 박사의 요청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실시했던 2007년 9월 3일의 마포구청 감사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인요한 박사가 감사를 요청한 것은 양화진의 법적 소유권 문제를 비롯하여 100주년기념교회가 서울유니온교회를 쫓아냈으며 묘원을 불법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등등의 내용에 대해 국무총리실에서 사실을 밝혀달라는 것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셋째, 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을 관리하기 시작한 2005년 7월 이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현행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양화진에 예비순 선교사의 손녀를 묻고 싶어 하는 연세대학교의 계속적인 요청과 △서울 유니온교회 관리 당시 37기의 불법매장 예약, △KBS TV 인터뷰를 통해 양화진에 묻히고 싶다는 원한석 씨의 회당에 대해 협의회는 100주년기념교회를 설립한 목적이 양화진을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6. 사유화되었다는 것만뿐이나 터무니없는 주장은 양화진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100주년기념교회가 양화진의 역사를 전시한 양화진 홀이 들어 있는 홍보관 건축을 위해 사용한 40억은 차치하고라도, 양화진 묘역의 정비와 안내 봉사, 선교기념관 보수, 그리고 양화진문화원의 유지 등을 위해 100주년기념교회는 불과 5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40여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 양화진 사유화 의혹이 되풀이되는 이유

7. 이처럼 지난 5년간 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현행법과 세계적 표준에 따라 양화진을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요한 박사, 원한석 씨, 서울 유니온교회와 예장 통합 교

2) 이만규, “양화진은 한국교회의 신앙적 유산-성지-100주년기념교회 이계철목사님께”, <기독교공보> 2009년 5월 5일자; 박만서, “양화진은 한국교회 전체의 유산-교단 대표성 가진 기구가 관리해야”, <기독교공보> 2009년 7월 18일자 참조  
3) 2007년 8월 5일 KBS 1TV의 9시 뉴스 인터뷰

단 산하 노회들과 마포교구협의회 등에서는 끈질기게 양화진이 100주년기념교회에 의해 사유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역사가 왜곡되고, 묘원이 훼손된다는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 열거한 특정인들이 정당하지 못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인정하듯, 양화진은 아름답고 엄숙해졌을 뿐 아니라 국제 사회의 기준에 결코 뒤처지지 않는 성지공원으로서의 표준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끝)

첨부1: 100주년기념교회의 관리 이전과 이후의 양화진 전경 비교사진

첨부2: 헐버트, 스크랜튼, 미8군 부사령관 참배 사진

첨부3: 2009년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통계

공동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COUNCIL FOR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CHURCH

한국기독교선교  
100주년기념교회

이사장 강병훈 목사  
부이사장 최장근 장로  
상임이사 김경래 장로

상임위원회 의장 윤좌원 장로  
운영위원장 김현조 목사  
대책위원회위원장 정철길 목사





# 서울 서부지방법원

## 제 1 2 민 사 부

### 판 결

사 건 2010가합4325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경성구미인묘지회  
 서울 마포구 합정동 144  
 송달장소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산28-12 서울외국인학교 내 유  
 니온교회  
 대표자 원한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다솔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재단법인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사업협의회  
 서울 마포구 합정동 144 선교기념관 1층  
 대표자 이사 강병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11. 5. 13.  
 판 결 선 고 2011. 6. 10.

### 주 문



2011-0018688500-87BE0

유연한 판독을 부탁드립니다.

1 / 15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지방법원, 양화진 소유권 소송 1심 판결문(2011.6.10)

서울지방법원은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제기한 양화진 소유권 주장, 선교기념관의 영구적 사용권 주장, 양화진의 국유지 주장에 대해 모두 기각 또는 각하했다.



1. 이 사건 소 중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1985. 6. 17. 집수 제445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제1 예비적으로, 피고는 대한민국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제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 이 유

#### - 중 략 -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선교기념관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인데 1995. 7.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위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관한 등기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선교기념관에 관하여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무가 있다.

2) 가사 이 사건 토지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선교기념관을 자유롭게 이용·관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와 같은 부담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사용·관리권을 배제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바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명의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토지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강필의 일부 증언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선교기념관이 신축된 이후 원고와 그 구성원이 동일한 유니온교회가 2005년경까지 이 사건 선교기념관을 예배당 건물로 사용하여 오면서 그 유지에 필요한 전기요금, 상·하수도 및 가스 요금, 보험료 일체를 부담하여 왔고, 피고가 2005. 4.경 유니온교회에 교회건물을 건축할 때까지 이 사건 선교기념관을 임시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서면을 보내기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처분문서인 증여계약서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며, 이와 같은 증여의 원인이 된 원고의 1985. 2. 22.자 임시위원회 결의 역시 이 사건 토지를 외국인 묘지로 영구히 관리·보존한다거나 묘지공원 내에 선교기념관을 건립하여 이 묘역에 잠든 이들의 공적을



기리며 공원 묘역의 장래 사업계획에 대하여 피고와 협의한다는 내용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을 뿐 달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내부적인 소유권을 원고가 보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직후 그 주관 하에 비용을 후원받아 그 지상에 이 사건 선교기념관을 건축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당시 외국인토지법상 이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없었던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묘지 토지의 관리·보존과 그 지상에 이 사건 선교기념관을 건축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선교기념관이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강필의 일부 증언은 이를 신뜻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선교기념관이 신축된 이후 유니온교회가 2005년경까지 이 사건 선교기념관을 예배당 건물로 사용하여 오면서 그 유지비용을 부담하였고, 피고가 2005. 4.경 유니온교회에 이 사건 선교기념관을 임시 예배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서면을 보내기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선교기념관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1985. 2. 22.자 임시위원회 결의는 원고의 내부적 결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묘지공원 내에 선교기념관을 건립'한다는 취지일 뿐 이를 원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또한 피고는 그 주관 하에 기업체 등으로부터 비용을 후원

2011-0018688500-87BE0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7 / 15

지속정보관리법령



받아 직접 이 사건 선교기념관을 신축한 것이므로(도급계약서상의 도급인,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 모두 피고로 되어 있다.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선교기념관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부담부 증여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선교기념관을 자유롭게 이용·관리하는 것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 조건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피고에게 증여될 당시 작성되었던 증여계약서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선교기념관을 자유롭게 이용·관리하는 것이 증여의 조건이라는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1985. 2. 22.자 임시위원회 결의는 원고의 내부적 결의에 불과하고, 그 내용 역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외국인 묘지로 영구히 관리·보존하고, 그 지상에 선교기념관을 건립한다는 조건 하에 증여한다는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선교기념관을 독점적으로 자유롭게 이용·관리하는 것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의 조건으로서 결의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위와 같은 조건하에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당시 시행중이던 외국인토지법상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무주의 토지로서 대한민국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권 및 사용권을 부여받았고 이는 국유재산법상의 대부계약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러한 대부계약상의 권리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로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허가를 구하자 내부부장관이 이를 거절하면서 단지 이 사건 토지의 관리권을 원고 및 묘지연고자들에게 인정할 방침임을 고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단순히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대한민국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대부계약상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대한민국 명의로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나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대한민국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753 판결 참조),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5.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선교기념관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도,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 원·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외국인 묘지공원으로 영구히 관리·보존하고 그 지상에 선교기념관을 건립하여 이 묘역에 잠든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선교기념관이 건립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선교기념관을 20년간 독점적으로 사용·관리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선교기념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원고에게 영구적인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채권적 권리인 사용·수익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선교기념관의 인도를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또는 원고와 구성원이 동일한 유니온교회가 1985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 및 선교기념관을 관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나, ① 이러한 피고의 권리불행사만으로 권리 자체의 영구적인 포기를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을 제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유니온교회는 1986. 10. 16. 이 사건 토지 및 선교기념관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이를 피고에게 송부하여 주었는데, 그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유니온교회에 위 재산에 대한 관리운영을 '위임'하는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록 이 사건 토지 및 선교기념관을 유니온교회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사용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피고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선교기념관을 전대하거나 그 사용권 양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 피고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시행이나 개정 역시 피고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 역시 원고의 이러한 규정을 송부받고 1986. 10. 10.경 이와 유사한 취지로 규정을

2011-0018688500-87BE0

화면조명차량 배고도 없습니다.

10 / 15

서울서부지방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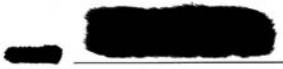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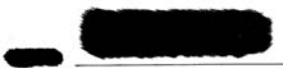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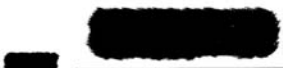

인준하기도 한 점(다만 유니온교회로부터 관리규정 초안이 먼저 송부되어 온 관계로 피고의 인준이 원고의 규정 제정보다 먼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1994. 9. 경 자신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토지의 보도블록을 교체하였고, 2002. 5.경 이 사건 토지 중 공원 입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비용을 모금하는 등 비용을 지출하기도 한 점(을 제6호증의 1 내지 8), ④ 피고는 2005. 9. 14. 유니온교회에 유니온교회가 이 사건 토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및 선교기념관의 관리를 백주년기념교회에 위임하고 유니온교회는 더 이상 관리주체가 아니라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고, 2005. 12. 6. 재차 유니온교회에 '그동안 위임하였던 이 사건 토지 및 선교기념관 관리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리가 해지되었음을 재확인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으며 006. 6. 23.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관리규정'을 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관리하기 시작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도 원고 또는 유니온교회의 이 사건 토지 및 선교기념관의 사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던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교기념관은 전적으로 피고의 주관 하에 건축되었고, 그 후 피고가 비용을 들여 보수를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선교기념관에 대하여 영구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선교기념관을 건축하고 이를 보수하여 왔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및 선교기념관은 피고의 승인 또는 협조 아래 원고 또는 유니온교회가 이를 사용하면서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더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선교기념관을 영구적으로 독점 사용·수익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계판장	판사		
	판사		
	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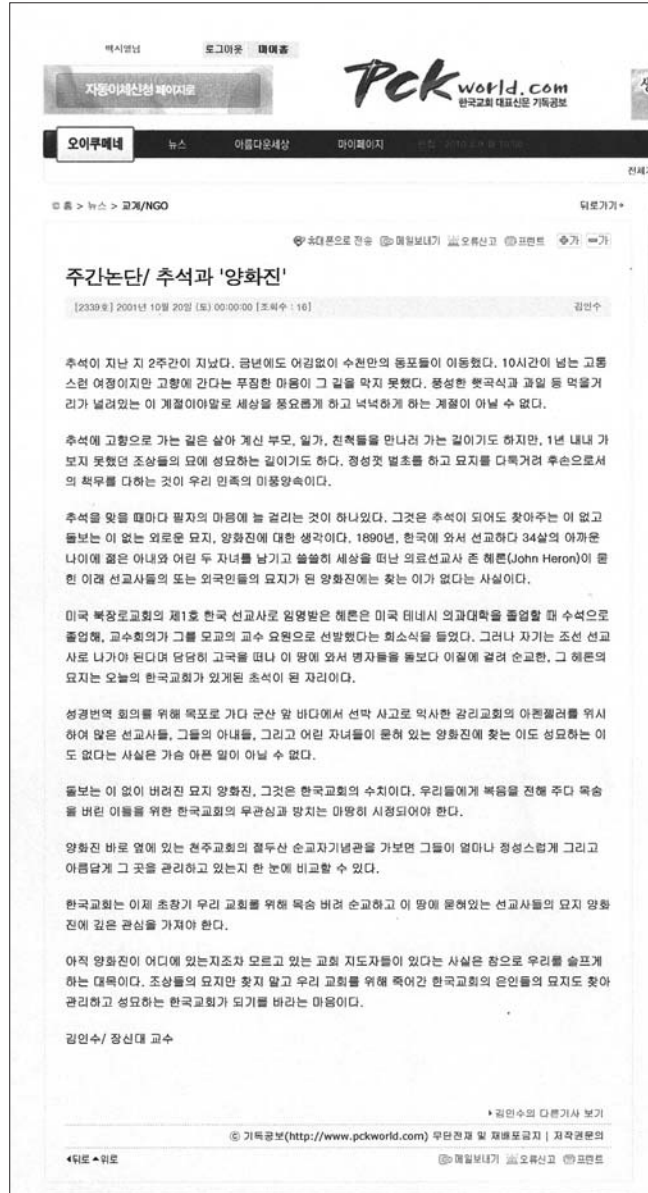
2011-0018688500-87BE0

위판소 방지용 QR코드입니다.

12 / 15

지문식별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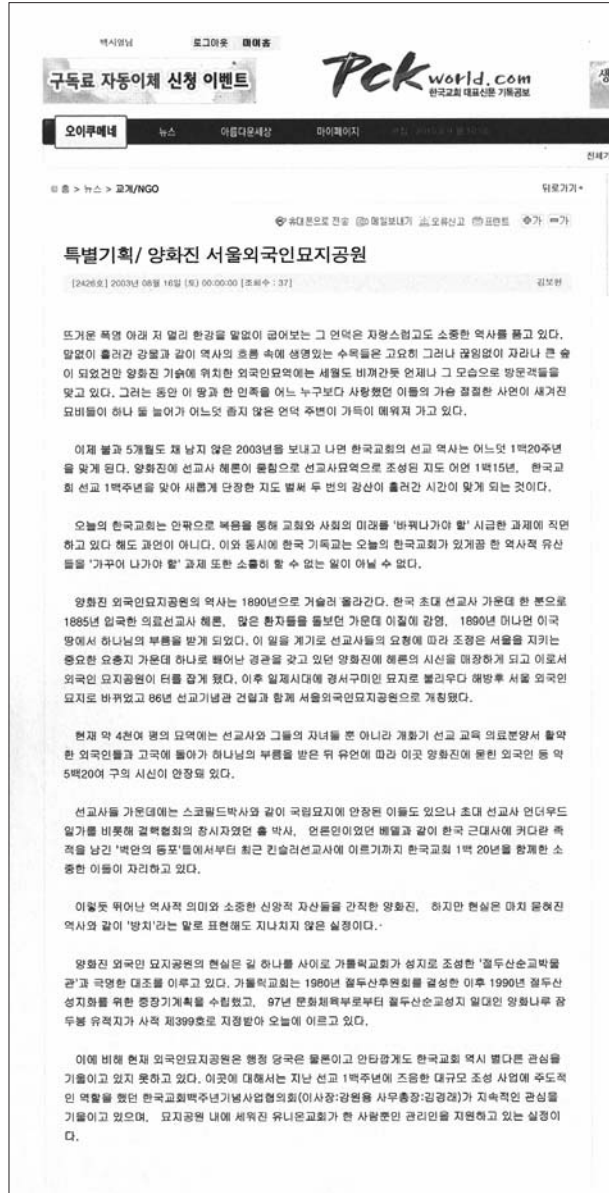
### 3. <한국기독교공보>의 양화진 보도 관련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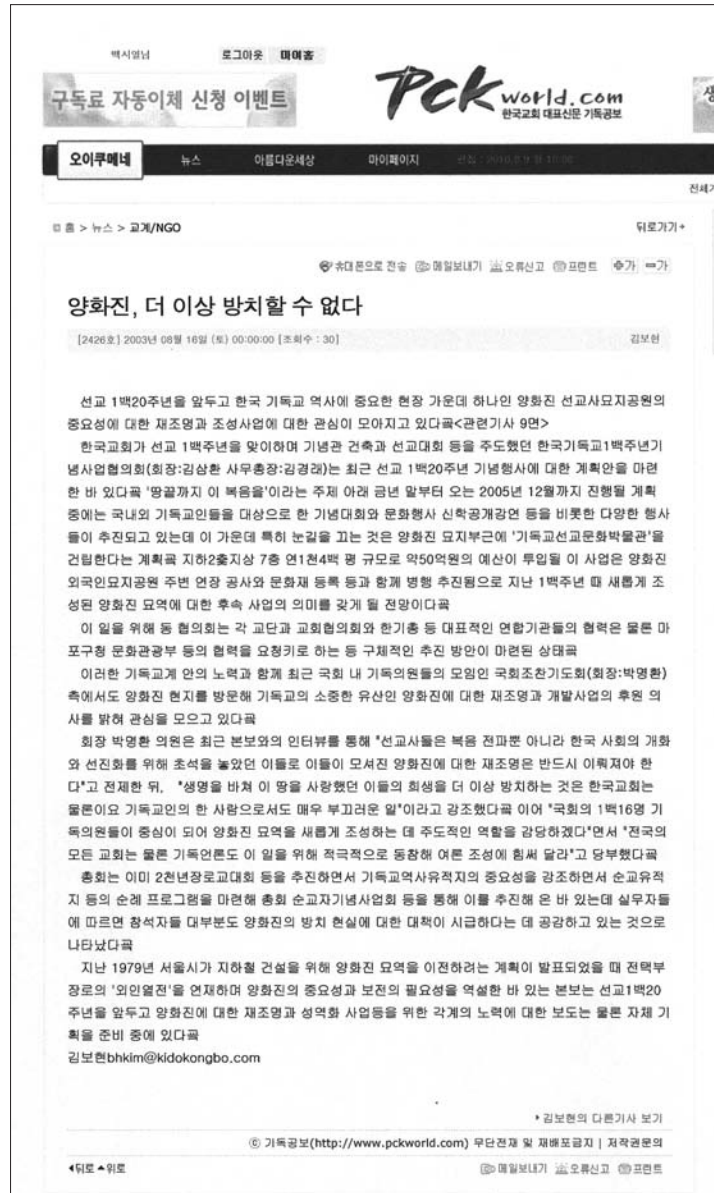
●●●

<한국기독교공보> 주간논단 기사(2001.10.20)

장신대 김인수 교수는 '추석과 양화진' 제하의 기사에서 양화진선교사묘원의 부실한 관리 상태를 탄식했다.



●●●  
 <한국기독교공보> 특별기획 기사(2003.8.16)  
 김보현 기사는 '특별기획-양화진 서울외국인묘지공원' 기사에서 '양화진선교사묘원은 방치되어 있다'며 한국교계의 무관심을 비판했다.



●●●  
 <한국기독교보> 특별기획 기사(2003.8.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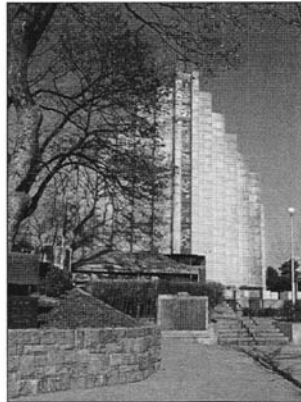
<한국기독교보>는 특별기획 기사를 통해 양화진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성역화 사업을 촉구했다.

## '양화진' 관리권 불협화음

백주년사업위 의욕행보에 '우리수' 지적 논란

[253호] 2005년 12월 13일 (일) 00:00:00 [조회수 : 688]

김보현 기자 E-mail: kbs@kdsongbo.com



한국기독교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유적지로 꼽히고 있는 '양화진'이 최근 들어 공영 조성 사업을 비롯해 일면의 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또한 높아지고 있어 관심이 요철된다.

최근 양화진에는 관할 구청이 1백30억 원의 예산을 투입, 결두산과 양화진 외국인(선교사) 묘지공원을 잇는 대규모 공영 사업이 이뤄진 데 이어 지난 7월 (재)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사업협의회(이사장:김영종 사무총장:김경래, 이하 '백주년')가 백주년 기념교회(이재철 목사 시무, 이하 기념교회)를 설립, 올릴 5개월 만에 9백여 명의 성도가속하는 규모로 성장하게 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난 86년 한국교회의 참여와 협력 속에 현지에 선교기념관이 세워진 이후 지난 20년간 동 기념관과 외국 인요지를 관리해 오던 서울유니온교회(프린스 칼스 목사 시무)측과의 불협화음이 일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무총장 김경래장로는 "최근 두 교회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풍문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제한 뒤 "매달 초 현재 유니온교회가 사용하는 기념관은 대지와 건물 모두 백주년 소유로 교유의 목적을 위해 지어졌으나 이후 예배 장소가 없던 유니온교회측에 예배 장소로 사용토록 허락해 준 것"이었다며 "백주년은 기념교회에 기념관과 선교사묘지에 대한 관리권을 이양했을 뿐 유니온 교회가 기존의 시간에 예배당 사용이나 선교사 조상들의 묘지 관리는 종전과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백주년 측의 설명과는 달리 유니온교회는 공식 문건을 통해 "지난 4월 21일, 백주년 측에서 현 기념관 인근의 부지를 매입, 초교파 교회를 설립한 예정으로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지하 친교실을 사용할 요청해 왔으나 교회측에서 오히려 사용하지 않는 본당 건물을 임시 사용토록 제안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이후 재협의 과정에서 계획했던 선교관 건립이 여의치 않다는 내용과 함께 사용권의 확대는 물론 종래 백주년의 소유로 되어 있는 기념관은 물론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대한 일체의 관리권을 기념교회 측에 일임키로 했다는 일방적인 통고를 받게 됐다"며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한국기독교보> 2005년 12월 13일자 기사

<한국기독교보>는 200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양화진 문제에 대해 초기에는 비교적 양측의 입장을 고루 반영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최근 발문한 양화진 주변은 대대적인 공원 조성 공사 후에도 주변 공사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였는데, 주변에 양화진을 알리는 안내판들은 '성교사 묘지공원'·'외국인 연합교회'라고 별기된 대형 도로표지판을 비롯해 '외국인성교사묘지공원'·'서울유니온교회'·'백주년기념교회'라고 함께 표기된 입간판도 세워져 있고, 묘지공원 입구에는 오래된 '외국인 묘지공원'이라는 간판도 세워져 있어 현지의 복잡한 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양화진 외국인(성교사) 묘지공원의 위치를 알리는 입간판들이 최근 교회 공사 중에 있다. 백주년기념교회측에서 새로운 안내문을 통해 양화진 묘역이 '외국인묘지'(左)가 아닌 '외국인 성교사 묘지'(右)임을 강조하고 있다.

양화진에 외국인 묘지가 조성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백15년 전인 1890년, 의료선교사 해운이 매장되면서부터. 이후 성교사와 한국 근대화에 헌신한 저명 인사, 외국인과 그의 가족 등 5백50여 명이 안장돼 왔다. 이후 1895년 정부로부터 정식 묘지 설립 허가를 받은 뒤 경성구미인묘지회(대표위원장·원일환)의 관리 하에 있었으나 한국교회가 백주년 기념사업을 진행하며 대규모 성교 유적지 조성 사업을 전개하던 중 '백주년기념사업협의회'에 흡수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니온교회는 "현재의 '백주년'이 시행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당시 중여의 배경과 조건에 맞춰야 이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소중한 당시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유니온교회 대표들 간에 존재했던 신뢰와 존중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백주년'의 김경래사무총장은 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동 기념관은 건립 당시부터 유니온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선교기념관으로 지어진 것"이라면서, "당초 50여 명 정도 묘일 줄로 예상했던 기념교회가 단기간 내에 급성장할 이케 유니온 교회 측과 문제가 생기게 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되는가 하면 성교사들을 위해 조성된 묘지에 일반 외국인들에 대한 불법적인 매장이 이뤄지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사회와 결의를 거쳐 초교파 교회로 세워진 기념교회에 관리권을 넘기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양측의 상반된 입장과 관련해 미국장로교신교회 권오덕(A. Kinsler)성교사는 양화진외국인(성교사)묘지에 대한 '백주년'의 계획과 관련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서신을 최근 백주년측에 발송, 우려를 표명했다.

백주년 측은 최근 잇달아 임시 이사회를 소집, 백주년 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하는 한편 지난 11월 9일 백주년 산하의 모든 사설들의 관리운영을 위임하려는 사유에 관련 △묘지 관리 부실과 불법 매장 △한국 정부가 '외국인 묘역'을 '성교사 묘역'으로 변경, 사실지로 지정하려는 데 따른 관리권 확보 △성교 2백주년을 향한 체계적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통고한 데 이어 지난 6일에 재차 공문을 발송, '유니온교회 측에서 왜곡된 소문을 유포하고 있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유니온교회에 위임했던 양화진 묘역과 성교기념관 관리운영에 대한 책임과 관리에 대한 해지 스'기념교회'가 문 협의회와 정당한 대표권자임을 재확인, 문제를 바라보는 심반된 시각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 '배은(背恩)인가, 식언(食言)인가'

기자수첩

[2540호] 2005년 12월 22일 (목) 00:00:00 [조회수 : 798]

김보현 기자 bhkim@kidokongbo.com

20년 전 양화진이 한국교회의 선교 유적지로 조성 되기에 앞서 무관심 속에 쌓여갔던 무려 1백50대 문양의 쓰레기보다 더 추한 거짓과 반목의 오물들이 외형적으로 새롭게 단장되어가는 양화진을 뒤돌고 있다.

당시 고 원일한박사가 위원장에 있었던 서울외국인묘지관리위원회는 관련 부동산 일체를 고 한경직목사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사업협의회에 기본적인 조건을 첨부, 관련 부동산을 증여했고, 백주년 측은 증여받은 대지의 일부를 활용, 선교기념관을 건립, 서울유니온교회 측에 예배 처소를 제공하는 한편, 지난 20년 간 문서상 관리권자로 유니온교회와 협력해 왔다.

현재 유니온교회 측은 '백주년'측의 태도를 '신뢰에 기반한 과거에 대한 부정과 의도적 말 바꾸기'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증여 당시 문서보다 중요했던 한국교회와 선교사들 간에 언약을 무시하고 이 보다 심각한 것은 지난 4월 최초로 예배당 내 일부 시설에 대한 사용을 요청하던 당시와는 달리 상황 변화로 '식언(食言)'을 서슴치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백주년'측 역시 "유니온교회 측이 한국교회가 배운 은혜를 이제 와서 저버리고 불법을 자행하고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불법과 관리 소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당한 권리를 넘겨받은 백주년기념교회와 제대로 선교사 묘지공원과 선교기념관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 예배시간 외의 일체의 관리권 일체를 회수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집은 하나인데 주인이 둘이 된 상황에서 문서 확인을 통해 법적 권리와 정당성을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대화를 통해 최근 상황들을 차분히 되짚어 봄으로써 누가 과연 '신뢰의 담을 허무는 여우'인지, 최근 사태의 주범이 '배은(背恩)'인지 '식언(食言)'인지 따져볼 일이다.

●●●

<한국기독교포> 2005년 12월 22일자 기자수첩

## 감정자극이 문제 키웠다

양화진, 한 지중 두 가족, '유니온-백주년' 대립

[2541호] 2005년 12월 29일 (목) 00:00:00 [조회수 : 81회]

김보현 기자 bhkim@adokangbo.com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85년, 한국교회는 선교 1백주년을 맞으면서 우리의 순교 신앙의 정답이라 할 수 있는 용인 순교자기념관을 세웠고, 인천에는 첫 공식 선교사의 입국을 기념하는 탑을 건립했다. 이와 동시에 복음으로 맞춘 자원 집중으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들의 묘역을 단장하고 또 마땅한 예배 장소가 없던 이들을 위해 선교기념관을 건립, 예배 장소로 삼게 함으로써 국경을 초월한 동역자로 우호 관계를 모처럼 실현하게 됐다.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지공원을 찾은 순례객들의 모습.

복음을 전해주었던 이국의 선구자들과 또 복음을 받아들여 1백년 만에 커다란 거목으로 자라게 된 한국교회가 아름답게 만났던 그 역사적인 현장, '양화진'이 다시 20년이 흐른 뒤 같은 현장으로 변해버린 안타까운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교회백주년기념사업을 주요 교단 지도자들과 기독교실업이 주축이 되어 이끌었고 지금도 대장부 청구 역할을 하며 여러 유적지를 관리 감독에 힘써 온 백주년기념사업위원회(이사장:김원용 사무총장:김경래, 이하 백주년)는 선교 1백20주년을 앞두고 의미있는 기념사업의 준비와 함께 개발 뒤 지속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온 현장들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주요 과제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다른 유적지와 달리 서울 시내에 위치한 양화진에 대해서는 '백주년'이 평소에 희망해 오던 속한 사업 가운데 하나인 주변 지역에 대한 공원화 사업을 관리구성이 마포구가 주동이 되어 가역이 예산을 투입해 시행하게 됐다. 또한 지속적인 관리가 절실한 '양화진 외국인(선교사) 묘지 공원'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이와 관련해 '백주년'은 "특정 교파에 속한 교회나, 한 두 군데의 대형 교회에 이를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독립적인 초교파교회를 설립, 관리에 대한 의무와 권한을 이양키로 방침을 마련한 바 있다"고 백주년 사무총장 김경래장은 설명했다. 실제적으로 지난 4월부터 교계에는 '백주년기념교회(이하 기념교회)'가 관할 구획의 협력 속에 세워지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일반 교회 목회 중단을 선언한 바 있는 이재철목사가 백주년 관계자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백주년기념교회의 담임목회자 직을 수락, 공식적인 출발이 이뤄지게 됐다.

그러나 이 때를 전후로 기존 선교기념관을 예배 장소로 사용해 온 '서울유니온교회'(프린스룩사 사무, 이하 유니온)와 설립 이후 단시일 내에 중립교회로 설정하게 된 '기념교회'간의 불편한 동거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한국기독교보> 2005년 12월 29일자 기사



현재 '백주년'측은 지난 6개월 간의 과정 동안 '유니온'측이 사실 무근의 소문을 유포했다는 별면한 갑질을 명시하며, "기존의 예배 시간 이외에 일체의 관리권에 대한 박탈"을 유니온 측에 물고한 바 있으며, '유니온'측 역시 "당초 약속과 달리 중여 당시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며 법적 권리만을 내세운" '백주년'측의 입장에 유감을 표하며, "기념교회" 역시 임시 사용을 요청했던 바와 같이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예배 장소를 찾아 떠나줄 것"을 직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그간 기념교회 설립 과정에 대해 알려진 바는 '기념교회는 양화진 인근에 부지를 마련, 홍보관을 겸한 건물을 건축하고, 그곳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게 되며, 수개월 정도가 소요될 기간 동안 유니온 교회를 임시 예배 장소로 사용한다'는 것으로 이는 유니온 교회가 밝힌 설명과도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7월 기념교회 설립 이후 알려진 상황은 기념교회가 초고속 설당을 거듭하며 당초 교회 설립에 깊이 간여했던 백주년 이사회 관계자들의 예상을 넘어 5백여 명 선에서 출발한 교회 인원이 줄지 않고 12월에 들어서면서 9백 명을 넘어서게 했다는 점을 첫번째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한 지붕 두 가족 같이 선교기념관을 함께 사용하게 된 '유니온'과 '기념교회' 양측의 감정적 요인도 적지 않은 갈등의 원인이 됐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선교기념관은 1백년 전 선교사들과 외국인들 중심으로 출발한 이후 다양한 독자적 예배당 없이 대화관과 시내 호텔들을 전전하며 예배를 가지 온 유니온교회의 규모를 감안 예배실 규모가 약 2백석 남짓의 작은 공간으로 설계됐다.

이처럼 좁은 시설에 비록 2부로 진행되기는 하여도 1천 명 가까운 교인들이 이용한다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었고 현재 예배당 입구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주방시설 부족으로 인해 임시 천막이 설치돼 교인들의 친교를 위한 음식 장만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 또 한가지 변수로 등장한 것이 당초 추진했던 홍보관 건립에 자질이 발생한 것.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실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백주년'측에서 기념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영구적인 예배 장소 확보하기 위한 수순을 밟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회 전면의 '불현기념동판'이 제거되고 주변의 표지판들이 '외국인 묘지공원'에서 '선교사 묘지공원'으로 교체되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유니온' 측에서는 모종의 의도를 가진 행사라는 의혹과 일방적 처사에 대한 문제가 갈수록 갈수록 제기됐다.

1백20년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뒤집어 서구교회의 선교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백주년을 기념하는 교회의 급성장엔 주위의 우려와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린 교회에 새로운 성장의 전형으로도 평가받을 만한 요소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거북하고 허니된 교회보다 현재 양 교회의 갈등과 대립은 소유권과 거주권 간의 단순한 다툼으로 비화되거나, 저무는 선교 1백20년에 있어서는 안될 재난으로 비화될까 우려를 낳고 있다.

PCK world.com  
한국교회 대표신문 기독교공보

오이쿠레네    뉴스    아랍대문세상    아이제이지    연도 : 2017.11.9 수 15:21

☰ 홈 > 뉴스 > 교계/NGO    뒤로가기 >

기사 3874    PCK가속    뉴스    트위터    유튜브    네이버    구글    링크    알리시스    관리자

☰ 구독    ☰ 알림    ☰ 로그인    ☰ 로그아웃    ☰ 마이페이지    ☰ 고객센터    ☰ 광고문의

☰ 구독    ☰ 알림    ☰ 로그인    ☰ 로그아웃    ☰ 마이페이지    ☰ 고객센터    ☰ 광고문의

### '양화진 선교 기념관' 두고 양 교회 갈등

백주년기념교회, 유니온교회에 "8월5일 예배시간 조정" 일방 통보

[2017호] 2007년 07월 11일 (수) 09:00:00 [조회수 : 184]    양화진 기자    jang@pckworld.com

양화진외국인모지 내에 위치한 선교기념관을 예배처소로 함께 사용하고 있는 유니온교회(프린스북사 시무)가 백주년기념교회(이재철목사 시무)의 '일방적 예배시간 조정 조치'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1885년부터 사역을 시작한 유니온교회는 최근 22년간 양화진 선교기념관을 예배처소로 사용해 오고 있다. 7월 8일 예배 모습.

이같은 갈등은 지난 4월 말 백주년기념사업위원회(이사장-장진경)와 백주년기념교회가 유니온교회측에 8월 5일부터 예배시간을 기존의 오전 9시30분에서 오후 4시30분으로 옮기라는 공문을 보내오면서 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백주년측은 5월 초 또 다시 예배시간을 옮길 것을 통보해 자신들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차명했다.

한 예배장소를 두고 아귀되고 있는 갈등은 도대체 왜 촉발됐을까. 백주년기념사업위원회 관계자들은 2005년 4월 21일 유니온교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별도의 교회 설립 의사를 전달하고 기념관내 예배공간 사용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사업위는 새 예배당 건축을 염두에 두고 이같은 제안을 했으며, 2005년 9월 완공되면 그곳으로 옮기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같은 해 7월 7일, 양측의 합의대로 백주년기념교회가 유니온교회 본당에서 첫 예배를 드린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새로운 예배시설'을 건축하는 일이 무산되면서 양측은 표면상으로는 계획에 얽힌 '한치불 두가축' 신세가 되었고 한달이 채 못되어 입사 사불 요청을 '영구 사용'으로 진한, 이를 유니온교회측에 통보했다.

이 시기에 '선교기념관 접수실'도 흘러 나갔다. 유니온교회측은 문건을 통해 당시 백주년기념교회와의 회의에서 이재철목사가 "백주년기념교회가 기념관 건물에 입주한 진정한 이유와 목적은 합법적인 소유자로서 기념관 건물을 접수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결국 '5개월 한시적 임대'로 시작된 양측의 동거는 '굴러온 돌, 박힌 돌' 논쟁으로 치달고 있는 결국, 2007년 천 한국교회로부터선교기념관에 대한 '영구적인 사용권'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하는 유니온교회와 양화진을 비롯해서 그동안 백주년기념사업회가 관리해 오던 각종 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관리책임'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백주년기념교회 사이에 밀고 당기는 신경전이 허겁을 짓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현재로서는 일방적 예배시간 조정 조치에 대해 양측이 의견차이를 좁히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유니온교회는 22년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전 9시30분을 고수할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2천명이 넘는 교세로 성장한 백주년기념교회측은 오전에도 반드시 예배당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거듭 확인하고 있어 양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한국기독교공보〉 2007년 7월 11일자 기사  
 〈한국기독교공보〉는 2007년 하반기부터 일방적으로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비난하고 유니온교회를 옹호하는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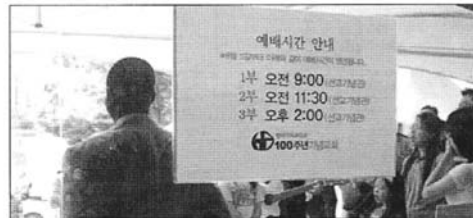
## 100주년협의회, "2005년 약정? 기억이 잘..."

8월 5일 예배 시간 이전 단행, 합의서 무시

[2007.08.08] 2007년 08월 08일 (수) 00:00:00 [조회수 : 1546]

장항철 기자    jangc@kiddokongbo.com

양화진외국인요지 내에 위치한 선교기념관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니온교회(프린스룩사)와 100주년기념교회(이재철목사) 사이의 내용이 지난 5일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100주년기념교회에게 양화진외국인요지 관리권을 부여한 삼위조직)가 유니온교회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예배시간 조정 명령'이 시행되면서 보다 심각한 양상으로 치달고 있다.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교회측은 지난 4월 유니온교회에게 8월 5일부터 예배시간을 오후 4시30분으로 옮기라는 지시를 일방적으로 해 불의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8월 5일, 본당에서는 100주년기념교회가, 교회 밖에선 유니온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사진/장항철기자

100주년기념사업회는 1985년부터 오전 9시30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유니온교회에게 지난 4월, "8월 5일부터 오후 4시30분에 예배를 드리라"고 일방적으로 명령한 바 있다. 이런 조치에 따라 100주년기념교회 교인들은 5일 오전 9시에 선교기념관 본당에 모여 예배를 드렸으며, 같은 시각 유니온교회 교인들은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한채 예배당 입구 앞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

이에 대해 100주년기념사업회 사무총장 김경래장로는 "주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정당한 조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나그네로서 주인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문제"라고 유니온교회를 맹비난했다. 심지어 김 장로는 "현재 유니온교회 교인들은 선교사들과는 관계가 없고 (선교사들과 비교해서는)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와 있는 '상군'에 불과하다"는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김경래장로의 발언은 달초 2005년 7월, 100주년기념교회가 설립되기에 앞서 100주년기념사업회와 유니온교회 사이에 오고간 일종의 합의서의 내용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이어서 진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한국기독교보〉 2007년 8월 8일자 기사

## "경건한 마음으로 주차에 임해주세요?"

주차장으로 둔갑된 양화진 외국인 묘지공원

[2695호] 2009년 02월 24일 (화) 20:08:30 [조회수 : 830]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 '경건한 마음으로 주차에 임해야 하나...?'

지난 2007년 8월 5일 100주년기념교회(이재철목사 시무, 이하 기념교회)가 유니온교회(프린스목사 시무)에 일방적인 예배시간 조정을 통보한 이후로 양화진의국인선교사묘원(이하 양화진)에는 여러가지 변화가 찾아왔다. 그간 유니온교회는 연세대학교(총장:김한중) 신과대학 채플실에서 모임을 가져왔고 기념교회는 설장에 설장을 거듭해왔다. 회생과 헌신으로 한국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이채는 믿히 접들어있어야 할 선교사들에 대한 부담감으로 최근 찾은 양화진에는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할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안식을 취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양화진의 일요일 참배객 제한을 홍보했던 기념교회가 도리어 교인들의 차량으로 양화진을 마치 주차장과 흡사하게 만들어버린 상황이 여과없이 드러난 것. 차량들은 묘원의 깊숙이 언더우드 일가의 묘일까지 진입해있었다. 역사가 4년이 채 안된 기념교회의 2009년 2월 1일 출석인원은 총 3천6백84명이고 설교오디오판매대금을 포함한 총 현금액은 1억1천15만1천1백54원으로 말그대로 급성장했다. 수평이동으로 인해 지역 내 교회들이 결계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남뚝가는 대목이다. 수용인원을 초과한 교회의 주차문제는 커다란 골칫거리로 급기야 묘원 내 참배경로에까지 차량들이 진입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 주차요원의 안내를 받는 차량들.

실제로 양화진이 위치해있는 마포구청 교통지원과 담당자의 "주차문제로 민원이 빈번히 들어와서 수시로 단속하는 구역으로 일요일에도 2명의 직원이 선별단속하고 있다"는 말은 이곳이 결투산공원 방문객과 자유로진입관계 등으로 이동차량이 많은 지역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

〈한국기독교보〉 2009년 2월 24일자 기사

2009년부터 〈한국기독교보〉는 본격적으로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응해하고 조롱하는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16일 양화진 내 홍보관에서 열린 설립 3주년 기념예배에서 이재철목사가 "이제는 양화진의 지도 지체가 변했다"고 평가했던 것과 같이 실제로 많은 부문에서 현재 양화진의 외관은 변한 상태다. 일요일 주지문제가 눈에 띄는 변화라면 과거에 양화진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숨은 변화도 있다. '외국인모지공원 및 서울 외국인교회의 역사적 배경'이란 제목의 안내판이 아무런 동의과정없이 제거된 데 이어 최근 새로운 안내판이 등장해 지난해 9월 공고한 단체합배격 안내 수칙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아래 새 안내판 내용 전문) 유니온교회가 20여 년 동안 예배장소로 사용해왔던 선교기념관에는 계단 옆 영어로된 표지판만이 옛 흔적을 알릴 뿐 현재는 기념교회의 교회학교 예배장소로 사용되고 있었다.

한편 기념교회는 등록한지 2년이 된 자에 한해 남자는 60세, 여자는 50세 이상인 자를 장로 권사로 임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념교회측은 "새로운 방식만큼 책임감을 갖고 잘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밝혔지만 교회가 본교단 소속이 아니라해도 담임교역자가 서울서노회(노회장:차광호) 소속으로 장로교가 본래 헌법에 활동직을 투표로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 총회 순교자기념선교회 총무 이응삼목사는 "투표가 아닌 임명은 장로교회 치리 및 한국교회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장로교는 시찰회와 노회 위에 총회 등 삼위기관에 의해서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사이버나 군소교단도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장속'이라는 뜻말만이 이 장소의 본래 역사적 의미를 대변해주고 있는 듯하다.

효율적인 요원관리자를 자칭하며 등장한 기념교회가 한국교회의 공동유산인 양화진의 전권을 행사하며 일어난 일련의 변화들에 대한 고개의 평가만이 남아있는 가운데 이제 본교단 역사위원회(위원장:김점사)의 활동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 양화진 지역 목회자들 뿔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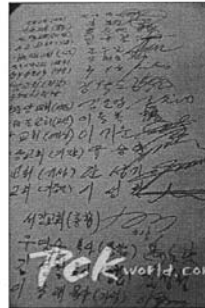
마포교구협의회, 양화진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2701호] 2009년 4월 7일 (화) 06:37:36 (조회수 : 833)

김복미 기자 khm@pckworld.com

지역의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성지인 양화진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마포교구협의회(회장·김석순)는 지난 4일 서교로홀에서 모임을 갖고 "양화진 외국인요원은 한국교회의 공동유산이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양화진이 소재한 마포구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마포교구협의회는 문교단 뿐만 아니라 고문 김경원목사(서원교회) 홍순영목사(신석교회)를 비롯해 예정합동 기감 예성 고신 등 초교파 목회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성명서에는 목회자들의 진심 서명이 담겨있다.



▲ 이번 성명을 발표한 마포교구협의회 소속 목회자들의 선명서명.

이들은 지난 2005년 100주년기념교회(이재철목사 사무, 이하 기념교회)가 양화진에 들어오면서 "한국교회는 마포구민과 세계교회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게 되었다"며 양화진 요원은 한국교회 전체의 신앙과 역사교목 현상임은 물론 마포구의 역사적인 유적지이자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어느 한 교회가 독차지 할 수 없는 한국교회 공동유산'이라고 선언했다.

"최근 수년간 한국교회 성지인 양화진에서 기념교회의 무례하고 불손한 행위들은 도를 넘어 이 땅에서 헌신한 많은 선교사들과 후손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이들은 "기념교회의 일면의 행위들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성명에는 100주년기념교회 정관 제5조에 "만50세 이상의 여자로서 집사에 임명된지 5년 이상, 우리 교회에 등록한지 2년 이상인 자 가운데 성실하게 주일예배에 참여하는 자를 공사라고 호칭한다. 만 60세 이상의 남자로서 집사에 임명된지 5년 이상, 우리 교회에 등록한지 2년 이상인 자 가운데 성실하게 주일예배에 참여하는 자를 장로라고 호칭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 이들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밖에도 한국교회의 신앙유산인 양화진 요원을 불법적으로 사유화하려는 시도와 기독교성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무례를 즉각 중지할 것, 선교기념관 건립시 세워졌던 불현탄(천만)을 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선교기념관을 서울외국인교회가 영구히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불현탄은 기념교회에 의해 무단철거된 바 있다.

또한 이들은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사업협의회(이사장·정진경)를 향해서도 양화진 요원과 한국기독교 선교기념관이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되게 할 것과 "한국교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이해당사자를 이사로 만들고 100주년기념교회를 시작한 의도를 즉각 해명하고 바로 잡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문교단 서울서노회(노회장·차광호) 양화진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우영수)도 지난 6일 노회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양화진의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총회에 현의할 것을 결의했다. 지역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기념교회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화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한국기독공보> 2009년 4월 7일자 기사

## 사설/ 양화진 문제, 왜곡말라

[2703호] 2009년 04월 23일 (목) 10:10:00 [조회수 : 619]

한국기독교공보 webmaster@pckworld.com

'양화진' 문제에 대해 지역 교회와 노회들은 물론 교단 원로들까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부활절을 하루 앞두고 양화진이 소재한 마포구 지역 교회협의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양화진 현지를 방문, 예배와 함께 '한국교회 공공의 유산으로서 양화진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이와 함께 서울강북지역노회협의회에서도 차기 총회에 '백주년기념교회 담임목회자의 불법과 교회 질서 문란행위를 조사하고 치리해 주실 것'과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사업협의회가 백주년기념교회에 부여한 전권을 회수해 줄 것' 등을 현의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성한 총회장의 초청으로 열린 증경총회장단 간담회 석상에서도 정식 의제로 이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고 이 자리에서 원로들은 총회 유관 위원회뿐 아니라 총회 임원회가 직접 나서 이 문제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 조속히 원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고 한다.

지역 교회들이 한 목소리로 바라는 것이나 본 교단 서울강북지역 노회들의 연대 현의 움직임도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반응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증경총회장을 가운데 다수가 양화진이 조성될 당시 협의회 총재로서 한국교회백주년사업을 주관했던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활동했던 교계 중진이요, 교단의 대표자들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오늘날 백주년기념교회가 문제 지적을 명확하고 자신들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는 행위는 말 그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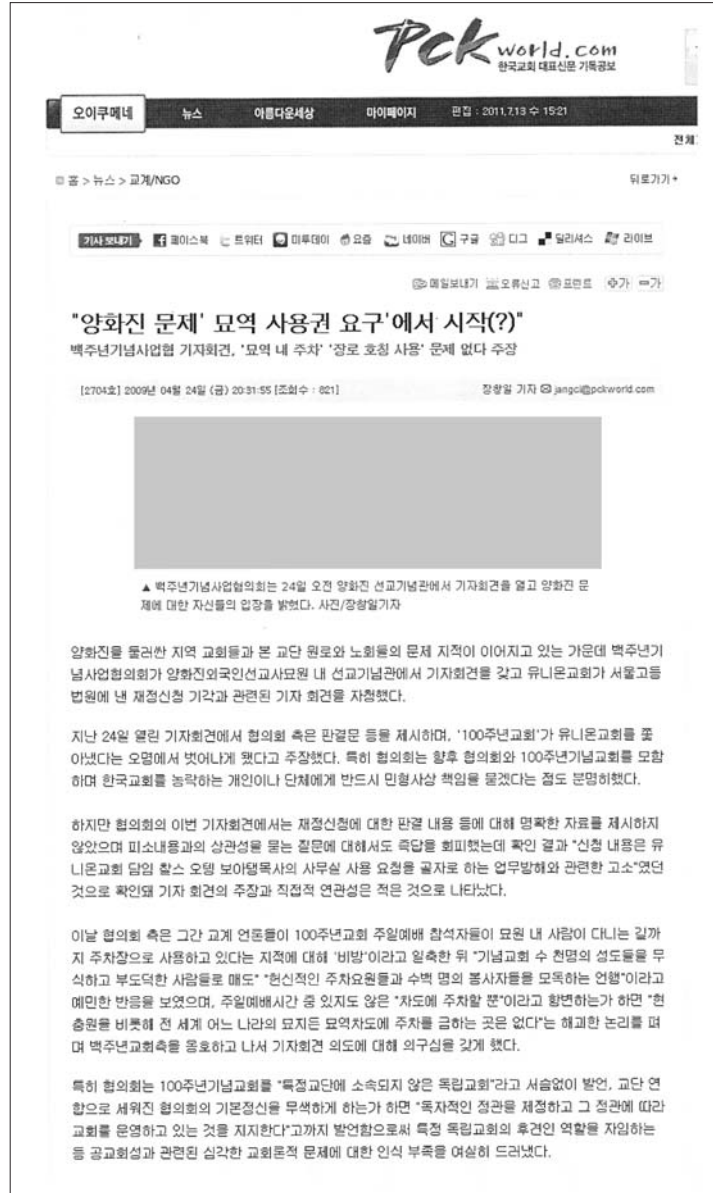
백주년기념교회와 관계자들은 지금도 불법적 장로 호칭 사용 등의 문제와 양화진 내 헌판 제거, 권리 방법의 일방적 변경 등 문제 지적에 대해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전권의 정당한 행사'라든지 '20개 교파가 연합해 세운 초교파 교회로서의 특수성'을 강변하는가 하면 '백주년협의회는 교단도 노회도 연합기관도 아니고 총회가 이사를 파송하는 기관도 아니다'라며 문제 지적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계 관계자들이나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도 "이단사설에 신경 쓰기도 바쁜데 시시콜콜한 일에 열을 올린다"거나 "사욕을 품고 있는 이들의 사주를 받은 잘못된 판단과 행위"로 오히려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교회와 기독교 첫 유적지로 손 꼽는 양화진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불화와 논란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조속히 종결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소중한 역사를 간직한 현장이 근본조차 모호한 점유자들에게 의해 왜곡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한국기독교공보> 2009년 4월 23일자 사설



●●●

〈한국기독교공보〉 2009년 4월 24일자 기사

유니온교회 등이 제기한 업무방해 사건 재정신청이 기각된 후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마련한 기자회견을 보도한 〈한국기독교공보〉 기사. 기자회견의 본질은 외면한 채 엉뚱한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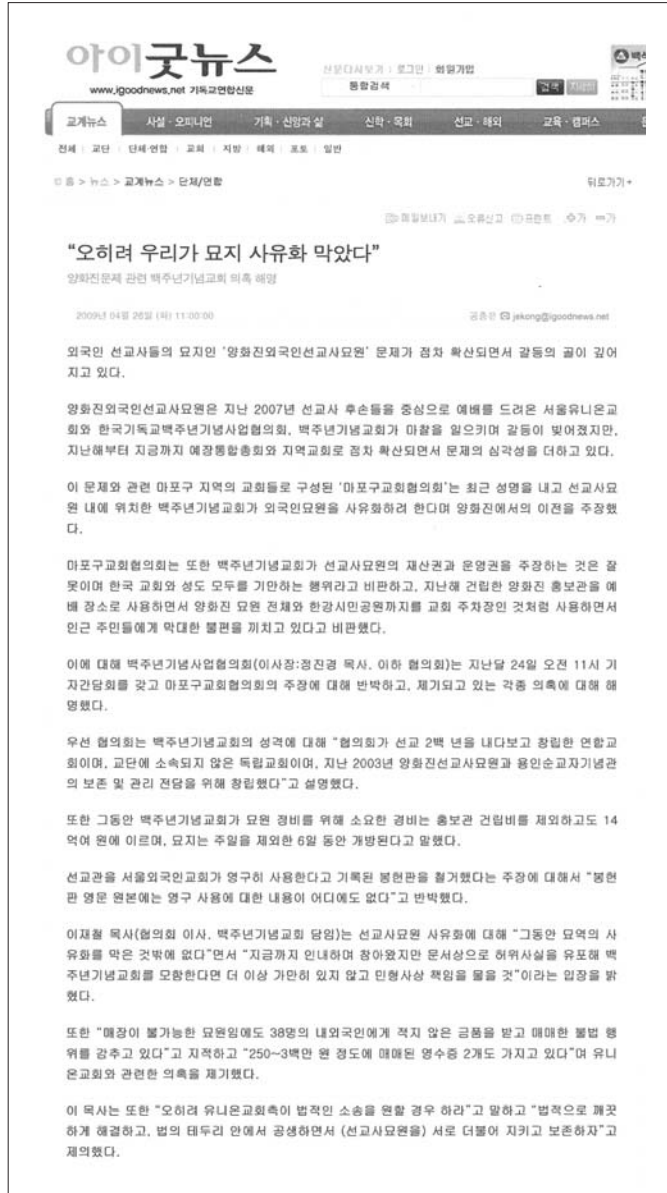


양화진 문제의 최초 원인제공자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진 모 인사는 시종 강한 어조로 '선교사 4대손들'의 문제점을 언급, '(4대손들이) 묘지 절반의 사용권을 달라는 것에서 양화진 문제가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당초 양화진 묘역의 관리를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문누리교회 정동감리교회에 요청했지만 특정 교파의 교회가 관리하는 데 부담을 느껴 협의회가 독립교단 교회를 세우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이끈 100주년교회 관계자는 '호칭장로' 문제와 관련해 "의숙하지 않아서 이상할 뿐"이라고 전제한 뒤 "10년만 지나면 한국교회 장로 시스템이 어떤 형태로든 바뀌고 20년만 지나면 권력화·서열화된 장로제도는 한국일에 발붙이지 않을 것"이라며 "첫 시도를 하다 보니 주위 교회들로부터 오해받고 비난받는다"고 말했다. 종 교회는 현재 60세 이상 남자로 교회 출석 2년이 경과하면 교회 직분과 관계 없이 '장로'로 호칭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도 지적돼 왔다.

이 문제와 관련해 100주년기념교회 담임 이재철목사가 전도 목사로 소속돼 있는 서울서노회 노회장 차광호목사(북아현교회)는 "특히 우려하는 것은 어느 교단의 어떤 교회도 인정하기 어려운 호칭장로·권사 문제를 어떻게 가법게 여기는 부분이다. 심각한 정서의 괴리감을 느낀다"면서, "백주년기념사업협의회 이사들이 이재철목사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아는데 이를 회수해 양화진은 본교단이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실지로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 목사는 "각 교단과 소속 교회들도 선교사들을 위하게 여긴다면 양화진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일처림 생각하는 자세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자회견와는 별개로 본교단 임원회는 오는 28일 올봄도에서 진행하는 임원회의에서 양화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심도깊은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앞서 본교단 증경총회장들도 모임을 갖고 "양화진에 질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총회 임원회에 주문하는가 하면 마포교회협의회와 서울강북지역 6개 노회 연합회가 사태 해결을 위해 양화진 현지 방문과 현의안 공동 제출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협동을 전개 준비하면서 앞으로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될 전망이다.



●●●  
 <아이굿뉴스> 2009년 4월 28일자 기사  
 100주년협의회 기자회견을 보도한 <아이굿뉴스>. 재판 결과와 갈등의 원인을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교회일반  
christiantoday.co.kr '제 할배 제 하고 아니고 할배 아니고 하라' (195-3기) 검색

전체기사 교회일반 선교의세계 목회신학 사외NGO 청년캠퍼스 장회 라이프 사설/칼럼

홈 > 교회일반 > 기관단체

교회일반  
CHURCHGENERAL

전체기사  
일반기사  
연습기구  
교단  
기관단체  
이단 사이버

연재  
한국교회 리더  
실 50인  
빌간초대석

메모  
· 기사제보  
· 편집자에게

포토 | TV

### 양화진 갈등, 한국교회가 선교사 후손 쫓아냈다

기념사업협의회 억울함 호소, 유니온교회의 고소는 최근 기각 [2009.04.30 11:53]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이 유니온교회와 100주년기념교회 간의 오랜 갈등을 겪고 있다. 뒷편의 건물은 두 교회가 예배당으로 사용했던 선교기념관 (우) 크리스천투데이 DB

한국교회의 성지인 양화진의국인묘원(이하 양화진 묘원)이 외국인교회인 유니온교회(당명 프란스 할스 목사)와 100주년기념교회(당명 이재철 목사)간의 오랜 갈등으로 상처를 입고 있다. 이는 곧 경성구미인묘지회(회장 피터 언더우드)와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초대 이사장 한경직 목사, 이사장 장진경 목사, 이하 협의회)간의 갈등으로, 그 모방새가 선교사 후손과 한국교회 면모 지도자들과의 대립 구도로 비쳐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런 일방적인 비난에 직면했던 협의회는 최근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사실확인서와 양화진 묘원 설립 배경에 관한 내용을 20여 장이 넘는 자료로 만들어 지난 주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선교 헌지에 있는 피선교지 어른들을 상대로 고소하는 일들이 과연 옳은 일인가, 국법에 의해 진위가 가려졌음에도 진실이 초도형을 더 이상 폭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유니온교회가 협의회와 백주년기념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몇 차례 민형사상의 고소 고발은 무효의나 증거 없음으로 기각됐고 재정신청까지 고등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장진경 목사, 김경래 장로 등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사업회는 양화진 묘원의 관리를 더 이상 유니온교회에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양화진 묘원 훼손 및 사유화 및 주차장화하고 연합사업 정신을 상실했다는 등의 기념교회에 대한 비판에 대해 해명했다.

**한경직 목사 도움으로 조상, 20년간 선교사 후손들 관리**  
"요지 훼손, 불법 방지할 수 없다" 기념교회 설립

이런 갈등은 협의회가 묘원 관리와 보존을 연유로 기념교회 창립과 함께 2005년도부터 유니온교회와 예배장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부터 시작했다. 결국 유니온교회가 연세대학교로 예배 장소를 옮기게 되면서 기념교회가 선교사들의 후손을 쫓아냈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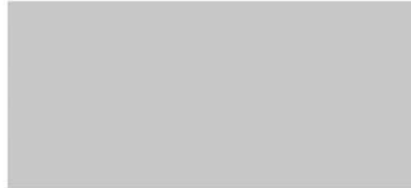
하지만 이에 앞서 두 기관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 협의회측의 주장. 방지되다시피 했던 양화진 묘원은 지하철 공사 등으로 존재위기에 놓인 79년, 구미인회 대표 최 원일한 목사(언더우드 3세)가 보존에 나섰다. 하지만 당시 토지법에 의해 외국인들은 법적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없어 기념사업회 한경직 목사에게 도움을 청했고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양화진 묘원 보존의 필요성을 올랐었던 한 목사는 이에 적극 나섰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등재된 소유자가 없어 건축이 어려워 있어 당시 구미인회는 협의회에 소유권을 이전했다. 외부로부터의 묘원 이전 움직임과 보존에 힘거웠던 구미인회는 협의회에 감사함을 표했으며 사업회 역시 기념관 건립 및 묘원 관리 보존에

●●●  
 <크리스천투데이> 2009년 4월 30일자 기사  
 100주년협의회 기자회견을 보도한 <크리스천투데이>. 재판 결과와 갈등의 원인을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다.

적지 않은 지원이 필요할 때도 가까이 수월했다. 이후 86년 준공식 즈음 평일만 목사가 유니온교회가 선교기념관 전체를 교회 용도로 쓰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한경직 목사가 이를 수락해 법적인 소유권은 협의회, 관리자는 유니온교회의 형태가 됐다.

협의회가 2003년 한국인연합교회를 건립코자 결의한 것은 요한의 관리 보존을 위한 일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유니온교회가 사신의 매장과 예매 등의 불합법을 행하고 요한 관리가 안 되 청소년들의 비행장소가 되는 등 묘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이유였다. 협의회는 "당초 유니온교회에 예배당 사명과 묘지의 관리를 영구적으로 맡긴 것도, 더욱이 역사의 가치를 외면하고 한국교회의 뜻과 무관한 사용을 허가함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번 갈등과 관련 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회의 기자회견에서 이사장 정진경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 송경호 기자

#### 유니온교회-기념교회 한 지붕 아래 갈등 증폭 교법고소 및 각계서 규탄 이어져 파장 급속화

이를 전운할 곳으로 협의회는 2005년 기념교회를 세웠고 묘지 관리 일체를 한국교회가 맡아야 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효율성을 위해 선교기념관 예배당을 이전에는 유니온교회, 이후에는 기념교회가 사용하는 것을 약속했다. 이때부터 갈등이 증폭됐다. 유니온교회는 기념교회가 양회진요원을 '침략'하려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기념교회측도 마찬가지였다. 유니온교회측이 냉난방이 전혀 안 되는 지하를 사무실로 내주는 등 냉대하고 지나친 발언을 하며 국내외 언론에 알려 논란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당초 새로운 예배당을 세우면 장소를 옮길 것을 약속했었으나 이것이 무산됐고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유니온교회에 예배 시간 변경을 통보했다. 이 때 이미 기념교회는 성도수가 25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2007년 8월 마포구청이 선교기념관을 건축법상 교회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통지해버려 결국 유니온교회는 현재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예배실, 기념교회는 총보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후 유니온교회가 기념교회를 상대로 업무 방해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파장이 급속화됐다. 여기에 마포구청협의회가 기념교회를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 이재철 목사가 소속되어 있는 예장 통합 서울서노회의 양회진문제대책위원회와 등교단 서울강북지역노회협의회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총회 현의 결의, 중경총회장단의 우려 표명 등이 이어졌다. 이들은 협의회가 기독교 성지를 주자장으로 사용하고 불법으로 사유화하려 하며 선교기념관 건립시 세워 놓은 분향관을 무단 철거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회 정관에 "만50세 이상의 여자로서 집사에 임명받지 5년 이상, 우리 교회에 등록한지 2년을 초과한 자 가운데 성실하게 주일예매에 참여하는 자를 권사라고 호칭한다. 만60세 이상의 남자로서 집사에 임명받지 5년 이상, 우리 교회에 등록한지 2년을 초과한 자 가운데 성실하게 주일예매에 참여하는 자를 장로라고 호칭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도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논란을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

#### 협의회 "선교사 후손들에게만 관대, 한국교회에 실망" 요역 훼손, 불법매장, 거짓 모함 등에 법적 대응의사 밝혀

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한국교회가 외국인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고 실망감을 내비쳤다. 협의회는 유니온교회가 선조에게 감사하는 한국교회의 뜻을 알아 성역을 성역답게 관리하리라 기대하였으나 △사신의 영의 불법 매장, △매장지의 불법예매(타던 언더우드 의 약묘지 포함한 37건 등), △살아있는 한국인들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석 등 남발되는 기념물 설치, △환 사료(요비)의 이름, △양회진을 영리사업에 이용하는 단체관람객들로 요역의 훼손 등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자행돼 무분별한 처사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AD] [속보] 예리쓰희재 100세보장 의료실비보험 인기

특별대담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회 산하 '100주년기념교회' 이 재철 목사에게 듣는다

대담 : 최규환목사



• 일시 : 2009년 7월 3일
• 장소 : 기독교신문 사(서울)
• 장소 : 송원루(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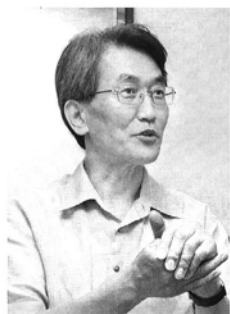
특별 대담에 초청된 최규환 목사는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협회 산하에 설립된 '100주년기념교회'의 초대 목회자로서, 이 교회의 설립과 운영에 깊이 관여해 오고 있다. 그는 1981년 100주년기념교회 설립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그는 1981년 100주년기념교회 설립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최규환 목사는 1981년 100주년기념교회 설립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그는 1981년 100주년기념교회 설립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최규환 목사는 1981년 100주년기념교회 설립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그는 1981년 100주년기념교회 설립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기독교인의 초교파적 독립교회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협회는 한국교단 연합운동의 중요한 성과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초교파적 독립교회이다. 이는 전통교회와 개신교회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중요한 계기이다.



초교파적 독립교회 설립을 주도한 최규환 목사

연합운동의 공동유산인 '양화진 보존'과 '교회다움' 실현에 앞장

양화진 지역의 보존에 관한 논의는 이미 유년교회의 때부터 시작되었다. 양화진 지역의 보존은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협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양화진 지역의 보존에 관한 논의

양화진 지역의 보존에 관한 논의는 이미 유년교회의 때부터 시작되었다. 양화진 지역의 보존은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협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초교파적 독립교회로 태동된 독자적인 교회정관에 따라 격세 운동

초교파적 독립교회로 태동된 독자적인 교회정관은 격세 운동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이는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협회의 중요한 성과이다.

예장 통합측서 기소, 교단·교회 협의에 부당감 표출

예장 통합측이 기소, 교단·교회 협의에 부당감을 표출했다. 이는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협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예장 통합측서 기소, 교단·교회 협의에 부당감 표출

예장 통합측이 기소, 교단·교회 협의에 부당감을 표출했다. 이는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협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예장 통합측서 기소, 교단·교회 협의에 부당감 표출

예장 통합측이 기소, 교단·교회 협의에 부당감을 표출했다. 이는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협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장로교 목사의 타교파 목회자 장로교헌법 부합하는지 논란의 핵심

장로교 목사의 타교파 목회자 장로교헌법 부합하는지 논란의 핵심은 기독교의 본질과 헌법에 있다. 이는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협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장로교 목사의 타교파 목회자 장로교헌법 부합하는지 논란의 핵심

장로교 목사의 타교파 목회자 장로교헌법 부합하는지 논란의 핵심은 기독교의 본질과 헌법에 있다. 이는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협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장로교 목사의 타교파 목회자 장로교헌법 부합하는지 논란의 핵심

장로교 목사의 타교파 목회자 장로교헌법 부합하는지 논란의 핵심은 기독교의 본질과 헌법에 있다. 이는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협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장로교 목사의 타교파 목회자 장로교헌법 부합하는지 논란의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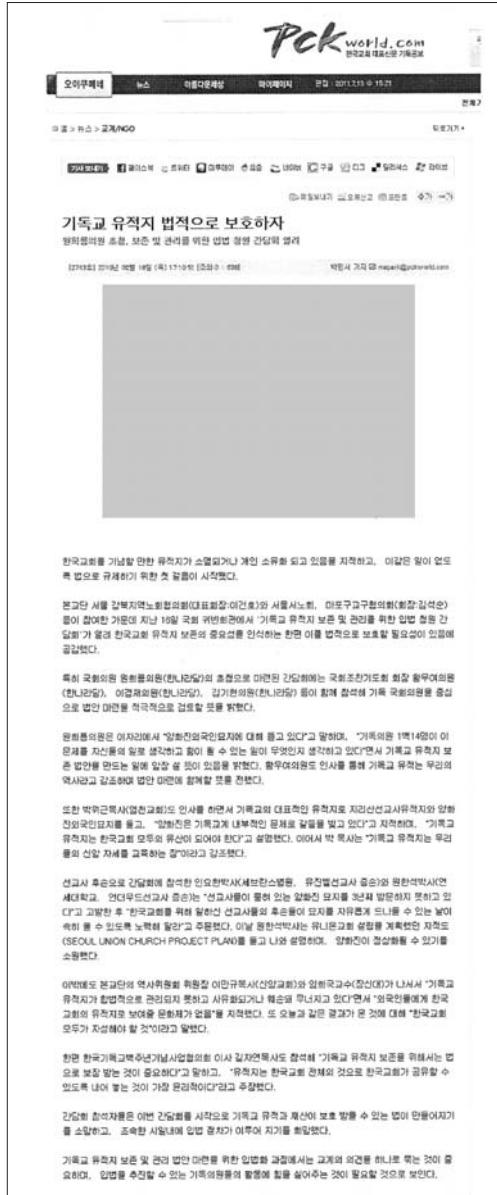
장로교 목사의 타교파 목회자 장로교헌법 부합하는지 논란의 핵심은 기독교의 본질과 헌법에 있다. 이는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협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기독교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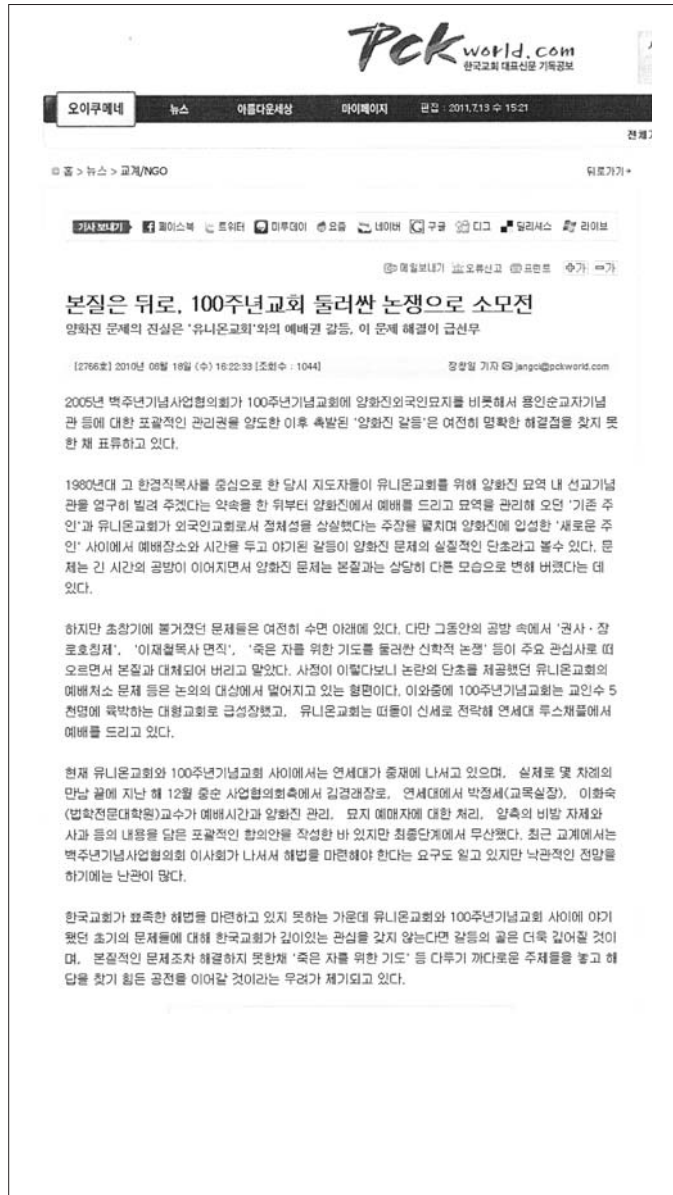
이재철 목사 인터뷰(2009.8.9)

이재철 목사 인터뷰(200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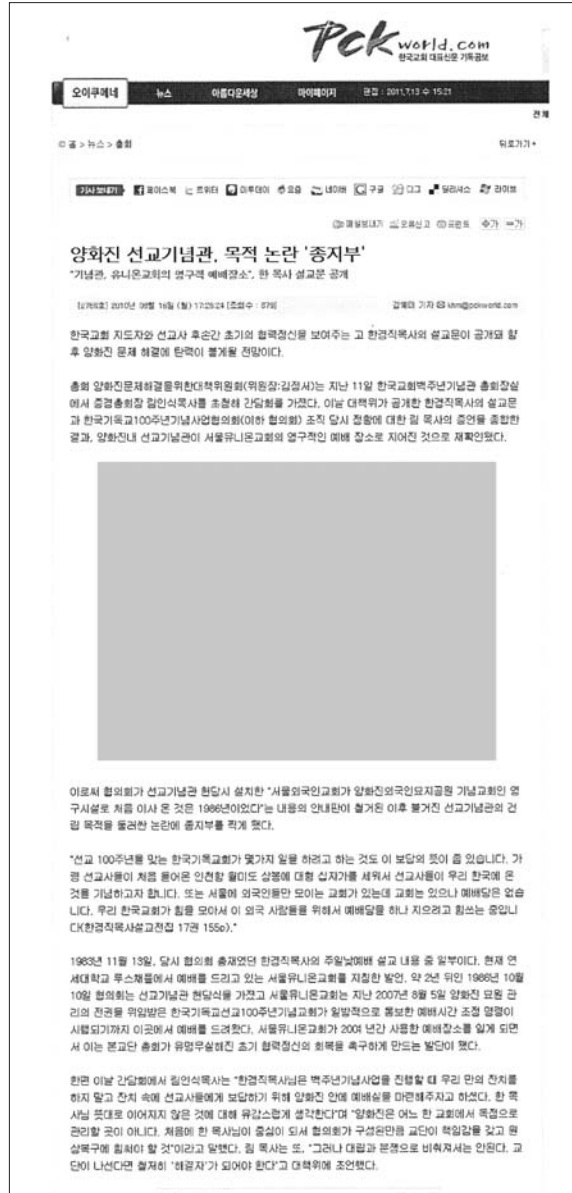
이재철 목사는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협회의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1981년 100주년기념교회 설립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그는 1981년 100주년기념교회 설립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  
 <한국기독교공보> 2010년 2월 16일자 기사  
 국회에서 열린 기독교 유적지 법적 보호 청원 간담회에서 예장통합과  
 경성구미인묘지회 인사들의 왜곡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했다.



●●●  
 <한국기독교보> 2009년 8월 18일자 기사  
 소유권 문제였던 양화진 논쟁의 본질을 신학 논쟁, 장로호칭제의 헌법위반 논쟁으로 확산시킨  
 예정통합이 오히려 본질을 잃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  
 <한국기독교보> 2010년 8월 18일자 기사  
 2010년 예정통합 총회를 앞두고 <한국기독교보>는 선교기념관 건립 목적을 왜곡  
 하는 기사를 잇달아 내보냈다.



**PCK** world.com  
한국교회 대표신문 기독교포

오이쿠메네    뉴스    이종대우재상    마이페이지    편집 : 2011.7.15 수 15:21    전체

이종 > 뉴스 > 교계/ANGO    뒤로가기 >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네이버    구글    다음    네이버    링크    RSS    사이트맵

▶ 해당기사    ▶ 오마이뉴스    ▶ 교계포럼    ▶ 추가 >

### 양화진 선교기념관, 유니온교회 위해 세워졌다

백주년협의회 87년 발행한 송광에 유니온교회와 선교기념관의 관계성 열거

[2766호] 2010년 08월 31일 (화) 18:43 오후 [조회수 : 1501]      양화진 기자    jangji@pckworl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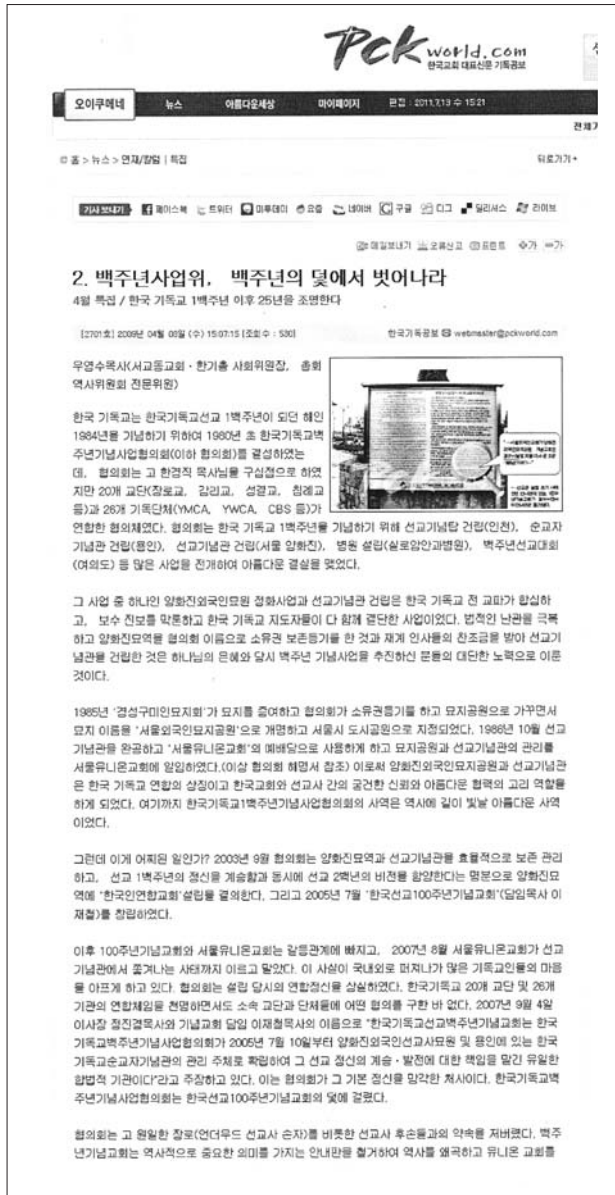
한국교회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는 본보 8월 21일자(2766호)에 보도된 양화진 기사의 관련, 최근 본보와 송대들에게 반박 보도 자료를 발송했다. 한국교회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가 반박한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마치 유니온교회가 선교기념관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선교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선교기념관을 유니온교회가 소유하려고 한다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것이다.

선교기념관의 소유권은 1986년 10월 10일(한국기독교 선교기념관 헌당식이 열린 날) 이후로 줄곧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에 있었다. 유니온교회는 단지 선교기념관 2·3층 대강당을 예배처소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건물주는 100주년협의회이고 임차인은 서울유니온교회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협의회의 구구절절할 주장은 사족(蛇足)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선교기념관의 헌당식이 열린던 1986년 즈음의 분위기. 바로 100주년협의회와 유니온교회,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관계가 어땠는지의 부분이다. 그렇지만 당시 삼각(三角)의 명확한 관계성을 증명해 줄 문건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과 증명할 수 있는 문료 중 대부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점이 사실 관계를 따지기에는 근본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당시를 반추해 볼 자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가 1987년도 발행한 '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사업총람'을 보면 선교기념관이 유니온교회('외국인연합교회'와 '총동)'의 예배처소로 일치감치 잡혀져 있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총람에는 선교기념관 헌당식이 열린던 날의 현장 분위기를 '오후 2시부터 기념관 2층 예배처소에서 열린 헌당식에는...중략...선교기념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3백50평 규모로 1층은 회의실·선교기념실로, 2·3층 대강당은 외국인연합교회 예배처소로 쓰이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  
〈한국기독교공보〉 2009년 8월 31일자 기사



●●●  
 우영수 목사 기고문(〈한국기독교공보〉 2009년 4월 8일)  
 〈한국기독교공보〉는 예장통합 내 교역자와 교수 등의 기고를 통해 양화진 문제의 실상에 대한 왜곡을 확산시켰다.

퇴출시킬 명분으로 삼았다. 본래 협의회가 설치했던 선교기념관 안내판에는 서울외국인교회(유니온교회)가 “...오늘날 서울외국인교회의 터가 된 묘지공원 안에 세워져 되었다.”(중략) - 서울외국인교회가 양화진외국인묘지공원 기념교회인 영구시설로 처음 이사 온 것은 1886년이었다.”(후략)라고 기록되어 있다. 합당한 안내판을 항상 복구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100주년기념교회는 '서울외국인묘지공원'을 '양화진외국인선교시요원'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는데 이는 역사와 진실을 왜곡하려는 제사이다. 선교시요원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 요원에는 선교사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다. 본래의 이름인 '서울외국인묘지공원'으로 해야 한다. 한국교회와 외국인 선교사들의 상호 존중과 신뢰의 산물인 선교기념관에서 22년간 예배를 드리던 유니온교회가 갑자기 예배 장소를 상실하게 된 것은 어떠한 명분과 권리 주장에 의한 것이라 해도 정당화할 수 없는 문제이며 선교사들과 그 후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다.

이 사태는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 한국교회의 배은망덕한 모습을 드러내는 부끄러움이 되고 있다. 당시 미국장로교(PCUSA) 총회 사무총장이었던 커크패트릭(Clifton Kirkpatrick) 목사는 공식 서한을 통해 “오늘의 양화진묘원 상태를 심히 유감으로 여긴다”며 우려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또한, 한국선교에 헌신했던 선교사 후손들의 모임 '재미한국선교사유족회' 2백1명의 연서말 탄원서도 본 교단 총회에 전달되었다. 한국교회백주년기념사업협의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을 위해 헌신했던 내한 선교사들과 외국인들의 역사적인 헌신을 기억하고 계속적인 우애를 보여주기를 부탁하고 있다.

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더 이상 고 한경직 목사님과 고 원일한 박사님의 아름다운 협력 정신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종손자 티퍼 언더우드는 “어느 한 사람이 양화진을 사유화 한다면 죽어도 눈물 갈별 수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또한 100주년기념교회는 자체적으로 만든 장관을 통해 한국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성직을 무너뜨리고 있다. 합리적인 정보와 권사를 단순한 호칭으로 사용하여 교인들의 수평이동을 조작하는 행위이다. 100주년기념교회가 독자적으로 증한 절간 제5조는 다음과 같다. “만 50세 이상의 여자로서 집사에 임명된 지 5년 이상,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2년을 초과한 자 가운데 성실하게 주일예배에 참여하는 자를 권사라고 호칭한다. 만 60세 이상의 남자로서 집사에 임명된 지 5년 이상,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2년을 초과한 자 가운데 성실하게 주일예배에 참여하는 자를 장로라고 호칭한다. 타 교회에서 장로, 권사로 임직 받은 자는 임직 받은 직분을 그대로 호칭한다. 목사로서 우리교회에 등록교인이 된 자는 남자는 장로, 여자는 권사로 호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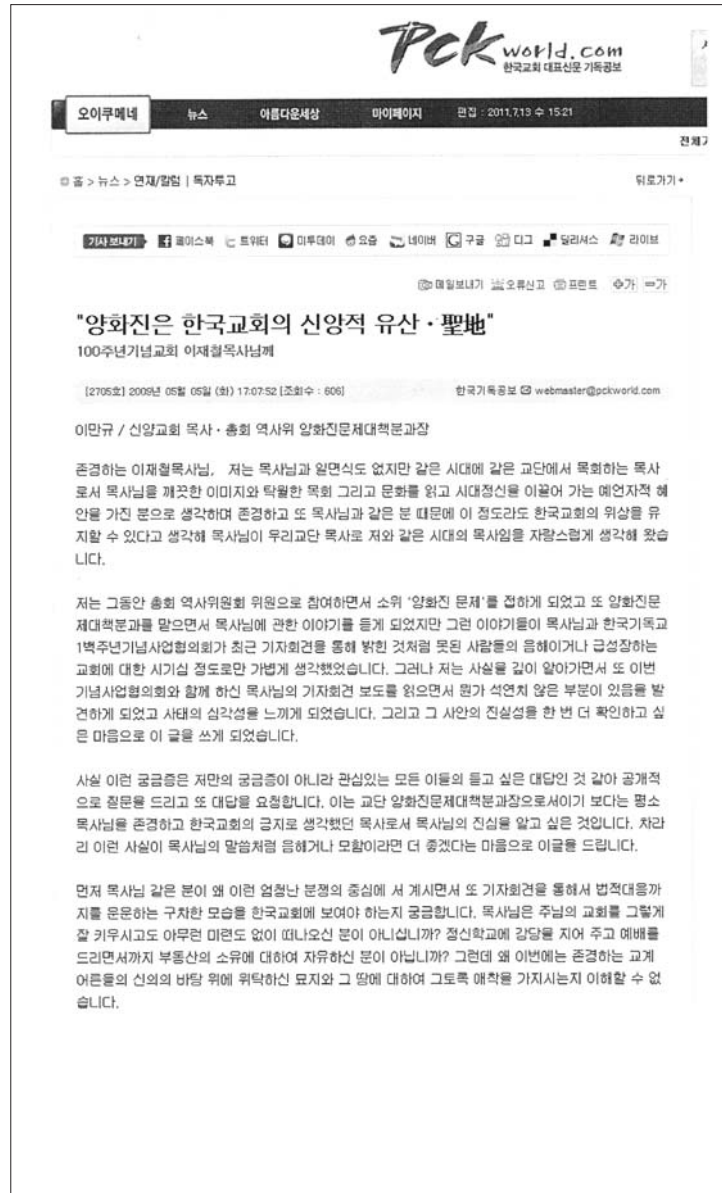
양화진묘원은 어느 한 교회가 독차지 할 수 없는 서울시와 한국교회의 공동유산이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100주년기념교회는 한국교회의 숭고한 신앙 유산인 양화진묘원의 재산권과 운영권권을 주장하며 주일에는 묘원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주일 예배를 끊고 있다. 양화진묘원은 한국교회 전체의 신앙과 역사의 교육현장이다. 그렇지만 선교사와 동시대를 살았던 다양한 내·외국인들이 묻혀 있는 역사적인 유적지이기도 하며, 서울시민들의 오랜 휴식공간으로 사랑받았다. 2001년 서울시와 마포구장이 1억30억7천598만원 씩을 들여 '서울외국인묘지공원'을 조성하고 지하주차장을 건립하여 양화진묘원은 정렬하고 결연하게 단장한 것은 그런 까닭에서다.

그런데 매 주일마다 성지 양화진외국인묘지가 주차장이 되어 시종종과 다름 바 없다. 2월 24일자 기독교보 기사 '주차장으로 둔갑된 외인묘지공원'과 3월 10일자 뉴스엔조이 기사 '양화진묘원 주차로 트집 잡힌 1백주년'을 읽어보면 100주년기념교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100주년기념교회는 한국기독교총교지기념관 순교자 추시 역시 독단적으로 자체 진행하려 하고 있다. 협의회는 양화진묘원과 한국기독교총교지기념관을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굳이 한국교회의 선교 백주년을 기념하고자 세우는 교회였다면, 1백주년이 되던 해에 설립했어야 하지 않았겠는가? 20여 년이나 지난 후에 백주년기념교회를 세운 것은 많은 의구심을 낳고 있다. 역사를 왜곡하고 한국기독교총교백주년의 아름다운 유산을 사적 소유처럼 독차지하려는 시도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양화진외국인묘원은 설립 초기의 정신을 살려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공동유산으로 관리하고 보존해야 한다. 한 교회가 독차지하여 교계와 지역사회에 마찰을 내는 것은 연합정신에 위배된다. 협의회와 기념교회는 1백주년의 뜻에서 벗어나야 한다.



●●●  
이만규 목사 기고문<<한국기독교보>> 2009년 5월 5일

한국교회와 맞서는 것같은 인상까지 주면서 묘지 관리를 저임하고 주일 추념을 금하는 등 100주년 기념교회의 편의를 위해 한국교회의 정서를 무시하는 듯한 일을 서슴치 않으시고 거기에 대한 항의를 민원사상의 책임을 물었다는 어영계 들으면 험악처럼 들리는 기자회견을 하셔야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들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 한경직목사님께서 기념사업협의회가 일시적으로 관리를 해주려고 명의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맡은 것을 가지고 기념사업협의회는 그 땅이 묘지 자신들의 것이니 알 주장을 하고 한국교회의 정서는 고려하지 않은 채 100주년기념교회에 전권을 위임하고 또 목사님과 100주년기념교회는 위임받았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 역사적 중요한 가치를 가진 안내만을 임의로 바꾸어 버리고 '외국인 묘지공원'을 '외국인 선교사 묘원'으로 변경하고 표지판들을 교체하여 역사성을 훼손하고 수도권교회들의 교회학교 교목의 현장으로 사용되던 주일 추념을 금하고 주일은 온종일 100주년기념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러라는 처사는 참으로 목사님답지 않은 처신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그 땅이 누구의 이름으로 들어가 되어 있는지, 법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 땅에 대한 실제적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 예배 처소를 빼앗기고 고등법원에 처소를 뺏다는 유니온교회의 주장이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양화진외국인묘지는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적 유산이요 성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양화진 묘지를 이 목사님이나 한 교회가 독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신학적 불가부 명의를 가지고 권리를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성서화하는 한국교회를 향해 음해나 비방이나 모욕이나, 그래서 민원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협박에 대하여 매우 신상해 있고 또 분노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양화진 묘지는 한국교회 모두의 것으로 함께 아끼고 귀히 여기는 성지로 가꾸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굳이 독점 관리를 자임하시려는 것에 대하여 순수성을 잃을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깨끗한 목사님의 이미지와 전혀 다르게 한국교회의 가장 부끄러운 행태로 지적받는 교인의 수명 이들을 조작한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교인 호칭의 문제가 있어서도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여 교인들을 불러 모아야 할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숨일 수 없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 한국교회에는 성직을 봉사나 사역을 위한 직임보다는 교회 안에서의 자기 위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나 장사 권사를 명예로 이해하는 문풍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호칭을 부여한다면 허명을 좇는 달인 교인들의 수명 이쪽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지요 우리는 그것이 교인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접점지 못한 수단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장로 장사 권사의 직분을 소중히 알고 헌신하는 수많은 합종직문자들의 성직의 존엄성을 마구 무너뜨리는 결과가 온다는 것을 정말로 짐작도 못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장로제도도 권역화 시열화되었다고 단언하셨다고 하시는데 우리 교단의 치리의 근간인 이 장로제도도 그렇게 망해해도 되시는지, 그래서 이 목사님 교회는 우리 교단 헌법이 규정한 기본적인 치리회의 단체를 구성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의는 이름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대하여도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이미 들어 아시리라 믿지만 목사님과 같은 지역(마포구)의 교회들이 비참한 각오로 시정을 요구하고 문교단 간북지역노회협의회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총회에 현의하고 목사님이 소속된 서울서노회가 목사님을 기소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교단에 파문을 일으켜 가면서까지 꼭 묘지를 독점 관리해야할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우리는 묘지관리나 홍보를 위해 서은 건물에서는 풍도상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이유로 유니온교회를 내보내고서도 귀 100주년기념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는 주말예배 처소로 사용하면서 엄숙하고 경건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타교회 교인들의 주일 추념은 금하면서 자신들은 묘역 전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귀 교회나 목사님에 대하여 느끼는 배신감이 얼마나 큰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만 묘지는 한국교회에 돌려주시고 새 예배처를 마련하고 남들과 같이 정상적인 목회로 목사님의 남은 시간을 해나님께 드려서 살수된 이미지를 다시 세우고 역시 그분은 다르다는 멋진 모습을 보여 주실 수 없으시지 기대해 봅니다. 양화진 묘지 관리가 그렇게 염려된다면 유니온교회에 맡기면 아마 더 잘 돌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포구교회협의회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들기부상의 이름 하나를 믿고 소유권을 주장하려는 기념사업협의회도 양화진 묘지를 겸손히 한국교회에 다시 내어놓게 될 것 같으니 믿습니다. 목사님도 기념사업협의회도 기존의 좋은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고 또 배은망덕하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한국교회의 명예도 회복할 수 있을 테니 믿습니다. 목사님과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의 해나님을 향한 신앙적 결단을 기대하며 목사님께서 저의 궁금증을 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승 하십시오.

### 기독교 유적지 법적 보호 해야 할 때

[2743호] 2010년 02월 25일 (목) 16:15:54

한국기독교공보 | webmaster@pckworld.com

2010년 올해에는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역사적인 사건이 많다. 1백년 전 한일병합(1910년), 60년 전 6.25전쟁(1950년) 또 손왕편 목사 순교(1950.9.28), 50년 전 4.19혁명(1960년), 30년 전 5.18광주민주화운동 등등이다.

한국 교회는 나라와 민족의 역사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증언해 왔다. 예를 들어, 한일병합 직후 '105만사건'으로 불리는 소위 '대라우치총독모살미수사건'(1911년)에서는 일제가 한일민족세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합병성을 가장하면서 서북지역 기독교 지도자들을 체포하여 투옥하고 심하게 고문하였다. 9월 3일(불) 기독교학교인 선천 신성중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고, 왕전택 목사도 거기에 포함되었다. 1919년에는 '3.1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이 운동들 이전 민족대표 33인 가운데서 기독교 지도자가 16명이었다. 박물관이 된 서대문형무소의 역사관은 일제의 식민지배에 항거한 독립운동의 현장을 증언해 주는데,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기독교 지도자들의 거룩한 뜻을 가르쳐준다.

반드시 기억하고 깊이 기념해야 할 기독교 사적지를 교단의 총회가 '사적지'로 지정해왔다. 지난해에는 '척국교회'(제3호, 영주노회), '두동교회'(제4호, 익산노회), '지리산기독교선교사적지'(제5호, 순천노회) 등이 지정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이지 완결이 아니다. 역사의 기억과 기념은 보존을 통해서 계속되는 것이므로, 사적지의 지정은 보존사업의 시작이다. 특별히, 지리산기독교선교사적지는 낱말이 그 훼손의 정도가 심각해지기때 보존사업을 시급히 서둘러야 할 현상이다. 한국 교회가 역사 속에서 '성경기독교'로 정착되어 왔음을 확인하면, 선교사 이봉서가 성경(구약)을 번역한 현장인 지리산 노고단 선교사 유적지에 하루 빨리 손써야 할 것이다. 현재는 교회들의 무관심이라고 본다. 깊이 보존되어야 할 수많은 기독교 유적지가 세속 속에서 무너져 나갔었고 또 전쟁 통해 파괴가 되었는데, 이제는 무관심 속에서 그 흔적마저 사라지게 될 운명에 놓여있다. 역사문화유산이 사라지게 될 처지다.

교회들이 기독교 사적지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려면, 그 무엇보다도 소위 '양화진사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난 선교사들이 묻혀있는 양화진묘지는 한국 교회의 공동유산이자 역사교역의 현장이다. 그러나, 현재 특정 교회가 이 묘원을 독점하여서 이곳을 찾는 순례객들을 통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묘원을 '사유화'하려 든다. 이것은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는 일이다. 때문에 교단의 총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책위원회를 가동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일이 있다고 본다. 즉, 그동안 한국 교회가 묘원관리에 소홀했을 뿐만이 아니라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점을 자성하는 것이다.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한 역사의 현장인 양화진묘원이기에 모든 교회가 양화진사태를 주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가 열리는 동안에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의 문화유산인 기독교 유적지를 찾아보게 될 터인데, 이를 위해서라도 양화진묘원보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독교 사적지 지정과 관련하여, 교회와 교단의 노력만으로는 한이 무친다는 느낌을 자주 가졌다. 그래서 정부와 국가가 기독교 사적지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법적 제도로 이를 뒷받침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 태마침 국회의사당에서 '기독교유적지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입법 청문 간담회'가 열렸는데, 조만간에 기독교 유적지 보존에 관한 법률이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 이 간담회에서 이수영목사(새문안교회)는 어록수 4장 19~24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말하게 하여 이르기를 (...)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원 희 국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사 교수 · 총회 역사위원회 위원

●●●  
임희국 교수 기고문<한국기독교공보> 2010년 2월 15일



## 양화진의 진실 Ⅲ

---

- 양화진외국인선교사모원에 관한  
예장통합과 <한국기독교공보>의 주장과 진실

---

펴낸 곳 **재단법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서울 마포구 합정동 144 전화 02-332-4155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  
서울 마포구 합정동 142-1 전화 02-332-9177

---

펴낸 날 2011년 9월 10일

<비매품>